#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2024. 8.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

# 목 차

제1부 통 칙1
제1장 통칙2
제1절 일반원칙2
제2절 공시서류 기재내용의 확인10
제2부 증권 및 기업공시 일반기준12
제2장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13
제1절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13
제2절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32
제3절 투자위험요소42
제4절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49
제5절 자금의 사용목적60
제6절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64
제3장 회사의 개요77
제1절 회사의 개요 77
제2절 회사의 연혁80
제3절 자본금 변동81
제4절 주식의 총수 등82
제5절 의결권 현황 삭제<2021.7.13>79
제6절 배당에 관한 사항 삭제<2021.7.13>79
재7절 정관에 관한 사항88
제4장 사업의 내용92
제1절 일반원칙92
제2절 제조·서비스 업 ······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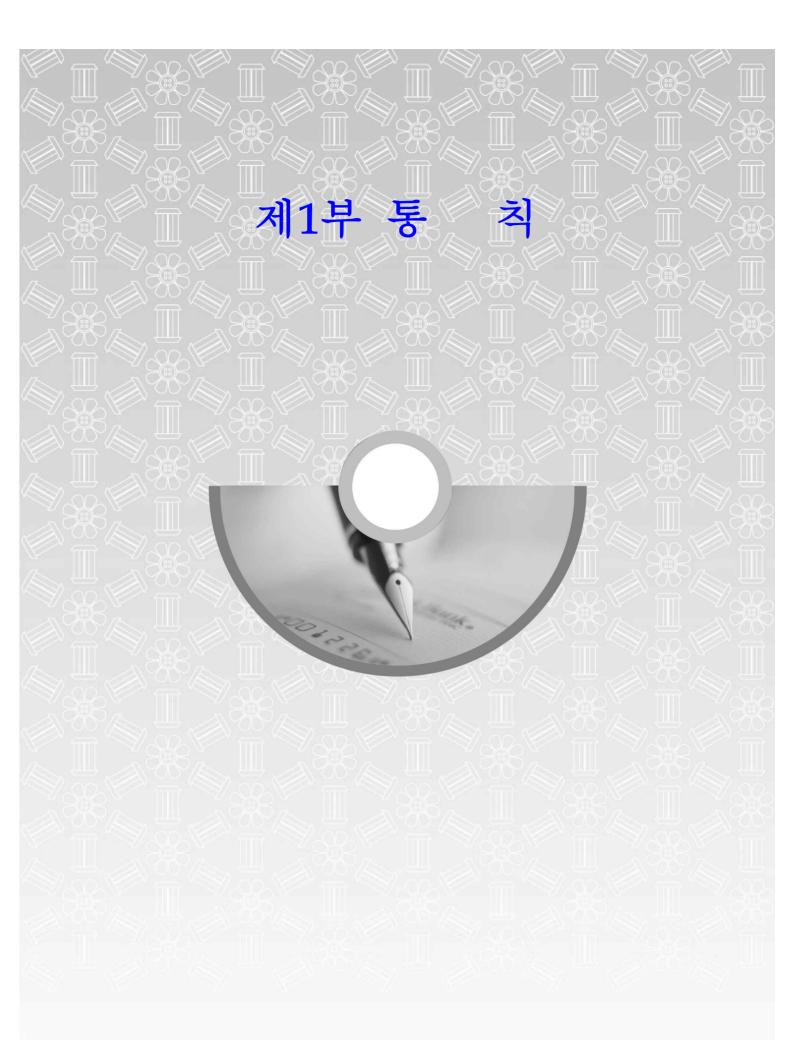
제3절 금융업107
제5장 재무정보 등에 관한 사항113
제1절 요약재무정보 등에 관한 사항113
제2절 회계감사인에 관한 사항118
제3절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122
제4절 재무제표 등123
제5절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125
제6절 배당에 관한 사항135
제7절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에 관한 사항138
제6장 이사의 경영진단 및 분석의견149
제1절 일반원칙149
제2절 기재사항151
제7장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157
제7장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
제1절 이사회에 관한 사항157
제1절 이사회에 관한 사항 ···································
제1절 이사회에 관한 사항
제1절 이사회에 관한 사항
제1절 이사회에 관한 사항
제1절 이사회에 관한 사항 157 제2절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161 제3절 주주총회 및 주주의 의결권에 관한 사항 165 제4절 계열회사 등의 현황 169 제8장 주주에 관한 사항 171 제9장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78
제1절 이사회에 관한 사항
제1절 이사회에 관한 사항

제2절 우발채무 등에 관한 사항198
제3절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209
제4절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등 기타사항 214
제11장의2 상세표에 관한 사항 226
제1절 일반원칙 226
제2절 기재사항 226
제12장 합병, 영업양수도, 자산양수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분할, 풋백옵션 등에 관한 사항 229
제1절 합병등에 관한 기본사항229
제2절 합병등 가액 및 산출근거235
제3절 합병등의 요령240
제4절 양수도 또는 분할되는 영업 및 자산의 내용244
제5절 합병등과 관련한 투자위험요소246
제6절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247
제7절 합병등 당사회사간의 이해관계 등248
제8절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249
제9절 풋백옵션 등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251
제13장 발행실적보고 253
제1절 증권발행실적보고253
제2절 합병등 증권발행실적보고 262
제 <b>14장 자기주식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lt;</b> 삭제, 2014.1.2.> ··········
제15장 공개매수신고 등265
제1절 공개매수자 및 그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265
제2절 공개매수 대상회사에 관한 사항 269

제3절 공개매수의 목적 및 장래계획 271
제4절 공개매수의 조건에 관한 사항 273
제5절 공개매수의 응모방법과 공개매수사무취급에 관한 사항 276
제6절 공개매수에 필요한 자금과 그 조성에 관한 사항 277
제7절 공개매수자와의 사전협의 등에 관한 사항280
제8절 공개매수 대상회사의 의견표명 281
제9절 공개매수결과보고282
제3부 파생결합증권 등 공시기준284
제16장 파생결합증권 등의 모집·매출에 관한 사항 284
제1절 일반원칙284
제2절 모집 또는 매출의 일반사항287
제3절 파생결합증권의 내용292
제4절 자금의 사용목적298
제5절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298
제4부 집합투자증권 공시기준299
제17장 공통사항300
제18장 집합투자증권의 모집·매출에 관한 사항304
제1절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304
제2절 모집 또는 매출의 일반사항305
제3절 집합투자기구의 인수,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306
제19장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307
제1절 일반사항307
제2절 집합투자기구의 운용회사 및 운용인력에 관한 사항 308
제3절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310

제4절 집합투자기구 운영기준에 관한 사항318
제5절 집합투자기구의 조직에 관한 사항325
제20장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326
제1절 재무정보326
제2절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330
제21장 집합투자기구의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333
제22장 기타 투자자보호에 필요한 사항335
제1절 투자자 권리에 관한 사항335
제2절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337
제3절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337
제4절 외국 집합투자기구 등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338
제23장 집합투자증권의 합병신고 339
제1절 합병에 관한 기본사항339
제1절 합병에 관한 기본사항 ····································
제2절 합병의 내용340
제2절 합병의 내용 ···································
제2절 합병의 내용340제3절 합병기준 및 산출근거341제4절 기타 투자자 및 이해관계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341
제2절 합병의 내용340제3절 합병기준 및 산출근거341제4절 기타 투자자 및 이해관계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341제24장 집합투자증권 발행실적보고342
제2절 합병의 내용340제3절 합병기준 및 산출근거341제4절 기타 투자자 및 이해관계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341제24장 집합투자증권 발행실적보고342제1절 집합투자증권 발행실적보고342
제2절 합병의 내용340제3절 합병기준 및 산출근거341제4절 기타 투자자 및 이해관계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341제24장 집합투자증권 발행실적보고342제1절 집합투자증권 발행실적보고342제2절 집합투자증권 합병실적보고345
제2절 합병의 내용

◈ 별지 : 공시서식



### 제1장 통칙

### 제1절 일반원칙

제1-1-1조(목적) 이 기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작성하는 제반 공시서류의 작성방법, 기재내용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1-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공시서류"란 법, 시행령, 시행규칙, 규정에 의하여 일반에 공시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신고서 또는 보고서 등의 서류를 말한다.
- 2. "공시대상기간"이란 해당 서식에서 정하는 공시기간을 말한다.
- 3.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란 해당 서식에서 정하는 기준일을 말한다.
- 4. "공시의무자"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신고 또는 보고의무가 부여된 자를 말한다.
- 5. 공시의무자의 유형에 따라 "회사"는 "영업자", "주주"는 "조합원" 또는 "사원", "주식"은 "출자지분", "주"는 "좌", "주주총회"는 "사원총회", "주 금"은 "출자금" 등으로 본다.
- 6. "전문가"란 공시서류에 이름이 기재된 자로서 법률적 사안에 대하여 의견, 사실확인 또는 주장을 제시한 변호사, 재무제표를 감사한 회계감사인, 특 정재산의 가치를 평가한 감정인, 그 밖에 인용 또는 첨부된 서류의 내용에 대하여 공인된 자격 또는 그 전문가의 전문성으로 인하여 일반인의 신뢰 를 받는다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 7. "최대주주"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가목의 최대 주주를 말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법인 또는 단체"로 본다.
- 8. "최대출자자"란 출자지분 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금융회사의 지배 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1항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 (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을 말한다.
- 9. "주요주주"란 시행령 제2조제5호의 주요주주를 말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법인"으로 본다.
- 10. "대주주"란 법 제9조제1항의 대주주를 말한다.

- 11. "임원"이란 이사, 감사 또는 사실상 이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 및 「상법」상 집행임원을 말한다.
- 12. "기업집단"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을 말한다.
- 13. "계열회사"란 공정거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기업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14. "지주회사"란 규정 제1-2조제7항의 지주회사를 말한다.
- 15. "자회사"란 규정 제1-2조제8항의 자회사를 말한다.
- 15의1. "주요자회사"란 지주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재무제표의 자회사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그 가액이 큰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누적한 가액이 자회사 장부가액의 합계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자회사들을 말한다.
- 16. "종속회사"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 이라 한다)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연결대상 종속회사를 말한다. 다만, 외국법인등이 국제회계기준 등 회사가 채택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결재무제 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의한 연결대상 종속회사를 말한다.
- 17. "합병등"이란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자산양수도 및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포괄적 이전을 말한다.
- 18. "합병회사"란 흡수합병의 경우에는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를, 신설합병의 경우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를 말한다.
- 19. "피합병회사"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회사를 말한다.
- 20. "합병당사회사"란 흡수합병의 경우에는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회사를, 신설합병의 경우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회사를 말한다.
- 21. "분할회사"란 분할의 대상이 되는 회사를 말한다.
- 22. "분할합병의 상대방회사"란 분할회사의 일부와 합병을 하는 상대방회사를 말한다.
- 23. "외국법인등"이란 법 제9조제16항의 외국법인등을 말한다.
- 24. "회계감사인"이란 외부감사법 제9조 및 제9조의2에서 정한 회계법인 및 감사반을 말한다. 다만, 외국법인등이 그 기업의 설립근거가 되는 국가의 법령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회계감사를 수행한 자를 말한다.
- 25. "회계처리기준"이란 외부감사법 제5조에 따라 정한 회계처리기준을 말하며, "회계감사기준"이라 함은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정한 감사기준을 말한다.
- 26.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란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한 국제회계기준

- 을 채택하여 회계처리기준의 일부로 구성한 기업회계기준서 및 해석서를 말한다.
- 27. "사업연도"란 회사의 정관이나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을 말한다. 다만, 결산일을 변경한 경우에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변경한 결산일까지 를 사업연도로 본다.
- 28. "중간기간"이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및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9장에 서 정한 기간을 말한다. 다만, 외국법인등이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 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서 정한 중간기간을 말한다.
- 29. "영업이익"이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을 말한다.
- 30. "시장위험상품"이란 금리, 가격, 환율 등과 같은 시장가격에 의하여 공정 가치가 영향을 받는 파생금융상품, 파생현물상품 및 기타상품을 말한다.
- 31. "파생금융상품"이란 선물, 선도, 스왑, 옵션 및 이와 동일한 특성을 갖는 기타의 금융상품을 말한다.
- 32. "파생현물상품"이란 파생금융상품에 포함되지 않은 상품선물, 상품선도, 상품스왑, 상품옵션 및 이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기타의 현물상품으로서 계약이나 상관습에 의하여 현금 혹은 다른 금융수단에 의한 결제가 허용되는 것을 포함한다. 여기서 현금에 의한 결제란 파생현물상품의 차액을 결제하는 것을 포함한다.
- 33. "매매목적"이란 파생상품에 대한 회계처리기준에서 정의하는 위험회피목 적이 아닌 모든 파생상품의 거래목적을 말한다.
- 34. "부외거래"란 공시의무자가 종속회사 이외의 자(거래상대방)와 행한 거래, 협약 그 밖의 약정에 따라 공시의무자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채무 또는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 가. 보증채무

- 나. 거래상대방에게 양도된 자산에 대하여 계속적이거나 우발적으로 가지게 되는 이해관계 또는 그 자산의 신용, 유동성 또는 시장위험을 보완하기 위한 채무
- 다. 파생상품거래로 회계처리되는 계약에 의하여 공시의무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채무
- 라. 거래상대방이 공시의무자에게 자금, 유동성, 시장위험 또는 신용위험을 보완하는 수단을 제공하거나 임대, 위험회피 또는 연구개발서비스를 공 유하는 등의 이해관계로부터 발생하는 중요한 채무
- 35. "기업인수목적회사"란 시행령 제6조제4항제14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회사를 말한다.

- 36. "파생결합사채"란 상법 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로서 법 제4조제7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37. "소규모기업"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이거나 최근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500억원 미만인 회사를 말한다.
- 38.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이 조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용어는 법, 시행령, 시행규칙, 규정 등을 포함하여 관계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
- 39. "특례상장기업"은 기술성장기업의 코스닥시장 상장, 이익미실현기업의 코스닥 시장상장, 코넥스기업의 코스닥시장 신속이전상장 등 중에 해당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 40. "중소기업"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 41. "ESG채권"이란 환경 친화적이거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업 및 프로 젝트에 투자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무증권으로서 한국거래소 의 「ESG채권 정보플랫폼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 동 플 랫폼에 등록될 예정인 것을 말한다.
- 42. "공동사업 운영자"란 법 제4조제6항에 따른 투자계약증권의 공동사업의 주 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 43. "공동사업 참여자"란 공동사업 운영자 외에 투자계약증권의 공동사업 관련 업무를 분담하는 자를 말한다.
- 44. "공동사업자"란 공동사업 운영자와 공동사업 참여자를 말한다.
- 45. "잠재주식"이란 법 시행령 139조에 해당하는 증권 중 의결권 있는 주식을 제외한 증권을 말한다.
- 제1-1-3조(공시서류 작성의 일반원칙) ① 공시의무자는 법, 시행령, 시행규칙,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공시서류를 작성할 경우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작성하되, 이 기준에 따라 알기 쉽고 충실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 ② 공시서류의 작성은 투자자 등 이용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간단하고 명료하게 서술식으로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해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거나 중요한 정보의 전달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래프, 표, 그림 등을 이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준이나 서식에서 특정 형태의 그래프, 표, 그림 등의 기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시된 표 등은 수정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당초 제시된 표

등에서 요구하고 있는 공시내용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 ③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인 자료와 사실 또는 합리적 추론과 분석에 근거하여 기재하되, 투자자 등 이용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이를 유도할 우려가 있는 표현, 예측·추정·전망·계획 등에 대한 단정적 주장, 추상적이거나 애매모호한 표현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 ④ 공시항목에 기재할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공시서류 작성시 항목 자체를 삭제한다.
- 제1-1-4조(공시범위) ① 공시서류에는 투자자 등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을 모두 기재하되, 특히 공시의무자에 대한 불리한 사항이나 불리한 결과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 등의 기재를 생략하거나 누락시켜서는 안 된다.
  - ② 이 기준에서 명시적으로 기재를 요구하지 않더라도 투자자 등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된 항목에기재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중요한 정보"란 합리적인 투자자의 투자판단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을 갖는 정보로서 해당 회사나 공시의무자 또는 증권에 관련된 정보를 말한다.
  - ④ 특정사실 또는 사항의 중요성 여부는 이 기준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한 그 사실이 투자자 등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한국 공인회계사회에서 제정한 회계감사기준 320(감사의 중요성 원칙)을 참작하여 판단할 수 있다.
- 제1-1-5조(작성기준일 이후 중요 변동사항 등) 공시서류작성기준일 이후부터 공시서류제출일 사이에 발생한 사건이나 변화된 상황 등으로 인해 공시서류 작성기준일 현재의 공시서류 기재내용이 제출일 현재의 회사의 자산, 부채, 손 익 또는 그 전망이나 관련 증권의 권리 내용 또는 가치에 관하여 중대한 오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사건 등과 이로 인한 기재내용상의 변동 내용 또는 회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공시서류에 별도로 기재한다.

제1-1-6조(정정신고서 작성의 일반원칙) ① 법 제122조, 제136조, 제151조제2항, 제156조 및 제164조에 따라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정정대상 공시서류, 정 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정정사항 등을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하며, 부 가적인 설명이나 그 밖의 정보는 별도로 기술한다.

# 정 정 신 고 (보고)

XXXX년 XX월 XX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요구·명령 관련 여부	정정사유	정정 전	정정 후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 【 작성지침 】

- i. 정정사유는 투자자가 각 정정항목별 정정사유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정정사유 예시]
- ·타법인 A사 주식 취득 관련 정정요구에 따른 평가내용 보완 기재
- ·단기차입금 관련 정정요구에 따른 차입내용 및 향후 대책 등 신규 기재
- •분기보고서 제출에 따른 재무관련사항 기재 변경 및 증자 일정 변경
- ii. 정정후 기재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각주나 첨부 형태로 기재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투자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대비표에 정정내용을 요약하여 기재한다.
- iii. 해당 정정항목에 정정요구 또는 정정명령에 의한 정정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정요구 관련 여부에 '예'로 표시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아니오'로 표시한다.
- ② 정정신고서의 정정된 사항은 글자크기 13pt 이상의 굵은 글씨체나 밑줄을 이용하여 기재하되, 정정요구에 따른 정정신고서의 경우에는 정정회차별로 글자색을 차별화(1차:파란색→2차:녹색→3차이상:빨간색)하여 정정기재된 사항을 투자자가 알기 쉽게 구분표시하여야 한다. 특히, 단락내용 중 특정단어, 수치 등 일부만이 수정되는 경우는 반드시 특정 부분 단위로 구분표시하여야 한다.
- ③ 법 제122조에 따라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증권신고서 표지에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제출 및 정정연혁을 추가 기재하고, 그 제출일, 대표이사 및 신고담당이사, '대표이사 등 확인서' 등을 제출일 현재로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 작성지침 】

- 1. 정정대상 증권신고서 표지의 '증권신고서의 제출 및 정정연혁'항목에는 제출일자(또는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받은 일자)와 함께 문서명(실제 Dart시스템에 등록되어 공시되는 문서제목)을 기재하고, 비고란에는 정정요구 또는 자진정정 여부, 정정요구 차수 등을 표시한다.
- II. [기재정정]증권신고서 뿐만 아니라 [첨부정정]증권신고서의 제출내역도 포함하여 기재한다.

### (작성예시)

# 증 권 신 고 서 (지분증권)

#### [증권신고서 제출 및 정정 연혁]

제출일자	문서명	비고
2011-05-27	증권신고서(주식)	최초 제출일
2011-05-31	[첨부정정]증권신고서(주식)	자진정정
2011-06-03	금감원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	1차
2011-06-14	[기재정정]정정신고서(주식)	정정요구(파란색)
2011-06-20	금감원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	2차
2011-06-30	[기재정정]정정신고서(주식)	정정요구(녹색)

금융위원회 귀중

2011년 6월 14일

대 표 이 사 :

본점소재지:

- 제1-1-7조(그 밖의 유의사항) ① 공시서류는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수한 용어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자나 영어를 사용하거나 그 밖의 외국어를 괄호 안에 추가하여 기재할 수 있다.
  - ② 자산총액, 매출액 또는 매출수량 등 회사의 규모를 고려하여 투자자 등 이용자에게 오해를 줄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천단위 또는 백만단위미만은 그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증권신고서의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금액단위는 원, 천원, 백만원 등으로 하되, 재무정보의 상단 우측에 단위를 기재하고, 금액이 음(-)의 금액인 경우에는 -, △ 등으로 표시하고, 하단에 동기호가 음(-)의 금액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기재한다.

- ④ 금액, 수치 등 기재내용을 사업연도(또는 반기, 분기)별로 비교·표시하는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또는 반기, 분기)부터 좌측에 기재한다.
- ⑤ 공시서류에 원화 이외의 화폐를 기준으로 금액을 표시한 경우 공시대상기 간 중 그 화폐와 원화간의 환율변동추이(각 기말기준의 환율, 기중 평균환율 및 최고·최저 환율,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의 환율 등)를 기재한다.
- ⑥ 회계처리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재무수치 또는 지표를 이용하는 경우, 그 재무수치 또는 지표의 산출 근거를 기재한다.
- ⑦ 주식의 종류는 이익배당보통주식·이익배당우선주식·의결권 주식·의결권 배제 주식·의결권 제한주식·전환주식·상환주식 등 「상법」제344조부터 제346조까지 의 규정에서 해당 주식을 지칭하는 명칭을 기재하되, 이익배당과 의결권에 관한 내용을 동시에 결합한 주식 등과 같이 그러한 명칭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명칭 등 해당 주식의 성격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해 당 주식이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인 경우에는 종목번호를 병기)하고 이에 대한 설명을 기재한다.
- ⑧ 증권의 모집·매출시 50인은 자연인 및 법인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므로, 법인격이 없는 조합·컨소시엄 등은 그 구성원 각각을 1인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공시의무자는 조합 등을 대상으로 관련 규약, 구성원 명부 등을 요구하여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⑨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회사는 공시서류 작성시 주식의 내용, 주식 보유자 현황, 의결권 현황 등을 기재한다. 또한 복수의결권주식 보유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을 대상으로 증권을 발행한 회사는 주요사항보고서에 발행 대상이 복수의결권주식 보유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임을 추가로 기재하고, 복수의결권주식 발행회사의 증권 등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요사항보고서에 거래상대방이 복수의결권주식 보유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임을 추가로 기재한다.

### 제2절 공시서류 기재내용의 확인

- 제1-2-1조(대표이사 등의 확인) 공시서류를 제출하려는 회사의 대표이사(집행임원을 두는 회사의 경우 대표집행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신고·제출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담당하는 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법 제119조제5항 또는 제159조제7항, 제160조, 제16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 검토하고 각각 서명하여야 한다.
  - 1. 증권신고서나 사업보고서, 주요사항보고서 등의 기재내용에 대해 적절한 주의를 다하여 직접 확인·검토하였다는 사실
  - 2. 증권신고서나 사업보고서, 주요사항보고서 등의 기재내용에 대하여 확인· 검토한 결과, 기재사항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 거나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
  - 3. 외부감사법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대상 법인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

#### 【 작성지침 】

대표이사 및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이사가 확인·검토 및 서명을 함에 있어 공동대표이사 등에 따라 대표이사 또는 그 이사가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함에 제한이 있는 때에는 관련 된 대표이사 또는 이사들이 연명으로 서명한다.

- 제1-2-2조(전문가의 확인) ① 공시서류의 기재내용에 전문가의 사실 확인, 주장, 의견 등을 해당 전문가의 이름을 명기하여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전문 가로부터 이러한 사실에 대한 서면동의를 받았음을 기재하고,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서류로 제출한다.
  - ② 이미 제출한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주요사항보고서에 제1항의 내용을 기재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한 경우에는 그 부분을 적시하여 이를 참조하라는 뜻을 기재하고 기재 및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 ③ 규정 제2-6조제8항제1호하목에 따른 회계감사인의 확인서 등 서류는 <별지 제1-2호>에 따라 작성하여 첨부한다.

#### 【작성 지침】

i. 전문가의 동의는 공시서류에 인용된 내용이 전문가 자신이 행한 사실확인, 주장 또는 의견과 다르지 않고 인용된 전후 문맥하에서 그 내용이 원래의 진술 내용에 관한 오해

- 를 유발하고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한 동의를 의미한다.
- ii. 증빙자료에는 공시서류에서 인용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 제1-2-3조(전문가와의 이해관계) 제1-2-2조에 따라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 해당 전문가의 사실 확인, 주장, 의견 등을 제공받기 위한 계약 외에 공시대상기간 중 공시의무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와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금액 등 계약 또는 관계의 구체적 내용을 기술한다. 다만, 그 규모가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기재를 생략한다.
  - 1. 계약 또는 금전적 이해관계
  - 2. 그 밖에 전문가의 의사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일반적으로 여겨지는 관계

#### 【작성 지침】

- i. 계약 또는 금전적 이해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라 함은 회사와 전문가 사이에 존재하는 채권·채무관계, 용역계약 등이 체결된 사실이 있거나 계속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 ii. 그 밖에 전문가의 의사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일반적으로 여겨지는 관계라 함은 전문가가 회사 또는 최대주주, 임원 등과 인적관계(고용관계, 친인척 관계 등)가 있거나, 해당 증권 공모의 성사여부 또는 증권의 가격수준에 따라 전문가가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할 예정인 증권의 가격이 변동 되는 등 중대한 재산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등을 말한다.
- 제1-2-4조(발행인요건의 확인) 법 제119조제2항에 따라 시행령 제121조제1항제1 호부터 제3호까지의 증권 발행을 위하여 일괄신고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시행령 제121조제4항 또는 같은 조 제6항 각 호에서 정한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기재하여야 한다.



# 제2장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제1절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제2-1-1조(공모개요) ① 지분증권의 경우 모집 또는 매출의 대상이 되는 지분증권의 종류, 수량, 단위당 액면가액, 단위당 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청약기일, 납입기일, 대표주관회사가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명, 공모후 증권의 상장여부, 일반청약자에 대한 환매청구권 부여여부 등을 간략하게 기재한다.

#### 【 작성지침 】

i. 지분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아래에 제시된 표를 참조하여 기재할 수 있으며, 효과적인 정보제공을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표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액면가액(액면금액)'을 기재할 때 무액면주식의 경우 자본으로 계상되는 금액 중 1주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재할 수 있다(이하 같다).

종 류	수량	단위당 액면가액	단위당 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 ii. 지분증권의 종류는 이익배당보통주식·이익배당우선주식·의결권 주식·의결권 배제주식·의 결권 제한주식·전환주식·상환주식 등 「상법」제344조부터 제346조까지의 규정에서 해 당 주식을 지칭하는 명칭을 기재하되, 이익배당과 의결권에 관한 내용을 동시에 결합 한 주식 등과 같이 그러한 명칭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명칭 등 해당 주식의 성격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해당 주식이 거래소에 상장된 주 식인 경우에는 종목번호를 병기)하고 이에 대한 설명을 기재한다.
- iii. 수량은 모집(매출)대상별 모집(매출)증권수량을 기재하되 인수인과 초과배정옵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인수인이 모집(매출)주식수량을 초과하여 청약자에 배정하는 증권수량도 추가로 기재한다.
- iv. 모집(매출)가액 및 모집(매출)총액은 청약 대상자를 상대방으로 한 발행(매도)가액을 기준으로 기재한다. 모집(매출)가액 또는 모집(매출)총액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로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산식표시방법에 의해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또는 입찰 등의 방법으로 모집(매출)가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모집(매출)예정가액 및 모집(매출)예정총액을 기재하되, 결정예정시기, 결정방법, 모집(매출)가액 확정시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것이라는 사실 등을 별도로 기재한다.

- v.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의 경우 권리행사로 취득할 증권의 명칭, 행사가격, 행사기간을 기재한다. 이에 관한 상세한 내용이 공시서류의 다른 부분에 기재되어 있는 때에는 해당 부분을 명시·참조하게 한다.
- vi. 공모후 증권이 국내외 거래소에 상장되는지를 기재한다. 이 경우 거래소 상장이 확정되었거나, 상장될 것이라는 합리적 근거가 없는 한, 상장가능성에 대해 단정적으로 표현해서는 아니된다.
- vii. 일반청약자에 대한 환매청구권 부여여부는 한국거래소의 상장규정 또는 금융투자협회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반청약자가 공모주식을 공모가격의 90%이상의 가격으로 인수인에게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의 부여여부, 행사가능기간 등을 기재한다.
- ② 채무증권의 경우 모집 또는 매출의 대상이 되는 채무증권의 명칭, ESG채권 종류, 권면(전자등록)총액과 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이자율, 발행수익률, 청약기일, 납입기일 및 상환기일, 이자지급 방법 및 기한, 신용평가등급, 상환방법 및 기한, 대표주관회사, 등록발행여부, 원리금지급대행기관, (사채)관리회사의 유무, 공모후 증권의 상장여부 등을 기재하고, 지분증권관련 채무증권(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이익참가부사채 등)의 경우에는 권리의 개요 등을 간략히 기재한다.

#### 【 작성지침 】

i. 채무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아래에 제시된 표를 참조하여 기재 할 수 있으며, 효과적인 정보제공을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표를 이용할 수 있다.

항 목	내 용
 명 칭	
권면(전자등록)총액	
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이자율(발행수익률)	
청약기일	
납입기일	
상환기일	
이자지급방법 및 기한	
ESG채권 종류	

ii. 채무증권의 명칭은 기명·무기명여부, 보증·담보부여부, 확정·변동금리여부, 채무증권에 부여된 특수한 권리(전환권, 신주인수권, 교환권 등), 조건(조건부자본증권의 전환·

상각의 조건 등) 및 채권의 순위(선순위·후순위) 등에 대한 정보를 압축적으로 나타내는 명칭을 기재하되, 동일 종류의 증권을 연속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연속발행하는 기간과 회차를 '제××회(200×~200×) 기명식 이권부 무보증후순위전환사채'등의 방법으로 기재한다. 해당 증권의 성격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용어가 존재하지 않거나 사회적으로 일반화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증권의 성격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고 이에 관한 설명을 기재한다.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받기 위해 발행되는 채무증권의 경우에는 신종자본증권 등 자본인정을 전제로 하는 용어를 사용하거나 자본인정을 전제로 하는 설명을 포함하기 위해서는 자본인정에 관한 회계법인 등 전문가의 검토의견이 제1-2-2조에 따라 기재되어야 한다.

- iii. ESG채권의 경우에는 ESG채권 종류를 '녹색채권', '사회적채권', '지속가능채권', '지속 가능연계채권'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 iv. 모집(매출)가액은 청약 대상자를 상대방으로 한 발행(매도)가액을 기준으로 '각 사채권면 (전자등록)금액의 ××%' 등의 방법으로 기재하고, 모집(매출)총액은 모집(매출)가액의 총액을 기재한다. 모집(매출)가액 및 모집(매출)총액을 확정하지 아니하고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산식표시방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또는 입찰 등의 방법으로 모집(매출)가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모집(매출)예정가액 및 모집(매출)예정총액을 기재하되, 결정예정시기, 결정방법, 모집(매출)가액 및 모집(매출)총액 확정시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것이라는 사실 등을 별도로 기재한다.
- v. 이자율이 있는 경우에는 권면(전자등록)액에 대한 이율을 연간으로 환산하여 '연리 ××%'의 방법으로 기재하고, 변동이자율 또는 만기보장수익률 등 이자율에 관하여 특수한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추가로 기재한다.
  - 가. 이자율을 확정하지 아니하고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나 산식표시방법에 의하여 신고 서를 제출하는 경우 또는 입찰 등의 방법으로 이자율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예정이자 율을 기재하되, 그 결정예정시기, 결정방법, 이자율 확정시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것 이라는 사실 등을 별도로 기재한다.
  - 나. 이자율이 회사의 영업실적 등 발행조건에 따라 일정범위로 표시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재하고, 평균이자율 등을 참고사항으로 기재한다.
  - 다. 한국거래소의 「ESG채권 정보플랫폼 운영지침」등에 따른 지속가능연계채권 등을 발행하는 경우 미리 설정한 조건(예:스텝업 방식, 스텝다운 방식, 프리미엄 지급 방식, 기부 방식 등)에 따라 이자율이 변동하는 경우 조건 달성 여부에 따른 이자율 변동 내용 및 추가 지급예상 금액(원화)을 함께 기재한다.
- vi. 이자지급방법은 이자의 계산기간, 지급일, 지급방법 및 연체이자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 vii. 신용평가등급은 채무증권의 공모와 관련하여 신용평가를 받는 경우 기재하며, 평가회 사명, 평가일, 평가등급을 기재하되, 신용평가계약을 해지(평가계약의 해제, 철회, 취소 를 포함한다)한 사실이 있는 경우 동 평가회사명, 평가계약일, 해지일과 그 사유도 기 재한다.
  - viii. 상환방법 및 기한은 채무증권 원금의 상환에 대하여 기재한다. 상환시기 등이 일정한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 등 상환시기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기한이나 조건의 내용과 증권보유자가 이를 알 수 있는 방법을 기재하되, 이에 관한 상세한 내용이 공시서류의 다른 부분에 기재되어 있는 때에는 해당 부분을 명시·참조하게 한다.
  - ix.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해 모집(매출)대상 채무증권을 등록기관에 등록하는 경우 그 사실과 등록기관명을 기재한다.
  - x. 채무증권의 원리금 지급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행기관명과 대행기관으로부터 원리 금 수령이 제한되는 경우 그 내용 및 기간을 기재한다.
  - xi. 회사가 채무증권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사채)관리회사를 기재한다.
  - xii. 공모후 증권이 국내외 거래소에 상장되는지를 기재한다. 이 경우 거래소 상장이 확정되었거나, 상장될 것이라는 합리적 근거가 없는 한, 상장가능성에 대해 단정적으로 표현해서는 아니된다.
  - xiii. 증권에 조기·중도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put option, call option 등)가 부여되어 있는 경우 그 권리의 내용 및 조건, 행사기간을 간략히 기재하되, 이에 관한 상세한 내용이 공시서류의 다른 부분에 기재되어 있는 때에는 해당 부분을 명시·참조하게 한다.
  - xiv.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증권에 대하여 보증을 받은 경우에는 보증기관, 보증금액(채무 증권 대비 보증비율을 같이 기재한다), 보증기간 등을 기재하고, 이에 관한 상세한 내 용이 공시서류의 다른 부분에 기재되어 있는 때에는 해당 부분을 명시·참조하게 한다. 아래에 제시된 표를 참조하여 기재할 수 있으며, 효과적인 정보제공을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표를 이용할 수 있다.

항 목	내 용
보증기관	
보증금액(보증비율)	
보증기간	

xv. 채무증권과 관련하여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담보의 종류, 담보목적물, 담보대상 및 금

액, 선순위 담보채무증권의 순위별 내용 및 금액 등을 기재하고, 이에 관한 상세한 내용이 공시서류의 다른 부분에 기재되어 있는 때에는 해당 부분을 명시·참조하게 한다. 아래에 제시된 표를 참조하여 기재할 수 있으며, 효과적인 정보제공을 위하여 다양한형태의 표를 이용할 수 있다.

항 목	내 용
담보의 종류	
담보의 대상 및 금액	
선순위담보채무증권의 순위별 내용 및 금액	

xvi. 지분증권과 관련된 채무증권의 경우 권리행사 등으로 발행하거나 교환·상환 등을 하게 되는 지분증권의 내용, 권리행사비율, 권리행사가액, 권리청구기간을 기재한다. 이에 관한 상세한 내용이 공시서류의 다른 부분에 기재되어 있는 때에는 해당 부분을 명시·참조하게 한다. 아래에 제시된 표를 참조하여 기재할 수 있으며, 효과적인 정보제공을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표를 이용할 수 있다.

항 목	내 용
권리행사로 인해 발행·교환·상환 등이 되는 지분증권의 종류 및 내용	
권리행사(전환)비율	
권리행사가액	
권리청구기간	

xvii. 파생결합사채의 경우 이자지급방법 및 기한에 대하여 제16-2-1조제1항의 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아래의 표로 작성하고, 그 외의 사항은 도해 등을 활용하여 서술식으로 기재한다.

항 목	<u>내 용</u>
기초자산의 종류	
1증권당 발행가액	
발행수량	
옵션종류	
지급일	
만기시·권리행사시 결제방법	

③ 투자계약증권의 경우 모집 또는 매출의 대상이 되는 투자계약증권의 명칭 및 권리내용, 수량, 단위당 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청약기일, 납입기일, 대표주관회사가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명, 공모후 증권의 상장여부 등을

#### 기재한다.

#### 【 작성지침 】

i. 투자계약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아래에 제시된 표를 참조하여 기재할 수 있으며, 효과적인 정보제공을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표를 이용할 수 있다.

증권명칭	권리내용	수량	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0000				
투자계약증권				
$\triangle \triangle \triangle \triangle$				
투자계약증권				

- ii. 증권 명칭은 해당 투자계약증권의 성격(기초자산명, 패키지 발행여부 등)을 잘 나타낼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고 이에 대한 설명을 기재한다. 권리내용은 계약이 표창하는 공동 사업의 내용과 의결권, 수익분배권, 장부·서류 열람권 등을 간략히 기재하되, 이에 관한 상세한 내용이 공시서류의 다른 부분에 기재되어 있는 때에는 해당 부분을 명시·참조하게 한다.
- iii. 제1항 및 제2항의 기재사항 중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준용하여 기재한다.
- ④ 증권예탁증권의 경우 모집 또는 매출의 대상이 되는 증권예탁증권의 종류, 수량, 단위당 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청약기일, 납입기일, 예탁기관의 명칭, 예탁된 증권에 관한 사항, 대표주관회사가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명, 공모후 증권의 상장여부 등을 기재한다.

#### 【 작성지침 】

i. 증권예탁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아래에 제시된 표를 참조하여 기재할 수 있으며, 효과적인 정보제공을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표를 이용할 수 있다.

종 류	수량	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 ii. 예탁된 증권에 대해 간략히 서술하되, 아래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기 재한다. 이에 관한 상세한 내용이 공시서류의 다른 부분에 기재되어 있는 때에는 해당 부분을 명시·참조하게 한다.
  - 가. 예탁된 증권명 : 해당 발행지국에서 사용되는 증권의 공식명칭
  - 나. 한단위의 증권예탁증권에 표창된 예탁된 증권의 규모
- iii. 제1항 및 제2항의 기재사항 중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준용하여 기재한다.

제2-1-2조(공모방법) ① 청약대상자를 기준으로 한 공모방법과 주요내용을 기재하되, 모집설립의 경우에는 이에 준하여 기재한다.

#### 【 작성지침 】

- i. 공모방법은 일반공모, 주주배정, 주주우선공모, 제3자배정 등으로 구분하며, 청약대상 자 유형별로 공모대상 증권수나 배정기준이 다른 경우 그 내용을 기재한다. 공모증권수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과 확정예정시기 및 그 밖의 구체적 내용을 별도로 기재한다.
- ii. 주주배정 또는 주주우선공모의 경우에는 주당 배정비율 및 배정기준일(주주확정일)을 기재한다. 배정비율이 달라질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재한다.
- iii. 제3자배정의 경우 제3자배정의 근거규정, 제3자배정 대상자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한다.
  - 가. 제3자배정 발행의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발행한도, 발행을 통해 달성하려는 구체적 인 목적 등을 기재하고. 이번 발행이 동 규정에 부합하는지를 기재한다.
  - 나. 제3자배정 대상자에 관한 사항은 대상자의 이름,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특수관계 여부 및 3자배정 대상자를 선정한 사유를 기재하며, 제3자배정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후 6개월 동안의 회사와 배정대상 제3자간의 거래내용 및 향후 계획(제품의 매출·매입, 자산의 매수·매도, 담보제공 등 제반거래를 포함한다)을 기재한다.
    - 제3자배정 대상자가 펀드 또는 투자조합인 경우에는 설립(설정)일, 법적 형태, 대표 자, 운용주체, 운용규모 등을 추가하여 기재한다(해외펀드의 경우 외국인투자자 등록 일, 국적 등을 포함한다).
    - 회사와 제3자배정 대상자간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기재한다.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을 기재한다.
  - 다. 제3자배정 대상자별 배정증권수 및 배정총액을 기재한다.
- iv. 제3자배정외에 공모대상자를 한정하거나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모집(매출)하는 경우 그 내용 및 사유를 기재한다.
- v. 실권주(청약미달 잔여증권을 포함한다) 발생시 처리방법을 기재한다.
- ② 매출의 경우에는 매출대상증권 보유자를 명시하고 회사와의 관계, 매출전 동종 증권 보유수량, 매출증권의 수량, 매출 이후 동 증권 보유자가 보유할 동종 증권의 수량 및 동종 증권의 전체 발행수량 대비 매출 이후 동 증권 보유자가 보유할 동종 증권의 수량의 비율과 매출후 잔량이 발생한 경우의 처리방법 등을 기재한다.

#### 【 작성지침 】

매출에 관한 기본 정보는 아래에 제시된 표를 참조하여 기재할 수 있으며, 효과적인 정보제 공을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표를 이용할 수 있다.

보유자	회사와의 관계	매출전 보유증권수	매출증권수	매출후 보유증권수(비율)
				( %)
				( %)

제2-1-3조(공모가격 결정) ① 공모가격 결정방법은 수요예측에 의한 방법, 경매에 의한 방법, 회사와 인수인의 협의에 의한 확정가 지정방법, 일정한 산식에 의해 산정되는 방법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하며, 채택한 방법의 내용 및 공모가격 결정절차를 간략히 기재한다.

#### 【 작성지침 】

- i. 공모가격이 결정되는 과정을 간략하게 서술하고, 가격결정에 관련된 자와 관여방식 등을 기재한다. 확정가 지정방법을 채택한 경우에는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한수요예측 또는 경매절차 미실시로 일반투자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기관투자자의 수요현황 등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시한다.
- ii. 공모증권이 주로 거래되는 공개적인 증권시장이 없는 경우 또는 증권시장이 있더라도 합리적인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회사가 채택한 결정방법에 따라 제시하는 공모가격(예: 수요예측방법 채택시 희망 공모가격, 경매방법 채택시 최저 낙찰가격,확정가 지정방법 채택시 확정가격 등)의 산정근거,해당가격 산정시 고려한 요소와 이로 인한 영향 등을 기재한다. 무보증사채 발행을 위해 수요예측방법을 채택한 경우에는 금융투자협회의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에 따라 설정한 희망금리구간을 제시하고,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희망금리구간설정을 위해 고려한 민간채권평가사의 평가금리,최근 동일 신용등급 회사채의 평가금리,동일 업종 회사채의 발행금리·평가금리 동향 및 동 금리를 희망금리구간설정에 반영한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다만,발행회사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희망금리구간의 최고금리를 민간채권평가사의 평가금리보다낮게 설정하거나 희망금리구간을 20bp 미만으로 제시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합리적인 이유와 논거를 상세히 기술한다.
- iii. 일반청약자에게 환매청구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ii의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일반청약자에게 환매청구권을 부여하기 때문에 공모가격의 산정근거 등을 기재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하며, 발행회사 또는 인수인 등이 IR 등을 통해 공모가격 산정관련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수준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에 관한 상세한 내용이 공시서류의 다른 부분에 기재되어 있는 때에는 해당 부분을 명시·참조하게 한다.

iv. 회사가 기재한 희망 공모가격이 최종 공모가격 결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최종 공모가액을 희망 공모가액의 범위내로 결정하거나, 수요예측을 하는 경우 그 제시가액이 희망 공모가의 일정 범위내에 있을 때에만 접수하는 등 구체적인 영향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재한다. 또한, 공모가격 결정방법의 최상단에는 아래 안내문구를 기재한다.

본 장은 공모가격 결정방법의 개요 및 절차를 안내하는 장으로, **구체적인 (희망)공모가 산정 방식**에 대한 **정보**는 'IV.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v. 공모가격 결정을 위해 수요예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모가격 결정방법·절차, 대표주관회사의 수요예측 기준·절차 및 배정방법, 금융투자협회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요예측 참여자의 주금납입능력 판단기준 및 확인방법(다만, 복수의 주관회사가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주관회사별로 구분하여 각각 기재한다) 등을 기재토록 하되, 아래에 제시된 표를 참조하여 기재할수 있다.
  - 공모가격 결정방법 및 절차

구 분	
공모가격 최종결정	
공모가격 결정 협의절차	
수요예측 결과 반영여부	

#### [예시]

- 공모가격 최종결정

(발행회사) 이사회, 대표이사, 기타(xx담당직원 등 구체적으로 기재) 등 (대표주관회사) 대표이사, 기업금융 담당이사, 기타(xx 담당직원, xx위원회 등 구체 적으로 기재) 등

- 공모가격 결정 협의절차 (발행회사) 대표주관회사가 제시한 방안 중 선택 등 (대표주관회사) 발행회사에 수요예측 결과를 제시하고 가격결정 위임 등
- 수요예측 결과 반영 여부
- : 참고자료로만 활용, 구체적인 적용산식(공모희망가의 최고·최저·평균값의 ±20~30% 범위 내 결정 등) 등

• 대표주관회사의 수요예측기준·절차 및 배정방법

구 분	주요내용
희망공모가 산정방식	
수요예측 참가신청 관련사항	
배정대상	
배정기준	
가격미제시분 및 희망공모가 범위 밖 신청분의 처리방안	

#### [에시]

- 희망공모가 산정방식 : 산정근거, 주당순이익 등
- 수요예측 참가신청 관련사항 : 수요예측 일정, 참가자격, 참여방법 등을 기재하되, 일반청약자에게 환매청구권을 부여함에 따라 주관회사가 수요예측 참여가능 기관 투자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확대되는 투자자의 범위와 그 사유를 기재한다.
- 주관회사의 주금납입능력 확인방법 : 표준방법 / 대체방법 중 택1

#### 【표준방법】

구 분	내 용
확인대상	
확인방법	

#### [예시]

- 확인대상 :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의 재산에 따라 고유재산은 자기자본, 위 탁재산은 수요예측등 참여 건(계좌)별 개별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확인
- 확인방법: 기관투자자는 '확인대상'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 합계액을 확약서에 기재하여 대표이사 또는 준법감시인의 결재를 받아 주관회사에 제출하고, 주관회사는 동 확약서 상의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기관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

#### 【대체방법】

구 분	내 용
내부규정 또는 지침의 명칭	
내부규정 또는 지침의 승인권자	
판단기준 및 확인방법	

#### [例시]

- 확인기준과 방법 : 대외적으로 공시 또는 조회되는 전체 위탁재산 규모의 일정부분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거나, 외국 법령이나 외국 금융감독기관의 인가·등록을 통해 일 정 규모 이상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재산 금액을 주금납입능력 으로 정하는 등 주금납입능력을 구체적인 금액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식을 활용
- vi. 공모가격 결정을 위해 수요예측을 실시한 경우에는 수요예측 참여 내역, 수요예측 신청가격 분포(회사채의 경우 0.01%단위 즉. 1bp 단위로 기재). 의무보유확약 신청 내역, 유효수요의 범위·판단기준·판단근거, 공모가격 결정에 반영한 구체적 내용 등을 아래에 제시된 표를 참조하여 기재한다.
  - 수요예측 참여내역

									(인기	<u>· 긴, 구)</u>
			국내 기	외국 기	관투자자					
구분	운용사(집합) <sup>1)</sup>		운용사(고유)	투자매매· 중개업자	연기금, 은행, 보험		기타 <sup>2)</sup>	거래실적 유 <sup>3)</sup>	거래실적 무	합계
	공모	사모				(고유,일임)				
건수										
수량										
 경쟁률										

- 1) 운용사(집합): 국내 자산운용사 등이 공모 또는 사모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참여한 경우(고위 험고수익투자신탁, 벤처기업투자신탁을 포함한다.)
- 2) 기타: 국내 저축은행, 부동산신탁사, 캐피탈사, 리스사 등
- 3) 거래실적 유: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한다)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기관투자자
  - 수요예측 신청가격 분포

(단위 : 건, 주)

						국۱	내 기	관투지	사						외:	국 기:	관투지	사		
구분 <sup>1)</sup>		은용사 모 모	(집합) <sup>2)</sup> 사모		운용사 (고유)		투자매매· 중개업자		연기금, 은행, 보험		투자 일임사 (고유,일임)		기타 <sup>3)</sup>		거래실적 유4)		거래실적 무		心	계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 :																				
밴드상단																				
밴드 상위 75% 초과																				
~100% 미만																				
밴드 상위 50% 초과																				
~75% 이하																				
밴드 상위 25% 초과																				
~50% 이하																				
~상위25%0타																				
밴드 중나라 미만~하위																				
25% 0남																				
밴드 하위 25% 미만																				
~50% 0상																				
밴드 하위 50% 미만																				
~75% 이상																				
밴드 하위 75% 미만	만																			

~100% 초과										
밴드하단										
:										
미제시										
합계										

- 1) 구분: 공모가격이 밴드상단(하단)을 상회(하회)하는 경우 밴드상단(하단)대비 10%단위로 구분값(예 : 밴드상단 초과~밴드상단의 110%이하)을 추가하여 기재한다.
- 2) 운용사(집합): 국내 자산운용사 등이 공모 또는 사모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참여한 경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벤처기업투자신탁을 포함한다.)
- 3) 기타: 국내 저축은행, 부동산신탁사, 캐피탈사, 리스사 등
- 4) 거래실적 유: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한다)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기관투자자
  - 의무보유확약기간별 수요예측 참여내역

(단위 : 건, 주, 원)

		국내 기관투자자															-	외국	기	관투	자자	J-											
		운동	용사	(집합	할) <sup>1)</sup>															투지	ŀ					7171			717				
							5	은용,	<b>4</b> }	투자애애·		OH·	연기금,		9	길임	<b>4</b> }	חרו2)		2)	거래			거라			II						
구분	구분 공모 사모								2)	중	개업	사	은형	ij, Ŀ	보험	(	고유	,	기타 <sup>2)</sup>			실적 유 <sup>3)</sup>			실적 무								
															일임)																		
	건	수	신청 가격	ı —	수	신청 가격	건	수	신청 가격	건	수	신청 가격	건	수	신청 가격	건	수	신청 가격	건	수	신청 가격	건	수	신청 가격	건	수	신청 가격	n	수	신청 가격			
	수	량			량	4)	수	량		수	량		수	량		수	량		수	량		수	량	4)	수	량	4)	수	량	4)			
미확약																																	
계																																	

- 1) 운용사(집합): 국내 자산운용사 등이 공모 또는 사모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참여한 경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벤처기업투자신탁을 포함한다.)
- 2) 기타: 국내 저축은행, 부동산신탁사, 캐피탈사, 리스사 등
- 3) 거래실적 유: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한다)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기관투자자
- 4) 신청가격 : 참여수량을 가중치로 한 가중평균 신청가격
  - 유효수요의 범위·판단기준·판단근거 및 최종 발행금리에의 반영 내용(무보증 사채의 경우) (현행과 같음)
- vii. 공모가격 결정을 위해 경매를 실시한 경우에는 경매 참여내역, 경매 신청가격 분포 등을 기재하되. 아래에 제시된 표를 참조하여 기재할 수 있다.
  - 경매 참여내역

(단위 : 건, 주)

구분		국내 기	관투자자	외국 기			
	운용사 (집합)	투자매매· 중개업자	연기금, 운용사(고유) 은행, 보험	기타	거래실적 유*	거래실적 무	합계
건수							
수량							

경쟁율				

- \*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한다)와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기관투자자
- 경매 신청가격 분포

(단위: 건, 주)

			=	내 기	관투자기				외국 기관투자자					
구분	운용사 (집합)		투자매매· 중개업자		연기금, 운용사(고유) 은행, 보험		기타		거래실적 유*		거래실적 무		합계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낙찰가격														
120% 초과														
낙찰가격 115% 초과														
~120% 이하														
낙찰가격 110% 초과														
~115% 이하														
낙찰가격 105% 초과														
~110% 이하														
낙찰가격 100% 초과														
~105% 이하														
낙찰가격														
낙찰가격 미만														
합계														

- \*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한다)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기관투자자
- viii. 비교가치법으로 공모주식을 평가한 경우에는 시행령 제176조의5제2항에 따른 본질가 치법에 의한 자산가치의 평가결과도 함께 기재한다.
- ix. 파생결합사채의 공모가격의 결정방법은 일정한 산식에 의한 공모가격 결정, 협의에 의한 공모가격 결정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하며 채택한 방법의 내용 및 절차와 신고 서 제출시점 기준으로 외부평가기관 또는 발행인이 산정한 파생결합증권의 공정가액 (이론가격)을 간략히 기재한다.
- x. 투자계약증권의 경우, 객관적 외부평가기관(회계법인, 감정평가법인 등)의 가치평가(발행인의 가치평가에 대한 2차 검증 포함)를 거친 후 이를 근거로 공모가격을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초자산의 특성 등에 따라 예외적으로 내부평가를 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 및 타당성\*을 상세히 기재한다.
  - \* 전문인력 등 내부 전문성 및 객관적인 근거(내부평가에 대한 외부기관 검증내역, 신뢰할 수 있는 통계적 자료 등)를 제시한다.
- xi. 투자계약증권의 경우, 동일 증권신고서 내 다수의 투자계약증권 발행이 있는 경우("합산발행") 개별 투자계약증권별로 공모가격 관련 내용을 기재하며, 투자계약증권이 복수의 기초자산의 패키지로 구성되는 경우("패키지 발행") 해당 투자계약증권의 공모가격이 결정되는 과정을 상세히 기재한다. 또한 투자계약증권 발행 이후 가치평가 변동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또는 공시수단을 기재한다.

- ② 지분증권과 관련된 채무증권의 경우 전환권·신주인수권 등의 적정가치 및 산정근거를 기재하고, 이자율 결정시 반영한 내용을 설명한다.
- ③ 기업인수목적회사의 경우 주권의 최초 모집 전에 발행된 주권의 발행일자, 발행된 주권의 종류, 발행주권수, 주당 액면가액, 주당 발행가격, 총 발행금액을 기재한다.

#### 【작성 지침】

다음의 표를 참고하여 작성할 수 있다.

(단위 : 주, 원)

발 행 일 자	주권의 종류	발행주권수	주 당 액면가액	주당 발행가격	총 발행금액

제2-1-4조(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 모집 또는 매출관련 공고일자와 공고방법, 청약방법, 공매도 거래자의 모집 또는 매출 참여 금지, 배정방법, 투자설명서 교부방법, 납입 및 청약증거금의 대체·반환, 증권의 교부, 신주인수권증서 및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을 기재한다.

#### 【 작성지침 】

- i. 공고일자와 공고방법은 모집 또는 매출에 대한 공고일자와 구체적 공고방법을 다음 사항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 가. 배정기준일(주주확정일) 또는 증권 발행 공고
  - 나. 모집 또는 매출가액 확정 공고
  - 다. 청약안내 공고
  - 라. 청약결과 배정 공고
- ii. 청약방법은 청약방식 및 절차, 청약장소, 청약기일, 청약단위, 청약한도, 청약증거금, 청약시 유의사항 등을 기재하며, 청약자 유형별로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이를 구분하여 기재한다.
- iii. 공매도 거래자의 모집 또는 매출 참여 금지는 법 제180조의4 및 제429조의3제2항, 시행령 제208조의4 등에 따라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 가. 법령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공매도를 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한 자는 모집 또는 매출에 따른 주식 취득이 금지된다는 사실
  - 나.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예: 20XX년XX월XX일 ~ 20XX년XX월XX일)
    - ■「시작일」은 모집 또는 매출 계획이 처음 공시(증권신고서, 소액공모공시서류, 주요

사항보고서, 한국거래소 공시(공정공시 포함) 등이 공시된 날 중 가장 빠른 날)된 날 의 다음 날을 기재한다.

■「종료일」은 해당 모집 또는 매출의 공시 또는 변경공시에 따른 모집 또는 매출가액 이 결정되는 날을 기재한다.

#### (종료일 예시)

구분	종료일				
제3자배정(모집·매출에 해당할 경우)					
일반공모(주주우선공모 포함)	   청약일전 제3거래일				
주주배정((구)유가증권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	성확할선 제3기대할				
정 제57조를 준용할 경우)					
액면가액 미만 발행	주총소집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				

- 다. 모집·매출가액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하지 않는 경우로서 시행령 제208조의4제2 항에 해당할 경우 예외적으로 주식 취득이 허용된다는 사실
- 라. 법 제180조의4를 위반할 경우 법 제429조의3제2항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

#### (작성예시)

자본시장법 제18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의4제1항에 따라 20XX년XX월XX 일부터 20XX년XX월XX일까지 공매도를 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한 자는 금번 모집 (매출)에 청약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할 경우 같은 법 제429조의3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집(매출)가액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하지 않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의4제2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6-34조에 해당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주식 취득이 허용됩니다.

- ※ 예외적으로 모집(매출)에 따른 주식 취득이 허용되는 경우
- ① 모집(매출)에 따른 주식 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중에 전체 공매도 주문수 량보다 많은 수량의 주식을 가격경쟁에 의한 거래 방식으로 매수한 경우 (매매계약 체 결일 기준으로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에 매수한 경우로 한정)
- ② 한국거래소의 증권시장업무규정 또는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에서 정한 유동성 공급 및 시장조성 목적을 위해 해당 주식을 공매도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한 경우
- ③ 동일한 법인 내에서 모집(매출)에 따른 주식 취득 참여가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중 공매도를 하지 않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하지 않은 독립거래단위\*가 모집(매출)에 따른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 \* 금융투자업규정 제6-30조 제5항에 따라 의사결정이 독립적이고 상이한 증권계좌를 사용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거래단위
- iv. 배정방법은 배정의 주요 기준과 방법을 기재하고, 청약자 유형별로 배정기준이 다른 경우(예: 수요예측 참여자에 대한 배정기준과 수요예측 비참여자에 대한 배정기준 등)에는 이를 구분하여 기재한다. 수요예측 참여자격에 제한이 있는 경우 이를 기술하고, 동일 청약자 유형에 대하여 복수의 배정기준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우선 적용기준 등을

제시하는 등 배정이 일반적으로 어떤 원칙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 v. 증권시장에 주식을 신규로 상장하기 위하여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에는 일반투자자의 청약 및 배정방법과 관련하여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 가. 금융투자협회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수회사가 정한 균등방식 유형 (예: 일괄청약방식, 분리청약방식, 다중청약방식 등)
  - 나. 균등방식 배정과 비례방식 배정을 구분하여 청약신청을 받는지 여부
  - 다. 균등방식과 비례방식을 구분하여 청약신청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청약단위·청약한 도·청약증거금, 각 방식 중 하나만 선택하여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 각 방식에 따라 배정결과가 다를 수 있다는 점 등
  - 라. 균등방식과 비례방식 각각의 배정 예정물량·배정기준, 균등방식 배정의 세부사항(청약자 전원에게 배정 여부, 추첨을 통한 배정 시 당첨 건수, 당첨 1건당 배정 주식수, 나머지 주식의 처리 방법 등) 등
- vi. 투자설명서 교부방법은 투자설명서의 교부자, 교부방법, 교부시기, 교부장소, 교부받은 사실 확인방법, 투자자가 청약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 청약상의 위험요소(청약거부 등)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며,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교부하는 경우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기재하고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는 구체적인 절차를 기재한다.
  - 가.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 수령에 동의하는 방법
  - 나.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하는 방법
  - 다. 전자문서 수신사실을 확인하는 방법
- vii. 납입 및 청약증거금의 대체·반환 등에 관한 사항은 납입기일, 납입장소, 청약증거금을 매입대금 납입으로 자동대체하는 경우 그 사실, 청약증거금에 대한 이자, 청약증거금 의 반환일자 및 방법 등을 기재한다.
- viii. 현물인도 또는 계좌입고 등 증권의 교부방법 및 교부예정일과 교부일 이전의 증권 양도에 관하여 특수한 정함이 있는 경우 이를 기재하고, 증권의 교부 전에도 거래소 등의 시장에서 매매거래가 가능한 경우에는 거래방법과 거래개시 가능일자 등을 명시한다.
- ix. 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 근거, 신주인수권증서에 의한 권리행사가능기간, 권리행사방법, 동 증서의 매매방법(거래소 상장여부, 매매를 중개하는 회사명 등)을 기재하고, 주권상 장법인의 주주배정 신주발행시에는 신주인수권증서를 반드시 발행하고 유통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제2-1-5조(인수 등) ① 인수인을 통해 증권을 공모하는 경우 인수인, 인수방법, 인수증권의 수량 및 금액, 인수대가 등을 기재한다. 인수인별로 인수방법 등이 다른 경우에는 인수인별로 그 내용을 기재하고, 회사와 중요한 이해관계가 있는 인수인에 대해서는 관계를 별도로 기재한다.

#### 【 작성지침 】

- i. 인수인이 복수인 경우에는 주된 인수인을 명시하고, 인수단이 구성된 경우에는 대표 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를 기재한다.
- ii. 인수대가는 인수의 대가로 지급하는 모든 보상이 포함되며, 각각의 유형별(예 : 인수수료, 인수차익, 발행회사로부터 부여받는 신주인수권, 그 밖에 인수인에게 제공하는 재산적 이익 등)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또한 기업인수목적회사의 경우에는 인수수수료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지급시기, 지급조건 등 관련 내용을 추가하여 기재한다.
  - 인수인이 발행회사로부터 신주인수권을 인수대가로 지급받는 경우 신주인수권 부여사 유, 부여수량, 행사가능기간, 행사가격, 신주인수권 부여로 취득가능한 주식의 수 등을 기재한다.
- iii. 인수증권수량 또는 인수대가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와 결정예정시기 등을 기재한다.
- iv. 인수인과 회사간 중요한 이해관계는 회사의 대주주(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가 인수인과 중요한 특별관계를 갖는 경우 또는 인수인 및 인수인의 계열회사가 공모증권에 대한 사전투자 등으로 공모의 조건이나 성사에 중대한 재산적 이해관계를 갖는 경우를 말하며, 인수인과 회사, 발기인, 대주주(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와의 중요한이해관계를 충분히 나타낼 수 있도록 상세한 내용을 기재한다.
- v. 회사와 인수인간 특약사항(일정기간 증자제한 등)이 있는 경우 해당내용을 기재한다.
- vi. 실권주에 대해 대기매수계약(Standby Purchase Agreement)이 체결된 경우에는 각 금융회사별로 매수예정금액, 관련 수수료, 기타 주요 계약내용 등을 기재한다.
- vii. 기업공개의 경우, 인수수수료 및 대표주관수수료 등 대가에 관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조하여 작성한다.

							<u>(단위</u>	: 백만원)
구분	대가 수령자	금액	금액 산정 내역	대가 수령 시기	대가 관련 계약 내용	대가 관련 계약내용 변경 이력	대가 관련 계약 내용 변경 사유	비고
인수수수료								
(성과수수료 제외)								
(대표)주관수수료								
성과수수료								
기타								

- 대가 관련 계약 내용(대표주관수수료의 경우 계약이 해제·해지되는 경우 주관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은 계약 체결 시점, 계약서 이름, 계약서 조문 내용 등을 기재한다.
- 대가 관련 계약 내용 변경 이력은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경우 과거 계약 변경 내용(수 차례 변경이 있는 경우 각각의 변경 내용을 모두 포함한다)을 기재한다.
- 대가 관련 계약 내용 변경 사유는 변경 이력별로 변경된 사유를 기재한다.
  - ② 인수인과 초과배정옵션계약 등 특수한 인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체결 사실을 명시하고, 인수인이 추가로 배정할 수 있는 증권의 수량 등 계약의 주요내용을 기재한다.

#### 【 작성지침 】

- i. 초과배정옵션의 대상수량, 옵션계약의 행사가능기간 및 행사가격을 기재하고 초과배정한 물량에 대하여 상장후 공모가격 이하로 매입할 수 있다는 내용을 기술한다.
- ii. 초과배정옵션의 행사에 의해 발행하는 증권에 대하여 인수인이 별도의 인수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원래의 공모증권 인수수수료와 구분하여 기재한다.
- ③ 일반청약자에게 환매청구권 부여시 부여사유, 부여대상 투자자, 부여수량, 권리행사기간, 행사가격, 행사가격 조정가능여부, 행사방법, 대금지급 일정 및 방법 등과 환매청구권 행사로 인수인이 취득하게 되는 증권의 처분일정, 처분방법 등 처분계획을 기재한다. 주가지수 하락 등으로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조정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조정행사가격의 공지·안내 등의 절차를 함께 기재한다.
- ④ 투자권유대행인을 통해 투자권유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재한다. 이와 관련하여 회사가 직접적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그 내용을 포함한다.

- ⑤ 인수인이 아닌 자로부터 증권의 공모와 관련된 서비스를 받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자명, 서비스내용 및 그에 따른 보수 등을 기재한다. 그러한 사실이 없는 경우 없다는 사실을 기재한다.
- ⑥ 파생결합사채의 경우 본조 및 제16-2-6조(대리인 등)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한다.

공모관련 서비스에는 인수회사 탐색·중개, 모집 또는 매출의 주선, 공모가격 또는 공모조건에 대한 컨설팅, 공모와 관련한 IR, 증권신고서 작성 등이 포함된다.

⑦ 기업공개의 경우 인수인이 회사에 대해 투자한 규모, 투자일자, 취득가능 주식수, 취득가액(전환·행사·교환가액 등)과 공모가격과의 괴리율 등 그 세부 내역을 기재한다.

- i. 인수인이 복수인 경우 인수인별로 기재하며, 주식,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증권의 종류별로 구분한다.
- ii. 전환사채의 경우 전환가액 및 전환가능주식수,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경우 행사가액 및 행사가능주식수, 교환사채의 경우 교환가액 및 교환대상 증권명 및 주식수 등을 포함하여 기재한다. 이 경우 공모가격을 기준으로 전환가액 등의 조정조건이 부여된 경우이를 추가로 기재한다.
- iii. 공모가격과의 괴리율은 '(공모가격-취득가액)/공모가격'로 산정하여 백분율로 기재한다. 취득가액(전환·행사·교환가액 등)은 수량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정하되, 취득 이후 증자, 자본감소 등 자본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가액으로 한다.

## 제2절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제2-2-1조(지분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① 주식의 경우 주식의 법상 명칭과 주요 권리내용을 기재한다. 다만, 「상법」이나 관행에 따라 해당 주식의 명칭에서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사항은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 【 작성지침 】

주식의 주요권리내용에 대한 기재시 다음 내용을 포함하되, 제시된 사항 이외에도 투자자에게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는 반드시 기재한다.

- i. 액면금액 존재여부 및 존재시 그 금액
- ii. 이익배당청구권(배당률 및 배당조건을 포함한다), 전환 또는 상환조건, 감채기금(상환기금) 등에 관한 사항, 의결권, 잔여재산청구권, 양도제한에 관한 사항
- iii. 배당금지급이나 상환과 관련하여 특정한 제한이 존재할 경우 그 내용
- iv. 주식 보유자의 권리가 변경되거나 권리행사가 제한될 수 있는 경우 변경이나 제한의 요건 및 내용
  - 특히 주식의 권리가 다른 종류의 증권보유자의 권리행사에 의해 제한되거나 변동될 수 있는 경우 관련증권에 관한 정보를 기재한다.
- v. 정관이나 관계법령에 회사의 지배권변동을 실질적으로 지연, 제한, 금지하는 조항이 있 거나 회사의 합병, 분할, 공개매수, 영업양수도, 청산 등에 관한 특별한 조항이 있는 경우 그 내용
- vi. 배당소득세 등 주식보유 관련이익에 대한 과세액 산정이나 원천징수 방식에 특별한 정 함이 있는 경우 그 내용
- ②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의 경우 제1항을 준용하되, 권리행사로 인해 취득할 증권의 내용, 권리행사기간 및 행사가격, 청구절차 등을 포함하여 기재한다.

#### 【 작성지침 】

i. 권리행사로 취득할 증권의 종류 및 수량, 권리내용(제1항의 정보를 포함한다) 등을 기 재한다.

- ii. 권리행사가능기간과 행사가격 등의 조건을 기재하고, 행사가격의 조정이나 변경에 관한 내용이 있는 경우 이를 구체적으로 서술한다.
- iii. 청구절차는 권리를 행사할 장소 및 발행될 증권의 교부방법 등을 기재한다.
  - ③ 그 밖의 지분증권의 경우 제1항을 준용하되 해당 지분증권의 특성상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추가로 기재한다.
- 제2-2-2조(채무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① 사채의 경우 사채의 법상 명칭, 주요 권리내용, 발행과 관련한 약정 및 조건 등을 기재한다. 다만, 「상법」이나 관행에 따라 사채의 명칭에서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사항은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사채의 주요권리내용에 관한 기재시 다음 내용을 포함하되, 제시된 사항 이외에도 투자자에게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는 반드시 기재한다.

#### i. 일반적 사항

가. 사채의 만기, 이자율(연체이자율), 전환, 매입, 상각, 감채기금(상환기금) 및 상환 등에 관한 내용(아래에 제시된 표를 참조하여 기재할 수 있으며, 효과적인 정보제공을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표를 이용할 수 있다)

사채명칭	사채종류	발행가액	이자율	만기일	•••
					•••
					•••

ii.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사항

(채권보유자가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put option)를 보유하는 경우 그 권리의 조건 및 행사방법 등을 기재한다)

- ① 기한의 이익의 즉시 상실 관련
- ② 기한의 이익 상실 선언에 의한 기한의 이익 상실 관련
- ③ 기한의 이익 상실 시 발행회사 및 사채관리회사의 통지 의무 등 처리사항, 사채권자의 변 제청구권 등 권리 내용 등
- ④ 기한의 이익 상실에 대한 원인사유 불발생 간주 관련
- ⑤ 기한의 이익 상실의 취소 관련
- ⑥ 기타 중요 사항
- 가.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의 내용과 행사가능기간을 기재하며, 해당 조건의

성취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의 구체적 내용을 기재한다. 특히 해당 조건이 일정 형태의 사건발생과 연계되어 있는 경우 그 사건의 발생을 판단할 수 있는 사건의 구체적 정의(예 : 신용평가등급 하락시 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조건이 있는 경우 동신용평가등급 하락으로 여겨지는 사건의 구체적 정의)를 포함한다.

- 나. 청구권의 구체적 행사방법과 청구권 행사에 따른 원리금 상환금액의 변동여부 및 그 금액을 기재한다.
- iii. 중도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call option 등)가 회사에 부여되어 있는 경우 중도상 환권 또는 매도청구권의 조건, 통지방법 등
  - 가. 중도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의 내용과 행사가능기간을 기재하며 해당 조건의 성취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의 구체적 내용을 기재한다. 특히 해당 조건이 일정형태의 사건발생과 연계되어 있는 경우 그 사건의 발생을 판단할 수 있는 사건의 구체적 정의를 포함한다.
  - 나. 중도상환 의사 통지방법(방식, 횟수 및 시기) 및 중도상환에 따른 원리금 상환금액의 변동여부 등을 기재한다. 중도상환 의사를 통지하는 경우 채권보유자가 특정일까지 해당 채권에 부여된 권리(예 : 전환권, 신주인수권 등)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되는지 여부를 기재하고, 권리가 소멸되는 경우 이에 대한 공고방법 및 투자자의 주의의무에 대한 주의문구(굵은 활자체로 두드러지게 표시한다)를 기재한다.
- iv. 사채 보유자의 권리가 다른 채권자의 권리보다 후순위일 경우 그에 관한 내용, 선순위 채권자의 권리 잔액
- v. 발행회사의 의무 및 책임 관련
  - 가. 발행회사의 원리금 지급의무, 원리금상환을 위한 배당제한, 조달자금 사용에 관한 사항, 특정 재무비율등 유지, 담보권설정등 제한, 자산등 처분제한 등이 있을 경우 그 내용(아래에 제시된 표를 참조하여 기재할 수 있으며, 효과적인 정보제공을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표를 이용할 수 있다)

구분	원리금지급	재무비율 유 지	담 보 권 설정제한	자산매각 한 도	
내용					

- 나. 특정 준비금의 유지나 적립 및 외부예치에 관한 내용(발행기업이 이를 인출할 수 있는 경우 그 내용을 포함한다)이 있을 경우 그 내용
- 다. 선순위채권(채권의 형태가 아닌 선순위 채무약정을 포함한다)의 추가발행을 제한하는 약정의 유무여부와 그 내용, 추가차입이나 증권의 추가발행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을 경우 그 내용
- 라. 기타 사항

- vi. 사채의 조건이나 권리가 변경되거나 권리행사가 제한될 수 있는 경우 변경이나 제한의 요건 및 내용
  - 특히 사채의 권리가 다른 종류의 증권보유자의 권리행사에 의해 제한되거나 변동될 수 있는 경우 관련증권에 관한 정보를 기재한다.
  - vii. 이자소득세 등 사채보유 관련이익에 대한 과세액 산정이나 원천징수 방식에 특별한 정 함이 있는 경우 그 내용
  - viii. 보증사채의 경우 보증기관, 보증금액(채무증권 대비 보증비율을 같이 기재한다), 보증기간, 보증비용 및 보증기관의 최근 신용평가등급 등
  - ix. 담보부사채의 경우 담보의 종류, 담보의 목적물, 담보대상 및 금액, 선순위 담보채권의 순위별 내용 및 금액. 담보물의 평가내용 등
    - 가. 담보의 종류는 동산, 증서가 있는 채권, 주식, 부동산, 기타 등으로 기재하며 관련 법령에 의해 담보의 효력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나. 담보의 종류별로 그 대상이 되는 목적물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한다.
    - 다. 담보의 대상 및 금액은 '제×회 담보부사채의 원금 ××원, 이자 ××원, 합계 ××원' 등의 방법으로 기재하되 담보의 추가 또는 변경과 관련한 계약의 내용은 별도로 기재한다.
    - 라. 사채의 발행과 관련된 담보의 목적물에 선순위 담보채권이 있는 경우 순위별 담보권 자 및 설정금액 등을 기재한다.
    - 마. 담보물의 평가내용은 담보물의 공정가치와 그 산정방법을 기재하고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은 경우 평가기관명, 평가일자, 평가기준 및 결과 등을 포함한다.
    - 바. 그 밖에 담보의 목적물에 대하여 담보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사항(담보물의 처분에 제한이 있는지 여부 및 담보재산의 대체 등을 허용하는지 여부 등), 신탁업자명 및 신탁계약서의 주요내용, 담보의 종류가 채무증권 또는 지분증권인 경우에는 해당 증권 발행회사의 최근 2년간 재무현황 등을 간략히 기재한다.
  - x. 지분증권관련 사채의 경우 전환권·신주인수권·교환권·상환권 등의 내용. 청구절차 등
    - 가. 전환권·신주인수권·교환권·상환권 등의 내용은 권리행사로 발행되거나 교환·상환권 등이 되는 증권의 종류(법적 권리에 대해 중요한 정함이 있는 경우 제2-1-1조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정보 를 포함한다), 권리행사비율, 행사가능기간과 가격 등의 조건, 행사가격의 조정이나 변경에 관한 내용을 기재한다.
      - 권리행사비율은 사채(권면액)와 권리행사시 발행되거나 교환·상환 등이 될 지분증권의 비율을 '사채권면액을 행사가액으로 나눈 증권수의 ××%' 등의 방법으로 기재하며, 단수주 처리방법 등 행사비율과 관련된 특별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추가하여 기재한다.
  - 나. 청구절차는 전환 등을 청구할 장소 및 발행되거나 교환되는 증권의 교부방법 등을

기재한다.

- 다.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경우 신주의 주금납입방법과 분리형·비분리형 여부를 기재하고, 분리형일 경우 신주인수권증서의 거래방법(상장여부 등)을 기술한다.
- 라. 교환사채의 경우 교환할 증권의 예탁에 관한 사항(예탁기관, 예탁기간, 예탁증권수량 등), 제3자에게 발행회사의 자기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관련사항(그 상대방, 처분방법 등), 교환할 증권의 발행회사에 관한 사항(회사개황, 재무현황, 감사인의 감사의견, 주가에 관한 사항 등) 등을 기재한다. 교환할 증권의 발행회사에 관한 사항은 개략적으로 기재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회사의 공시서류를 참조하게할 수 있다.
- 마. 상환사채의 경우 발행관련사항(상환의 목적인 주식이나 증권의 종류·내용, 상환의 조건, 제3자에게 발행회사의 자기주식으로 상환할 수 있는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그 상대 방 및 처분방법), 상환할 증권의 예탁에 관한 사항(예탁기관, 예탁기간, 예탁증권수량 등), 상환할 증권의 발행회사에 관한 사항(회사개황, 재무현황, 감사인의 감사의견, 주가에 관한 사항 등) 등을 기재한다. 상환할 증권의 발행회사에 관한 사항은 개략적으로 기재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회사의 공시서류를 참조하게 할 수 있다.
- xi. 이익참가부사채의 경우 이익참가권의 내용, 이익배당시 지급공고에 관한 사항 등
  - 가. 이익참가권의 내용은 이익참가율, 이익참가권의 누적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기재한다.
  - 나. 이익배당시 지급공고 일시, 장소, 방법 등을 기재한다.
  - 다. 제3자에게 이익참가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그 발행할 수 있는 이익참가부사채의 가액과 이익배당참가의 가액을 추가적으로 기재한다.
- xii. 파생결합사채의 경우 원금부분에 관한 기재 외에도 이자의 지급과 관련하여 기업공시서 식 작성기준 제16-3-1조(예상손익구조), 제16-3-3조(기초자산), 제16-3-4조(파생결합증권의 권리내용), 제16-3-5조(권리내용의 변경)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한다.
- xiii. 조건부자본증권의 경우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 가.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하는 목적과 주식 등 다른 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조건부자본증 권을 발행해야 하는 이유를 기재한다.
  - 나.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경우 전환의 사유, 전환의 범위,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전환가격, 전환의 절차 및 효력 등을 기재한다.
  - 다.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경우 채무재조정의 사유, 범위 및 효력 등을 기재한다.
  - 라. 조건부자본증권이 자기자본으로 인정되는 경우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산출방법 등을 포함한 자기자본인정 구조 및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이 자기자본비율(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총자본비율 등)에 미치는 영향을 기재한다.
- ② 사채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조건, 사채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한다.

#### 【 작성지침 】

사채관리위탁에 관한 내용 기재시 다음 내용을 포함하되, 제시된 사항 이외에도 투자자에게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는 반드시 기재한다.

i. 사채관리회사의 사채관리 위탁조건(아래에 제시된 표를 참조하여 기재할 수 있으며, 효과적인 정보제공을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표를 이용할 수 있다)

(단위 : 원)

사채관리	대표	<b>-</b> .	위탁금액 및	l 수수료율	3151 T31
회사명칭 (고유번호)	전화번호	주 소 	위탁금액	수수료율(%)	기타 조건

- ii. 사채관리회사와 주관회사 및 발행기업과의 거래관계, 사채관리회사의 사채관리 실적, 사 채관리 담당 조직 및 연락처 등
- iii. 사채관리회사의 권한
- iv. 사채관리회사의 의무 및 책임
- v. 사채관리회사의 사임 등 변경에 관한 사항
- vi. 기타 사항
- ③ 지급청구권이 표시된 그 밖의 채무증권은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하여 그 증권이 표창하고 있는 권리의 내용, 조건 등을 기재하되 해당 채무증권의 특성상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추가로 기재한다.
- 제2-2-3조(투자계약증권의 주요권리내용) ① 투자계약증권의 경우 공동사업 구조에 따라 투자자가 가지는 법적 지위, 해당 투자계약증권이 표창하고 있는 권리의 내용 등을 기재한다.

투자계약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기재시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되, 제기된 사항 이외에도 투자자에게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는 반드시 기재한다.

- i. 공동사업 구조에 따라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자가 가지는 법적 지위(예:채권적 청구권 보유자, 공유물에 대한 공유지분 보유자 등)
- ii. 당해 증권에 부여된 권리의 내용, 권리행사 절차, 권리행사 통지방법 등
- iii. 당해 증권의 권리내용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판단의 근거가 되는 법규 또는 계약 및 관할법원에 관한 사항
- iv. 당해 증권의 발행시 정한 공동사업 구조, 권리내용 등에 대한 발행후 조정이 가능할 경우, 조정 가능사유, 조정절차, 조정내용 및 해당 조정내용의 통지·공고방법
- v. 당해 증권의 투자수익을 분배하는 절차
- vi. 당해 증권의 투자수익 관련 과세액 산정, 원천징수 방식 등 과세방식·절차
- vii. 발행인이 당해 증권과 관련하여 보고서, 안내사항 등을 전달하는 절차
- viii. 당해 증권의 양도시 필요한 절차
- ② 기초자산이 있는 투자계약증권의 경우 기초자산 취득, 보관·관리, 처분 등과 관련하여 투자자가 알아야 할 정보 및 투자자·공동사업자의 권한 및 의무 등을 추가로 기재한다.

#### 【 작성지침 】

투자계약증권의 기초자산의 취득, 보관·관리,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예시를 참고 하여 기재하되, 예시로 제시된 사항 이외에도 투자자에게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는 추가로 기재한다.

## [예시]

- 기초자산 취득 관련
- 1) 기초자산 요약정보 : 고유명칭, 생산자, 생산연도, 생산국가, 취득(예정)가액, 취득 (예정)시기, 현재 보관장소 등을 기재한다. 기타에는 그 밖에 기초자산의 가격에 영

#### 향을 줄 수 있는 주요변수를 기재한다.

	구 분	사진
고유명칭		
생산자		
생산연도		
생산국가		
취득(예정)가액		
취득(예정)시기		
보관장소		
기타		

- 2) 기초자산에 대하여 회사가 조사한 사항 : 기초자산 특징 등에 대해 회사가 조사한 사항을 기재한다.
- 3) 기초자산에 관한 가격 산정 근거 등 : 해당 기초자산의 과거 거래사례, 비교 기초자산 거래사례(비교사례 선정기준 포함), 해당 기초자산에 대한 가치평가(외부평가기관, 자체평가), 기초자산의 현재 상태 등을 고려한 취득가격의 적정성을 기재한다. 이때 외부평가기관이 아닌 내부적으로 가치평가를 실시한 경우 회사가 기초자산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전문성, 전문인력 등을 상세히 기재하고, 이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 (외부기관 검증, 신뢰할 수 있는 통계적 자료 등)를 제시한다.
- 4) 기초자산 매도인에 대한 정보 : 기초자산 매도인에 대한 정보를 기재한다. 기초자산 매도인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기재가 곤란한 경우 매도인 유형(예: 국내 개인, 국내 법인, 해외 개인, 해외 법인, ○○○경매 참여 등)을 기재하며, 매도인과 공동사업자 와의 관계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할 경우, 이를 반드시 명시한다.
  - 5) 기초자산의 진위성: 기초자산의 진위성에 대한 확인 절차가 필요하거나 진행되는 경우 기초자산의 진품확인 방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 기초자산 보관·관리 관련
  - 1) 기초자산의 보관·관리방법 : 기초자산 취득후 보관장소(예:미술품 수장고), 보관· 관리주체 및 구체적인 보관·관리방법, 기초자산 실물확인·전시·대여 가능여부 등을 기재한다.
  - 2) 기초자산의 보관·관리 관련 투자자·공동사업자의 권한 및 의무 : 보관방법(예: 전시여부 결정, 실물확인 방법, 도난·훼손 발생시 보상 등)과 관련한 투자자·공동 사업자의 권한 및 의무, 제반 절차를 관련법률 및 계약내용에 따라 기재한다.
- 기초자산의 처분 관련

- 1) 기초자산의 처분방법 : 기초자산의 처분시기, 처분결정방법(예:투자자 표결 등), 처분상대방 선정기준 등을 기재한다.
- 2) 기초자산의 처분 관련 투자자·공동사업자의 권한 및 의무 : 처분방법과 관련한 투자자·공동사업자의 권한과 의무, 제반 절차를 관련법률 및 계약내용에 따라 기 재한다.
- 기타 중요사항
- 1) 기초자산이 있는 투자계약증권의 양도 관련: 투자자가 투자계약증권을 만기이전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기초자산에 대한 소유권 등이 온전히 이전되기 위해 필요한 법적 절차 등을 기재한다. (예:민법상 목적물반환청구권 양도 절차 및 제3자에 대항하기 위한 요건)
- 2) 기초자산의 분할 가능 여부 : 기초자산이 민법상 공유물에 해당되는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기초자산(공유물)에 대한 분할청구가 가능한 경우에 대해 설명하고, 일부 투자 자의 분할 청구시 발행인의 업무처리 절차에 대해 기재한다. 또한, 기초자산(공유물)에 대한 분할금지 특약을 설정한 경우, 동 특약이 기초자산 양수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 등을 기재한다.
- 제2-2-4조(증권예탁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증권예탁증권의 경우 제2-2-1조 및 제2-2-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증권이 표창하고 있는 권리의 내용, 조건 등을 기재하되 예탁기관, 예탁된 증권에 관한 사항 및 관련 비용 등을 추가로 기재하다.

- i. 예탁기관의 명칭과 주된 사무소의 주소를 기재한다. 예탁기관의 설립일과 존속기간(해 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기재한다)을 기재하고, 동 기관의 법적 형태와 설립 근거법령을 기재한다.
- ii. 증권예탁증권의 종목명과 예탁된 증권의 종목명을 기재하되 예탁된 증권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간략히 서술한다.
  - 가. 한 단위의 증권예탁증권에 의해 표창된 예탁된 증권의 규모
  - 나. 예탁된 증권과 관련하여 증권예탁증권 보유자에게 부여된 권리의 내용
  - 증권예탁증권 보유자와 예탁된 증권을 직접 보유한 투자자의 권리의 내용이 다를 경

- 우 그러한 사실을 명시하고, 증권예탁증권 보유자에게 부여되지 않은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예탁된 증권의 인출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재한다.
- 다. 예탁된 증권의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한 절차
- 라. 배당금을 수령하고 분배하는 절차
- 마. 통지서, 보고서 및 의결권대리행사 권유문서 등을 전달하는 절차
- 바. 관련권리의 매매 또는 행사 관련 사항
- 사. 주식배당. 주식분할 또는 감자 등에 따라 발생하는 증권의 예탁 또는 매매 관련사항
- 아. 예탁계약의 개정, 연장 또는 종료 관련사항
- 자. 예탁기관의 장부와 증권예탁증권의 소지자 명단을 열람하기 위해 증권예탁증권의 소 지자가 보유하는 권리
- 차. 보호예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예탁된 증권을 이전하거나 인출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제약사항
- 카. 예탁기관의 책임의 한도에 관한 사항
- iii. 증권예탁증권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수수료와 비용 및 이를 지급 하는 자를 명시한다. 증권의 예탁 및 대체, 배당금 수령 및 분배, 권리 매매 및 행사, 예탁된 증권의 인출, 예탁증서의 이전·분할·병합 등과 관련된 수수료 또는 비용을 포함한다.

## 제3절 투자위험요소

- 제2-3-1조(투자위험요소) ① 회사와 증권에 관한 사항으로서 모집 또는 매출의 대상이 되는 증권에 대한 투자를 위험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과 상황, 회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업위험, 회사위험, 기타 투자위험 등 3가지로 구분하여 중요사항 순으로 기재한다.
  - ② 투자위험요소는 이해하기 쉽고 투자판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간결하고 축약된 문장을 사용하여 논리적으로 기재하며, 모든 회사나 모든 모집 또는 매출에 적용될 수 있는 정도의 위험요소는 기재하지 아니한다.
  - ③ 투자위험요소는 위험요소별로 각 위험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부제목을 기재한다. 부제목은 투자자가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쓰고 원인과 결과가 포함된하나의 문장으로 서술하며, 굵고 두드러진 활자체를 사용하여 눈에 잘 띄는형태로 표시한다.

- i. 투자위험요소는 사업위험, 회사위험, 기타 투자위험 등 3가지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 가. 사업위험 : 회사가 속해있는 산업, 업종 및 영업의 특성에 따라 회사가 직면하게 되는 위험
  - 나. 회사위험 : 사업위험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것으로 재무상태, 지배구조, 제2-6-7조에 따른 재무구조개선약정 미체결에 관한 사항 등 회사의 특수한 위험
  - 다. 기타 투자위험 : 사업위험 또는 회사위험 외의 위험으로서 증권의 발행조건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위험.
  -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받기 위해 발행되는 채무증권의 경우에는 자본인정에 관한 사항과 만기, 이자지급, 조기상환 등에 관한 발행인 및 투자자의 권리와 투자위험요소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자본으로 인정받는 채무증권의 발행 필요성, 자본인정이 부채비율 등 재무구조에 미치는 효과, 자본인정이 부정될 경우의 효과 등을 함께 기재한다.
  - 조건부자본증권의 경우에는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채무가 재조정(이하 주식전환 또는 상각)되는 사유 및 그에 따른 주식전환 또는 상각의 내용을 기술함과 동시에 사유발생시 투자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주식전환 또는 상각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기재하고, 주식전환 또는 상각 사유의발생가능성과 관련하여 자본의 적정성과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자본(보통주, 기본자본, 보완자본등)·자산(대기업·중소기업·가계별 대출채권, 주식, 채권 등)의 구성현황과 관련 지표(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총자본비율, 고정이하여신비율, 연체율, 대손상각 등)의 최근 3년간 추이를 이용하여 기술하고 상기 지표 등을 활용하여 전환·상각사유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예: 당기순손실금액 등이 얼마 증가하면 BIS 비율이 1%p 하락하는지 또는 5.125%에 도달하는지등)을 기술한다.

- 일반청약자에게 환매청구권을 부여함에 따라 공모가격 산정과 관련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일부만 기재할 경우 동 사실과 주가지수 하락 등에 따라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 동 사실을 기재한다.
- ESG채권의 경우에는 증권의 발행 목적이 환경적·사회적 가치 창출에 있으며 단기적인 영업실적 또는 재무성과 제고를 위하여 발행되는 것이 아님을 기재하고, 조달 자금을 당초 계획과 다르게 집행하거나 기대한 환경·사회적 가치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본 사채의 한국거래소 ESG채권 정보플랫폼 등록 취소 또는 발행인의 평판 악화 등을 초래할 수 있음을 기재한다. 또한 ESG채권 발행을 위한 준거기준과 관련 외부평가내용(외부평가기관, 평가 종류, 평가 결과 및 의미, 외부평가 결과에 발행인의 신용도및 상환능력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사실 등)을 기술하고, 본 사채가 발행 이후 한국거래소의 'ESG채권 정보플랫폼'에 등록될 예정이라는 것과 본 사채 발행 이후 사후보고에 대한 내용(보고 주기, 방법, 내용 등)을 기재한다. 또한, 발행시 설정한 조건 달성 여부에 따라 만기 이자 지급금액 등이 달라지는 경우 설정 조건의 선정 경위, 설정 조건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검토기관의 평가 근거, 평가시점별 조건 달성 여부에따라 변동하는 이자율 및 이자지급금액, 프리미엄 지급액, 기부 금액, 투자의 위험요소(평판위험, 수익률위험 등) 등 예상 손익구조를 투자자가 이해하기 쉬운 형태의 표나 그림 등을 활용하여 자세히 기재한다.
- ii. 투자위험요소는 회사가 지주회사인 경우에는 주요자회사를 포함하여 작성하며, 회사가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주된 재무제표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종속회사를 포함하여 작성한다.
- iii. 투자위험요소의 자세한 기재방법은 별도로 마련된「투자위험요소 기재 요령 안내서」 (전자공시시스템 접수수리 홈페이지(http://filer.fss.or.kr) 및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http://www.fss.or.kr)에 게시)을 참고한다.
- iv. 기타 투자위험요소의 최상단에는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상장이후 유통 가능물량 관련 정보를 기재한다.

(기준일: )

			공모전				공드	2후			UII DETII SE	
	회사와 의관계		보 주	유 식	보 주	유 식	매각제	한물량	유통가	능물량	매각제한 기간 (상장일	매각제 한사유
0	8 1111	선계 중류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기준)	2/1/1
											x년x개월	
	합기			100%	100%							

- 회사와의 관계에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주주명은 기타 기존주주, 공모주주 등으로 합산하여 기재할 수 있다.
- 회사와의 관계에는 최대주주, 주요주주, 임직원, 계열회사, 계열회사의 임직원,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기타 특수관계인 등을 기재한다.

(기준일: )

구분	주식수	유통가능 주식수 비율
상장일 유통가능		
상장후 1개월뒤 유통가능		
상장후 2개월뒤 유통가능		
상장후 3개월뒤 유통가능		
상장후 6개월뒤 유통가능		
:		

- 유통가능비율은 공모후 매각제한 물량과 유통가능 물량의 합계 대비 유통가능 주식수 비율을 기재한다.
  - V. 기타 투자위험요소의 주식매수선택권, 신주인수권, 전환권 행사에 따른 주가희석화 관련 정보는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기재한다.

					수	량		잔여		행사·	
구분	부여 대상	부여일	주식의 종류	부여	행사	취소	소멸	인어 미행사 수량	행사기간	정 전환가 액	비고
주식매수		yyyy.mm.	보통주	o주	o주	o주	o주	o주	yyyy.mm.dd.~		
선택권		dd.	エゔー	0-	0-	0-	0-	0+	yyyy.mm.dd.		
 신주											
인수권											
전환권											
	합계			o주	o주	o주	o주	o주		·	

- 부여대상은 최대주주, 주요주주, 임직원, 계열회사, 계열회사의 임직원, 최대주주의 특수 관계인, 기타 특수관계인, 기타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 비고에는 전환·행사 조건 등을 기재한다.

제2-3-2조(투자계약증권의 추가 기재사항) 투자계약증권은 제2-3-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추가하여 공동사업구조 위험, 공동사업자 위험, 기초자산 위험 등 투자계약증권의 특성과 관련된 위험을 기재한다.

- i. 공동사업구조 위험은 투자계약의 목적인 공동사업에 대한 위험요소로서 사업위험에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추가 기재한다.
  - 가. 영위하려는 공동사업이 관련법규에 위배되거나 소송·분쟁이 제기될 수 있는 가능성을 설명하고, 법규 위배 또는 소송·분쟁 제기시 투자자에게 미치는 불리한 영향을 기재한다.
    - 기초자산이 있는 공동사업의 경우, 기초자산 보관·관리, 처분 관련 의사결정구조 등이

법적으로 인정된 방식인지 여부를 법규 등을 근거로 설명하고, 공동사업 구조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을 위험이 있는 경우. 해당 위험요소를 기재한다.

- 나. 투자계약증권의 공동사업 운영과정에서 일부 투자자의 반대의사 표시(예:기초자산 처분과 관련한 반대), 공동사업 탈퇴(예:기초자산 보관·관리 및 처분 관련 위임계약 취소, 기초 자산 분할청구) 등 발생시 나머지 투자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기재한다.
- 다. 상기 사항 이외에 공동사업구조가 변경되거나, 공동사업이 중단될수 있는 위험에 대해 기재한다.
- 라. 공동사업과 유사한 국내외 사례(증권 발행을 통한 유사 공동사업 사례) 존재여부를 기재하고. 유사사례가 있는 경우 해당 사례에서 나타난 위험 등을 기술한다.
- ii. 공동사업자위험은 공동사업자와 관련된 위험요소로서 회사위험에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추가 기재한다.
  - 가. 공동사업 운영자가 그 투자계약과 유사한 형태의 사업 또는 투자구조를 운영해 본 경험이 부족하여 공동사업이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관련 위험성을 기재하고, 공동사업 운영자가 공동사업 외에 별도로 다른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그 사업이 공 동사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등을 기재한다.
  - 나. 공동사업이 투자계약에 따라 제대로 운영되는지 여부르르 감시, 감독하는 견제장치가 미흡한 경우 투자자에게 미칠 영향 등을 기재한다.
  - 다. 공동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공동사업자 선정기준, 선정경위 등을 기재하고 부적합한 공 동사업자 선정으로 인하여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 및 공동사업자 교체 가능여부 등을 기재한다.
  - 라.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분쟁, 소송 당사자가 되거나 사업대상 자산 등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 소송이 제기된 경우로서 공동사업 진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 및 그로 인한 위험요소 등을 기재한다.
  - 마. 공동사업자가 도산할 경우,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기재한다.
- iii. 환금성 관련 위험요소\*를 기타 위험에 추가로 기재한다.
  - \* 투자계약증권의 전매가 제한되거나, 활성화된 유통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투자계약 증권의 환금성이 저하되거나 가치가 하락할 위험성
- iv. 공동사업의 기초자산과 관련된 위험요소로서 기타 위험에 추가로 기재한다.

가. 기초자산의 개별 특성 및 기초자산이 거래되는 시장의 특성 전반을 설명한다.

[작성예시]

- (기초자산의 개별 특성) 미술가 및 미술품에 대한 설명, 해당 미술가 및 해당 미술품에 대한 경매 및 거래 내역 등 공급/수요에 관한 정보 등
- (기초자산 거래시장 특성) 전반적인 미술품 시장의 유동성, 시장 유동성 증가/감소에 미칠수 있는 요인, 과거 거래 데이터의 신뢰가능 정도, 시장의 깊이 및 수요층 등에 관한 정보 등
- 나. 기초자산의 거래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 기초자산의 가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을 수 있어, 투자자가 기초자산의 취득가액 또는 처분가액의 적정성을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기재한다.
- 다. 기초자산 특성에 따른 내재위험을 기재한다.
  - 미술품 투자 : 위작·작품손상·분실·도난 등
  - 한우 투자 : 전염병 등 감염·농장이탈·개체식별번호 위조·변조 등
- 라. 기초자산의 거래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 기초자산의 처분곤란 등으로 투자 계약증권의 만기가 연장될 수 있는 위험을 기재한다.
- 제2-3-3조(증권예탁증권의 추가 기재사항) 증권예탁증권은 제2-3-1조에서 정하는 사항에 추가하여 증권예탁증권 보유자의 권리행사, 증권예탁증권의 인출과 재예탁 및 본국시장의 상황 등에 따른 위험요소 등을 기재한다.

- i. 증권예탁증권 보유자가 예탁된 증권을 직접 보유한 투자자에 비해 특정 권리(예 : 소수주권 등)를 직접적으로 행사하기 곤란한 경우 그 사실과 그러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소요기간 및 관련 위험성을 기재한다.
- ii. 증권예탁증권을 예탁된 증권으로 인출하거나 증권을 증권예탁증권으로 재예탁하는데 제한이 있는 경우 해당 시기와 제한되는 사유를 기재하고 인출하거나 재예탁할 때 일 정한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그 내용을 기술한다.
- iii. 증권예탁증권에 대한 투자가치가 예탁된 증권이 상장된 본국시장 및 증권예탁증권이 상장된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되고, 각국 시장의 유동성, 거래제도 및 거래투명성 등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재한다.

제2-3-4조(외국기업의 추가 기재사항) ① 제2-3-1조부터 제2-3-3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에 추가하여 회사의 설립지국 법규 및 정관상 회사제도의 개요와 외국환거래 및 조세관련 제도의 개요를 기재한다.

#### 【 작성지침 】

- i. 회사의 설립지국 법규 및 정관상 회사제도의 개요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기재하며, 우리나라의 해당 제도와 차이점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세히 기재한다. 지주회사의 경우에는 지주회사 및 주요 자회사 각각에 관하여 이 사항을 기재한다.
  - 설립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명칭, 설립지 회사법·도산법·증권거래법령 등 관련법규의 주요내용, 이사회·주주총회 등 회사의 기관 및 그 권한, 주주의 권리·의무, 외국인의 투자제한·지배권 변동의 제한에 관한 사항, 보유지분율 변동시 공시의무, 주주총회 절차. 도산·파산시 절차·권리구제절차 등
- ii. 외국환거래 및 조세관련 제도의 개요는 증권의 취득, 거래 및 배당금의 송금 등과 관련된 회사 설립지국의 외국환거래 및 조세관련 법규 및 제도를 기재한다.
- ② 투자자가 증권관련법령상 민사책임 관련 조항에 근거하여 회사, 임원, 신고서류에 기재된 인수인 또는 전문가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와상기 나열된 자의 자산이 대한민국 밖에 위치하는 경우 동 민사책임과 관련된 배상을 집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기재한다. 본 항목을 변호사의 의견에 근거하여 기재하는 경우에는 변호사의 이름을 기재한다.
- ③ 지주회사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조달한 자금을 해외 자회사 등으로 송금시상세 송금내역과 해당 국가의 외국환거래 및 조세관련 법규의 이행 여부를 기재하고, 해외 자회사 등에서 지주회사로 이자를 지급하거나 배당금 등을 송금시해당 국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외환거래 규제 위험을 기재한다.
- 제2-3-5조(기업인수목적회사의 추가 기재사항) 제2-3-1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에 추가하여 기업인수목적회사 또는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하려는 법인으로서 갖는 특수한 위험요소를 추가로 기재한다.

#### 【작성 지침】

i. 기업인수목적회사로서 갖는 특수한 위험요소로는 집합투자에 해당될 수 있는 위험, 상장실패위험, 합병실패위험, 상장폐지위험, 주권의 최초 모집 전에 영 제139조제1호 각 목의 증권 및 의결권 없는 주식에 관계된 증권을 취득한 자의 주식매수청구권·의결권 등 각종 권리가 제한될 수 있는 위험, 공모 후 차입·채권발행·채무보증이 금지되는 등 재무활동이 제한될 수 있는 위험, 우발채무 발생 등으로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인정될 수 있는 위험,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상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영 제6조제4항제14호가목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해 증권 금융회사 또는 신탁업자에 예치·신탁한 금전(이하 "예치자금등"이라 한다)의 주주에 대한 지급이 제한될 수 있는 위험, 합병 외의 사업목적이 없어 수익이 창출되지 않아 배당이 어려울 수 있는 위험, 경영진과 기업인수목적회사간 이해상충 요소가 있는 경우 그위험. 예치자금등 반환시 발행시 주당 발행가격 미만의 금액이 지급될 수 있는 위험 등이 있다.

- ii.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하려는 법인으로서 갖는 특수한 위험요소로는 i)에서 열거한 위험에 추가하여, 기준가격 변동 및 그에 따른 주식의 유동성 위험, 주식의 유통물량 급변에 따른 거래량 증감 및 주가 변동성 위험, 단수주 발생으로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주주들이 합병 신주를 교부받지 못하거나 교부받는 합병 신주 금액이 현재 보유 중인 주식의 가치에 미달할 위험, 합병법인의 단수주 취득 자금 유출에 따른 유동성 및 재무 안정성 위험 등이 있다.
- iii. i), ii)에서 열거한 위험요소는 예시적 사항에 불과하므로 기업인수목적회사 또는 기업 인수목적회사와 합병하려는 법인으로서 갖는 특수한 위험요소를 모두 기재하여야 한다.
- iv. 합병후 주가에 따른 공모주주와 발기주주 등의 예상 손익률을 기재한다.

(단위 : )

구분 <sup>2)</sup>	합병후 주가에 따른 예상 손익률 <sup>3)4)</sup>							
ੀ ਦ ′	0원	500원	1,000원	2,000원	3,000원			

- 1) 합병후 주가에 따라 공모주주와 발기주주 등의 예상 손익률을 기재한다.
- 2) 공모주주는 대표 공모주주 1인을 상정하여 예상 손익률을 기재하며, 발기주주는 주주별로 예상 손익률을 기재한다.
- 3) 전환사채 등이 있는 경우, 합병후 주가가 전환사채 등의 행사가격을 상회하는 상황에서는 행사를 가정하고, 주가가 행사가격을 하회하는 상황에서는 불행사를 가정하여 예상 손익률을 기재한다.
- 4) 표에 기재된 합병후 주가는 예시이며, 공모희망가격, 발기주주의 취득단가, 전환사채 등 행사가격 등을 감안하여 주가별 손익률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설정하되, "0원"과 "발기주주 취득단가", "전환사채 등 행사가격", "공모희망가격"을 포함하여 기재한다.

제2-3-6조(파생결합사채의 추가 기재사항) 제2-3-1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에 추가하여 기타 투자위험란에 이자에 관한 사항임을 표시하여 제16-3-2조의 투자위험 요소를 기재한다.

# 제4절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제2-4-1조(작성방법 및 적용대상) ① 증권에 대한 인수인 또는 증권분석기관(이 하 이 절에서 "평가회사"라 한다)으로부터 의견을 받아 기재한다.
  - ② 인수인 등 평가회사가 평가의견 작성을 위해 사용한 기준과 인수인, 기업실사 참여기관, 기타 전문가 등이 평가의견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책임을 명확히 기재한다.
  - ③ 규정 제2-6조제8항제1호파목에 따른 주의의무 이행서류는 <별지 제1-1호>에 따라 작성하여 첨부한다.
  - ④ 인수인의 인수 없이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에는 이 절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주권비상장법인이 지분증권(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 탁증권을 포함한다)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주권상장법인의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회사의 긍정적, 부정적 요인 및 자금 조달의 필요성 등 증자에 관한 인수인의 의견을 기재함으로써 이 절의 내용을 갈음할 수 있다.
  - ⑥ 파생결합사채의 경우 이 절의 기재사항에 추가하여 제16-2-7조(주관회사의 의견)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한다.
  - ⑦ 외국기업의 신규상장의 경우에는 금융투자협회 「대표주관업무모범기준」의 'V. 외국기업 IPO 주관시 유의사항'을 반영하여 인수인의 의견을 기재한다.

## 【 작성지침 】

자금조달의 필요성 등은 인수인이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확인한 내용 및 자료목록 등을 포함하여 기재한다.

제2-4-2조(평가개요) 평가회사명, 평가일정, 기업실사 참여자 등 평가의 개요를 기재한다. 기업을 실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평가회사의 평가정책 등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기업공개의 경우, 별지서식 제1-1호 서식으로 대체함을 기재하고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i. 평가일정은 다음의 표를 참고하여 작성한다.

구 분	일 시
주관계약 체결	
기업실사 기간	
:	
상장예비심사 신청	
상장예비심사 (불)승인 일자	

ii. 다음의 표를 참고하여 평가회사에 소속된 기업실사참여자의 인적사항, 기업실사관련 업무분장, 참여기간, 경력 등을 기재한다. 업무분장과 관련하여서는 평가회사에서의 담당업무가 아닌 기업실사 관련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며 참여기간은 대표주관계약 이후 해당자가 실사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만을 기재한다.

소속	성명	부서	직책	실사업무 분장	참여기간	주요경력

iii. 기업실사에 협조한 발행기업 담당자의 인적사항은 다음의 표를 참고하여 작성한다.

성명	부서	직책	담당업무

iv. 다음의 표를 참고하여 평가회사 또는 발행기업 임직원이 아닌 기업실사참여자의 인적사항, 업무분장 등을 기재한다. 실사 참여이유에는 실사참여 관련 계약의 당사자 (평가회사, 발행기업 등 실사관련 비용지급자) 와 실사참여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소속	성명	실사업무 분장	실사참여 이유

제2-4-3조(기업실사) 평가회사의 기업실사와 관련하여서는 평가회사의 기업실사 항목, 기업실사 이행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기업공개의 경우, 별지서식 제1-1호 서식으로 대체함을 기재하고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i. 다음의 표를 참고하여 기업실사 항목을 작성하고, 기업실사 항목은 평가회사의 기업실사 관련 내부기준과 발행기업의 특성 등을 구체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항목	세부 확인사항

ii. 다음의 표를 참고하여 기업실사 이행내역에 기업실사 관련 일시, 장소, 참여자, 기업실사 내용 및 확인자료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일시	장소	참	여자	7104441110 DI 5101712
		발행사	평가회사	기업실사내용 및 확인자료

제2-4-4조(평가의견) ① 평가회사의 기업실사결과와 평가의견을 기재하며, 공모 대상 증권의 투자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중요요소(사업의 수익성과 성장성, 회사의 경쟁력, 재무상태, 경영능력 및 투명성, 계열회사 등을 포함한다)에 대한 평가결과를 포함한다. 기업공개의 경우 한국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시 중요 확약사항, 주관회사 내부위원회(인수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등)에서 논의된 내용 중 증권의 투자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요소를 포함하며, 발행회사가 인수인의 추천에 의하여 한국거래소 상장규정에 따른 사업모델기업 특례를위하여 모집·매출하는 경우에는 사업모델기업 평가보고서의 평가 내용 및 평가근거를 기재한다.

- i. 투자위험요소에 이미 기재된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은 기재하지 않고,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내용에 대한 의견을 기재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 예시문구를 참고하여 기재한다.
  - (예시 문구) 「III. 투자위험요소」중「카.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관련 위험」의 「2) 매출 및 매입 거래 내역」관련하여 거래의 부적정성 또는 이익전가 가능성은 ~로 판단됩니다.
- ii. 한국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시 중요 확약사항에는 심사중 한국거래소와 확약한 사항의 확약 배경, 확약 내용, 확약 이행 현황 및 계획, 확약사항이 증권의 투자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

을 기재한다.

iii. 주관회사 내부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기재한다. 논의 내용에는 기업 가치평가 및 주요 리스크에 대한 위원회 의견 등을 기재한다.

내부위원회 명칭	위원회 주요 구성원	일시	논의내용	비고

iv. 회사의 경쟁력 분석을 위한 주요 경쟁기업 및 제품 경쟁 현황은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작성한다.

(단위 : 백만원, %)

								•	
		신청회사			경쟁회사			경쟁회사	
구분	xx연도 (제M1기)	xx연도 (제 <b>2</b> 2)	xx연도 (제K3기)	xx연도 (제서기)	xx연도 (제 <b>2</b> 2)	xx연도 (제K3기)	xx연도 (제M기)	xx연도 (제 <b>2</b> 2)	xx연도 (제 <b>X</b> 3기)
설립일									
매출액 (매출원가율)									
영업이익 (영업이익률)									
당기순이익 (순이익률)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상장여부 (상장일)									
주요제품 (매출비중)									

(단위:%)

제 품	××연도	E(제×1기)	××연도	E(제×2기)	××연도	비고	
품목명	회사명	시장점유율	회사명	시장점유율	회사명	시장점유율	0172

- 주요 제품, 상품에 대하여 최근 3사업연도의 주요 경쟁회사(당해 기업을 포함한다)별 시장 점유율을 기재하고, 산출근거를 비고에 기재한다.
  - ② 평가회사의 기업실사 또는 평가에 제한요소가 있었던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재하며, 인수인이 평가회사에 대해 투자한 내역(신고서 제출일 현재 보유분에 한함)이 있는 경우에는 인수인과 일반 투자자자간 이해상충 가능성에 대한 평가 및 그 결과, 이해상충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 등을 추가 기재한다.

- ③ 기업실사에 평가회사 외에 법무법인, 회계법인, 감정평가법인 등 전문가가 참여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의견을 평가결과에 기재하여야 한다.
- 제2-4-5조(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① 공모가격 또는 희망공모가격(경매의 경우 최저낙찰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공모가격 평가에 사용한 평가 방법, 주요한 가정 등 고려요소와 이러한 평가방법과 가정을 채택한 근거 및 한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기업공개의 경우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을 인수인의 의견란 최상단에 기재한다.)

i.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의 최상단에는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공모가 산정 요약표를 기재한다.

#### 【공모가 산정 요약표(예시)】

평가방법		상대가치법		
평가모형		PER		
적용 재무수치	=	추정치 / 실적치		
적용산식				지(①) × 유사기업 PER(②) × {1-할인율(④)}
		구분	수치	참고사항
	1)	'2X년 추정당기 순이익의 현재가치 / '2X년 실제 당기순이익	000	'IV. 인수인의 의견-공모가격에 대한 의견-가. 당기순이익'참조
TI O 7771	② 유사기업 PER		000	'IV. 인수인의 의견-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나. 유사기업 선정'참조
적용근거	3	주식수	000	'IV. 인수인의 의견-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다. 발행주식수' 참조
	주	등당 평가가액		① × ② ÷ ③
	4	주당 평가 가액에 대한 할인율*	000	'IV. 인수인의 의견-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할인율 설정' 참조
		공모가 산정결과	000	-

- \* 최종 공모가 band 산정시 활용되는 할인율
- 평가방법은 상대가치법 또는 절대가치법 등 방법을 기재하고, 기타 방식의 경우 해당 평가방법을 기재하고 주석으로 상세한 설명을 기재

- 상대가치법을 채택한 경우, 평가모형은 공모가 추정에 사용되는 재무비율(PER, PBR, PSR. EV/EBITDA 등)을 기재
- 절대가치법을 채택한 경우, 평가모형은 내재가치 평가시 사용된 평가모형(DCF, 순 자산가치법, 배당성장모형 등)을 기재
- ii. 공모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이 발행회사의 과거 영업실적에 근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III.재무에 관한 사항'의 관련 표를 참조하도록 안내문구를 기재하고, 미래 영업실적에 대한 예측에 근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아래 표를 활용하여 요약 재무정보를 제시한다. 단, 공모가 산정 추정시 활용되는 근거가 요약손익계산서 외의 다른 정보에 기반할 경우, 해당 정보도 함께 제시한다.

<예측 영업실적에 대한 손익계산서(예시)>

대상 기간 계정 과목	20X3 (A)	20X4 (E)	20X5 (E)	20X6 (E)	20X7 (E)	20X8 (E)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판매관리비						
영업이익						
금융수익						
금융비용						
기타 영업외수익						
기타 영업외비용						
법인세비용						
차감전순이익						
법인세비용						
당기순이익						

- 【공모가 산정 요약표】의 '적용산식'에 활용된 재무정보는 다른 글자보다 2pt 크게 기재하고 굵게 표시
- 아래와 같은 예시 문구를 하단에 삽입

(예시 문구) 본 기업은 상대가치법(유사기업 PER)에 따라 장래 5년간의 손익을 추정하여 공모가를 산정하였으며, 산정시 직접 활용된 당기순이익은 위 표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습니다.

② 상장된 기업과의 가치를 비교하는 방식(상대가치법)으로 공모가격을 산정한 경우에는 비교기업 선정사유, 비교기업의 경영지표 등을 기재한다.

- i. 해당 비교기업을 선정하게 된 사유를 기재하고 그 기업의 주가가 발행기업 공모가 평가의 척도로 적합한 이유와 부적합한 이유를 구분하여 기재한다.
- ii. 제2-4-5조제①항에 따라 작성한 '공모가 산정 요약표'에 따라 공모(희망)가격 산정의 적용 근거(영업이익, 유사기업 재무비율, 할인율 등)를 항목별로 목차를 구분하여 상세히 기재하고, 적용 근거별 보충 설명이 필요한 경우 하위 목차에 추가로 기재한다. 공모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이 발행회사의 영업실적에 대한 예측에 근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예측에 사용된 방법의 구체적 내용과 이러한 예측의 정확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기재하고, 그 예측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주의문구를 기재한다. 매출액·영업이익·당기순이익 등 추정 금액 및 추정 근거는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제시하고, 매출(수입) 추정 금액의 90%이상이 설명되도록 기재한다.

#### [예시]

## <(매출액·영업이익·당기순이익의) 세부 추정 금액>

(단위:백만원)

	구분		20X3(V)	20×4(E)	20Y5(E)	20Y6(E)	20Y7(E)	20X8(E)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20/3(A)	20X3(A) 20X4(E) 2		20/0(L)	20//(L)	20/0(L)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시약 △-△△		로열티	000	000	000	000	000	000
	$\triangle - \triangle \triangle$	판매 수입	000	000	000	000	000	000
진단		판매 수입	000	000	000	000	000	000
키트	00	판매 수입	000	000	000	000	000	000
기타	***	기타 수입	000	000	000	000	000	000
	계		000	000	000	000	000	000

#### <(매출액·영업이익·당기순이익의) 세부 추정 근거>

	구분		20X3(A)		207	<b>1(⊏</b> )	207	5(5)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207	3(A)	20X4(E)		20X5(E)		
	00-0		기재	임상3상	추정	시판	추정		
		판매	근거	통과	근거	허가	근거		••••
		/ 수입	상세		상세		상세		
시약			내용		내용		내용		,
VI		, nac	기재		추정	기술	추정		
	$\triangle - \triangle \triangle$		근거		근거	이전	근거		
		로열티	상세		상세		상세		
			내용	••••	내용	•••••	내용	••••	

			ודון דון		<del>로</del> 되	교니아나무니	구 TJ		
			기재		추정	판매처	추정		
		판매	근거		근거	확대	근거		
		수입	상세		상세		상세		
			내용	•••••	내용	••••	내용	•••••	••••
	지단		기재		추정		추정	팬배처	
		판매	근거		근거		근거	확대	••••
		니니니 수입	상세		상세		상세		
진단			내용	•••••	내용	•••••	내용	•••••	••••
키트			기재		추정		추정		
71—		판매	근거		근거		근거		••••
	00	수입	상세		상세		<u></u> 상세		
		. –	내용	•••••	내용	•••••	내용	•••••	•••••
			기재		추정		추정		
אור.		기타	근거		근거		근거		••••
기타	기타 ☆☆☆	수입	상세		상세		상세		
			내용	•••••	내용		내용		•••••

- 대/중분류 : 추정 금액을 품목별, 수익원별 등으로 범주화가 가능한 경우 대-중분류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 소분류 : 추정 금액을 매출 발생 유형(예:저작권 수입, 판매수입, 기술이전료 등)별로 분류할 수 있는 경우 소분류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 '<세부 추정 근거>'의 추정 근거 및 상세내용: <세부 추정 금액>의 구분별 각 금액의 근거가 된 사실을 '추정근거'에 기재하고, 세부 내용을 '상세내용'에 서술식 기재한다. 상세내용은 필요시 주석 및 별도의 표를 활용하여 추가 기재할 수 있다.(예:추정에 국 가별 실적 전망치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표를 마련하여 기재)
- iii. 공모(희망)가격을 비교기업의 주식시가와 비교함에 있어 발행기업의 주식가치가 비교기 업의 주식가치보다 높게 또는 낮게 평가되어야 할 중요 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면 이를 기재한다. 또한, 증권신고서(투자위험요소 및 인수인의 의견 등) 또는 한국거래소 상장 예비심사신청서에 경쟁기업으로 기재된 기업이 가치평가시 비교기업에서 제외된 경우 제외된 사유를 상세히 기재한다.
- ③ 기업의 내재가치를 측정하는 방식(절대가치법)으로 공모가격을 산정한 경우에는 해당 산정방법 선정 사유, 고려한 대상 기간의 선정 근거, 할인율 적용 근거 등을 기재한다.

- i. 해당 평가방법을 선정한 이유를 기재하고, 다른 평가방법과 비교하여 발행기업 공모가 평가의 척도로 적합한 이유를 기재한다.
- ii. 2-4-5조제①항에 따라 작성한 '공모가 산정 요약표'에 따라 공모(희망)가격 산정의 적용 근거(영업이익, 할인율 등)를 구분하여 상세히 기재한다. 공모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이 발행회사의 영업실적에 대한 예측에 근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예측에 사용된 방법의 구체적 내용과 이러한 예측의 정확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기재하고, 그 예측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주의문구를 기재한다. 매출액·영업이익·당기순이익 등 추정 금액 및 추정 근거는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제시하고, 매출(수입) 추정금액의 90%이상이 설명되도록 기재한다.

[예시]

## <(매출액·영업이익·당기순이익의) 세부 추정 금액>

(단위:백만원)

	구분		20X3(V)	20X4(E)	20X5(E)	20X6(E)	20X7(E)	20X8(E)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20/0(//)	20/4(L)	20/J(L)	20/10(L)	20X1(L)	20/O(L)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시약		로열티	000	000	000	000	000	000
	$\triangle - \triangle \triangle$	판매 수입	000	000	000	000	000	000
진단		판매 수입	000	000	000	000	000	000
키트	00	판매 수입	000	000	000	000	000	000
기타	**	기타 수입	000	000	000	000	000	000
	계		000	000	000	000	000	000

## <(매출액·영업이익·당기순이익의) 세부 추정 근거>

	구분		001	20X3(A)		4/5)	001/	F/F)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20X	3(A)	20X	4(E)	20X5(E)		•••••
00-0	00.0	판매	기재 근거	임성3상 통과	추정 근거	시판 허가	추정 근거		••••
	수입	상세 내용		상세 내용		상세 내용			
	3 04 51	기재 근거		추정 근거	기술 이전	추정 근거		••••	
시약		로열티	상세 내용	••••	상세 내용	••••	상세 내용	••••	••••
		-스스 판매	기재 근거		추정 근거	판매처 확대	추정 근거		••••
		수입	상세 내용	••••	상세 내용	••••	상세 내용	••••	••••
진단 키트		판매	기재 근거		추정 근거		추정 근거	판매처 확대	•••••
		수입	상세 내용		상세 내용	••••	상세 내용	••••	

			기재		추정		추정		
	00	판매	근거		근거		근거		
		수입	상세		상세		상세		
			내용	•••••	내용		내용		••••
			기재		추정		추정		
기타	***	기타 수입	근거		근거		근거		•••••
			상세		상세		상세		
			내용	•••••	내용	••••	내용	••••	•••••

- 대/중분류 : 추정 금액을 품목별, 수익원별 등으로 범주화가 가능한 경우 대-중분류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 소분류 : 추정 금액을 매출 발생 유형(예:저작권 수입, 판매수입, 기술이전료 등)별로 분류할 수 있는 경우 소분류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 '<세부 추정 근거>'의 추정 근거 및 상세내용: <세부 추정 금액>의 구분별 각 금액의 근거가 된 사실을 '추정근거'에 기재하고, 세부 내용을 '상세내용'에 서술식 기재한다. 상세내용은 필요시 주석 및 별도의 표를 활용하여 추가 기재할 수 있다.(예:추정에 국가별 실적 전망치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표를 마련하여 기재)
- iii. 공모(희망)가격 산정에 있어 해당 산정방법 외의 중요한 고려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해서도 상세히 기재한다.
- ④ 일반청약자에게 환매청구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가격산정과 관련하여 일부 내용만 기재한 경우를 포함한다) 발행회사 또는 인수인 등이 IR 등을 통해 공모가격 산정관련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수준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i. 증권신고서 제출일로부터 과거 3년간 주관회사로서 기업공개에 참여한 기업의 기 간별 수익률은 다음의 표를 참조하여 기재한다.

(단위:%)

= 111대	상장			수익률						
회사명	연월일	구분	1일	1개월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공모주식								
		시장지수								
		공모주식								
		시장지수								

- 공모주식 수익률은 공모가격 대비 무상증자, 액면분할 등의 영향을 반영한 각 기간 말일 수정종가의 증감율을 기재
- 시장지수 수익율은 상장주식이 소속된 증권시장의 종합주가지수 수익률을 기재하되 상장일 직전 거래일 시장지수 대비 각 기간 말일 시장지수의 증감율을 기재

⑤ 기업공개의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일로부터 과거 3년간 주식의 발행 내역(주식의 발행일자, 발행 형태 및 방식, 주식의 종류, 투자·행사수량, 주당 발행가액, 발행후 총 유통주식수, 추정기업가치, 기업가치산정근거, 발행관련계약조건, 주요투자자·행사자)과 발행시 기업가치에 대한 인수인의 의견을 기재한다.

#### 【 작성지침 】

i. 증권신고서 제출일로부터 과거 3년간 신규로 발행한 주식의 발행일자, 발행 형태 및 방식, 주식의 종류, 총 발행 수량, 주당 발행가액, 발행후 총 유통주식수, 발행관련계 약조건, 주요 투자자·행사자 등은 다음의 표를 이용하여 기재한다.

(기준일 : ) (단위 : )

주식발행 일자	발행형태 및 방식	주식종 류	총 발행 수량	주당 발행 가액	총	발행후 유통 주식수 우선 주	합계	발행 관련 중요 계약 조건	주요 투자자· 행사자	비고

- 주식의 발행일자에는 다음의 일자를 기재한다.
- 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주금납입일의 다음 날
- 나. 전환권 행사, 신주인수권 행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상환권 행사에 의한 경우에는 권리행사일
- 발행형태는 유상증자, 전환권행사, 신주인수권행사, 주식매수선택권행사, 출자전환 등으로 기재하고, 발행방식은 일반공모, 주주배정, 주주우선공모, 제3자배정 등을 기재한다.
- 총 발행 수량은 증권신고서 제출시점 대비 무상증자, 무상감자, 액면분할 등이 있는 경우 영향을 반영한 수량을 기재하고 비고란에 반영내용을 기재한다.
- 주당발행가액에는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주당 발행가액을, 행사·전환의 경우 주당 행사· 전환가액을 기재한다. 단, 무상증자, 무상감자, 액면분할 등이 있는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시점 기준으로 수정하여 기재하고 비고란에 반영내용을 기재한다.
- 발행 관련 중요 계약조건에는 특정 기간내 IPO 실패 혹은 IPO 지연시 의무발생(배상금, 매수청구권 부여 등), 공모가격이 특정 금액 미달시 의무발생(투자금액보다 저가발행시 상환조건 등), 의무보유 조건 등 발행 관련 중요 계약내용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을 기재한다.
- 주요 투자자·행사자는 최대주주, 주요주주, 임직원, 계열회사, 계열회사의 임직원,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기타 특수관계인 등이 투자한 경우 해당 내용을 투자·행사 수량과함께 기재한다.(예 : 주요주주 00주, 임직원 00주) 단 투자·행사 수량은 증권신고서 제

출시점 대비 무상증자, 무상감자, 액면분할 등이 있는 경우 영향을 반영한 수량을 기재하고 비고란에 반영내용을 기재한다.

⑥ 기업공개의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일로부터 과거 3년간 주관회사로서 기업 공개에 참여한 기업의 주가수익률을 기재한다.

#### 【 작성지침 】

i. 기업공개의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일로부터 최근 3년간 대표주관회사로서 기업공개에 참여한 기업의 기간별 수익률은 다음의 표를 참조하여 기재한다.

(단위: 원.%)

												_, , , , ,
상장 회사명	소속시 장	상장 일	공모 희망가		공모가	수익률						
집사임		_	하단	상단		구분	상장일	1개월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공모주 식						
						(A)						
						시장지						
						수						
						(B)						
						시장지						
						수 초과						
						(A-B)						
:												
구분		상진	당회사의	수	평균 수익률							
유가증권시장						시장지						
코=	코스닥시장 합계					수 초과						

- 공모주식 수익률은 공모가격 대비 무상증자, 액면분할 등의 영향을 반영한 각 기간 말일 수정종가의 증감율을 기재한다.
- 시장지수 수익율은 상장주식이 소속된 증권시장의 종합주가지수 수익률을 기재하되 상장일 직전 거래일 시장지수 대비 각 기간 말일 시장지수의 증감율을 기재한다.
- 평균 수익률은 시장별 상장회사의 시장지수 초과 수익률의 산술평균을 기재한다.

# 제5절 자금의 사용목적

제2-5-1조(자금의 사용목적) ① 조달하는 자금을 모집(매출)총액과 발행비용 및 이를 차감한 순조달액으로 구분하고, 다음의 표에 따라 자금의 주된 용도와 각용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재한다. 채무증권의 자금의 사용목적은 회차 별로 작성하고, ESG채권의 경우 비고란에 ESG채권 종류를 '녹색채권', '사회적채

권', '지속가능채권', '지속가능연계채권'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 자금의 사용목적

(기준일 : )							(단위 : )
시설자금	영업양수 자금	운영자금	채무상환 자금	타법인 증권취득 자금	기타	Я	비고

- i. 발행비용은 인수대가, 수수료, 증권예탁등록료, 공모관련 각종 자문료, 실사비용, 증권 발행비용, 인쇄비 등 공모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항목별로 기재한다. 증권신고서 제출 시점에 발행비용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예상 발행비용 및 예상 순조달금액을 기재 하고, 공모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로 기재한다.
- ii. 당초 계획에 비해 실제 조달되는 자금의 규모가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한 자금사용처의 우선순위를 표시하고, 부족분에 대한 회사의 계획을 별도로 기재한다. 실제 조달자금이 예정금액보다 크게 적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예 : 총액인수 또는 잔액인수계약 체결 등) 이 내용을 기재할 필요는 없다.
- iii. 조달자금이 해당 용도를 충당하는데 크게 부족하여 추가로 자금을 조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필요한 자금규모와 조달방법을 기술한다.
- iv. 자금의 사용 목적은 시설자금, 영업양수자금, 운영자금, 채무상환자금,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기타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 가. 시설자금 : 공장건설, 설비매입, 유형자산 취득 등인 경우에 기재한다.
  - 나. 영업양수자금 : 다른 사업의 인수에 사용되는 경우에 기재한다.
  - 다. 운영자금 : 원재료 매입, 매입채무의 상환, 임금 지급, 무형자산취득 및 해외법인운영 등인 경우에 기재한다.
  - 라. 채무상환자금 : 대출금 또는 기 발행된 회사채 상환 등인 경우에 기재한다.
  - 마. 타법인증권취득자금 : 타법인 출자, 회사채 매입 등인 경우에 기재한다.
  - 바. 기타 : 가 내지 마 이외의 용도인 경우에 기재하고, 세부 사용목적별 금액은 표 하단 에 별도로 기재한다.
- v. 시설투자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투자의 개요(사업의 명칭, 생산규모 등), 투자기간, 총 투자금액(이미 조달한 금액 및 조달방법과 향후 조달할 금액 및 조달방법을 포함한다) 등을 기재한다.

- vi. 원재료 매입 등에 사용하는 경우 거래처. 사용시기. 금액 및 내용 등을 기재한다.
- vii. 특정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환할 채무의 채권자, 만기 및 금리를 기재한다. 만기일로부터 상당기간 전에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술하고, 상환시 추가적으로 지급해야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기재한다. 상환하는 채무가 최근 1년내에 발생한 것으로서 운영자금 이외의 용도에 사용된 경우에는 그 용도를 기술한다.
- viii. 조달자금이 일상적 영업과정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자산의 취득 또는 다른 사업의 인수에 사용되는 경우, 거래상대방과 자산(사업)의 내용 및 취득(인수)가격의 산정근거를 기재한다. 취득(인수)가격의 산정근거를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의 의견에 근거하여 기재하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이름을 기재하며, 산정근거가 다른 공시서류에 공시·첨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략적으로 기재하고 해당 공시서류를 명시하여 참조하게 할 수 있다.
- ix. 공모후 상당기간이 지난 후에 조달자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시기까지의 조달자금 운용방법을 기재한다.
- x. 조달자금의 사용처가 특정 사유 또는 상황 발생시 변동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또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대체 사용처를 명시한다.
- xi. 초과배정옵션에 따라 추가로 조달될 수 있는 자금은 발행비용 및 자금용도를 별도로 기재한다.
- ② 회사로 유입되는 자금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재하고 발행비용과 이를 부담하는 자를 기재한다.
- ③ 국내발행 외화채권의 경우에는 표시통화(USD, EUR, GBP, JPY, CNY, 기타), 표시통화기준 발행규모, 사용지역(국내 또는 해외), 사용국가(미국, 일본 등), 원화 교환 예정 여부(예정 또는 미예정), 인수기관명 등을 추가하여 기재하되,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을 표시한다.
- ④ ESG채권의 경우에는 ESG채권 종류를 명시하고, 조달자금의 사용 목적 사업 및 프로젝트(이하 "ESG사업 등"이라 한다)의 내용과 ESG사업 등의 환경개선 또는 사회적 가치 창출 효과(이하 "ESG 개선효과"라 한다)에 대해 구체적

으로 기재한다. 다만, 이러한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한 경우에는 동 내용을 개략적으로 기재하고 해당 첨부서류를 명시하여 참조하게 할 수 있다.

제2-5-2조(기업인수목적회사의 주권발행대금의 증권금융회사 또는 신탁업자에 대한 예치 또는 신탁) 기업인수목적회사가 주권발행대금을 증권금융회사 또는 신탁업자에 예치·신탁하는 시기와 조건, 예치·신탁계약의 주된 내용, 예치자금 등의 액수, 예치자금등의 발행가액 대비비율, 예치자금등의 인출·담보제공 제한 및 합병등기가 완료되기 전 예치자금등에 대한 운용상의 제한 등을 기재한다.

#### 【작성 지침】

인수인과 초과배정옵션계약 등 특수한 인수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인수인이 추가배정을 할수 있는 경우에는 예치자금등에 대한 추가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구분하여 기재한다.

## 제6절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2-6-1조(시장조성 등) 안정조작이나 시장조성 등의 거래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의 성격과 그 거래가 공모증권의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 해당 거래가 행해질 증권시장과 이에 관한 공시방법 등을 기재한다.

#### 【 작성지침 】

- i. 시장조성 또는 안정조작을 하려는 자, 시장조성 또는 안정조작을 할 증권시장, 기간, 공시방법 등의 내용을 기재한다.
- ii. 특정 가격대에서 시장조성 또는 안정조작활동이 개시되거나 종료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가격대를 기재한다.
- iii. 시장조성 또는 안정조작을 통한 매입물량을 일정 범위내로 제한하려는 경우나 계획된 시장조성가격 또는 안정조작가격이 변동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재한다.
- 제2-6-2조(이자보상비율 등) ① 채무증권을 공모하는 경우에는 공시대상기간 중의 순이자비용에 대한 영업이익의 비율을, 배당우선주식을 공모하는 경우에는 순이자비용과 우선배당액을 합한 금액에 대한 영업이익의 비율을 기재한다. 다만, 회사가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이자 또는 배당에 대한 지급능력을 보여주는 보다 적절한 지표를 기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표의 산정방법과 그 지표를 사용하게 된 사유를 함께 기술한다.
  - 1.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
  - 2. 건설업 등 투자회수기간이 긴 회사의 경우
  - 3. 해당 증권의 현금흐름 특성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 등으로 이자보 상비율이 발행회사의 지급능력을 보여주는 데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객관 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 작성지침 】

외국기업은 회사가 채택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비율을 산출하되, 국제회계기준 또는 미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처리기준이 아닌 회계기준을 채택한 경우 국내의 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수치를 함께 기재한다.

② 제1항의 비율이 1미만인 경우에는 원리금 상환 또는 배당에 대비하기 위한 회사의 계획이나 방침을 함께 기술한다.

제2-6-3조(미상환 채무증권) 채무증권을 공모하는 경우에는 채무증권의 유형별로 미상환 채무증권의 내용을 기재한다.

#### 【 작성지침 】

- i. 미상환 사채(단기사채등 제외), 미상환 기업어음, 단기사채등, 그 밖의 미상환 채무증권 등으로 구분하고, 사채의 경우에는 종류, 발행일자, 권면(전자등록)총액, 이자율, 만기일 등을 기재하고, 기업어음의 경우에는 잔액 등을 기재한다.
- ii. 미상환 채무증권의 내용은 아래에 제시된 표를 참조하여 기재할 수 있으며, 효과적인 정보제공을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표를 이용할 수 있다.

#### 가. 미상환 사채

(기준일 : )

· · = = /				\ <u> </u>
종 류	발행일자	권면(전자등록)총액	이자율	만기일
제××회 무보증전환사채				
 제××회 무보증사채				
 합 계	_		_	_

■ 풋옵션 부여 등으로 조기상환 의무가 존재하는 경우 그 내용을 추가하여 기재한다. 자본으로 인정받기 위해 발행된 채무증권의 경우 만기, 이자지급, 조기상환, 원리금 감면 등의 발행조건 관련 투자리스크 판단을 위해 제5-7-2조 제4항에 기재된 내용을 참조하도록 기재한다.

### 나. 미상환 기업어음

(기준일 : )

기초잔액(A)	기말잔액(B)	증감(B-A)	증감원인	

■ 기초잔액은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시점의 발행잔액을, 기말잔액은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의 발행잔액을 기재한다.

## 다. 단기사채등

(기준일 : )

(VICE · )								
발행한도	잔여한도	기말잔액(B)	증감(B-A)	기초잔액(A)				

■ 기초잔액은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시점의 발행잔액을, 기말잔액은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의 발행잔액을 기재한다.

제2-6-4조(신용평가) ① 신용평가전문기관으로부터 증권의 공모와 관련하여 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신용평가기관의 명칭, 평가일, 신용등급 및 평가의견을 기재하되, 신용평가계약을 해지(평가계약의 해제, 철회, 취소를 포함한다)한 사실이 있는 경우 동 신용평가기관의 명칭, 평가계약일, 해지일과 그 사유도 기재한다.

### 【 작성지침 】

- i. 신용등급은 각 신용평가전문기관의 신용등급체계와 해당 신용등급에 부여된 의미를 설명하고, 동종 증권에 대한 직전 신용등급이 존재하는 경우 신용등급과 평가일을 추가로 기재한다.
- ii. 평가의견은 신용등급을 부여하는데 중요하게 고려된 요소를 중심으로 요약해서 기재한다.
- ② 공모증권과 관련하여 신용평가전문기관이 정기평가를 실시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평가 예상시기, 정기평가 결과의 공시시점 및 공시방법을 기재한다.
- ③ 채무증권의 경우 공모증권과 관련하여 신용평가전문기관으로부터 신용평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 제2-6-5조(변호사의 법률검토의견) ① 투자계약증권을 공모하는 경우에는 투자계약증권 해당여부, 공동사업구조의 적법성 또는 법률적 위험,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투자계약 및 배분에 관한 사항이 관련 법규 및 계약관계 서류에 비추어볼 때 진실하고 정확하다는 변호사의 법률검토의견을 요약 기재하고 전문은 첨부한다.

## 【작성 지침】

- i 투자계약증권 관련 법률검토의견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 ·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 해당여부
  - · 공동사업의 목적이 다른 증권발행으로 가능한지 여부 및 (다른 증권 발행이 가능할 경우) 투자계약증권 발행으로 인해 투자자 보호, 수익구조 등에 미치는 영향
  - · 공동사업 구조가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
  - · 공동사업 구조상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소지
  - · 투자계약 관계 서류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 ㆍ동 신고서에 기재된 투자자의 권리가 관련법규 또는 계약에 따라 보장되는지 여부

- ② 외국기업이 증권을 공모하는 경우에는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이 적법하다는 것과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외국의 법규와 제도에 관한 내용이 진실하고 정확하다는 현지변호사 및 국내변호사의 법률검토의견을 요약 기재하고 전문은 첨부한다.
- 제2-6-6조(기업인수목적회사의 예치자금등의 지급) 기업인수목적회사가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제5항제2호에 따라 예치자금등을 주주에게 지급하는 내용을 기재한다.

### 【작성 지침】

- i. 주주에게 예치자금등을 지급하는 사유, 절차, 시기,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등을 기재한다.
- ii. 1주당 지급예상금액을 기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굵은 글씨로 예상금액을 산정하는 데 사용한 가정, 실제 1주당 지급금액이 1주당 지급예상금액과 달라질 수 있다는 내용과 그 사유를 기재한다.
- iii. 기업인수목적회사가 예치자금등을 주주에게 지급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 (우발채무 발생, 파산신청 등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별로 주주에게 지급하는 것에 대한 영향의 유무를 기재하고, 실제 사유발생시 지급예상금액, 지급절차, 지급시기 등을 기재한다.
- iv. 예치자금등을 주주에게 지급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경우 그 내용을 기재한다.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을 기재한다.
- v. 주주에게 지급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주주에게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경우 그 내용을 기재한다. 그러한 방안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을 기재한다.
- 제2-6-7조(재무구조개선약정 미체결에 관한 사항) 최근 3사업연도 이내 주채무 계열로 선정된 기업집단에 소속된 사실이 있고, 해당 주채무계열의 주기업체(「은행업감독규정」제79조에 따른 주채무계열 및 주기업체를 말함)가 주채권은 행(「은행업감독규정」 제80조에 따른 주채권은행을 말함)으로부터 재무구조개

선약정(「은행업감독규정」 제82조 및「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2조에 따른 재무구조개선약정을 말함) 체결대상으로 선정되었음에도 약정체결 기한 내에 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사항을 기재한다.

### 【 작성지침 】

계열명 및 주채무계열의 주기업체, 주채권은행, 재무구조개선약정 약정체결 기한, 약정 미체결 사유 및 그로 인한 재무위험 및 자금조달 위험 등을 기재

제2-6-8조(ESG채권에 관한 사항) ESG채권의 경우에는 ESG채권의 종류, 준거기 준, 관리체계(자금용도, 투자대상 사업 등의 평가 및 선정 절차, 조달자금 관리, 사후보고),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다만, 동 내용이 공시서류의 다른 부분에 기재되어 있거나, 이러한 사항이 포함된 서류가 첨부된 경우에는 이를 개략적으로 기재하고 해당 첨부서류를 명시하여 참조하게 할 수 있다.

## 【 작성지침 】

i. ESG채권 종류는 '녹색채권', '사회적채권', '지속가능채권', '지속가능연계채권'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준거기준은 ESG채권 발행을 위해 준수한 원칙 또는 가이드라인의 명칭과 제정기관을 기재하되, 2개 이상의 준거기준을 준수한 경우 해당 준거기준을 모두 기재한다.

#### (작성예시)

국제자본시장협회(International Capital Market Association)의 녹색채권원칙(Green Bond Principles)

국제자본시장협회(International Capital Market Association)의 사회적채권원칙(Social Bond Principles)

국제자본시장협회(International Capital Market Association)의 지속가능채권가이드라인 (Sustainability Bond Guidelines)

국제자본시장협회(International Capital Market Association)의 지속가능연계채권원칙 (Sustainability-Linked Bond Principles)

금융위 및 환경부 등의 녹색채권가이드라인

- ii. 관리체계는 자금용도, 투자대상 사업 등의 평가 및 선정 절차, 조달자금 관리, 사후보고 등을 기재한다.
  - 가. 자금용도는 조달자금을 사용할 ESG사업 등의 내용과 ESG 개선 효과에 대해 기재한다.
  - 나. 사업 평가 및 선정 절차는 조달자금을 사용하려는 ESG사업 등이 환경 친화적인지

- 또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지 판단하기 위한 발행인의 평가기준과 의사결정 절차 등을 기재한다.
- 다. 조달자금 관리는 조달자금이 ESG사업 등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추적 및 관리하기 위한 내부 통제 절차를 기재한다. 다만, 지속가능연계채권의 경우 조달자금의 사용 목적과 회사의 ESG목표와의 관련성 등을 중심으로 기재한다.
- 라. 사후보고는 채무증권 발행 이후 조달자금 사용 내역, 미사용 금액 사용시기, ESG 개선효과 등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 및 공개할 시기 및 방법 등을 기재한다.
- iii. 외부평가는 발행인의 ESG채권 관리체계가 준거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해 평가한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외부평가보고서 상 외부평가 유형과 평가결과(검토의견, 검증결과, 인증결과, 평가 등급 등) 등을 기재한다.
- iv. ESG채권에 관한 사항은 아래에 제시된 표를 참조하여 기재할 수 있으며, 효과적인 정보 제공을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표를 이용할 수 있다.

	항 목	내 용
	회 차	
ES	G채권 종류	
	준거기준	
	자금용도	
관리체계	사업 평가 및 선정 절차	
선디세게	조달자금 관리	
	사후보고	
	외부평가기관	
외부평가	평가유형	
	평가결과	

제2-6-9조(투자계약증권 관련 투자자 보호) ① 투자계약증권의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공동사업의 내용, 참가자간의 관계, 계약상 권리내용, 발행 후 공시방법에 대하여 설명하되,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 1. 용어의 정의

### 【 작성지침 】

증권신고서에 반복하여 기재되는 각종 법률용어, 전문용어 등을 투자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당 용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기재한다.

# 2. 공동사업의 내용

- 2-1. 공동사업의 개요
- 2-2. 공동사업의 세부 구조
- 2-3. 공동사업의 내용 및 향후계획
- 2-4. 공동사업 배당(수익지급)에 관한 사항

- i. 공동사업의 개요는 공동사업의 내용에 대한 핵심내용을 기재하는 항목으로 제4-2-2조를 준용한다.
- ii. 공동사업의 세부 구조는 공동사업의 거래구조에 대한 내용, 공동사업과 관련된 참가자에 대해 기재하고, 구조가 복잡한 경우 투자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도표 등을 이용하여 자세히 기재한다.
- iii. 공동사업의 내용 및 향후계획은 공동사업에 구체적 내용 및 향후 전망에 대한 내용을 기재한다. 단, 계획·전망 등은 객관적인 자료와 사실 또는 합리적 추론과 분석에 근거하여 기재하되, 투자자 등 이용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이를 유도할 우려가 있는 표현 등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 iv. 공동사업 배당(수익지급)에 관한 사항은 공동사업의 성과에 따라 투자자에게 배당(수익지급)되는 투자계약상의 내용을 기재한다. 이때 과거 배당에 관한 이력을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하되, 표 등은 공동사업 구조에 따라 수정하여 변경할 수 있다. 내용에 대한 부가적 인 설명이나 산출방법 등은 표 하단에 별도로 기재한다.

과거 공동사업 이력

## (단위: 원, %)

공동사업명	취득일	취득금액	매각일	매각금액	사업기간	수익률
OO공동사업						

- 3. 공동사업자에 관한 사항
  - 3-1. 공동사업자의 개요
  - 3-2. 공동사업자의 연혁
  - 3-3. 공동사업자 재무정보 등에 관한 사항
  - 3-4. 공동사업자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 3-5. 공동사업 담당인력

# 3-6. 공동사업자의 사업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에 관한 사항

### 【 작성지침 】

- i. 공동사업자중 별지서식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에 상세 내용이 기재된 사업자(발행인)는 해당 기재사항이 있음을 안내함으로써 동 조에서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 ii. 공동사업자의 개요는 투자자가 공동사업자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주요 사업, 연혁, 재무정보, 조직구성 등을 공동사업자별로 5문단 내외로 작성한다.
- iii. 공동사업자의 연혁은 투자자가 공동사업자의 변동사항을 알 수 있도록 공동사업자의 최초설립일 및 그 이후 주요 변동사항에 대하여 일자와 주요사항을 간략히 기재한다.
- vi. 공동사업자 재무정보 등에 관한 사항은 제5-1-1조~제5-7-3조를 준용하되 공동사업자 별로 기재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에 의하여 기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히고 그에 준하는 사항을 기재하거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기재를 생략하는 경우 등에는 투자자가 투자판단에 더욱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는 유의사항을 추가로 기재한다.
- v. 공동사업자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은 제9-1-1조~제9-2-2조를 준용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에 의하여 기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히고 그에 준하는 사항을 기 재하거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기재를 생략하는 경우 등에는 투자자가 투자판단에 더욱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는 유의사항을 추가로 기재한다.
- vi. 공동사업 담당인력과 관련하여 투자계약증권의 기초자산의 매입, 관리, 처분 등 공동사업의 수익 창출 관련 업무를 주된 업무로 담당하는 인력(이하 '운영인력')과 투자자 보호를 주된 업무로 담당하는 인력(이하 '투자자보호 인력')의 정보를 기재한다.
  - 다음의 표를 참조하여 기재하되, 효과적인 정보제공을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표를 이용할 수 있다.

담당업무 (상세업무)	성명 (생년)	소속·직급	업무경력	자격증	비고
운영인력	홍길동	영업팀 부장	1.○회사 3년(영업팀)	감정	책임
(기초자산 처분)	(1980)		2.○회사 4년(영업팀)	평가사	담당자

가. (작성대상 인력) 운영인력의 경우 해당 투자계약증권의 공동사업과 관련된 인력을

기재하야 하며, 동일한 상세업무를 복수의 인력이 담당하는 경우 비고란에 책임담 당자 여부를 별도 기재한다.

- 나. (업무 경력) 공시서류 작성기준일 현재 각 인력의 과거 10년간 근무회사, 주요 담당업무 및 재직기간 등을 기재한다. 이때 경력사항은 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기재한다.
- 다. (자격증) 투자계약증권 업무 수행과 연관되는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 기재한다.
- 라. (비고) 책임담당자 여부, 투자계약증권 관련 업무 수행 관련 학위 취득사항 등을 기재한다.
- vii. 공동사업자의 사업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에 관한 사항에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 가. (사업전략) 공동사업자의 사업전략은 중요성 순서에 따라 기술한다. 이 경우 사업전략이란 공동사업 목적의 실행을 위해 사용되는 사업방침·기법 등을 말하며, 중요성이란 사업전략에 따라 투자하게 되는 자산의 규모 및 이에 따른 위험 규모 또는 손실 가능성의 크기를 말한다.
  - 나. (위험관리)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은 사업전략과 관련된 위험에 대한 관리방법 및 관리체계 등에 대하여 자세히 기재한다. 특히, 외화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환혜지 여부, 환혜지 방법, 목표 혜지비율 및 환혜지의 장단점, 환혜지의 비용(산출이 불가능하여 기재가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기재) 및 수익률에 미치는 효과 등을 기재한다.
  - 다. (수익구조) 수익구조에 관한 사항은 투자자가 얻을 수 있는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는 과정을 기재하고, 특별한 형태의 사업구조를 갖는 경우 투자자의 투자판단을 돕기 위해 도표 또는 그래프 등을 이용하여 자세히 기재한다.

## 4. 투자자 권리에 관한 사항

- 4-1. 투자자총회 및 의결권
- 4-2. 투자수익 등 분배
- 4-3. 장부·서류의 열람 및 사본청구권
- 4-4. 투자대상 매각에 따른 청산업무 처리절차
- 4-5. 발행인 등의 손해배상책임
- 4-6. 재판관할 등

## 4-7.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 작성지침 】

- i. 투자자총회 및 의결권은 투자자총회와 관련하여 투자자총회의 구성·소집, 의결사항·방법(서 면에 의한 의결권행사방법 및 간주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포함) 등에 대하여 기재한다.
- ii. 투자수익 등 분배는 투자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기초자산 매각시 발생하는 처분손익에 대하여 투자자에 대한 지급 가능여부와 지급가능 시기, 금액 등에 대한 기준을 기재한다.
- iii. 장부·서류의 열람 및 사본청구권은 투자자가 발행인 또는 공동사업자에 대하여 열람이 나 사본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서류의 종류 및 청구방법에 대하여 기재한다.
- iv. 투자대상 매각에 따른 청산업무 처리절차는 투자대상의 매각을 진행하기 위해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투자자총회 결의, 발행인의 공고, 청산 종결 등)을 기재하며, 이때 투자자가 가지는 권리와 발행인에게 위임되는 중요한 권리의무가 있다면 이를 상세히 기재한다.
- v. 발행인 등의 손해배상책임은 법령 또는 투자계약상 발행인 또는 공동사업자, 외부평가 기관 등의 귀책사유로 인해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발행인 등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사실과 그 내용에 대하여 기재한다.
- vi. 재판관할은 공동사업자 또는 투자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재판을 관할하는 법원 에 관한 사항과 기타 투자자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다.
- vii.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에 투자자는 각 거래구조(예:채권적청구권, 소유권등)별로 서로 다른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음을 설명하고, 「민법」, 「신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투자자가 갖는 권리 및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기재한다.

## 5. 투자자 보호장치에 관한 사항

- 5-1. 투자자별 공유지분(소유권) 입증 및 기초자산 보관 위치 확인수단 제공 또는 발행인의 도산위험과 법적절연 관련
- 5-2. 투자자 예치금 보관 관련
- 5-3. 유통시장 관련

- 5-4. 투자판단에 중요한 사항에 대한 설명자료 및 광고 기준 마련 관련
- 5-5. 투자자 피해 보상 체계 및 분쟁처리절차
- 5-6. 회사의 사업중단시 독립된 제3자의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 i. 투자자가 투자계약증권 및 기초자산의 소유권자임을 법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방법과 기초 자산의 보관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기재한다. 또는 투자자가 공동사업자의 도산 위험에 대해 법적절연되는지 여부를 기재하며, 소유권 입증 또는 도산절연이 제대로 이루 어지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투자위험을 상세히 기재한다.
- ii. 투자자예치금의 경우 외부 금융기관의 투자자 명의 계좌에 별도예치 또는 신탁 등 관리방법을 기재한다.
- iii. 유통시장의 경우 증선위 결정에 의한 유통시장 폐쇄 및 폐쇄에 따른 투자자 보호방안 등을 기재한다.
- iv. 투자판단에 필요한 중요사항(예: 가치평가방법, 투자위험, 매각기간 등)을 동 증권신고서 등에 적정하게 기재하고 있는지 여부와 발행인의 광고기준을 기재한다.
- v. 투자자 피해보상체계는 발행회사 또는 공동사업자의 과실로 인하여 투자자의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회사의 손해배상 지급기준 등 보상체계를 기재하며, 분쟁처리절차는 분쟁처리기구의 구성, 그 운영에 관한 사항과 자체 민원 처리 내규 등을 기재한다. 이때, 분쟁처리기구에 외부전문위원이 없을 경우 그 사유에 대해서 상세히 기재한다.
- vi. 회사의 사업중단시 독립된 제3자의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은 회사의 사업중단시 독립된 제3자의 투자대상의 보관·관리·처분·정산 업무 수행 체계 등을 상세히 기재한다.
- vii. 기초자산이 없는 투자계약증권 등 상기 i .~ v .중 일부를 적용시키기 곤란한 내용이 있을 경우, 해당 투자계약증권의 특성에 준하는 내용을 작성한다.
- viii. 상기 i.~vii. 와 관련하여, 업계 표준안 또는 가이드라인(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준수 여부와 준수 또는 미준수로 인해 투자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등을 상세히 기재한다. 이때 미준수 사실 및 미준수로 인해 투자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은 붉은색으로 일반글자보다 2 pt이상 크고 굵게 기재한다.
  - 조각투자 관련 투자계약증권 : 증권선물위원회('22.11.29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등)가 제 시한 사업재편 요건 관련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 여부 등

- 6. 발행후 공시에 관한 사항
  - 6-1. 정기공시
  - 6-2. 수시공시
  - 6-3. 기타공시

- i. (정기공시) 투자계약증권 또는 공동사업자의 주요 현황 등을 투자자가 정기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투자자에게 제공 또는 공시하는 내용(예:기초자산에 대한 보관·관리보고 서. 발행인의 결산서류). 공시 방법. 공시 주기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 ii. (수시공시) 투자계약증권 또는 공동사업자 관련 변동사항이 생기는 경우, 투자자에게 제공 또는 공시하는 기준, 공시하는 내용, 공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 iii. (기타공시) 상기 i.~ ii. 이외에 투자자에게 제공 또는 공시하는 기준(예:공동사업 또는 발행인 관련 풍문·보도가 있을 경우), 공시하는 내용, 공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 iv. 상기 i.~iii 관련 공시체계를 마련하지 않을 경우, 공시체계를 마련하지 않은 사유 및 그로 인해 투자자 보호 등에 미치는 영향을 상세히 기재한다. 해당 내용은 붉은색으로 일반글자보다 2 pt이상 크고 굵게 기재한다.
- 7. 추가 첨부서류에 관한 사항

- i. 투자계약증권 공모발행과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투자자 보호를 위해 발행인이 추가로 첨부할 필요가 있는 서류목록을 기재하고, 해당 내용은 첨부서류로 추가한다.
  - 가. 최근 사업연도\*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
    - \* 최근 반기, 분기, 월말 기준 감사보고서로도 제출할수 있으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의 경우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포함한다.
  - 나. 상기 감사보고서 기준일 이후 분·반기 결산일이 지난 경우 : 분·반기 검토보고서 추가
- ii. 상기 i.가 및 나 관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첨부서류를 추가하지 않은 사

유 및 그로 인해 투자자 보호 등에 미치는 영향을 상세히 기재한다. 해당 내용은 붉은 색으로 일반글자보다 2 pt이상 크고 굵게 기재한다.

- 8. 이해상충 가능성 및 방지체계
- 8-1. 투자자-공동사업자간
- 8-2. 투자자-다른 투자자간

### 【 작성지침 】

- i. (투자자-공동사업자간) 투자계약증권 제반 업무와 관련하여 투자자와 공동사업자(계열회사 등 공동사업자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간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가능성을 설명하고, 이해상충을 관리하기 절차 및 수단을 기재한다.
- ii. (투자자-다른 투자자간) 투자계약증권 제반 업무와 관련하여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간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가능성을 설명하고, 이해상충을 관리하기 절차 및 수단을 기재한다.
- iii. 상기 i.~ii 와 관련한 이해상충방지 체계를 마련하지 않을 경우, 이로 인해 투자자에 미치는 영향 등을 상세히 기재한다. 해당내용은 붉은색으로 일반글자보다 2 pt이상 크고 굵게 기재한다.
- 9. 본 투자계약증권 투자가 적정하지 않을 수 있는 투자자 유형

### 【 작성지침 】

발행인의 판단으로 투자계약증권 투자가 적정하지 않을 수 있는 일반투자자 유형을 제시하고, 이를 제시한 합리적인 근거(예:국내 유사사례, 해외 주요국 사례, 신뢰가능한 통계적 자료등)에 대해 기재한다.

(예시) 본 투자계약증권은 높은 수준의 위험을 수반하며 투자금 전체의 손실이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또한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성격 및 비시장성에 따라 기초자산의 처분 전까지는 본 증권의 현금화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는 일반투자자는 여유자산의 10%\*를 초과하여 본 투자계약증권 등 상장되지 않는 비시장성자산에 투자하는 것은 자제하시길 당부드립니다.

\* 미국·영국의 경우 일반투자자가 비상장증권 등을 투자하려는 경우, 투자자 순자산의 10% 이내에서만 가능

# 제3장 회사의 개요

# 제1절 회사의 개요

제3-1-1조(회사의 개요) 회사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하되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연결대상 종속회사 개황(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주권상장법인이 사업 보고서, 분기·반기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

#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요약)

(단위: 사)

구분		주요			
十七	기초	증가	감소	기말	종속회사수
 상장					
 비상장					
 합계					

1-1. 연결대상회사의 변동내용

구 분	자회사	사 유
신규		
연결		
 연결		
제외		

- 2. 회사의 법적·상업적 명칭
- 3. 설립일자 및 존속기간(영구적으로 존속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4.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 5. 회사사업 영위의 근거가 되는 법률(해당하는 경우에만 기재한다)
- 6. 중소기업 해당 여부

중소기업 해	당 여부	
	벤처기업 해당 여부	
중견기업 해	당 여부	

7. 대한민국에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름(대표자), 주소 및 연락처

- 8. 주요 사업의 내용(주요제품 및 서비스 등을 포함한다) 및 향후 추진하려는 신규사업에 관한 간략한 설명
- 9. 삭제<2021.7.13>
- 10.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 11. 「상법」 제290조에 따른 변태설립사항(기업인수목적회사로서 변태설립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12. 회사의 주권상장(또는 등록·지정) 및 특례상장에 관한 사항

주권상장(또는 등록·지정) 현황	주권상장(또는 등록·지정)일자	특례상장 유형

- i. "연결대상 종속회사 개황"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참고하여 기재한다.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을 표시한다.
- 가. 연결재무제표상 연결대상이 되는 종속회사 전부의 현황을 기재한 표는 제11장의2(상 세표에 관한 사항)에 따라 상세표에 기재하고, 동 사실을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요약)"표 하단에 표시한다.
- 나. '연결대상회사수'는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개시일부터 공시서류작 성기준일까지의 변동현황을 기재한다.
- 다. 삭제<2021.7.13>
- 라. '주요종속회사 수'에는 공시서류작성기준일 현재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속회사 의 수를 기재한다.
- (1) 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지배회사 자산총액의 10% 이상인 종속회사
- (2) 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인 종속회사
- ii. "연결대상회사의 변동내용"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연결재무정보에 포함된 회사를 전년도와 비교하여 제시한 후 다음의 표를 참고하여 변동사유를 설명한다.

구 분	자회사	사 유
 신규	А	당기 중 신설
연결	В	당기 중 지분 추가 취득으로 관계기업에서 자회사로 편입
 연결	С	투자주식 처분 [매각 상대방 : OOO(특수관계자 여부)]
제외	D	종속기업 유상증자에 따른 지분율 하락

- iii. "중소기업 등 해당 여부"중 '벤처기업 해당 여부'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 해당 여부를 기재하며, '중견기업 해당 여부'는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해당여부를 기재한다.
- iv. "주요 사업의 내용"은 투자자가 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개략적인 이해를 할수 있도록 회사의 주요제품 및 서비스, 각각의 매출비중(예시: 전체 매출액의 10%이상을 차지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 등), 주요 거래처 등을 포함하여 간략히(300자 내외, 공백 포함) 서술식으로 기재하되, 투자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한다. 또한, 상세한 내용은 동 공시서류의 '사업의 내용'을 참조하라는 내용을 기재한다.
- v. 주요 사업의 내용 기재시 지주회사는 주요자회사를 포함하여 기재한다.
- vi. K-IFRS(외국법인이 적용하는 IFRS 또는 US-GAAP을 포함)를 적용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주권상장법인은 종속회사를 포함하여 주요 사업의 내용을 기재하되, '주요 종속회사'(최근사업연도말 별도(개별)재무제표상 자산총액이 지배회사 별도(개별)재무제표상 자산총액의 10% 이상이거나 750억원 이상인 종속회사를 말함)의 내용은 반드시 기재한다. 이 경우 연결실체 전체의 입장에서 기재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종속회사의 명칭 및 종속회사가 지배회사에 미치는 영향도 기재한다.
- vii. 공시대상기간동안 신용평가전문기관으로부터 신용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평가일, 신용평가 전문기관명, 신용등급(신용평가전문기관의 신용등급체계와 해당 신용등급에 부여된 의미를 설명한다) 등을 기재한다.
- viii. 기업인수목적회사의 경우 「상법」 제290조에 따른 변태설립사항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변태설립사항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 ix. "회사의 주권상장(또는 등록·지정) 및 특례상장에 관한 사항"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참고하여 기재한다.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을 표시한다.
- 가. '주권상장(또는 등록·지정)현황'은 '유가증권시장 상장', '코스닥시장 상장', '코넥스시장 상장', 'K-OTC 등록·지정', '해당사항 없음', '기타'중 하나를 선택하고, 기타의 경우 그 내용을 별도로 기재한다.
- 나. '주권상장(또는 등록·지정)일자'에는 회사의 주권이 현재 주권이 상장(또는 등록·지정)되어 있는 시장에 상장(또는 등록·지정)된 일자를 기재한다.
- 다. '특례상장 현황'에는 '기술성장기업의 코스닥시장 상장', '이익미실현기업의 코스닥시장 상장', '코넥스기업의 코스닥시장 신속이전상장', '해당사항 없음', '기타'중 하나를 선택 하고, 기타의 경우 그 내용을 별도로 기재한다.

# 제2절 회사의 연혁

제3-2-1조(회사의 연혁) 공시대상기간동안에 발생한 회사의 주된 변동내용을 기재한다.

## 경영진 및 감사의 중요한 변동

버두이기	ㅜ 눇 H	선	임기만료	
변동일자 주총명		신규	재선임	또는 해임

- i. 회사의 연혁을 기재함에 있어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재한다.
  - 가. 회사의 본점소재지 및 그 변경
  - 나. 경영진 및 감사의 중요한 변동(단, 대표이사의 변동, 임원으로서 최대주주인자의 변동, 임원으로서 주요주주인자의 변동, 등기임원의 1/3이상 변동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다. 최대주주의 변동
  - 라. 상호의 변경
  - 마. 회사가 화의, 회사정리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를 밟은 적이 있거나 현재 진행 중인 경우 그 내용과 결과
  - 바. 회사가 합병등을 한 경우 그 내용
  - 사. 회사의 업종 또는 주된 사업의 변화
  - 아. 그 밖에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의 발생내용
- ii. i의 라부터 아까지의 항목 기재시 지주회사는 주요자회사를 포함하여 기재한다.
- iii. i 의 라부터 아까지의 항목에 관하여는 K-IFRS(외국법인이 적용하는 IFRS 또는 US-GAAP을 포함)를 적용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주권상장법인은 종속회사를 포함하여 기재하되, '주요종속회사'(최근사업연도말 별도(개별)재무제표상 자산총액이 지배회사 별도(개별)재무제표상 자산총액의 10% 이상이거나 750억원 이상인 종속회사를 말함)의 내용은 반드시 기재한다. 이 경우 연결실체 전체의 입장에서 기재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종속회사의 명칭 및 종속회사가 지배회사에 미치는 영향도 기재한다.
- iv. "경영진의 중요한 변동"표 중 '변동일자'에는 주총개최일을 기재하고, '주총종류'에는 정기주총 또는 임시주총중 하나를 선택하며, '선임' 또는 '임기만료 또는 해임'에는 대표이사인 경우 대표이사 000, 최대주주인 임원의 경우 최대주주인 임원 000, 주요주주인 임원의 경우 자외이사 000, 사내이사 000, 기타비상무이사 000 감사 000(상근하는 경우 상근감사 000)형태로 기재한다.

# 제3절 자본금 변동

제3-3-1조(자본금 변동현황) ① 공시대상기간중 자본금의 변동추이를 다음의 표를 이용하여 기재한다.

# 자본금 변동추이

(단위 : 주, 원)

종류	구분	당기말	xx기 (20xx년말)	xx기 (20xx년말)
	발행주식총수			
보통주	액면금액			
	자본금			
	발행주식총수			
우선주	액면금액			
	자본금			
	발행주식총수			
기타	액면금액			
	자본금			
합 계	자본금			

- ② 제출대상법인이 소규모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제1항</u>에서 정한 사항을 기 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삭제<2021.7.13>

### 【 작성지침 】

- i. '당기말'에는 사업보고서의 경우 사업연도말, 분반기보고서의 경우 분반기말 현황을 기재한다.
- ii. 주식의 종류별(보통주, 우선주, 기타로 구분)로 발행주식총수, 액면금액, 자본금을 각각 기재하되,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로 표시한다. 이때, 기타의 경우에는 표하단에 발행한종류주식(예: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 무의결권 또는 의결권제한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등)을 기재한다.
- iii. 무액면주식을 발행한 회사는 '액면금액'에 '-'으로 표시하되, 표 하단에 무액면주식이라는 사실과 발행가액을 발행주식수로 나눈 금액을 기재한다.

iv.~vii. 삭제<2021.7.13>

## 제3-3-2조 삭제<2021.7.13>

# 제4절 주식의 총수 등

제3-4-1조(주식의 총수) 공시서류작성기준일 현재 주식종류별로 정관상 발행가 능한 주식의 총수, 현재까지 발행(감소)한 주식의 총수, 발행주식 총수, 자기주 식수, 유통주식수를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하며, 내용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이나 그 밖의 정보는 별도로 기술한다.

# 주식의 총수 현황

(기준일 : )		(	(단위 : 주)
 구 분	2	비고	
) ————————————————————————————————————		합계	P1-12
I. 발행할 주식의 총수			
Ⅱ.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Ⅲ.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1. 감자			
2. 이익소각			
3. 상환주식의 상환			
4. 기타			
IV. 발행주식의 총수(Ⅱ-Ⅲ)			
V. 자기주식수			
Ⅵ. 유통주식수(IV-V)			

- i.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작성기준일 현재 수권주식수로서 정관상의 주식수를 기재한다.
- ii. 주식의 종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결권의 일부가 제한된 주식을 포함한다)과 의결권 없는 주식으로 나누어 기재한다.
- iii.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는 설립이후 작성기준일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로서 주식배당· 무상증자·액면분할 등으로 증가한 주식수를 모두 포함하여 기재한다.
- iv.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는 설립이후 작성기준일까지 감자·이익소각·상환주식의 상환 등으로 인해 감소한 주식수를 기재한다.
- v. 자기주식수는 작성기준일 현재 처분하지 않은 자기주식수를 기재한다.
- 제3-4-2조(자기주식) ①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중 자기주식 취 득 및 처분 현황을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하며, 내용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이 나 그 밖의 정보는 별도로 기술한다.

#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현황

(단위 : 주)

								11 . 1 )	
	치디	માના	주식의	기초		변동 수링	=	기말	비고
	취득방법		종류	기초 수량	취득(+)	처분(-)	소각(-)	수량	비끄
		장내 직접 취득				12()		, ,	
밴당	직접	장외 직접 취득							
가능이익	취득	공개매수							
범위		소계(a)							
이내	신탁	수탁자 보유물량							
취득	계약에 의한 취득	현물보유 물량							
	취득	소계(b)							
기타 취득(c)									
	총 계(	(a+b+c)							

② 공시대상기간중 자기주식 취득(자기주식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계약의 체결을 포함한다) 및 처분(자기주식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계약의 해지를 포함한다) 결정에 대한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다음의 표에 따라 공시서류작성기준일 현재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이행현황을 작성하고, 주요 사항보고서의 이행률이 50%미만인 경우 미이행사유를 각각 표 하단에 기재한다.

# 자기주식 직접 취득·처분 이행현황

(기준일:) (단위: 주, %)

_	, ,						
	¬ н	취득예	상기간	예정수량	이행수량	이행률	결과
	구 분	시작일	종료일	(A)	(B)	(B/A)	보고일
-							
_							

# 자기주식 신탁계약 체결·해지 이행현황

(기준일:) (단위 : 원, %, 회) 매매방향 계약 취득 결과 계약기간 이행률 변경 구 분 금액 금액 (B/A)보고일 (A) (B) 횟수 일자 시작일 종료일

- i. 기초수량은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시점의 보유수량을 말하며, 기말수량은 공시서류작성기준일 현재 보유수량을 말한다.
- ii. 직접취득이란 상법 제341조 등에 근거하여 회사가 직접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 iii. 신탁계약에 의한 취득이란 신탁업자와 체결한 신탁계약 등을 통해 취득한 경우와 해당 신탁계약 해지후 현물로 반환받은 경우를 말한다.
- iv. 기타취득이란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주(端株)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 한 경우,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증여를 받은 경우 등 상법 제341조의2 등에 근거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 v. 주식의 분할·병합, 자본감소 등으로 인하여 주식수의 변동이 있는 경우 비고란에 동 내용을 별도로 기재한다.
- vi. 사업연도중 변동내용에 대해서 취득(처분)방법, 향후 처리계획 등을 별도로 기재한다.
- vii. 자기주식 직접 취득·처분 이행현황표에서 "구분"에는 '직접 취득' 또는 '직접 처분'중 하나를 기재하며, "이행수량"은 공시서류작성기준일 현재 자기주식 취득·처분 수량을 기재하고, "결과보고일"에는 자기주식 취득·처분이 완료된 경우 결과보고서 제출일(또는 제출 예정일)을 기재하되, 취득·처분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을 기재한다.
- viii. 자기주식 신탁계약 체결·해지 이행현황표에서 "구분"에는 '신탁 체결' 또는 '신탁 해지' 중 하나를 기재하며, "계약기간" 및 "계약금액"은 주요사항보고서와 일치시켜야 하고, "이행금액"은 신탁계약 체결의 경우 공시서류작성기준일 현재까지 취득한 자기주식의 취득원가(취득한 자기주식을 처분한 경우 처분한 자기주식의 취득원가를 차감한다)를

기재하며, "매매방향 변경횟수"에는 취득에서 처분 또는 처분에서 취득으로 변경한 것을 각각 1회로 계산한 횟수를 기재(예시: 신탁계약종료시점까지 자기주식을 취득하기만 한경우 0회, 취득하다가 일부 처분한 뒤 다시 취득한 경우 2회로 기재한다)하고, "매매방향 변경일자"에는 '00.00.00' 형태로 기재하되 매매방향 변경이 2회 이상인 경우 표 하단에 주석으로 기재하며, "결과보고일"에는 신탁계약해지결과보고서 제출일(또는 제출예정일)을 기재하되 신탁계약이 해지되지 않은 경우는 '-'을 기재한다.

제3-4-3조(다양한 종류의 주식) 다양한 종류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주식 종류별로 다음의 표를 이용하여 명칭, 발행주식수, 내용 등을 기재한다.

# 종류주식(명칭) 발행현황

(단위:)

			<u>(인기·)</u>			
	발행					
	주당 발행가					
	발행총액(특					
	현재 잔액(학	현재 주식수)				
	존속기간(੶	우선주권리의 유효기간)				
	이익	배당에 관한 사항				
	잔여재	산분배에 관한 사항				
		상환권자				
		상환조건				
	사하세	상환방법				
	상환에 관한 사항	상환기간				
		주당 상환가액				
		1년 이내				
주식의 내		상환 예정인 경우				
용		전환권자				
		전환조건				
		(전환비율 변동여부 포함)				
	전환에	발행이후 전환권행사내역				
	관한 사항	전환청구기간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의 종류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수				
	의결	불권에 관한 사항				
	기타 투자 판단					
(주	수간 약정 및	재무약정 사항 등)				

### 【발행 이후 전환권 행사가 있을 경우】

행사일자	전환한 종류주식 수(주)	전환된 보통주주식 수(주)
행사일1		
행사일2		
행사일3		

- i. 표창된 권리 내용, 주당발행가액, 발행총액 등을 포함하여 주식 종류별로 주식에 관한 내용을 기재한다.
- ii.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에는 이익배당에 관해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그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교부하는 배당재산의 종류, 배당재산의 가액 결정방법, 이익을 배당하는 조건 등을 기재한다.
- iii. 잔여재산 분배에 관한 사항에는 잔여재산 분배에 관해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잔여재산의 종류, 잔여재산의 가액 결정방법 등을 기재한다.
- iv. 상환에 관한 사항에는 다음의 내용을 기재한다.
  - 가. 상환조건에는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자(발행인 또는 주주) 및 요건 또는 상환청구 없이 일정시점에 자동으로 상환되는지 등을 간략히 기재한다.
  - 나. 1년 이내에 상환이 예정된 경우에는 상환예정 주식수와 예정금액을 기재한다.
  - 다. 상환권자에는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자로 ①발행인, ②주주, ③발행인 및 주주, ④없음 중에서 택일하여 기재한다.
- v. 전환에 관한 사항에는 다음의 내용을 기재한다.
  - 가. 전환조건에는 전환청구방법, 전환가액 조정사유(예: 합병, 기업공개,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다른 주식 또는 주식관련사채의 발행 등)별 구체적인 조정방법, 조정한도 등을 자세하게 기재한다.
  - 나.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의 종류 및 주식수에는 결산일(반기 및 분기결산일을 포함한다) 현재 미전환 주식의 전환 청구시 신규로 발행될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다.
  - 다. 발행이후 전환권 행사내역에는 공시대상기간 내 행사가 있을 시 별도 표를 활용하여 전환권 실제 행사일자, 전환한 종류주식 수, 전환권행사에 의해 취득한 보통주 주식 수를 기재한다.
  - 라. 전환권자에는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자로 ①발행인, ②주주, ③발행인 및 주주, ④없음 중에서 택일하여 기재한다.

- vi. 의결권에 관한 사항에는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 또는 의결권이 제한되는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항, 의결권 행사 또는 부활의 조건을 정한 경우 그 조건 등을 기재한다. 또한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복수의결권주식 보유자, 그 의결권의 총수, 1주당 1의결권으로 제한되는 경우 및 보통주로 전환되는 시기 또는 요건 및 정관에 포함된 복수의결권주식 관련 주요 내용 등을 기재한다.
- vii. 기타 투자 판단에 참고할 사항에는 주주간 약정(예: 기업공개 실패시 최대주주 등에 대한 매수청구권 등), 재무약정(예: 일정 재무비율의 유지, 특정한 행위의 금지 또는 사전 동의 요구 등) 등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한다.
- viii. 존속기간(우선주 권리의 유효기간)에는 우선주 성격을 가진 종류주식이 일정시점 이후 자동으로 보통주로 전환되는 기간이 있을 시 이를 기재한다.

제5절 삭제<2021.7.13>

제6절 삭제<2021.7.13>

# 제7절 정관에 관한 사항

제3-7-1조(정관 이력) ① 사업보고서에 첨부된 정관의 최근 개정일을 기재한다. 다만, 정기주주총회 이전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정관 변경 안건이 정기 주주총회 안건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기재한다.

② 공시대상기간중 변경된 정관의 이력을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한다.

# 정관 변경 이력

정관변경일	해당주총명	주요변경사항	변경이유

# 【 작성지침 】

- i. 공시서류작성기준일 이후 공시서류제출일 사이에 주주총회를 통해 정관을 변경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
- ii. 정관변경일은 주주총회에서 정관이 승인된 날짜를 기재한다.
- ііі. 해당주총명은 '제00기 정기주주총회' 또는 '제00기 임시주주총회'형태로 기재한다.
- iv. 주요 변경사항은 변경항목별로 간략히 요약하여 기재한다.

제3-7-2조(사업목적) ① 공시서류작성기준일 현재 정관상 명시된 회사의 사업목적을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한다.

사업목적 현황

<u>구 분</u>	<u>사업목적</u>	사업영위 여부
1		영위
2		미영위
3		영위

- i. 공시서류작성기준일 현재 정관상 명시된 모든 사업목적을 그대로 기재한다.
- ii. '사업영위 여부'에는 공시서류작성기준일 기준 회사가 동 사업목적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제로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영위(공시서류 작성기준일 현재 제3-7-2조제3항제4호에서 정한 사업 추진현황 또는 이에 준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단순히 추진 계획만 수립된 경우는 제외한다.),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영위'로 기재한다.'.
- ② 공시대상기간중 정관상 사업목적을 변경(추가, 수정 또는 삭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로 기재한다. 다만, 정기주주총회 이전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사업목적 변경 안건이 정기주주총회 안건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기재한다.

## 1. 사업목적 변경 내용

 구분	변경일	사업목적			
丁世	변경된	변경 전	변경 후		
 추가	20XX. X. X.	-	7. ○○○ 생산 및 제조업		
수정	20XX. X. X.	5. ○○○ 판매업	5. △△△ 판매업		
삭제	20XX. X. X.	9. ○○○ 유통 및 도소매업	-		

## 2. 변경 사유

- i.'사업목적 변경 내용'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참고하여 기재한다.
  - 가. '변경일'은 주주총회에서 정관상 사업목적 변경이 승인된 날짜를 기재한다. 다만, 정기주주총회에서 변경이 승인되기 전인 경우에는 해당 주주총회 개최일을 기재한다.
  - 나. '구분'에는 사업목적 변경 유형에 따라 '추가', '수정', '삭제' 중 하나를 기재한다.
  - 다. '사업목적'란은 사업목적 변경 유형별로 다음의 방법에 따라 기재한다.
    - (1) 추가 : '변경 전'은 '-'로 표시하고. '변경 후'에는 추가된 사업목적을 기재
    - (2) 수정 : '변경 전'은 수정 전 사업목적을 기재하고, '변경 후'에는 수정 후 사업목적을 기재

- (3) 삭제 : '변경 전'은 삭제 전 사업목적을 기재하고. '변경 후'는 '-'로 표시
- ii. '변경 사유'는 각 사업목적별로 구분하여 기재하되,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 가. 변경 취지 및 목적, 필요성
  - 나. 사업목적 변경 제안 주체(예 : 이사회. 소수주주(주주제안) 등)
  - 다. 해당 사업목적 변경이 회사의 주된 사업에 미치는 영향 등
- ③ 공시대상기간중 정관상 사업목적을 추가(기존 정관을 수정한 경우로 사실상 사업목적이 추가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내용과 전망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기재한다.

정관상 사업목적 추가 현황표

구 분	사업목적	추가일자
1		
2		
3		

- 1. 그 사업 분야(업종, 제품 및 서비스의 내용 등) 및 진출 목적
- 2. 시장의 주요 특성·규모 및 성장성
- 3. 신규사업과 관련된 투자 및 예상 자금소요액(총 소요액, 연도별 소요액), 투자자금 조달원천, 예상투자회수기간 등
- 4. 사업 추진현황(조직 및 인력구성 현황, 연구개발활동 내역,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진척도 및 상용화 여부, 매출 발생여부 등)
- 5.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 6. 주요 위험
- 7. 향후 추진계획
- 8. 미추진 사유

i. 공시대상기간중 정관상 추가된 모든 사업목적에 대하여 기재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중 회사의 영업비밀이거나 회사의 경쟁력에 불이익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고 해당 내용에 한정하여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 ii. '정관상 사업목적 추가 현황표'는 다음의 사항을 참고하여 기재한다.
  - 가. '내용'은 공시대상기간중 정관상 추가된 모든 사업목적을 그대로 기재한다.
  - 나. '추가일자'에는 주주총회에서 정관상 사업목적 추가가 승인된 날짜를 기재한다.
- iii.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은 각 사업목적별로 구분하여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사업목적을 통해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의 내용이 서로 유사하거나 연관(예 : A 제조업, A 유통업)되어 구분 기재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을 기재하고 하나로 통합하여 기재할 수 있다.
- iv.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은 해당 사업 추진시 회사가 기존 영위 중인 사업의 기술력, 설비 등을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 기존 판매 제품·상품·서비스와의 유사성(기능, 특징) 등을 기재하고, 기존 영위 사업과의 연관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을 표시한다.
- v. '주요 위험'에는 신규 사업 추진에 따라 해당 사업이 속한 산업, 업종 및 영업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회사가 노출될 수 있는 주요 위험, 기존 영위 사업의 손익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기재한다.
- vi. '향후 추진 계획'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재하되, 기재내용 중 향후 추진 과정에 서 변동될 가능성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사실을 별도로 기재한다.
  - 가. 전체 진행단계 및 각 진행단계별 예상 완료시기
  - 나. 향후 1년 이내 추진 예정사항
  - 다. 조직 및 인력 확보 계획
- vii. '미추진 사유'는 공시서류작성기준일까지 제4호에 따른 사업 추진현황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각 사업목적별로 구분하여 기재하며,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
  - 가. 그간 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사유 및 배경
  - 나. 향후 1년 이내 추진계획 존재 여부 및 향후 추진 예정시기
- 다. 추진 계획 등이 변경된 경우 그 사유 및 변경내용

# 제4장 사업의 내용

# 제1절 일반원칙

- 제4-1-1조(일반원칙) ① 공시대상기간중 회사가 영위하고 있거나 새로 추진하고 자 하는 사업의 내용을 기재한다. 주요 사업부문으로 구분하여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각 절에서 다른 정함이 있으면 그에 따라 기재한다.
  - ② 사업의 내용을 기재할 때 사업의 특성 또는 현황 등을 고려하여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재하며, 영위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산업별가이드라인」을 제정한 경우에는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반영하여 기재한다.
  - ③ 이 장에서 회사가 지주회사인 경우에는 주요자회사를 포함하여 기재한다.
  - ④ 이 장에서 K-IFRS(외국법인이 적용하는 IFRS 또는 US-GAAP을 포함)를 적용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주권상장법인은 종속회사를 포함하여 사업의 내용을 기재하되, '주요종속회사'(최근사업연도말 별도(개별)재무제표상 자산총액이 지배회사 별도(개별)재무제표상 자산총액의 10% 이상이거나 750억원 이상인종속회사를 말함)의 내용은 반드시 기재한다. 이 경우 연결실체 전체의 입장에서 기재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종속회사의 명칭 및 종속회사가 지배회사에 미치는 영향도 기재한다.
  - ⑤ 발행인이 통상적인 계속사업기업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조합이나 법인격 없는 단체 또는 자연인인 경우에는 그 공동사업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기재한다.

- i. 회사의 사업의 내용, 영업의 특성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쉽고 간결하게 기재하며 기재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간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제목 또는 소제목으로 구분 하여 기재한다.
- ii. 사업부문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영업부문)에 따라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업부문외에 지역, 고객, 상품 등의 기준으로 구분하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 1108호(영업부문)의 구분에 따라 기재할 수 있다.

- iii. 구분된 사업부문에 대해서는 영업의 폐지 등 정당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속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 iv. 만일 회사가 조직구조를 개편함으로서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성이 변한 경우에는 다음 의 방법중에서 선택하여 기재한다.
  - 가. 변경후의 사업부문에 따라 이전 기간의 항목을 재작성하여 기재하고 재작성 사실을 설명하는 방법.
  - 나. 이전기간의 항목은 재작성하지 않고, 사업부문의 변화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재무정보 를 현재의 기준과 과거의 기준에 따라 각각 공시하는 방법.
- v. 사업의 내용을 기재함에 있어 객관적인 외부자료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그 출처(자료명, 자료의 발간일자, 발간기관명)를 기재한다. 이 경우 객관적인 외부자료라 함은 회사와 독립적인 관계에 있는 시장조사전문기관이나 해당 산업의 사업자단체 등 객관적인 기 관이 작성한 자료를 말한다.

# 제2절 제조·서비스 업

- 제4-2-1조(일반원칙) ① 제4-2-2조부터 제4-2-7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은 사업부문별로 기재하며, 제4-2-8조부터 제4-2-12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은 사업부문별로 기재하지 않고 통합해서 기재할 수 있다. 다만, 그 내용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부문별 정보를 별도로 기재한다.
  - ② 투자자 등의 이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각 조의 순서에 상관없이 작성할 수 있으며, 연관되는 항목들은 통합해서 서술이 가능하다.
  - ③ 이 절의 세부항목을 작성할 때 해당 표가 50행을 초과할 경우 제11장의2 (상세표에 관한 사항)에 따라 해당 표 전부를 '상세표' 부분으로 이동하여 기재하여야 하고, 사업의 내용 본문에는 해당표의 요약현황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세표에 기재한다는 사실을 요약현황과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 【 작성지침 】

- i. 상세표의 기재목적은 사업보고서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사업의 내용에 50행이 넘는 표가 있을 경우 이 표의 일부가 아닌 전체를 '상세표' 항목으로 이동시켜야 하며, 사업의 내용에는 이 표를 대체할 수 있는 요약현황을 회사의 판단하에 기재한다. 예를 들어, 자산운용인력 현황표를 작성할 경우 해당 인력이 80명일 때, 사업의 내용의 본문에는 요약현황만 기재하고(3년미만, 5년미만, 10년미만, 10년 이상에 따라 인원수를 기재) 80명 전체 명단은 상세표에만 기재한다.
- 제4-2-2조(사업의 개요) 투자자가 회사의 핵심 사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제4-2-3조부터 제4-2-12조의 기재사항중 중요한 내용을 요약하여 서술식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① ~ ③ 삭제<2021.7.13>

- i. 사업의 개요는 사업의 내용에 대한 요약만을 기재하는 항목으로 5문단 내외로 작성하여야 하며, 투자자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 및 설명을 활용하여 서술식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ii. 제4-2-3조부터 제4-2-12조까지의 작성사항을 순서에 관계없이 통합하여 기재할 수 있다. 이때, 제4-2-3조 및 제4-2-6조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 iii. 제4-2-3조부터 제4-3-12조까지의 정보를 핵심사업 위주로 요약한다.

제4-2-3조(주요 제품, 서비스 등) ① 주요 제품 또는 서비스에 관한 내용(명칭, 사용용도와 기능, 특징 등)을 품목별로 세분하여 기재하고 공시대상기간중 전체 매출액에서 각 제품 또는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율을 기재한다.

### 【 작성지침 】

- i. 주문자 상표부착(OEM)방식 등에 의해 매출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과 주문자 등의 상표명을 별도로 추가하여 기재한다.
- ii. 하청, 외주가공 등과 같이 회사가 주요 제품 또는 서비스의 생산을 제3자에게 위탁하고, 위탁받은 제3자가 회사의 제품 또는 서비스 공급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그 제3자의 명칭을 기재한다.
- ② 공시대상기간중 해당 사업부문의 수익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판매가격에 변동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 제품 또는 서비스의 가격 변동추이를 알 수 있도록 공시대상기간에 걸쳐 가격 비교치를 기재한다.

### 【 작성지침 】

단일품목에 대하여 복수의 상표가 존재하는 경우(예를 들어, 자동차의 경우 여러 가지 차종이 존재)에는 대표적으로 가격이 변동된 품목을 선정하여 가격변동 추이를 기재할 수 있으며, 선정 사유를 기재한다.

제4-2-4조(주요 원재료) 가격변동추이, 주요 매입처, 해당 매입처와 회사와의 특수한 관계여부, 공급시장의 독과점 정도, 공급의 안정성 등을 포함하여 주요 원재료에 관한 내용을 기재한다.

- i. 매입처와 회사와의 특수한 관계를 갖는 경우라 함은 계열관계, 합작관계, 주주관계, 특수분야에서의 제휴관계 등과 같이 회사의 일상적인 영업활동에 의한 관계 이외의 관계 로서, 회사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경우를 말한다.
- ii. 공시대상기간중에 해당 사업부문의 수익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원재료의 가격변동 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 원재료의 가격변동추이를 알 수 있도록 공시대상기간에 걸쳐 가격 비교치를 기재한다.
- 제4-2-5조(생산 및 설비) ① 주요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생산능력, 생산실적, 가동률을 기재한다.

- i. 생산능력, 생산실적 및 가동률은 원칙적으로 사업부문별 주요 제품별로 구분하여 산출 근거를 함께 기재하되, 주요 제품별로 기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업부문별, 공 장별 또는 회사 전체적인 관점에서 기재할 수 있다.
- ii. 생산능력 및 생산실적은 금액, 수량 등 제품의 특성, 내용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기준으로 기재하되, 금액(제조원가 등)기준으로 생산능력의 10%에 미달하는 품목은 통합하여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 생산능력과 제조원가를 산출함에 있어 단일공장에서 다수의 제품 등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배부기준을 기재한다.
- iii. 서비스업과 같이 회사의 주요 수익원이 물적 형태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생산능력, 생산실적 및 가동률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 ② 생산과 영업에 중요한 시설, 설비, 채굴지, 부동산, 전산시스템 등 물적 재산에 관하여 재산의 내용, 소재지, 중요한 변동 및 사유 등을 기재한다.

- i. 물적 재산의 소재지는 행정상의 주소와 함께 지도에 의하여 그 소재지를 표시할 수 있다.
- ii. 부존자원에 대한 추정치나 그에 관한 추정가액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회사와 독립된 외부전문가가 작성하거나 검토한 자료에 근거한 수치 등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서만 기재할 수 있다(외부전문가의 명칭 및 추정방법을 반드시 기재).
- iii. 부존자원 중 유전개발과 관련된 내용은 별도로 마련된 「유전(가스)개발사업 관련 모범 공시 가이드라인」(전자공시시스템 접수수리 홈페이지(http://filer.fss.or.kr) 및 금융감독 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에 게시)을 참고한다.
- iv. 물적 재산의 내용에는 재산의 형태(예: 토지), 수량, 장부가액 및 시가에 관한 정보를 기재한다.
- v. 시가와 관련하여 토지는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공시지가를, 건물은 지방세 과세시가표준 액을 기재한다. 그 밖의 재산은 객관적인 시가자료에 따라 기재하되, 금액적 중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금액적 중요성이 없어 기재를 생략한다는 사실을 기재한다.

- vi. 물적 재산중에서 소유권이 없거나 재산의 처분 등에 중대한 제한(담보설정 등)이 있는 물적 재산의 경우에는 동 재산의 보유 및 이용현황과 제한사유 등을 기재한다.
  - ③ 공시서류 작성기준일 현재 생산과 영업에 중요한 시설, 설비, 부동산, 전산시스템 등에 대한 투자가 현재 진행중이거나 향후 투자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투자의 목적, 내용, 기간, 총 소요자금 및 기 지출금액, 향후 기대효과 등을 기재한다.

- i. 투자계획은 공시서류 작성기준일 현재 이사회 결의 등으로 동 계획이 확정되어 향후 1 년 이내에 특정 생산시설 등의 신설이나 매입 등을 개시할 계획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 ii. 향후 기대효과는 투자로 인한 생산능력 증가, 제품 등의 품질향상, 기존시설의 내용연수 의 연장 등의 내용을 기재하며 동 효과를 계량화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계량화된 수치를 기재한다.
- 제4-2-6조(매출) ① 공시대상기간중 매출실적을 매출유형(상품, 제품, 용역, 기타 매출 등)과 품목별로 구분해서 기재한다. 또한 수출기업의 경우 수출과 내수를 구분하여 기재한다.

### 【 작성지침 】

매출실적은 아래에 제시된 표를 참조하여 기재할 수 있으며, 효과적인 정보제공을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표를 이용하거나 서술식으로 기재할 수 있다.

(단위 : )

사업부문	매출유형	품	목	제××기	제××기	제××기
			수 출			
			내 수			
			합 계			
			수 출			
	합 계	계	내 수			
			합 계			

주) 매출유형: 상품, 제품, 용역, 기타매출 등

② 제품 또는 서비스의 판매경로와 방법, 전략, 주요매출처 등을 기재한다.

### 【 작성지침 】

i. 판매경로는 국내·외 시장을 구분하여 직판(직매점을 포함한다), 관계회사, 대리점, 도매상 등 주요 판매경로를 기재하고, 판매경로별 매출액 비중을 함께 기재한다.

- ii. 판매방법은 회사가 위탁매출, 할부매출, 시용매출, 예약매출 등 특수한 판매방법을 채택하고 있고, 동 판매방법이 영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각 판매 방법별 매출액 비중을 기재한다.
  - iii. 판매전략은 광고, 직매점 또는 대리점 확충, 판매회사의 설립 등 매출액 증대를 위한 회사의 기본적인 영업전략을 요약하여 기재한다. 다만, 회사 또는 그 종속회사의 영업기 밀에 해당되어 관련 내용을 공시할 경우 영업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생략할 수 있다.
- iv. 주요 매출처를 기재하고 매출처별로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기재한다.
- 제4-2-7조(수주상황) 공시서류 작성기준일 현재 거래가 종료되지 아니한 주요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수주현황(장기매출계약, 장기용역 제공계약 등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수주일자, 납품기간, 수주총액, 기납품액, 수주잔고 등을 기재하고, 수주의 계절적 변동요인 등 수주와 관련한 중요한 사항을 추가로 기재한다.

i.제1항은 아래에 제시된 표를 참조하여 기재할 수 있으며, 효과적인 정보제공을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표를 이용하거나 서술식으로 기재할 수 있다.

(단위 : )

	수주		수주	총액	기납품액		수주잔고	
품목	일자	납기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u></u> 계							

- ii. 회사 또는 그 종속회사의 영업기밀에 해당되어 관련 내용을 공시할 경우 영업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을 기재하고, 그 내용을 간략하게 기재할 수 있다. 단, 언론과의 인터뷰, 공시등 기타의 방법을 통해 관련 내용이 공개된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내용을 기재한다.
- 제4-2-8조(시장위험과 위험관리) ① 공시서류 작성기준일 현재 회사가 노출된 주요 시장위험(금리위험, 가격위험, 환위험 등)의 내용과 이러한 시장위험이 회사의 손익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개략적으로 기재한다.

### 【 작성지침 】

i. "시장위험"이란 금리, 상품가격, 환율 및 기타 관련요소 등 시장변수가 불리하게 변동 하여 자산이나 부채, 손익 등이 예상치 못한 손실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하며, 각 시장위험이 회사의 영업활동중 어떤 부분에서 발생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 ii. 시장위험의 내용에 대한 기재는 회사의 영업의 특성(외환거래 등)과 관련된 위험에 한 정하며, 이러한 위험을 헤지하기 위해 체결한 시장위험상품(이하 "파생상품"이라 한다.) 계약 자체가 가지고 있는 시장위험의 내용은 포함하지 않는다.
  - iii. 시장위험에 대한 노출이 중요하지 않아서 동 위험에 관한 정보를 기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장위험에 대한 노출이 중요하지 않아서 기재를 생략한다는 내용을 기재한다.
  - iv. iii 항의 시장위험에 대한 노출이 중요하지 않는 경우란 공시대상기간동안 외환관련 포지션이나 손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또는 파생상품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공시서 류제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향후 2년간 이러한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 ② 제1항에서 기재한 시장위험과 관련하여 위험관리방식, 위험관리조직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회사의 위험관리정책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 i. 시장위험의 관리방식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
  - 가. 위험관리의 일반적 전략
  - 나. 위험관리방법에 대한 사항
  - 다. 정관이나 회사 경영방침상 파생상품과 관련한 거래의 제한(규모제한 등) 등이 있는 경우 그 내용
- ii. 회사가 시장위험관리를 위해 파생상품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파생상품계약 이 제1항에서 기재한 회사의 모든 시장위험을 헤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 기재하고, 모든 위험을 헤지하고 있지 않거나, 중요한 한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재한다.
- iii. 위험관리조직에 관한 사항은 다음의 사항을 말하며 반드시 이에 한정하지 않는다.
  - 가. 위험관리조직 및 인원이 있는지 여부, 조직 및 인원이 있는 경우 조직의 명칭, 인원수, 담당업무 등
  - 나. 위험관리에 관한 내부운영방침, 관리 및 절차 등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기재사항을 공시서류의 다른 부분에서 기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부분을 참조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기재할 수 있다. 이경우 그 다른 부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④ 제출대상법인이 소규모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항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2-9조(파생상품 및 풋백옵션 등 거래 현황) ① 공시서류작성기준일 현재 회사가 보유 또는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파생상품(신용파생상품을 포함한다), 기타타법인 주식 또는 출자증권 등의 취득과 관련하여 체결한 풋옵션(Put Option), 콜옵션(Call Option), 풋백옵션(Put Back Option)등 계약 및 그 계약에 관한 내용을 기재한다. 그 내용에는 계약(상품)의 명칭, 거래상대방, 계약일, 만기일, 계약체결 목적, 계약내용(조건), 계약금액, 결제 방법, 중도상환 가능여부 및 상환조건등을 포함한다.

### 【 작성지침 】

- i. 파생상품에 관한 정보를 기재함에 있어 동 상품을 매매목적을 갖는 것과 매매목적 이외의 목적을 갖는 것으로 구분하고, 동일한 특성을 가지는 위험 유형별(예 : 금리, 가격, 환율 등)로 구분해서 기재한다.
  - 가. 매매목적의 구분과 관련해서는 파생상품에 대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위험회피목적, 매매목적으로 구분해서 기재한다.
  - 나. 파생상품계약별로 구분해서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약건수가 과다하여 계약별 구분 기재가 어렵고, 파생상품의 구조가 단순하여 통합기재를 하여도 전체 손 익구조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경우에는 통합기재가 가능하다.
  - 다. 통합기재시 파생상품계약의 평가손익은 이익·손실 상계없이 각각 총액으로 기재한다.
- ii. 일반투자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용어, 약어 등에 대해서는 용어의 정의나 해설을 추가 기재한다.
- iii. 정형화된 거래로서 계약상대방인 금융회사 등이 동 상품에 대한 내용을 다른 방식으로 공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는 정보제공처(예 : 금융회사 홈페이지 주소 등)를 기재한다.
- iv. 신용파생상품의 경우에는 다음의 표에 따라 중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 신용파생상품 계약 명세

구 분	내 용
신용파생상품의 명칭	
보장매수자(protection buyer)	
보장매도자(protection seller)	
계약일	
만기일	
계약금액	
기초자산(준거자산)	

계약체결목적	
계약내용	
수수료	
정산(결제)방법	
계약당사자 또는 기초자산 발행회사와의 특수 관계 여부	
담보 제공여부	
중개금융회사	
기타 투자자에게 알릴 중요한 특약사항	

- 가. 신용파생상품의 명칭에는 신용부도스왑(CDS), 신용연계채권(CLN), 신용옵션(CO), 총수익 스왑(TRS), 합성담보부채권(Synthetic CDO) 등 그 구체적인 종류를 기재한다. 회사가 체결한 신용파생상품이 여러 건 있는 경우 상기 표를 추가하여 기재할 수 있다.
- 나. 보장매입자, 보장매도자, 계약일, 만기일, 계약금액, 기초자산(준거자산), 계약체결목적, 계약내용, 수수료(보장매수자가 보장매도자에게 지급하는 프리미엄), 정산(결제)방법, 계약당사자 또는 기초자산 발행회사와의 관계 여부(예:계열회사, 최대주주 등), 담보제공여부, 중개금융회사, 기타 투자자에게 알릴 중요한 특약사항(의결권, 만기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계약내용의 경우 조기종결조건(예:파산, 지급불이행, 채무재조정 등), 보장조건(FTD, STD 등) 등 중요내용을 기재한다.
- 다. 기초자산(준거자산)은 "A회사 대출채권 XX백만원", "B은행 Primary CBO", "C회사 보통주 XX주" 등 구체적인 명칭 및 기초자산(준거자산)의 핵심내용을 기재한다. 예를들어 기초 자산이 사채인 경우, 액면금액, 보증여부, 이자율, 이자 지급방법, 신주인수권행사·전환· 교환 관련사항(주권관련사채인 경우)을 기재하고, 기초자산이 주식인 경우 주식회사명, 주식종류, 주식 수 등을 기재한다. 기초자산과 준거자산이 상이한 경우 각각의 자산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 ② 공시대상기간중 파생상품계약으로 발생한 이익 및 손실상황에 관한 내용을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기재한다.
  - 1. 공정가액 및 공정가액 평가주체
  - 2. 파생상품계약에서 발생된 거래손익금액과 재무제표에 반영된 내용
  - 3. 위험회피목적을 위해 파생상품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험회피목적 대상 자산 또는 부채에서 발생된 손익
- ③ 파생상품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기간 만료일(계약기간중 행사가능한 옵션의 경우 그 행사일)에 예상되는 손익구조에 대한 정보를 기재한다.

투자자가 파생상품계약과 관련된 손익구조의 형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급적 그래프를 이용해서 알기 쉽게 기재한다.

- 제4-2-10조(경영상의 주요계약 등) 공시서류 작성기준일 현재 회사의 재무상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비경상적인 중요계약에 대하여 그 내용을 기재하되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
  - 1. 계약상대방
  - 2. 계약의 목적 및 내용
  - 3. 계약체결시기 및 계약기간
  - 4. 유상계약인 경우 계약금액 및 대금수수방법(기준) 등

## 【 작성지침 】

- i. 비경상적인 계약이라 함은 회사의 일상적인 영업활동 이외의 활동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계약을 말하며, 여기에는 기술이전계약, 기술도입(제휴)계약, 경영관리계약, 자산유동화를 위한 자산양도계약(신탁계약, 자산관리계약 등), 부동산 매매계약, 부동산 개발계약 등이 포함되며, 이에 한하지 않는다.
- ii. 기재대상 계약에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공시서류 작성기준일 현재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계약을 포함한다.
- iii. 회사 또는 그 종속회사의 영업기밀에 해당되어 관련 내용을 공시할 경우 영업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을 기재하고 그 내용을 간략하 게 기재할 수 있다. 단, 언론과의 인터뷰, 공시 등 기타의 방법을 통해 관련 내용이 공 개된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내용을 기재한다.
- 제4-2-11조(연구개발활동) 중요한 연구개발활동과 관련하여 연구개발활동의 개요, 연구개발 담당조직, 연구개발비용, 연구개발실적 등을 기재한다.

- i. 연구개발 담당조직은 연구개발활동을 담당하고 있는 부문의 조직형태와 운영현황을 기재하며, 회사의 연구개발활동을 담당하는 별도의 법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직형 태와 명칭. 회사의 소유지분 및 그 밖의 주요사항을 기재한다.
- ii. 연구개발비용은 연구활동 또는 개발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거나,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기준에 따라 그러한 활동에 배부될 수 있는 모든 지출을 포함한다. 기재시 아 래에 제시된 표를 참조하여 기재할 수 있으며(다만, 재무제표 금액과의 비교 등을

위해 정부보조금 차감전 총액과 정부보조금을 구분하여 각각 기재한다), 효과적인 정보제공을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표를 이용하거나 서술식으로 기재할 수 있다.

(단위 : )

				( _ / /
과 목	제×3기	제×2기	제×1기	비고
연구개발비용 계*				
(정부보조금)				
연구개발비 / 매출액 비율 [연구개발비용계÷당기매출액×100]	%	%	%	

- \* 정부보조금(국고보조금)을 차감하기 전의 연구개발비용 지출총액을 기준으로 산정
- iii. 연구개발실적은 개발이 완료되었거나 공시서류작성기준일 현재 진행중인 연구개발 내용을 기재한다. 특히 신약개발사업의 경우 진행경과 및 향후 계획 등을 기재한다.
- 제4-2-12조(그 밖에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① 제품이나 서비스에 고유한 상표를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상표 관리정책을 가지고 있거나, 제품이나 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고객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정책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사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 내용을 기재한다.

#### 【 작성지침 】

회사 또는 그 종속회사의 경영 또는 영업과 관련한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사업과 관련하여 중요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및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재한다.

- i. 보유하고 있는 지적재산권에 관한 내용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재한다.
  - 가. 지적 재산권의 종류
  - 나. 취득일
  - 다. 지적재산권의 제목 및 내용
  - 라. 근거법령 및 법령상 보호받는 내용(독점적·배타적 사용기간)
  - 마. 취득에 투입된 인력, 기간, 비용
  - 바. 실제 제품, 상품, 서비스 등을 통한 상용화 여부 및 내용
  - 사. 현재 회사의 매출 등에 기여하는 정도
  - 아. 향후 기대효과
- ii. 타 회사와 전략적 제휴 등으로 지적재산권에 대한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에 의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기재한다.

- ③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법률, 규정 등에 의한 규제사항이 회사의 영업활동, 비용지출 또는 경쟁상의 지위 등 사업의 영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관련법규의 명칭, 규제사항의 주요내용, 회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기재한다.
- ④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환경물질의 배출 또는 환경보호와 관련된 사항을 규제하는 정부규제의 준수에 대해 적절히 기재하고, 향후 환경개선설비에 대한 중요한 자본지출이 계획되어 있는 경우 그 추정치를 기재한다.
- ⑤ 각 사업부문의 시장여건 및 영업의 개황 등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기재한다.
- 1. 산업의 특성, 성장성, 경기변동의 특성, 계절성
- 2. 국내외 시장여건(시장의 안정성, 경쟁상황, 시장점유율 추이)
- 3. 시장에서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인 및 회사의 경쟁상의 강점과 단점

- i. 시장점유율 추이를 기재함에 있어 구체적인 대상항목, 산정기준 및 자료출처 등을 명시한다.
- ii. 회사의 경쟁상의 강점에는 가격, 품질, 광고, 보증 등 회사가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주요 수단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 ⑥ 사업부문별로 자산, 매출액, 영업손익을 포함한 주요 재무정보에 관해 그 총액 및 각 항목이 총 사업부문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공시대상기간 또는 사업을 영위한 기간 중 짧은 기간동안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 【 작성지침 】

사업부문별 재무정보를 기재함에 있어 여러 사업부문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자산이나 비용항목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배부기준을 요약하여 기재한다. 이 경우 배부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변경내용 등을 요약하여 기재한다.

- ⑦ 공시대상기간중 새로이 추진하였거나, 이사회 결의 등을 통하여 새로이 추진하기로 한 중요한 신규사업(신제품 개발, 신시장 개척 등)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의 내용과 전망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기재한다. 다만, 정관상사업목적 추가를 통해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제3-7-2조 제3항에 따라 별도로 기재한다.
- 1. 그 사업 분야(업종, 제품 및 서비스의 내용 등) 및 진출 목적

- 2. 시장의 주요 특성 · 규모 및 성장성
- 3. 신규사업과 관련된 투자 및 예상 자금소요액(총 소요액, 연도별 소요액), 투자자금 조달원천, 예상투자회수기간 등
- 4. 사업 추진현황(조직 및 인력구성 현황, 연구개발활동 내역,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진 적도 및 상용화 여부, 매출 발생여부 등)

신규사업에 대한 기재가 회사의 경쟁력에 불이익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단, 언론과의 인터뷰, 공시 등 기타의 방법을 통해 관련 내용이 공개된 경 우에는 반드시 해당 내용을 기재한다.

- 제4-2-13조(기업인수목적회사의 합병추진) 기업인수목적회사의 경우 제4-2-1조 내지 제4-2-12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에 추가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합병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 1. 추진하고자 하는 합병의 개요
  - 2. 추진하고자 하는 합병대상회사의 업종, 지역 등
  - 3. 합병기한 내에 합병을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의 효과
  - 4. 합병대상회사의 선정기준 및 합병대상회사에서 제외되는 회사
  - 5. 제12-1-4조(합병등의 성사 조건)에서 정하는 사항
  - 6. 주권의 최초 모집 전에 주식을 취득한 자의 의결권 제한에 관한 내용
  - 7. 제12-6-1조(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 등)에서 정하는 사항
  - 8. 합병대상회사로 고려중인 회사가 있거나, 합병대상회사를 선정하기 위한 조사나 협의 등을 진행한 적이 있는지 여부. 그러한 사항이 없는 경우 없다는 사실
  - 9. 합병추진시 외부로부터 제공받는 용역과 발생 가능한 비용

- i. 추진하고자 하는 합병의 개요에는 합병형태, 합병이후 상장계획, 합병대가 지급수단, 합병예정일정, 합병시 고려요소 등 공시서류 작성기준일 현재 고려하고 있거나 또는 확정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기재한다.
- ii. 합병기한 내에 합병을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회사 및 투자자에 대하여 미치는 영향을 구분하여 기재한다.
- iii. 합병대상회사의 선정기준에는 합병대상회사를 선정하는 평가요소, 관련법규에 따른 합병대상회사의 가치 기준 등을 기재하며, 합병대상회사에서 제외되는 회사에는 관련 법규 및 내부정책 등에 따라 합병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을 기재한다.

- iv. 주권의 최초 모집 전에 발행한 주식을 취득한 자는 계약 등에 의하여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이 제한되거나 주식매수청구권이 제한되는 경우 그 내용을 기재한다.
- v. 합병추진시 외부로부터 제공받는 용역과 발생가능한 비용에는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임원·발기인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문 등의 용역을 받을지 여부와 그에 따른 비용 등을 지급할 예정인지 여부를 포함하여 기재한다.
- vi. 합병의 증권신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외에는 합병대상회사의 명칭이나 합병대상회사 를 특정할 수 있도록 암시하는 내용은 기재할 수 없다.

# 제3절 금융업

- 제4-3-1조(일반원칙) ① 영위하고 있는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에 해당되는 회사는 본 절에 따라 사업의 내용을 기재한다.
  - ② 세부항목별 내용에 대한 구체적 작성지침이나 산업별 가이드라인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업과 관련된 법령 및 감독규정, 각 협회에서 제정한 공시기준의 내용을 참조하여 작성한다.
  - ③ 이 절에 다른 정함이 없다면 "평균잔액"은 일별 평균잔액을 기재한다. 그러나 일별 평균의 적용이 어렵다는 합리적인 판단이 가능하고, 주별 또는 월별 평균이 회사의 영업을 대표하고 있다면 그 기준을 사용할 수 있다.
  - ④ 투자자 등의 이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각 조의 순서에 상관없이 작성할 수 있으며, 연관되는 항목들은 통합해서 서술이 가능하다.
  - ⑤ 이 절의 세부항목을 작성할 때 해당 표가 50행을 초과할 경우 제11장의2 (상세표에 관한 사항)에 따라 해당 표 전부를 '상세표' 부분으로 이동하여 기재하여야 하고, 사업의 내용 본문에는 해당표의 요약현황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세표에 기재한다는 사실을 요약현황과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 i. 상세표의 기재목적은 사업보고서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사업의 내용에 50행이 넘는 표가 있을 경우 이 표의 일부가 아닌 전체를 '상세표' 항목으로 이동시켜야 하며, 사업의 내용에는 이 표를 대체할 수 있는 요약현황을 회사의 판단하에 기재한다. 예를 들어, 자산운용인력 현황표를 작성할 경우 해당 인력이 80명일 때, 사업의 내용의 본문에는 요약현황만 기재하고(3년미만, 5년미만, 10년미만, 10년 이상에 따라 인원수를 기재) 80명 전체 명단은 상세표에만 기재한다.
- 제4-3-2조(사업의 개요) 투자자가 회사의 핵심 사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제4-3-3조부터 제4-3-7조의 기재사항중 중요한 내용을 요약하여 서술 식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① · ② 삭제<2021.7.13>

- i. 사업의 개요는 사업의 내용에 대한 요약만을 기재하는 항목으로 5문단 내외로 작성하여야 하며, 투자자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 및 설명을 활용하여 서술식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ii. 제4-3-3조부터 제4-3-7조까지의 작성사항을 순서에 관계없이 통합하여 기재할 수 있다. 이때, 제4-3-3조 및 제4-3-4조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 iii. 제4-3-3조부터 제4-3-7조까지의 정보를 핵심사업 위주로 요약한다.
- 제4-3-3조(영업의 현황) 영위하고 있는 영업의 개황, 영업의 종류, 영업부문별 자금조달·운용 내용 등을 포함하여 해당 영업의 특징을 간략하게 기재하고, 회사 전체사업중 각 영업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을 기재한다.

### 【 작성지침 】

i. 자금조달실적은 중요 조달항목별로 공시대상기간중 항목별 잔액의 평균 및 항목별 가중 평균이자율, 해당항목의 비중을 기재한다. 작성시 아래의 표을 참조할 수 있으며, 효과 적인 정보제공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표를 이용하거나 서술식으로 기재할 수 있다.

(단위 : )

구 분	조달	제××기			Τ-	제××기			제××기		
	항목	평균잔액	이자율	비중	평균잔액	이자율	비중	평균잔액	이자율	비중	
원화자금	Α										
건외자ㅁ	В										
외화자금	Α										
	В										
기타											
합	계										

### [조달항목 예시]

- 은행업관련: 예수금, 부금, 양도성예금증서(CD), 차입금, 은행채, 콜머니, 기타
- 증권업관련: RP매도, 매도신종증권, 파생상품, 사채, 콜머니, 차입금, 기타
- 보험업관련: (손해보험) 화재. 해상. (생명보험) 생존. 사망. 생사혼합. 단체. 기타
- ii. 자금운용실적은 해당 영업부문의 특징을 반영하여 중요 운용항목별로 공시대상기간중 항목별 잔액의 평균 및 항목별 가중평균이자율, 해당항목의 비중을 기재하되 작성시 아 래의 표을 참조할 수 있으며, 효과적인 정보제공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표를 이용하거 나 서술식으로 기재할 수 있다.

(단위 : )

		제××기		제××기			제××기		
구 분	평균 잔액	이자율	비중	평균 잔액	이자율	비중	평균 잔액	이자율	비중
현금.예금									

증권						
대출채권						
내걸제건						
파생상품						
ДОО В						
유형지	ŀ산					
フIE	ŀ					
합 기	HI I					

- iii. 각 영업부문이 전체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해당영업부문의 자산 및 순수익이 전체 사업부문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으로 기재할 수 있다.
- 제4-3-4조(영업 종류별 현황) ① 영위하는 영업 종류별로 영업규모, 영업실적, 자산운용현황, 주요 상품·서비스 내용 등을 포함하여 사업의 세부 내용을 작성한다.
  - ② 해당 영업부분에 대한 영업계획, 회사의 전략 등 향후 전망에 대한 내용도부가적으로 기재할 수 있다.
  - ③ 영업 종류별 주요 내용 및 통계자료는 해당 업종의 감독규정 및 각 협회의 영업보고서 공시기준을 참조하여 기재한다.

- i. 영업 종류별 분류 기준은 각 법령(「은행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보험업법」 등) 및 감독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재하되, 경영자가 경영의 다각 화 실태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구분방법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른다
- ii. 영업실적은 각 영업부문별 수익·비용 내용 및 전년도 대비 주요 변동요인 등을 기재하며 아래의 규정 및 각 협회의 공시기준을 참조하여 기재할 수 있다.
  - 가. 은행업 : 은행업감독규정 금융업경영통일공시기준
  - 나. 금융투자업 : 금융투자업규정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내의 공시기준
  - 다. 보험업: 보험업감독규정 보험경영통일공시기준
  - 라. 상호저축은행업 : 상호저축은행감독규정 상호저축은행통일경영공시기준
  - 마. 여신전문금융업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여신전문금융회사통일경영공시기준
  - 바. 종합금융업 : 종합금융업감독규정 종금사통일경영공시기준
- iii. 영업의 현황중 파생상품거래 현황은 제4-3-5조에 따라 별도로 구분해서 기재한다.

- iv. 해당업종과 관련하여 감독규정이나 통일된 공시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업무형태 등이 가장 유사한 업종을 참조하여 그 내용을 기재한다.
- 제4-3-5조(파생상품거래 현황) ① 공시서류작성기준일 현재 회사의 파생상품거래 현황, 기타 타법인 주식 또는 출자증권 등의 인수와 관련하여 체결한 풋옵션(Put Option), 콜옵션(Call Option), 풋백옵션(Put Back Option)등 계약을 기재하되, 각 감독규정 및 경영통일공시기준을 반영하여 작성한다.

각 감독규정 및 경영통일공시기준에서 별도로 정한바가 없는 경우에는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작성할 수 있다.

(단위 : )

=	구 분	!	이자율	통화	주식	귀금속	기타	계
거 래	위험	회피						
목 적	OH OH	목적						
거 래	장내	거래						
장 소	장외	거래						
	선	도						
거 래	선	물						
형 태	스	왑						
	옵	션						

② 신용파생상품 거래현황은 제1항과 별도로 기재하되, 각 감독규정 및 경영 통일공시기준을 반영하여 작성한다.

### 【 작성지침 】

- i. 각 감독규정 및 경영통일공시기준에서 별도로 정한바가 없는 경우에는 아래의 표를 참 조하여 작성할 수 있다.
  - 가. 신용파생상품 거래현황

(단위 : )

구 분	신	신용매도		신 용 매 입			
<b>十</b> 正	해외물	국내물	계	해외물	국내물	계	
Credit Default Swap							
Credit Option							
Total Return Swap							
Credit Linked Notes							
기 타							
Э							

나. 신용파생상품 상세명세

상품종류	보장매도자	보장매수자	취득일	만기일	액면금액	기초자산 (준거자산)

- 상품종류 : CDS, CO, TRS, CLN, 합성CDO 등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파생상품 종류 기재
- 보장매수자(protection buyer): 신용위험을 이전시키는 포지션을 취한 자
- 보장매도자(protection seller): 신용위험을 이전받는 포지션을 취한 자
- 액면금액 : 기초자산(준거자산) 가액
- 기초자산(준거자산): "A회사 대출채권", "B은행 Primary CBO" 등 구체적 기초자산 명칭을 기재
- ii. 공시대상기간 중 신용파생상품과 관련하여 손실(평가손실은 제외한다)이 발생하였거나 손실발생이 예측(대상회사의 파산, 신용등급의 하락 등)되는 경우 거래당사자, 거래조 건, 계약(손실)금액, 진행상황 등을 별도로 기재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이 "이사의 경영 진단 및 분석의견"이나 "투자위험요소" 등 공시서류의 다른 부분에 기재된 경우에는 기 재를 생략할 수 있다.
- 제4-3-6조(영업설비) 지점, 영업설비, 자동화기기 등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요 영업설비 현황을 기재하고, 공시서류작성기준일 이후 향후 1년 이내에 지점을 신설하거나 중요시설을 확충할 계획이 있는 경우 구체적 내용을 기재한다.

#### 【 작성지침 】

- i. 지점 등 설치 현황: 점포현황에는 특별시, 광역시, 도, 해외지역별로 지점, 출장소, 영업소(보험사), 사무소의 개수를 기재한다. 다만, 해당지역 점포의 수가 전체의 5%미만인경우 적절히 통합하여 기재할 수 있다.
- ii. 영업설비 등 현황 :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 및 건물을 본점(영업점)과 지점합계(출 장소를 포함한다)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 제4-3-7조(그 밖에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① 회사가 속해 있는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본적정성 및 재무건전성관련 지표를 기재한다.

[자본적정성 및 재무건전성 관련지표 예시]

- · 은행업관련 : BIS비율, 유동성비율, 대손충당금비율
- 증권업관련 : 영업용순자본비율, 자산부채비율
- 보험업관련 : 지급여력비율

- i. 자본적정성 및 재무건전성 관련지표 기재에 관한 사항은 업종관련 각 법령 및 감독규정, 각 협회에서 제정한 공시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ii. 각 지표 기재시 지표에 대한 간략한 설명도 함께 기재한다.
- ② 사업부문별로 회사가 속해 있는 산업 전반의 현황에 대해 기재하되 아래의 내용을 포함한다.
- 1. 산업의 특성, 성장성, 경기변동의 특성, 계절성
- 2. 국내외 시장여건(시장의 안정성, 경쟁상황, 시장점유율 추이)
- 3. 시장에서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인 및 회사의 경쟁상의 강점과 단점
- 4. 회사가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주요수단(예 : 지점망, 특화된 서비스, 광고, 판매전략상의 특성 등)

### 【 작성지침 】

시장점유율 추이를 기재함에 있어 구체적인 대상항목, 산정기준 및 자료출처 등을 명시한다.

- ③ 공시대상기간중 새로이 추진하였거나, 이사회 결의 등을 통하여 새로이 추진하기로 한 중요한 신규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의 내용과 전망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기재한다.
- 1. 사업 분야의 내용 및 진출 목적
- 2. 시장의 주요 특성 · 규모 및 성장성
- 3. 신규사업과 관련된 투자 및 예상 자금소요액(총 소요액, 연도별 소요액), 투자자금 조달원천, 예상투자회수기간 등

## 【 작성지침 】

신규사업에 대한 기재가 회사의 경쟁력에 불이익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단, 언론과의 인터뷰, 공시 등 기타의 방법을 통해 관련 내용이 공개된 경 우에는 반드시 해당 내용을 기재해야한다.

④ 그 밖에 공시서류의 다른 부분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중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요한 사항을 요약해서 기재한다.

# 제5장 재무정보 등에 관한 사항

# 제1절 요약재무정보 등에 관한 사항

제5-1-1조(요약재무정보)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3사업연도의 요약재무정보를 기간 비교식으로 기재한다. 다만, 제출대상법인이 소규모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약재무정보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자산항목 :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자산총계

2. 부채항목 :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부채총계

3. 자본항목 : 자본금, 자본총계

4. 손익항목 : 매출액, 영업이익, 계속사업이익(중단사업손익이 없을 경우 기

재생략), 당기순손익, 주당순손익

### 【 작성지침 】

i. 요약재무정보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다.

(단위 : )

사업연도 구 분	<u>제×3기</u>	<u>제×2기</u>	<u>제×1기</u>
	(20XX년X월말)	(20XX년X월말)	(20XX년X월말)
[유동자산]			
·당좌자산			
· 재고자산			
[비유동자산]			
・투자자산			
· 유형자산			
· 무형자산			
· 기타비유동자산			
자산총계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부채총계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			
자본총계			
종속·관계·공동기업 투자주식의			
<u>평가방법</u>			

	(20XXXX~	(20XXXX~	(20XXXX~
	20XXXX)	20XXXX)	20XXXX)
매출액 영업이익(영업손실) 계속사업이익(계속사업손실) [중단사업손익이 없을 경우 기재 생략] 당기순이익(당기순손실) 주당순이익(주당순손실)			

[△는 음(-)의 수치임]

- ii. 금융업 등과 같이 회사가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가 i 에 예시되어 있는 요약 재무정보의 구분과 상이한 경우에는 회사의 구분에 따라 작성할 수 있다.
- iii. 주당순이익은 회계처리기준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산정한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 익을 기재한다. 다만, 지분증권 또는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상장하고 있는 기업이나 상장절차를 진행중인 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희석주당이익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 iv. 회사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한 경우에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회사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항목을 i에서 제시한 계정과목을 대신하여 작성 할 수 있다.
- v. 회사 설립후 3사업연도 미만이거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등에 따라 3사업연도 미만의 재무정보만 기재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재무정보만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재되는 재무정보는 위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거나 이와 동등한 정보가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 vi.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중간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중간기간말 현재의 중간재무제표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기재하고, 비교표시되는 재무정보는 직전 2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의한 금액을 기재한다.
  - 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정한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항목은 중간기간말 현재 중간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에 의한 금액
  - 나. 제4호에서 정한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항목은 누적중간기간에 대한 중간손 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에 의한 금액
- vii. 요약별도재무상태표인 경우 매년 적용한 종속기업,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 투자주식의 평가방법(원가법, 공정가치법, 지분법)을 추가 기재한다.

- viii. 공시대상기간 중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여 재무제표를 수정 또는 재작성한 경우에는 수 정후 또는 재작성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요약재무정보를 기재하고, 이러한 사실을 간략하게 기재한다.
  - 1. 회계감사인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경우
- 2. 금융위원회(외국기업의 경우 해당 국가의 관련법령에 의한 감독기관을 포함한다)로부터 시정요구 또는 정정명령 등을 받은 경우
- 3. 기타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지적, 조치 등을 받은 경우
- ix. 회계감사인이 감사범위의 제한 등으로 의견거절의 감사의견을 표명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동 사유로 인하여 재무제표의 재작성이 불가능하였다는 사실을 기재한다.
- x. 요약재무정보 중에서 회계감사인의 감사를 받지 아니한 재무제표에 근거한 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재한다.
- 제5-1-2조(요약연결재무정보)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요약재무정보는 제5-1-1조를 준용하여 기재한다. 이 경우 "요약재무정보"는 "요약연결재무정보"로, "회계감사인"은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인"으로 한다. 다만, 제출대상법인이 소규모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약연결재무정보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요약연결재무정보는 제5-1-1조제1항에 대한 작성지침 i의 표를 기본으로 하며, 다음의 사항을 추가한다.

- 가. 자본항목으로 소수주주지분
- 나. 손익항목으로 지배회사지분순이익
- 다. 연결에 포함된 회사수
- 제5-1-3조(요약재무정보등의 기재순서) 회사가 채택한 회계처리기준상 주된 재무 제표가 연결기준이거나 사업의 특성상 연결기준의 재무정보가 별도(개별)기준 보다 유용한 경우에는 제5-1-2조에 따른 요약연결재무정보를 먼저 기재한 후 제5-1-1조에 따른 요약재무정보를 기재한다.

#### 【 작성지침 】

i.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연결재무제표를 주된 재무제표로 하고, 별도재무제표는 보충적 재무정보로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한 기업의 경우에는 연결기준의 재무정보가 별도기준에 우선하여 기재되어야 한다. 이하 이 장에서 동일하게 적용한다.

ii. 사업의 특성상 연결기준의 재무정보가 별도(개별)기준보다 유용한 경우로는 지주회사 등이 있다.

# 제5-1-4조(재무정보 이용상의 유의점) (삭 제)

- 제5-1-5조(외국기업의 추가고려사항) ① 회사가 외국기업인 경우에는 회사가 채택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요약재무정보를 작성하고, 채택한 회계처리기준을 명시한다. 다만, 국제회계기준 또는 미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처리기준이외의 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하여 요약재무정보를 작성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로 기재한다.
  - 1. 채택하고 있는 회계처리기준과 국내 회계처리기준과의 차이에 대한 구체적 내용
  - 2. 제1호의 내용이 회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 3. 국내의 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하여 비교식으로 작성한 최근 2사업연도의 요약 재무정보
  - ② 해당 국가에서 연결재무제표만을 공시하는 외국기업의 경우에는 제5-1-2조에 따른 요약연결재무정보만 기재한다.
  - ③ 삭제<2020.7.1>
- 제5-1-6조(외화표시 요약재무정보등의 추가고려사항) 요약재무정보 및 요약연 결재무정보가 외국통화 기준으로 기재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로 기재 한다.
  - 1. 원화표시재무정보(재무상태표의 자산과 부채는 해당 보고기간말의 마감환율을 적용하고, 포괄손익계산서의 수익과 비용은 해당 보고기간의 평균환율을 적용)
  - 2. 최근 3사업연도(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중간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중간기간말과 직전 2개 사업연도)의 기말환율·평균환율 및 최고·최저환율
  - 3. 제1호에 따라 기재한 원화표시 재무정보의 한계 등과 관련한 투자 유의사항

## 【 작성지침 】

i . 환율정보를 기재할 때에는 다음의 표를 참조하되, 회사의 상황에 따라 양식을 추가할 수 있다.

구 분	제xx기	제xx기	제xx기	제xx기	제xx기
기말환율					
최고환율					
최저환율					

ii. 유의사항은 원화표시 정보의 하단에 기재하며, 다음의 문구를 포함하되, 회사의 상황에 따라 추가·변경할 수 있다.

### 원화정보이용시 유의사항

제공되는 원화표시 재무정보는 외화표시 재무정보의 참고자료로서 환율 적용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나타낼 수 있으니 이용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2절 회계감사인에 관한 사항

제5-2-1조(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① 공시대상기간중 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 및 중간재무제표에 대하여 회계감사인의 감사 또는 검토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다.

1. 회계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검토의견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한다.

사업연도	감사인	감사의견	강조사항 등	핵심감사사항
제××기				
M××フ]				

2. 감사용역 체결현황은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한다.

사업연도	감사인	내 용 -	감사계	약내역	실제수행내역		
사람인도	검사인		보수	시간	보수	시간	
- 제××기							
제××기							

3. 회계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은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한다.

사업연도	계약체결일	용역내용	용역수행기간	용역보수	비고
- Al××フ]					
- M××フ]					

4. 재무제표 중 이해관계자의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내부감사기구가 회계감사인과 논의한 결과를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한다.

구분	일자	참석자	방식	주요 논의 내용
1				
2				
3				

- i. 회사가 외국기업인 경우 그 기업의 설립근거가 되는 국가의 관련법령에 의하여 회계 감사를 한 감사인이 제시한 의견, 확인 등을 기재한다.
- ii. 감사의견이 적정의견 이외의 감사의견인 경우 그 지적사항과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요약 기재하며, 감사보고서에 감사의견 이외 강조사항과 핵심감사사항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기재하고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을 기재한다. 이 경우 별도 단락으로 기재된 계속기업관련 중요한 불확실성 관련 사항이 있는 경우 강조사항 등에 포함하여 기재한다.
- iii. 감사용역 체결현황의 「감사계약내역」에는 용역계약 시점의 감사(검토 포함)보수 총액 및 총 추정 감사(검토 포함)시간을 기재하고, 「실제수행내역」에는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 하는 사업연도의 감사(검토 포함)와 관련하여 공시서류작성제출일까지의 실제 감사(검토 포함) 보수 지급금액 및 투입시간을 누적 기재한다, 단, 공시서류작성기준일 현재 계약조건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수치를 「감사계약내역」에 기재한다.
- iv. 감사용역 체결현황의 총 소요시간에는 감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수습공인회계사 포함)의 현장감사(검토포함)와 감사보고서 작성작업 등에 소요된 총 시간을 포함한다.
- v. 비감사용역계약이라 함은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중간감사 포함) 및 검토용역을 제외한 용역계약을 말하며, 용역내용에는 구체적인 용역계약명을 기재한다.
- vi.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공시서류제출일까지 기간동안 내부감사기구가 회계감사인과 논의한 결과를 회의 시간 순서에 따라 기재하며, 참석자는 회사측과 감사인측 각각에 대해 주요 참석자의 소속과 직위 및 총참석인원을 기재하고, 방식은 대면회의, 서면회의 등으로 구분한다.
- vii. 주요 논의 내용으로는 다음의 예시를 참고할 수 있다.
  - 가. 검토 또는 감사 보수, 시간 및 필요한 인력에 관한 논의
  - 나. 계획된 검토 또는 감사 범위 및 시기에 대한 논의
  - 다. 부정위험과 관련하여 지배기구 감시기능에 대한 논의
  - 라. 검토 또는 감사에서의 유의적인 발견된 사항에 대한 논의
  - 마. 유의적 내부통제 미비점 관련 논의
  - 바. 검토 또는 감사시 미수정왜곡표시 및 후속사건 관련 논의
  - 사. 검토 또는 감사의견의 변형 가능성 관련 논의 등
- ② 종속회사 중 공시대상기간중 회계감사인으로부터 적정의견(회사가 외국기

업인 경우 이에 준하는 의견을 말한다) 이외의 감사의견을 받은 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다.

- 1. 적정의견 이외의 감사의견을 받은 종속회사의 명칭
- 2. 적정의견 이외의 감사의견을 표명한 종속회사의 회계감사인 명칭
- 3. 적정의견 이외의 감사의견을 받은 사유 및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 【 작성지침 】

종속회사중 적정의견 이외의 감사의견을 받은 회사가 없는 경우에는 모든 종속회사가 회계감사인으로부터 적정의견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재한다.

- ③ 회사와 전·당기 감사인이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설치된 전·당기 감사인간 의견불일치 조정협의회(이하 "조정협의회"라 한다)에서 전기 재무제표의 오류 여부 및 수정 등에 대한 협의를 하였음에도 의견이 합치되지 않고, 당기 비교표시 재무제표만 수정한 경우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다.
- 1. 조정협의회의 주요 협의내용을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한다.

## 조정협의회 주요 협의내용

구 분		내 용
	개최 일자	
참	회사	
석	전기 감사인	
자	당기 감사인	
	협의대상	
	요 협의내용 및 견 불합치 이유	

2. 전기 재무제표와 당기 재무제표에 비교표시되는 전기 재무제표의 불일치 사실에 대한 세부정보를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한다.

# 전·당기 재무제표 불일치에 대한 세부정보

(단위: 원)

재무제표명	계정과목명	전기금액 (A)	당기 비교 표시금액(B)	불일치 금액 (B-A)

- i. 제1호 및 제2호는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외부감사와 관련하여 작성한다.
- ii. 제1호의 표 중「개최일자」에는 조정협의회의 개최 날짜를 기재하고, 조정협의회가 2회 이상 개최되는 경우 각 개최일자를 모두 기재한다.
- iii. 제1호의 표 중 「참석자」에는 조정협의회에 참석한 회사의 명칭 및 임직원 직책(대표이사, 재무담당이사 등), 전·당기 감사인의 명칭 및 임직원 직책(품질관리실장, 담당이사 등) (감사반의 경우 구성원)을 기재하되, 임직원(구성원)의 성명은 기재하지 않는다.
- iv. 제1호의 표 중「협의대상」에는 당기 감사인이 전기 재무제표의 오류라고 주장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 v. 제1호의 표 중「주요 협의내용 및 의견 불합치 이유」에는 회사 및 전·당기 감사인이 협의대상에 대하여 협의한 내용 및 의견이 합치되지 않은 이유를 기재하되, 관련 기준 서상 어떤 항목에 대한 의견이 무슨 이유로 차이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 vi 제2호의 표 중 「불일치 금액(B-A)」에는 「당기 비교표시금액(B)」에서 「전기금액(A)」을 차감한 수치를 기재한다.
- **제5-2-2조(회계감사인의 변경)** ① 공시대상기간동안 회계감사인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사유를 기재한다.

- i. 회계감사인 변경사유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기재한다.
- 가. 회계감사인 변경이 변경전 회계감사인과 체결한 감사계약의 계약기간중에 발생한 것 인지 또는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것인지 여부
- 나. 회계감사인 변경이 회계감사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것인지 또는 회사의 의사외의 기타 사유(법규 등)에 의한 것인지 여부
- ii. 회계감사인 변경과 관련하여 회사가 교체사유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요약하여 기재한다.
- ② 공시서류 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연결재무제표 제출시 종속 회사가 회계감사인을 변경하거나 신규로 회계감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하여 기재한다.

# 제3절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제5-3-1조(내부통제)**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회사의 내부통제의 유효성에 대해 감사한 결과를 기재한다.

### 【 작성지침 】

- i.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감사보고서상 내부통제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경우에는 기재를 생략한다.
- ii. 감사결과 지적사항(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재산 및 손익상태 표시 등)이 있는 경우 그 내용 및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요약하여 기재하되, 지적사항의 처리내용을 별도로 추가하여 기재한다.
- 제5-3-2조(내부회계관리제도)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다. 다만,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생략할 수 있다.
  - 1. 내부회계관리자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문제점 또는 개선방안 등을 제시한 경우 그 내용 및 후속 대책
  - 2. 공시대상기간중 회계감사인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하여 의견표명을 한경우 그 의견, 중대한 취약점이 있다고 지적한 경우 그 내용 및 개선대책

### 【 작성지침 】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개별회사 기준으로 작성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한 기업 또는 외국기업 등으로서 내부회계관리제도 또는 이와 유사한 통제제도를 연결기준으로 구 축하여 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연결기준으로 평가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사항을 추 가하여 기재한다.

제5-3-3조(내부통제구조의 평가) 회계감사인으로부터 공시대상기간동안 제5-3-2 조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이외에 내부통제구조를 평가받은 경우에는 그 주요 내 용을 기재한다.

## 【 작성지침 】

회계감사인의 평가내용중에 내부통제구조에 중대한 결함이 지적된 경우에는 그에 대한 회사의 대응조치를 함께 기재한다.

# 제4절 재무제표 등

제5-4-1조(재무제표) 공시대상기간의 재무제표[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를 기재한다. 다만, 제출대상법인이 소규모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i. 회계감사인의 감사결과 수정된 재무제표를 기재한다. 다만, 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재무제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연도 재무제표 상단에 그 사실을 기재한다.
- ii. 정기 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안건이 승인되기 전인 경우에는 '주주총회 승인전 재무제표'라는 사실과 '향후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 관련 안건이 부결되거나 수정이 발생한 경우 정정보고서를 통해 그 내용 및 사유 등을 반영할 예정'이라는 문구를 재무제표 하단에 표시한다.
- iii. 재무제표 주석은 공시대상기간에 불구하고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직전사업연도의 재무제표 주석만을 기재할 수 있다.
- iv. 감사 또는 검토받지 않는 중간재무제표를 기재하는 경우에는 감사 또는 검토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중간재무제표 상단에 기재한다.
- v. 중간재무제표는 공시대상기간에도 불구하고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9장 "중간재무제표" 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작성하되, 기업회계기준서 제 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작성하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에서 정한 전체 재무제표의 형식 및 내용이 부합하여야 한다.
- vi. 외국기업의 경우에는 그 기업이 채택한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중간기간 및 중간재무제표 작성방식에 따른 중간재무제표를 기재하고, 채택한 회계처리기준을 명시한다.
- 제5-4-2조(연결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공시대상기간의 연결 재무제표[연결대차대조표(연결재무상태표), 연결손익계산서(연결포괄손익계산서), 연결현금흐름표, 연결자본변동표, 주석]를 기재한다.

연결재무제표는 제5-4-1조를 준용하여 기재한다. 이 경우 "재무제표"는 연결재무제표로, "회계감사인"은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인"으로, "중간재무제표"는 "중간연결재무 제표"한다.

제5-4-3조(외국기업의 추가고려 사항) 제5-4-1조 또는 제5-4-2조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가 원화가 아닌 통화로 기재된 경우 제5-1-6조 각 호의 내용을 추가로 기재한다.

# 제5절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 제5-5-1조(재무제표 재작성 등 유의사항) (연결)재무제표를 이해하거나 기간별로 비교하는데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시기, 내용 및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효과 등을 요약하여 기재한다.
  - 1. (연결)재무제표를 재작성한 경우 재작성사유, 내용 및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 2. 합병, 분할, 자산양수도, 영업양수도
  - 3. 자산유동화와 관련한 자산매각의 회계처리 및 우발채무 등에 관한 사항
  - 4. 기타 재무제표 이용에 유의하여야 할 사항

### 【 작성지침 】

- i. (연결)재무제표를 재작성한 사유 중 전기오류수정에 관한 내용은 아래에 제시된 표를 참 조하여 기재할 수 있으며, 효과적인 정보제공을 위하여 아래 형태의 표를 적절히 변형 할 수 있다.
- 1) 전기오류의 성격

	① 오류 계정과목	
(71)	② 발생 경위	
(フト)	③ 오류의 내용	
	④ 관련 기준서	
	① 오류 계정과목	
(나)	② 발생 경위	
(Lf)	③ 오류의 내용	
	④ 관련 기준서	

(2) 오류수정의 영향을 받는 재무제표

2-1) 재무상태표

(단위: 원)						
	관련	20X1년말				
과 목	주석	이전 보고금액	(가)관련 수정금액	(나)관련 수정금액	재작성 금액	
자 산						
1. 유동자산						
재고자산						
자산총계						
부 채						
Ⅱ. 비유동부채						
이연법인세부채						
부채총계						
자 본						
Ⅲ. 이익잉여금						
자본총계						

(단위: 원)					
	관련	20X1년초(전기초)			
과 목	주석	이전 보고금액	(가)관련 수정금액	(나)관련 수정금액	재작성 금액
자 산					
1. 유동자산					
재고자산					
자산총계					
부 채					
Ⅱ. 비유동부채					
이연법인세부채					
부채총계					
자 본					
Ⅲ. 이익잉여금					
자본총계					

# 2-2) 손익계산서 및 포괄손익계산서

					(단위: 원)	
	IJL⊇4		20X1년			
과 목	관련 주석	이전 보고금액	(가)관련 수정금액	(나)관련 수정금액	재작성 금액	
Ⅰ. 매출액						
II. 매출원가						
상품매출원가						
Ⅲ. 영업이익						
IV. 법인세비용 차감전순이익						
법인세비용						
V. 당기순이익						
총 포괄손익						
주당순이익						
희석주당순이익						

# 2-3) 자본변동표

(단위: 원)						
71 0	이전	(가)관련	(나)관련	TUZEM 그에		
과 목	보고금액	수정금액	수정금액	재작성 금액		
20X1년초						
당기순이익						
총 포괄손익						
20X1년말						

# 2-4) 현금흐름표

				(단위: 원)
				(セカ・ゼ)
		20X1	년말	
과 목	이전	(가)관련	(나)관련	TII TI / J _ D OII
	보고금액	수정금액	수정금액	재작성 금액
1. 영업활동 현금흐름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흐름				
당기순이익(손실)				
Ⅱ. 투자활동 현금흐름				
Ⅲ. 재무활동 현금흐름				
IV.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감				
(   +    +     )				
V.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VI.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ii. 최근 3사업연도중 합병, 분할, 자산양수도 또는 영업양수도를 한 사항이 있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재한다.
  - 가. 시기 및 대상회사(거래상대방)
  - 나. 주요 내용 및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 다. 관련 공시서류(증권신고서, 주요사항보고서 등)를 제출한 경우 제출일자
- iii. 기타 (연결)재무제표 이용에 유의하여야 할 사항으로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이외의 사항으로서 감사보고서상 강조사항과 핵심감사사항으로 기재된 것 등이 포함된다. 이 경우 별도 단락으로 기재된 계속기업관련 중요한 불확실성 관련 사항이 있는 경우 강조사항 등에 포함하여 기재한다.
- 제5-5-2조(대손충당금 설정현황) 공시대상기간의 대손충당금 설정현황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다만, 공시서류의 다른 부분에서 기재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생략할 수 있다.
  - 1. 계정과목별 대손충당금 설정내용
  - 2. 대손충당금 변동현황
  - 3. 매출채권관련 대손충당금 설정방침
  - 4.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 경과기간별 매출채권 잔액 현황

- i. 공시서류의 다른 부분에서 기재하고 있는 경우라 함은 다른 부분의 기재내용이 재무제표 등의 기재내용과 동일한 경우를 말하며, 공시서류의 다른 부분에 재무제표 등의 전부나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부분의 기재내용에 재무제표 등의 기재내용을 추가함으로서 재무제표 등의 내용을 포함하게 되는 경우그 내용을 추가하고 다른 부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참조하도록 할 수 있다.
- ii. 대손충당금 설정현황은 별도(개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되, 제5-1-3조에 따라 연결 재무정보를 먼저 기재하는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 iii. 계정과목별 대손충당금 설정내용은 아래에 제시된 표를 참조하여 기재할 수 있으며, 효과적인 정보제공을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표를 이용할 수 있다.

(단위 : )

구 분	계정과목	채권금액	대손충당금	대손충당금 설정률
제××기				
	합 계			
제××기				
	합 계			
제××기				
	합 계			

- 가. 계정과목은 장·단기 매출채권, 장·단기 대출채권(장·단기 대여금 포함) 등 대손충당금 관련계정을 기재하되 업종별로 고유한 계정이 있는 경우 당해 계정과목을 기재한다.
- 나. 채권금액은 해당 계정의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의 합계액을 말한다.
- 다. 대손충당금 설정률은 소수점이하 첫째자리까지 기재한다.
- iv. 대손충당금 변동현황은 아래에 제시된 표를 참조하여 기재할 수 있으며, 효과적인 정 보제공을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표를 이용할 수 있다.

(단위 : )

구 분	제××기	제××기	和××기
1. 기초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2. 순대손처리액(①-②±③)			
① 대손처리액(상각채권액)			
② 상각채권회수액			
③ 기타증감액			
3. 대손상각비 계상(환입)액			
4. 기말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 가. 기초 및 기말 대손충당금 잔액합계는 기초 또는 기말현재 장·단기 매출채권, 장·단기 대출채권, 장·단기 대경해권, 장·단기 대여금 등의 계정에 대하여 설정한 대손충당금 합계액을 말한다.
- 나. 대손처리액(상각채권액)은 당기 중 회수불능채권으로 판명되어 대손처리한 채권금액을, 상각채권회수액은 대손처리한 채권으로부터 당기중 회수된 금액을 기재한다.
- 다. 기타증감액은 합병, 회사분할 등으로 인한 대손충당금의 순증감액을 기재한다.
- 라. 대손상각비 계상(환입)액은 장·단기 매출채권, 장·단기 대출채권, 장·단기 대여금 등의 계정에 대하여 당기 중 대손상각비로 계상(환입)한 금액을 기재한다.
- v. 매출채권관련 대손충당금 설정기준에 따라 다음의 정보를 기재한다.
  - 가. 대손충당금 설정 시 이용한 정보(신용위험의 유의적 증가 판단기준 및 이용지표의 산정 대상기간 등), 기준금액(채권 잔액), 대손처리기준
  - 나. 매출채권별로 거래처의 현재 재무상태·미래 상환능력·담보설정유무 등을 기준으로 거래처를 구분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경우 그 구분기준 및 구분단계별 대손충 당금 설정률

vi.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 경과기간별 매출채권잔액 현황은 아래에 제시된 표를 참조하여 기재할 수 있으며, 효과적인 정보제공차원에서 다양한 형태의 표를 이용할 수 있다.

(단위 : )

						( , , ,
구분	경과기간	6월 이하	6월 초과 1년 이하	1년 초과 3년 이하	3년 초과	계
	일반					
금액	특수관계자					
	계					
	구성비율					100%

- 가. 매출채권이란 주된 영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매출채권 또는 미수금 등을 말하며, 대출채권등 금전소비대차로 인한 채권은 매출채권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 나. 일반은 특수관계자를 제외한 자를 말하며, 특수관계자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 1024호 또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5장에 의한 특수관계자를 말한다. 단, 일반과 특수관계자로 구분하지 않고 통합하여 기재할 수 있다.
- 다. 구성비율은 매출채권잔액 합계액 대비 경과기간별 매출채권잔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소숫점이하 첫째자리까지 기재한다.
- 라. 경과기간의 기산일은 매출채권이 발생한 날의 익일로 한다.
- 마. 매출채권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 총자산액의 2% 미만이거나 10억원 미만인 경우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출채권의 합계액은 대손충당금을 차감하기 전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제5-5-3조(재고자산 현황 등) 공시대상기간의 재고자산 보유현황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다만, 공시서류의 다른 부분에서 기재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생략할 수 있다.
  - 1. 재고자산의 사업부문별 보유현황
  - 2. 재고자산의 실사내용

#### 【 작성지침 】

i. 공시서류의 다른 부분에서 이미 기재하고 있는 경우라 함은 다른 부분의 기재내용이 재무제표 등의 기재내용과 동일한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공시서류의 다른 부분에 재무제표 등의 전부나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부분의 기재내용에 재무제표 등의 기재내용을 추가함으로서 재무제표 등의 내용을 포함하게 되는 경우 그 내용을 추가하고 다른 부분을 참조하는 방식으로 기재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그 다른 부분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 ii. 재고자산 현황 등은 별도(개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되, 제5-1-3조에 따라 연결재무 정보를 먼저 기재하는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 iii. 재고자산의 사업부문별 보유현황은 아래에 제시된 표를 참조하여 기재할 수 있으며, 효과적인 정보제공을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표를 이용할 수 있다.

(단위:)

사업부문	계정과목	제××기	제××기	제××기	비고
	소 계				
합계					
	합 계				
총자산대비 지 [재고자산합계	%	%			
	산회전율(회수) +:{(기초재고+기말재고)÷2}]	회	회		

- 가. 재고자산은 공시대상 사업부문별로 상품, 제품, 재공품, 원재료 및 소모품 등 대차 대조표(재무상태표)상 계정과목의 순서로 기재한다.
- 나. 공시서류 작성기준일 현재의 총재고자산이 총자산액의 2% 미만이거나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부문별로 기재하지 않고 주된 사업부문에 통합하여 기재할 수있다.
- 다. 공시서류 작성기준일 현재 재고자산이 총 재고자산의 10% 미만인 사업부문은 일 괄하여 기재할 수 있다.
- 라. 원재료, 소모품 등으로서 2 이상의 사업부문에 공통되는 재고자산은 인과관계 및 효익 관계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배부한다. 배부가 어려운 공통 재고자산이 있는 경우는 동 재고자산의 향후 사용금액 또는 사용빈도 등이 가장 큰 사업부문의 재고자산에 합산하여 기재할 수 있다.
- 마. 당해 사업연도 중 사업중단, 영업양수도, 신규사업진출, 합병 등으로 인한 재고자 산의 증감내용 및 총자산대비 재고자산 구성비율, 재고자산회전율의 중요한 변동 이유는 비고란에 기재한다
- 바. 총자산대비 재고자산 구성비율 및 재고자산회전율은 소수점이하 첫째자리까지 기재한다.
- 사. 담보로 제공된 것과 다른 곳에 보관된 것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비고란에 기재한다.

- iv. 재고자산의 실사내용은 실사일자, 재고실사시 독립적인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감사인 등의 참여 및 입회여부, 장기체화재고 등 현황, 기타 재고자산의 담보제공여부등 재고실사와 관련하여 투자자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 가. 실사일자는 재고자산의 실사일을 기재하되, 실사가 대차대조표일(보고기간종료일) 이외의 날에 행하여진 경우에는 실사일과 대차대조표일(보고기간종료일) 사이의 재고자산 차이의 확인요령을 기재한다.
  - 나. 실사과정에서 장기체화재고, 진부화재고 또는 손상재고 등을 파악한 경우에는 다음 표에 따라 그 보유현황 및 평가내용을 기재한다.

					(단위 : )
계정과목	취득원가	보유금액	당기 평가손실	기말잔액	비고
합 합 계					

※ 위 표에서 보유금액란은 파악된 장기체화재고 등의 당기 평가 전 장부가액을 기재하고 기 말잔액란은 보유금액에서 당기 평가손실을 차감한 잔액을 기재한다.

제5-5-4조(수주계약 현황) 발생한 누적계약원가를 추정총계약원가로 나눈 비율을 진행률 측정에 사용하는 수주계약은 계약수익금액이 직전사업연도 재무제표상 매출액의 5%이상인 계약별로 발주처, 진행률, 미청구공사금액(손상차손누계액구분표시), 공사미수금(대손충당금 구분표시)등을 기재한다.

### 【 작성지침 】

i. 기재대상 계약은 K-IFRS 및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진행률, 미청구공사금액, 공사미수금 등을 재무제표 주석에 공시하는 계약에 한하며, 아래에 제시된 표를 참조하여 별도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각각 기재한다(동일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재하고 생략 가능).

(단위 : )

회사	│ 품목│ 발주처│ 계약일	공사	수주	진		미청구공사		공사미수금		
명		목 발주처	레   계약의	기한	총액	행	총액	손상차손	총액	대손
90						률	5~	누계액	중취	충당금
	합계									

ii. 관련법령에서 비밀이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한 경우와 계약에서 비밀이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하고 계약당사자가 공시를 동의하지 않아 공시하게 되면 기업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과 사유, 다른 방법으로 공시하거나 공개하지 않았다는 사실 및 상법에 따른 감사위원회(감사위원회가 없는 경우에는 감사)

에 보고여부를 기재하고, 그 내용을 생략할 수 있다.

**제5-5-5조(공정가치평가 내역)** 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한 회사는 공시 대상기간중 금융상품의 공정가치와 그 평가방법 등을 기재한다.

### 【 작성지침 】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평가방법에 대한 기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 공 시"문단 25부터 30까지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② 유형자산 재평가를 시행한 회사는 공시대상기간중 유형자산의 공정가치와 그 평가방법 등을 기재한다.

### 【 작성지침 】

유형자산의 공정가치 평가방법에 대한 기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문단 77 및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0장 "유형자산"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기재사항을 공시서류의 다른 부분에서 기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부분을 참조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다른 부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제5-5-6조** 삭제<2021.7.13>

제5-5-7조(기업인수목적회사의 재무규제 및 비용 등) ① 기업인수목적회사의 경우 차입, 채무보증 및 채권발행제한 등 재무규제에 대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기재한다.

#### 【 작성지침 】

상장 이후 증자방식으로 조달한 자금에 대한 사용목적이 제한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포함하여 기재한다.

②기업인수목적회사의 비용지출에 관한 한도가 정해져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기재한다. 비용지출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재한다.

③기업인수목적회사의 비용지출이 예치자금등에 미치는 영향을 기재한다.

# 【 작성지침 】

관련법규에 따라 예치자금등을 주주에게 지급하는 것과 관련된 영향을 포함하여 기재한다.

# 제6절 배당에 관한 사항

제5-6-1조(배당) ① 배당에 관한 회사의 정책, 배당의 제한에 관한 사항 등 배당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기재한다.

### 【 작성지침 】

- i. 배당에 관한 회사의 정책은 향후 배당목표에 대해 주주에게 제공하는 설명자료로서 자사주 매입 및 소각 계획 등을 포함하여 기재한다. 동 정책에는 배당수준의 방향성 (현행 유지, 확대 또는 축소) 및 배당 목표 결정시 사용된 재무지표의 산출방법(예시: 잉여현금흐름의 계산식) 등을 포함하여 기재한다.
- ② 최근 3사업연도중 배당금총액, 배당성향, 배당수익률, 주당 배당금 등을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하되, 내용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이나 그 밖의 정보는 별도로 기술한다.

### 주요배당지표

구분		당기	전기	전전기
		제 XX 기	제 XX 기	제 XX 기
주당 액면가액(	원)			
(연결)당기순이익(박	백만원)			
(별도)당기순이익(박	백만원)			
(연결)주당순이의	l(원)			
현금배당금총액(백만원)				
주식배당금총액(백만원)				
(연결)현금배당성향(%)				
현금배당수익율(%)				
주식배당수익율(%)				
주당 현금배당금(원)				
주당 주식배당(주)				

- i. (별도)당기순이익은 회사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에만 작성한다.
- ii. 주당순이익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3호 또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6장에 의해 산출한다.
- iii. 당기 현금배당금총액 및 주식배당금총액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대하여 정기 주주총회에 서 결의하였거나 안건으로 상정 예정인 현금(주식)배당금과 해당사업연도중에 이루어진 분기배당(중간배당을 포함한다)금액을 합산하여 기재하고, 표 하단에 분기배당(중간배당을 포함한다)금액 지급내용을 별도로 기재한다. 다만, 정기 주주총회에서 배당안건이 승인되기 전인 경우에는 표 하단에 '상기 표의 당기 현금(주식)배당금은 정기주주총회 승인전 금액으로 향후 정기주주총회에서 부결되거나 수정이 발생한 경우 정정보고서를 통해 그 내용 및 사유 등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표시한다.
- iv. 전기 및 전전기 현금배당금총액은 사업연도에 대하여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한 현금배당 금 및 해당사업연도중에 이루어진 분기배당(중간배당을 포함한다)금액을 합산하여 기재하고, 표 하단에 분기배당(중간배당을 포함한다)금액 지급내용을 별도로 기재한다.
- v. 주식배당금 총액은 주식배당으로 발행할 주식의 총수에 액면금액을 곱하여 기재한다.
- vi. 현금배당성향은 당기순이익(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기준 당기순이익을 기재한다)에 대한 현금배당총액의 비율을 백분율로 기재한다.
- vii. 현금배당수익률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외국기업으로서 다른 산식에 의하여 현금배당수익률을 산정한 경우에는 그 산식을 기재하며, 주권비상장법인의 경우에는 현금배당수익률을 기재하지 않는다.

\_\_\_\_\_1주당 현금배당금 \_\_\_\_\_과거 1주일간 배당부 종가의 평균\*

- \* 배당기준일 전전거래일(배당부종가일)부터 과거 1주일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 코스 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에서 형성된 최종시세가격의 산술평균가격
- viii. 주식배당수익률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외국기업으로서 다른 산식에 의하여 주당배당수익률을 산정한 경우에는 그 산식을 기재하며(수익률이 음(-)인경우에는 기재하지 아니한다). 주권비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주식배당수익률을 기재하지 않는다.

배당락직후 주식의 종가 + (1주당 배당주식수×배당락직후 주식의 종가) 과거 1주일간 배당부 종가의 평균

ix. 주당 현금배당금은 주당 현금으로 지급한 배당금을 기재하며. 주당 주식배당은 주당 배

당으로 지급한 주식의 수를 기재한다.

- x. 주당 현금배당금 및 주당 주식배당은 소액주주에 대한 배당금을 기준으로 기재하되, 배 당에 차등이 있는 경우에는 내용을 표 하단에 별도로 기재한다.
- xi. 현금이나 주식 외에 현물로 배당을 지급한 경우 내용을 기재한다. 주주가 배당되는 금 전 외의 재산 대신 금전지급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경우 그 금액 및 청구기간 을, 일정수 미만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금전 외의 재산 대신 금전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그 일정 수 및 금액을 추가로 기재한다.
- xii. 다양한 종류의 주식을 발행하고, 주식의 종류에 따라 배당의 내용을 달리 한 경우에는 배당수익률, 주당 배당금 등을 주식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 ③ 연속배당기간, 평균 배당수익률 등 과거 배당에 대한 이력을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하되, 내용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이나 산출방법 등은 표 하단에 별도로 기술한다.

### 과거 배당 이력

(단위: 회, %)

연속 바	l당횟수	평균 배당수익률		
분기(중간)배당 결산배당		최근 3년간	최근 5년간	

- i. '연속 배당횟수'와 '평균 배당수익률'을 산정할 경우 현금배당 및 주식배당금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최근 5년간 배당을 지급하지 않은 등의 사유로 과거 배당이력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재한다.
- ii. '연속 배당횟수'는 공시작성대상기간과 관계없이 연속으로 '분기(중간)배당'과 '결산배 당'을 지급한 횟수를 각각 구분하여 산출하되, 최근 분·반기 또는 사업연도 결산기 배당지급 현황을 반드시 포함한다.(예: 3분기 보고서의 경우, 3분기에 배당을 지급하 였고 과거 10년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매분기별로 배당을 연속 지급한 경우 30회로 계산하고 분기(중간)배당이 중단되었다가 올해 3분기에 배당을 지급한 경우 1회로 기재).
- iii. 평균 배당수익률은 단순평균법으로 계산한다.(예: 최근 3년간 평균 배당수익률은 3년 간 배당수익률의 합을 3으로 나눔)
- ④ 공시서류작성기준일 현재 이익참가부사채의 잔액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발행일자, 잔액, 이익참가의 조건 및 내용을 기재한다.

# 제7절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에 관한 사항

제5-7-1조(지분증권의 발행 등에 관한 사항) ① 공시대상기간중 신규로 발행하였거나 감소한 주식의 발행(감소)일자, 주식의 종류, 발행(감소) 주식의 수, 주당 액면가액 및 발행가액, 발행(감소)형태 등을 다음의 표를 이용하여 기재한다.

(기준일 : )

주식발행(감소)	발행(감소)형	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구역일행(음호 <i>)</i> 일자	를 왕(음·도)왕 태	종류	수량	주 당 액면가액	주 당 발행(감소)가액	비고			

- i. 주식의 발행(감소)일자에는 다음의 일자를 기재한다.
  - 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주금납입일의 다음 날
  - 나.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신주배정기준일
  - 다. 전환권 행사, 신주인수권 행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상환권 행사에 의한 경우에는 권리행사일
  - 라.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등기일
  - 마.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주식배당 결의일
  - 바. 감자의 경우에는 감자기준일
- ii. 발행형태는 유상증자, 무상증자, 전환권행사, 신주인수권행사, 주식매수선택권행사, 출자 전환 등으로 기재하고, 증자방식(일반공모, 주주배정, 주주우선공모, 제3자배정)등 특이 사항은 비고란에 기재한다. 감소형태는 유상감자, 무상감자, 상환권 행사로 구분해서 기 재하고, 감자형태와 관련된 특이사항은 비고란에 기재한다.
- iii. 주식의 종류와 수량에는 다양한 종류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 그 종류와 수량을 기재하고 각 주식에 부가된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기재한다.
- iv. 전환권 행사, 신주인수권 행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의하여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분기단위로 합산하여 기재할 수 있다(전환권, 신주인수권의 경우 비고란에 해당 사채의 회차를 명시한다).
- v. 주당발행가액에는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주당 발행가액을.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의 경우

액면가액을 기재한다. 주당감소가액은 유상감자의 경우에만 기재한다.

- vi. 비고란에 증자시에는 증자비율을. 감자시에는 감자비율을 추가적으로 기재한다.
- vii. 현금납입이 아닌 경우에는 현물출자 자산의 내용을 별도로 간략히 기재한다.
- ② 공시서류작성기준일 현재 과거에 발행한 미상환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전환형 조건부 자본증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증서 등 향후 자본금을 증가시킬 수 있는 증권에 대한 내용을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하며, 내용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이나 그 밖의 정보는 별도로 기술한다.

### 1. 미상환 전환사채

# 미상환 전환사채 발행현황

(기준일:) (단위: 원, 주) 전환조건 미상환사채 구 분 권면 전화 전화 (전자 대상 청구 권면(전 전환비율 전환가능 비고 회차 발행일 만기일 전환가액 자등록) 주식의 등록) 가능 (%) 주식수 총액 종류 기간 총액 종 류 전환사채 . . . 합계

# 2. 미상환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이 표시된 증서 포함) 미상환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발행현황

(단위:원,주) (기준일:) 미행사 구 분 미상환 신주 신주 행사조건 권 면 행사 인수권 사채 인수권 (전자 대상 회차 발행일 만기일 비고 행사 행사 권면(전 행사 등록) 주식의 행사 가능 종 류 총액 종류 비율 자등록) 가능 기간 가액 (%) 총액 주식수 신주인수권부사채 합 계

3. 미상환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 미상환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현황

(기준일 : ) (단위 : 원, 주)

구분		회차	발행일	만기일	권면 (전자	주식 전환의	주식 전환의	저항이	전환	주식전환으 발행할		비고
1 4		되시	202	CAS	등록) 총액	사유	범위	가액	종류	수	0175	
× 조건 <sup>5</sup> 자본증												
	•											
합 기	뷔											

4. 기업인수목적회사가 주권의 최초 모집 전에 발행한 영 제139조제1호나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증권이 계약·발행조건 등에 의하여 동 증권 소유자의 권리 등이 제한되는 경우 그 내용

- i. 전환사채의 전환가액, 전환대상 주식의 종류 및 전환청구 가능기간, 전환비율, 전환가액 및 조정에 관한 사항, 미상환 증권의 금액, 전환청구시 발행하여야 할 주식수 등은 다음 의 방법에 따라 기재한다.
  - 가. 종류에는 '제××회 무보증 해외전환사채' 등의 방법으로 기재한다.
  - 나. 전환가액은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의 조정된 전환가액을 기재하며, 공시서류작성기준일 이후 전환가격이 조정된 경우에는 비고란에 전환가액 조정내용 및 조정일자를 기재한다.
  - 다. 전환대상주식의 종류에는 전환청구로 인하여 회사가 발행해야 하는 주식의 종류 및 조건 등을 기재한다.
  - 라. 미전환사채 권면(전자등록)총액에는 작성기준일 현재 전환권이 행사되지 아니한 전환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을, 전환가능주식수에는 동 미전환사채에 대하여 전환권이 행사되는 경우 전환가능한 주식의 수를 기재한다.
  - 마. 전환사채가 외화표시로 발행된 경우에는 권면(전자등록)총액 및 전환가능주식수는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의 환율로 환산한 원화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사채발행계약에 의하여 적용환율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환율을 적용한 원화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이를 주석으로 기재한다.
  - 바. 비고란에는 발행지역, 상장된 증권거래소명 등을 기재한다.
  - 사. 여러 회차의 전환사채를 발행한 경우에는 이를 구분하여 기재한다.
- ii. 신주인수권부사채,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증서,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경우에는 작성 지침 i.에 준하여 기재한다(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경우 사채가 전액 상환되었더라 도 미행사 신주인수권이 있는 경우에는 기재한다).

- iii. 기업인수목적회사의 경우 제3호에 따른 증권이 계약·발행조건 등에 의하여 동 증권에 부여된 권리의 행사가 일정기간 제한되거나, 매도(매매예약 포함)가 제한되거나, 예치자금등 지급시 특수한 조건 등이 부여되거나, 동 증권에 부여된 권리를 행사하여 취득한 주권의 매각 제한 조건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기재한다.
- 제5-7-2조(채무증권의 발행 등에 관한 사항) ① 공시대상기간 중 기업어음증 권, 단기사채 및 회사채(신종자본증권, 조건부자본증권 포함)의 발행실적(공·사모 불문)을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하며, 내용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이나 그 밖의 정보는 별도로 기술한다.

# 채무증권 발행실적

(기준일 : ) (단위 : 원, %)

발행회사	증권종류	발행방법	발행일자	권면(전자 등록)총액	월지0	평가등급 (평가기관)	만일	상환여부	주관회사
 합 계									

#### 【작성지침】

- i. 최근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작성기준일 현재까지의 기간 중에 발행된 채무증권의 내역을 모두 기재하되,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인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5조, 제168조 및 제170조에 따라 연결기준으로 작성한다.
- ii. 증권종류는 기업어음증권, 단기사채, 회사채(신종자본증권과 조건부자본증권 제외,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등 포함), 신종자본증권(회계상 자본으로 인식되는 사채), 조건부자본증권(미리 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그 사채의 상환과이자지급 의무가 감면된다는 조건이 붙은 사채)으로 구분한다. 미리 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그 사채의 상환과이자지급 의무가 감면되는 조건이붙은 사채로서 회계상 자본으로 인식되는 사채인 경우에는 조건부자본증권으로 분류한다(이 기준은 제2항 미상환 잔액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만 ESG채권은증권종류란에 ESG채권 종류(녹색채권, 사회적채권, 지속가능채권, 지속가능연계채권 등)를병기한다.[예:회사채(지속가능채권), 신종자본증권(녹색채권)]
- iii. 발행방법은 공·사모로 구별하여 표시한다.
- iv. 평가등급은 발행회사가 아닌 해당 채무증권을 기준으로 표시한다.

- v. 주관회사가 없는 경우 등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하이픈(-)으로 표시한다.
  - ② 회사가 회사채 발행과 관련하여 사채관리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미상환 잔액이 남아있는 경우 채권관련사항, 사채관리계약 주요내용 및 충족여부 등을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한다.

#### <亞>

작성기준일 : 20 . . .

(단위: 억원, %)

채권명	발행일	만기일	발행액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사채관리회사

이행현황기준일 : 20 . . .

재무비율 유지현황	계약내용	
제구비플 규시현광	이행현황	
다보권설정 제한현황 	계약내용	
음조선물병 세인연광	이행현황	
자산처분 제한현황	계약내용	
사선자는 세인연광	이행현황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계약내용	
지배구조인당 제인연광	이행현황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이행현황	

<sup>\*</sup> 이행현황기준일은 이행현황 판단 시 적용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확인 및 의견표시)이 표명된 가장 최근의 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일이며,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은 공시서류작성기준일임

## 【 작성지침 】

- i.작성기준일은 매분기 말일을 기재하고, 이행현황기준일은 이행현황 판단시 적용한 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일을 기재(다만,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의 기준일은 이행현황기 준일과 무관하게 작성기준일 현재 기준으로 작성)
- ii. 채권의 '발행일'에는 납입일을 기재
- iii. '재무비율 유지현황'의 '계약내용'에는 금융투자협회의 표준무보증 사채관리계약서 제2-3조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비율 등을, '이행현황'에는 영 제168조제3항 제8호 및 제170조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확인 및 의견표시 포함)이 표명된 가장 최근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이행여부를 기재하되,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비율·금액 등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여 기재

[가장 최근의 재무제표 기준에 대한 예시(이하 이 항에서 동일하게 적용)]

- `XX년 3분기 분기보고서 제출 시 :
  - 금융기관 및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주권상장법인 :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확인 및 의견표시 포함)이 표명된 `XX년 3분기 재무제표
  - 그 외 법인: `XX년 3분기 재무제표에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확인 및 의견표 시 포함)이 표명된 경우에는 `XX년 3분기 재무제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확인 및 의견표시 포함)이 표명된 `XX년 반기 재무제표
- iv. '담보권설정 제한현황'의 '계약내용'에는 금융투자협회의 표준무보증 사채관리계약 서 제2-4조제2항제4호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비율 등을, '이행현황'에는 영 제168 조제3항제8호 및 제170조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확인 및 의견표시 포함)이 표명된 가장 최근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이행여부를 기재하되,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비율·금액 등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여 기재
- v. '자산처분 제한현황'의 '계약내용'에는 금융투자협회의 표준무보증 사채관리계약서 제2-5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금액 또는 기준비율 등을, '이행현황'에는 영 제168조제3항제8호 및 제170조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확인 및 의견표시 포함)이 표명된 가장 최근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이행여부를 기재하되,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비율·금액 등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여 기재
- vi.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의 '계약내용'에는 금융투자협회의 표준무보증 사채관리계약 서 제2-5조의2에서 정한 지배구조 변경사유 등을, '이행현황'에는 작성기준일 현재 이행여부를 기재하되,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변경 전후 최대주주 또는 상호출자제 한기업집단명 등 지배구조변경 관련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
- vii.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의 '이행현황'에는 제출일자를 기재
- ③ 기업어음증권, 단기사채 및 회사채(신종자본증권, 조건부자본증권 포함)의 만기별 미상환 잔액을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하며, 내용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이나 그 밖의 정보는 별도로 기술한다.

#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

<u>(기준일</u>	: )									(단위 : 원)
잔여	만기	10일 이하	10일 초과 30일 이하	30일 초과 90일 이하	90일 초과 180일이하	180일초과 1년 이하	1년 초과 2년 이하	2년 초과 3년 이하	3년 초과	합 계
01.11.=1	공모									
미상환 잔액	사모									
	합계									

# 단기사채 미상환 잔액

<u>(기준일</u>	: )								(단위 : )
잔여	만기	10일 이하	10일 초과 30일 이하	30일 초과 90일 이하	90일 최과 180일 이하	180일 초과 1년이하	합 계	발행 한도	잔여 한도
미사들	공								
미상환 자액	사모								
	합계								

# 회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단위 : 원)

잔여 [	<u></u> 만기	1년 이하	1년 초과 2년 이하	2년 초과 3년 이하	3년 초과 4년 이하	4년 초과 5년 이하	5년 초과 10년 이하	10년 초과	합계
미사를	공모								
미상환 자액	사모								
	합계								

#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단위:원)

잔여	만기	1년 이하	1년 초과 5년 이하	5년 초과 10년 이하	10년 초과 15년 이하	15년 초과 20년 이하	20년 초과 30년 이하	30년 초과	합계
	공모		3 = 3131	102 3131	10 2 3 3 3	202 0101	302 3131		
미상환 자액	사모								
산백	합계								

#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단위 : 원)

잔여딘	반기	1년이하	1년 2년	초과 이하	2년 초과 3년 이하	3년 초과 4년 이하	4년 초과 5년 이하	5년 초과 10년 이하	10년 초과 20년 이하	20년 초과 30년 이하	30년 초과	합계
미사들	공모											
미상환 잔액	사모											
신백	합계											

- i.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인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25조, 제168조 및 제170조에 따라 연결기준으로 작성하되, 별도(개별)기준도 추가로 작성한다.(별도(개별)기준은 DART 편집기에서 제시한 표에 직접 기재하고, 연결기준은 동일한 형태의 표를 추가하여 작성한다.)
- ii. 미상환 잔액은 채무증권의 발행시기와 무관하게, 즉 공시대상기간 이전에 발행된 증권 이라도 공시서류 작성기준일 현재 미상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작성한다.
- iii.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하이픈(-)으로 표시한다.

④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되는 미상환 채무증권이 있는 경우에는 발행회차별로 발행일, 발행금액, 발행목적, 발행방법, 상장여부, 미상환잔액, 자본인정에 관한 사항(자본으로 회계처리한 근거, 신용평가기관의 자본인정 비율 등), 미지급 누 적이자, 만기 및 조기상환 가능일, 발행금리(금리상향조정조건[step-up] 포함), 우선순위, 부채분류시 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 기타 투자자에게 중요한 발행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 【 작성지침 】

## (작성예시)

회사는 아래의 표에 발행일, 발행금액, 발행목적, 발행방법, 상장여부, 미상환잔액, 자본인정에 관한 사항, 발행금리 등을 포함하여 기재한다.

발행일		201X년 X월 X일			
발행금액		XXX백만원			
발행목적		차입금 상환(XXX백만원) 등 운영자금 사용			
발행방법		사모			
상장여부		비상장			
미상환잔액		XXX백만원			
자본인정에 관한 사항	회계처리 근거	만기시점 발행사의 의사결정에 따라 만기연장이 가능, 일정 요건(보통주에 대한 배당금 미지급 등) 충족 시 이자 지급 연기 가능 등 원금과 이자의 지급을 회피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가 있어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			
	신용평가기관의 자본인정비율 등	Moody's: XX%, S&P: XX%, 한기평: XX%, 한신평: XX%			
미지급 누적이	자	XXX백만원			
만기 및 조기성	상환 가능일	만기일 : 204X년 X월 X일 발행일로부터 X년이 경과된 202X년 X월 X일과 그 이후 각 이자지급일에 조기상환 가능			
발행금리		발행시점 : X%, 발행 후 X년 경과시점부터 Step-up조항 에 따라 X년 이후 X%, X년 이후 X% 적용			
우선순위		후순위(일반채권, 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			
부채분류 시 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		부채비율 상승(201X년말 기준 XX%에서 XX%로 상승)			
기타 중요한 밝	발행조건 등				

제5-7-3조(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 공시서류작성대상기간중 증권발행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표에 따라 자금의 사용내용과 미사용 자금의 운용내역을 기재하며, 내용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이나 그 밖의 정보는 별도로 기술한다.

### 1.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기준일:)

구 분	회차	납입일	증권신고서 등의 자금사용 계획		실제 자금	사용 내역	차이발생사유 등
			사용용도	조달금액	내용	금액	

## 2. 사모자금의 사용내역

(기준일:)

구 분	회차	납입일	주요사항보고서의 자금사용 계획 사용용도 조달금액		실제 자금	사용 내역	차이발생사유 등
					내용	금액	

### 3. 미사용자금의 운용내역

(기준일: ) (단위: 원)

종류	<u> 운용상품명</u>	운용금액	계약기간	실투자기간
계				

- i. 공시서류작성대상기간(최근 3사업연도)중 주식, 주식연계채권(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상환사채 등), 회사채 및 기업어음증권 (회사채와 기업어음증권은 증권신고서 등을 통해 공시된 경우에 한함)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의 사용내역을 기재한다. 이 경우 자금사용이 완료된 것뿐만 아니라 완료되지 않은 것도 기재한다.
- ii. 구분란에는 기업공개(유가증권시장상장, 코스닥시장상장, 코넥스시장상장), 유상증자,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회사채, 기업어음증권 등으로 표시한다. 다만 ESG채권일 경우에는 ESG채권의 종류를 병기한다. [예: 회사채(녹색채권)]

- iii. 회차란에는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회사채, 기업어음증권의 경우 발행 회 차를 기재하고. 일괄신고서를 통해 발행한 경우에는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 iv. 자금사용 계획의 '사용용도'와 실제 자금사용 내역의 '내용'은 아래 기준을 참고하여 시설 자금, 영업양수자금, 운영자금, 채무상환자금,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기타로 구분하고 이에 대한 상세 내용을 기재한다. (예: '시설자금(공장 건설)', '운영자금(임금 지급)' 등)
  - 가. 시설자금 : 공장건설, 설비매입, 유형자산 취득 등인 경우에 기재한다.
  - 나. 영업양수자금 : 다른 사업의 인수에 사용되는 경우에 기재한다.
  - 다. 운영자금 : 원재료 매입, 매입채무의 상환, 임금 지급, 무형자산취득 및 해외법인운영 등인 경우에 기재한다.
  - 라. 채무상환자금 : 대출금 또는 기 발행된 회사채 상환 등인 경우에 기재한다.
  - 마. 타법인증권취득자금 : 타법인 출자, 회사채 매입 등인 경우에 기재한다.
  - 바. 기타 : 가 내지 마 이외의 용도인 경우에 기재한다.
- v. 동일한 발행건에 자금 사용목적이 여러 개인 경우 행을 추가하여 각 사용목적별로 실제 사용내역을 기재하고, 추가한 행에도 구분, 회차, 납입일을 동일하게 기재한다.
- vi. 일괄신고서를 이용하여 회사채 등을 발행하는 경우 동일한 일괄신고서를 통해 발행한 회사채의 자금사용 계획 및 실제 자금사용 내역에 대해서는 사업연도별로 합산하여 기재한다.
- vii. '차이발생 사유 등'란에는 자금사용 용도와 지출내용, 조달금액과 사용금액 간 차이가 나는 경우 그 사유를 상세히 기재하고, 자금사용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엔 미사용자금의 구체적인 보관방법 및 향후 사용계획 등을 기재한다.
- viii. ESG채권으로 발행된 회사채의 경우에는 아래의 예시를 참고하여 표 하단에 ESG채권 종류와 자금사용목적과 사용내역을 간략히 기재하되, 발행 시점의 자금사용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경우 그 사유를 기재(단, 지속가능연계채권의 경우에는 조달자금의 사용 목적 및 실제 사용 내역을 회사의 ESG목표와의 관련성 등을 중심으로 기재)한다. 또한 구체적인 자금사용내역은 발행인의 홈페이지 및 한국거래소의 ESG채권 정보플랫폼 등에 게시된 사후보고서를 참고하라는 내용을 기술한다.

#### (작성예시)

20XX.X.X. 발행된 제OOO회 회사채는 ESG채권(녹색채권)으로, 친환경 사업인 OOO사업을 위하여 발행되었으며, 당초 계획대로 OOO사업 목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본 ESG 채권의 구체적인 자금사용내역은 당사의 홈페이지 및 한국거래소의 ESG채권 정보플랫폼에 게시된 ESG채권 사후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x. "미사용자금의 운용내역"은 공시서류 작성기준일 현재 미사용한 자금이 있는 경우 작

성한다.

- x. '종류'에는 예·적금, 단기금융상품, 주식, 채권, 공모펀드, 사모펀드, 파생상품, 기타금융 상품, 비금융상품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재한다. 다만, 미사용자금을 금융상품 이외에 투자하는 경우에는(예: 타법인 대여금 지급 등) 표 하단에 그 내용을 별도로 기술한다.
- xi. '운용상품명'에는 운용상품의 전체 이름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예 : ◇◇이머징마켓 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1호, ㈜□□에 대한 대여금 등). 단, 예적금과 수시입 출금이 가능한 단기금융상품은 이를 간략히 기재할 수 있다.(예 : 예적금, CMA, MMF 등)
- xii. '운용금액'은 작성기준일 현재 투자금액의 원금(재무제표상 평가금액이 아님에 주의)을 기재한다.
- xiii. '계약기간'에는 'YY.MM월 ~ YY.MM월' 형태로 기재하며, '실 투자기간'은 최초불입일 로부터의 작성기준일까지의 경과월수를 'oo개월' 형태로 기재한다. 단, 예적금 및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단기금융상품은 계약기간과 실투자기간에 대한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 제6장 이사의 경영진단 및 분석의견

# 제1절 일반원칙

- 제6-1-1조(일반원칙) ① 공시대상기간동안 공시정보 이용자가 회사의 재무상태, 영업실적 및 재무상태의 변동 등을 이해하고, 향후 사업예측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경영진이 경영진의 시각으로 회사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진단하고 분석한 의견을 기재한다.
  - ② 경영진단 및 분석의견은 다음의 원칙을 준수하여 기재한다.
    - 1. 회사의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거나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객관적인 사건, 사실, 추세 또는 발생가능한 불확실성 등(이하이 장에서 "사실등"이라 한다)을 중심으로 기재한다.
    - 2. 경영진이 알고 있는 정보중 중요한 내용을 누락하지 않고 기재한다.
    - 3. 사실등이 회사의 미래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재무제표 또는 통계적 자료 등 합리적 근거에 기초하여 기재하며, 해당 사실등이 발 생한 원인, 회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한 근거, 사실등의 중요성 등 에 대한 분석을 포함하여야 한다.
  - 4. 공시정보 이용자의 이해를 돕는데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순히 재무 제표를 서술식으로 반복하거나, 충분한 진단이나 분석 없이 사업연도간 금 액의 변동상황을 단순비교하여서는 아니된다.
  - 5. 공시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한다.
  - 6. 외국기업의 경우 당해 기업의 사업등에 관련된 해당국가의 경제·재정· 통화·정치정책 등에 대하여 국내의 공시정보 이용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사항을 추가하여 기재한다.
  - 7. 기업인수목적회사의 경우 사업의 내용을 추진하고자 하는 합병으로 간주 하여 해당사항을 기재한다.

### 【 작성지침 】

i. 경영진은 "이사의 경영진단 및 분석의견"을 통해 재무제표상의 정보만으로는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동 정보는 경영진이 합리적인 비용과 노력으로 지득할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한다.

- ii. 기재내용이 유사하거나 상호관련성이 높은 항목은 통합하여 기재하며, 공시정보 이용 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중요도에 따라 기재사항의 배열을 조정할 수 있다.
  - iii. 지주회사는 주요자회사를 포함하여 작성한다.
  - iv. K-IFRS(외국법인이 적용하는 IFRS 또는 US-GAAP을 포함)를 적용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주권상장법인은 종속회사를 포함하여 경영진단 및 분석의견을 기재하되, '주요 종속회사'(최근사업연도말 별도(개별)재무제표상 자산총액이 지배회사 별도(개별)재무제표상 자산총액이 지배회사 별도(개별)재무제표상 자산총액의 10% 이상이거나 750억원 이상인 종속회사를 말함)의 내용은 반드시기재한다. 이 경우 연결실체 전체의 입장에서 기재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종속회사의 명칭 및 종속회사가 지배회사에 미치는 영향도 기재한다.

# 제2절 기재사항

- 제6-2-1조(예측정보에 대한 주의사항) 미래에 대한 예측정보를 포함하여 기재하는 경우에는 예측정보에 대한 주의문구를 법 제125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 기재한다.
- 제6-2-2조(개요) 제6-2-3조부터 제6-2-6조까지의 기재내용중 핵심사항을 요약하여 기재하고, 경영진이 회사의 성과평가시 사용하는 주요경영지표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지표의 변동내역과 주요 변동원인을 기재한다.

#### 【 작성지침 】

주요경영지표는 EBIT, EBITDA, ROE 등 경영진이 실제로 사용하는 지표를 말하며, 지표의 산출방법 등을 포함하여 기재한다.

제6-2-3조(재무상태 및 영업실적) ① 공시대상기간의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일반적 요인을 분석하고 미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추세, 불확실성 등을 기재한다.

- i. 회사의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전반적 요인을 분석할 경우 정치· 경제·사회적 요인 등과 같은 거시적 요인과 산업 또는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미시적 요인을 모두 포함한다. 거시적·미시적 요인으로는 다음의 예시를 참고할 수 있다.
  - 가. 정치, 경제, 사회, 시장, 경쟁환경 및 규제환경의 변화
  - 나. 시장점유율, 고객만족도 및 충성도의 변화, 브랜드의 이익기여도 등
  - 다. 신기술의 변화, 인구통계적인 변화 등에 따른 소비자 구매행태의 변화
  - 라. 매출 및 이익률의 변화. 판매가격·수량 변화 등
  - 마. 주요 거래처에 대한 의존도, 계약조건 변경, 판매경로 변화 등
  - 바. 생산비용 변화, 생산요소 수급상 장애요인, 주문잔고(수량) 변화 등
  - 사. 지적재산권 등 무형자산과 연구개발활동
  - 아. 환율 및 물가상승률에 대한 민감도
  - 자.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자산양수도, 포괄적 주식교환 등
- ii. 영업실적에의 전반적인 변화(예 : 매출수량의 감소, 제품가격 하락, 생산비용의 증가 등)에 대한 원인과 영향분석은 사업부문별 기재를 원칙으로 한다.

- iii. 재무상태 또는 영업실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요인을 기재할 때는 변동내용 뿐만 아니라 당해 변동을 유발한 사실등의 내용과 당해 사실등의 발생사유 및 지속적인 발생가능성 등을 포함한다.
  - ② 최근사업연도중 신규사업 진출을 결정하였고 동 사항을 외부에 공표한 경우에는 신규사업의 개요, 위험요소, 진행경과, 회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여 기재하고, 직전 2사업연도 동안 신규사업 진출에 관한 결정이 있었던 경우에는 계획과 진행경과와의 차이내용 및 원인을 추가한다.

- i. 신규사업의 개요에는 진출목적, 사업내용 및 추진일정 등을 포함하여 기재하되, 공시서 류의 다른 부문에 제4-2-2조(사업의 개요)제3항에 따라 기재한 경우에는 이를 참고하 도록 하고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 ii. 신규사업의 진행경과는 신규사업 진출과 관련하여 체결한 중요한 계약이 있는 경우 그 내용과 계약조건을 포함하여 기재한다.
- iii. 회사의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경우 신규사업 진출에 필요한 예상 자금규모 및 자금조달방안을 충분히 고려하여 기재한다.
- ③ 공시대상기간중 중단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중단의 사유, 중단사업이회사의 재무상태, 영업실적 또는 유동성 등에 미치는 영향, 향후 중단사업에대한 처리방안 등을 기재한다.

#### 【 작성지침 】

향후 중단사업에 대한 처리방안에는 당해 중단사업을 재개하였거나 재개하기로 결정한 경우 향후 사업계획, 사업 재개에 필요한 자금규모 및 자금조달방안 등을 기재한다.

④ 공시대상기간중 조직변경, 사업부문의 재조직, 종업원의 조기퇴직 등(이하 '경영합리화'라 한다)을 실행한 경우에는 주요 내용과 경영합리화를 실시한 주요 원인에 대한 분석, 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기재한다.

#### 【 작성지침 】

i. 경영합리화의 주요 내용 기재시 목적, 이행기간 및 현재까지 이행한 내용을 기재하고, 경영합리화 계획중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과 변경원인 등을 추가한다.

- ii. 경영합리화가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경우 경영합리화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 및 향후 지출예상비용, 이와 관련된 자금조달방안 등을 포함하여 기재한다.
- ⑤ 환율변동이 회사의 사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공시대상기간의 환율변동추이, 회사의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에 미친 영향 및 회사가 환율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취했거나 취할 예정인 조치내용과 이로 인한 영향 등을 기재한다.

회사가 환율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취한 조치내용은 제6-2-7조(그 밖에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의 파생상품 및 위험관리정책에 관한 사항과 통합하여 기재할 수 있다.

⑥ 공시대상기간중 자산손상 또는 감액손실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손상 또는 감액기준, 손상 또는 감액원인에 대한 분석 등을 기재한다.

#### 【 작성지침 】

- i. 적용한 손상 또는 감액 기준의 내용과 동 기준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변경내용을 간략하게 기재한다.
- ii. 손상 또는 감액대상 자산의 명칭과 자산별 손상·감액금액, 손상·감액사유 등을 기재하고, 손상·감액을 인식함에 있어 가정이나 추정을 이용한 경우에는 당해 가정 또는 추정의 내용을 추가한다.
- iii. 손상 또는 감액대상 자산 취득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은 경우 대상자산의 평가시 추정한 내용과 실제로 실현된 결과를 비교하고, 차이의 원인을 기재한다.
- 제6-2-4조(유동성 및 자금조달과 지출) ① 공시대상기간의 유동성 현황, 구성내용과 변동내용 및 주요 변동원인을 분석하고, 유동성 부족현상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원인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 또는 계획 등을 기재한다.

#### 【 작성지침 】

i. 유동성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현금 및 현금등가물을 의미하나, 회사의 특성상 보다 적절한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을 사용할 수 있다. 회사가 선택한 유동성 지표

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경해서는 안되며,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전·후 유동성의 금액을 비교하여 기재한다.

- ii. 주요 변동원인은 당해 변동을 유발한 요인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동 사건이 지속적으로 회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회사의 장래 유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기재한다.
- iii. 유동성 부족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공시서류 작성기준일로부터 향후 1 년이내에 자금부족이 예상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회사가 취하였거나 취하려는 조치를 기재한다. 만약 그 조치가 단계별로 실행하는 것이라면 각 단계에 해당하는 상황 및 단계별 조치내용 등을 포함한다.
- iv. 유동성 부족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제6-2-4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영합리화를 실시하였거나 실시할 예정인 경우에는 그 내용을 참고하도록 한다.
- ② 공시대상기간중 자금조달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다.
- 1. 공시대상기간동안 조달한 자금의 원천별 조달규모, 자금조달비용 등 자금 조달조건 등
- 2. 상환의무가 있는 조달자금의 항목별 · 만기별 상환금액 도래현황
- 3. 조달자금중 재무비율 준수, 차입제한, 배당제한 등의 조건이 있는 경우 그 내용과 조건 미준수시 회사에 미치는 영향
- 4. 미래에 자금조달의 형태와 조달비용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 그 내용

- i. 제1호에는 주된 자금조달원천, 자금조달조건 등이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사유를 포함하고, 신용등급 변화, 차입금의 계절성, 차입약정 갱신 또는 신규이용의 제한 등과 같이 자금조달환경에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동 사항을 포함하여 기재한다.
- ii. 제2호의 조달자금의 항목은 금융기관차입금, 회사채(CB, BW 등 종류별로 구분한다), 상환우선주 등 자금의 특성·내용 등에 따라 적절하게 구분하며, 만기에 대한 구분은 재 무제표에 대한 주석에 기재된 바에 따른다. 풋옵션 부여 등으로 조기상환 의무가 존재 하는 경우에는 조기상환의무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기재하고, 그 내용을 추가하여 기재 한다. 한편, 기한이익상실로 사채의 조기상환의 의무가 부여될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기재한다.
- iii. 제3호에서 회사가 공시대상기간중 자금조달조건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미준

수 원인, 대응조치의 내용, 회사의 재무상태·영업실적 및 유동성 등에 미친 영향을 기 재한다.

- iv. 제4호에서 자금조달의 형태와 조달비용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는 제6-2-3조의 거시적 요인 외의 요인으로 인해 공시서류 작성기준일로부터 1년이내에 당해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말하여, 이러한 변화가 회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경우 이에 대하여 회사가 취하였거나 취하려는 조치를 기재한다
- ③ 공시대상기간동안 지출한 자금중 회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사항에 대하여 지출목적과 규모를 기재하고, 추가지출이 요구되는 경우 또는 신규지출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출목적, 총 예상지출규모, 사업연도별 예상지출규모 및 자금조달방법 등을 기재한다.

#### 【 작성지침 】

신규사업 진출에 관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금지출 및 자금조달일정을 기재한다.

제6-2-5조(부외거래) 부외거래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다.

- 1. 공시서류작성기준일 현재 부외거래 현황, 발생원인
- 2. 부외거래 상대방, 거래규모 및 거래조건
- 3. 부외거래에 따라 향후 중요한 자금지출을 초래할 수 있는 후속사건이 있는 경우 그 내용
- 4. 부외거래가 회사에 미치는 영향

#### 【 작성지침 】

부외거래가 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부외거래의 존재여부, 부외거래의 규모 등이 영업실적 또는 자금조달 등에 구체적으로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한 사례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기 재하고, 공시서류작성기준일 현재 진행중이거나 진행하고자 하는 계약 등에 불리하게 작 용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판단근거, 향후 대책 등을 기재한다.

- 제6-2-6조(그 밖에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회사의 재무상태, 영업실적, 유동성 및 자본의 조달과 지출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그 밖의 필요한 사실등에 대하여 기재한다.
  - 1. 중요한 회계정책 및 추정에 관한 사항

- 2. 환경 및 종업원 등에 관한 사항
- 3. 법규상의 규제에 관한 사항
- 4. 파생상품 및 위험관리정책에 관한 사항

- i. 제1호는 공시대상기간중 신규로 채택·변경한 회계정책 또는 회계추정사항이 있는 경우다음의 사항을 참고하여 기재한다.
- 가. 회계정책 또는 추정의 채택(변경)사유, 내용, 회사의 재무상태 또는 영업실적에 미치는 영향
- 나. 회계정책 또는 추정의 채택(변경)에 영향을 미친 가정이나 전제조건의 내용
- 다. 회계정책 또는 추정 변경의 타당성에 대하여 외부전문가의 자문의 받은 경우 당해 전문가의 이름, 회사와의 관계, 자문내용 등
- ii. 제2호는 공시대상기간중 회사와 관련된 환경관련 이슈와 회사인력의 중요한 변동에 관하여 다음의 사항을 참고하여 기재한다.
- 가. 환경관련 법률 등에 따라 회사가 부담하거나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환경복구비용, 손해배상등의 책임, 환경관련 문제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행정조치를 받 았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 내용 및 회사에 미치는 영향, 회사의 대응방안 등
- 나. 종업원과 관련하여 회사의 주요 핵심인력이 이동한 경우 그 원인에 대한 분석 및 대응방안, 주요 핵심인력의 퇴직에 대한 대응방안, 산업재해관련 발생원인, 자금지출규모, 진행현황 등
- iii. 제3호는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된 법규상 주요 규제내용, 예상되는 규제의 변경 및 규제내용 등이 회사의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에 미치는 영향, 법규상의 규제를 이행하거나 회피하기 위하여 회사가 취했거나 취할 예정인 대응방안 등을 기재한다. 다만, 정상적인 영업활동과정에서 적용되는 경미한 규제는 제외한다.
- iv. 제4호는 공시대상기간중 회사의 위험관리정책의 개요, 변경내용 및 회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다음의 사항을 참고하여 기재한다.
- 가. 위험관리정책의 개요는 회사의 위험인지방법, 인지된 위험에 대한 회피수단(예 : 선물, 옵션 등) 등에 대한 방침을 포함한다.
- 나. 위험관리정책 또는 파생상품의 공정가치산정방식, 주요가정 등 평가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사유, 변경으로 인해 회사의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에 미치는 영향 등을 기재한다.
- v. 본 장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도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경영 진단의견서 작성 가이드라인」(전자공시시스템 접수수리 홈페이지(http://filer.fss.or.kr) 및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에 게시)을 참고하여 기재한다.

# 제7장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 제1절 이사회에 관한 사항

제7-1-1조(이사회 구성 개요) 이사의 수(사외이사 및 그 변동현황은 별도로 구분한다), 이사회 의장, 이사회 내 위원회 명칭 등 이사회의 전체구조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이사회 구성의 개요를 간략히 기재하며, 이사회 의장의 대표이사 겸직여부및 이사회 의장 선임사유 등을 포함하여 기재한다.

#### 【 작성지침 】

i. 이사의 수 및 사외이사 수는 공시서류작성기준일 현재시점으로 작성하고, 사외이사 변동 현황은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공시서류제출일까지 기간 동안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가 선임되거나 임기만료 외의 사유로 해임 또는 중도퇴임 한 때 그 수를 기재하며, 표 하단에 'xx년도 정기(임시)주주총회 결과'임을 부기한다.

(단위: 명)

이사의 수	기 수		사외이사 변동현황	
01 NF 31 - T	//되어// 구	선임	해임	중도퇴임
-				

- 제7-1-2조(중요의결사항 등) ①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공시서류작성기준일까지 개최된 이사회의 안건에 대하여 회차별로 다음의사항을 기재한다.
  - 1. 안건의 주요내용
  - 2. 의결현황
  - 3. 의결사항외에 중요한 보고안건이 있는 경우 그 내용

- i. 안건의 주요내용은 개최일자별로 안건제목을 빠짐없이 열거하고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주요내용을 기재한다.
  - 가. 안건이 일상적인 사항이거나 내용을 공시하는 것이 회사의 경쟁적 지위를 중대하 게 위협할 수 있는 경우에는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 나. 안건의 내용이 이사의 경업·겸업 승인, 자기거래의 승인, 이사의 회사 사업기회 이용의 승인에 관한 것인 때에는 이사의 이름, 승인대상 업무(거래의 내용과 절차의 공정성을 포함) 또는 거래 및 사업기회, 승인범위 등을 기재하고 그 밖에 이사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가 있는 경우에도 이에 준하여 기재한다. 이 경우 경업, 겸업, 자기거래 및 회사 사업기회 이용 이외의 이해관계라 함은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적, 비경제적 이해관계를 말한다.

- ii. 의결현황은 안건별 가결, 부결, 보류 여부 등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보류된 경우 사유를 기재한다. 또한 특정 안건에 대하여 반대한 이사가 있는 경우에는 이름 및 사유를 기재한다.
- ② 각 이사의 회차별 참석현황, 안건별 찬성 또는 반대 현황을 기재한다.

#### 【 작성지침 】

사외이사 및 사외이사가 아닌 이사의 참석현황 및 안건별 찬반현황은 제1항의 사항에 포함 하여 제7-1-3조에 제시된 표를 활용하여 기재할 수 있다.

- 제7-1-3조(이사회내 위원회) 회사의 정관 규정에 따라 이사회내에 위원회(감사 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제외한다)를 설치한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다.
  - 1. 위원회별 명칭, 소속 이사 및 위원장의 이름, 설치목적과 권한
  - 2. 위원회 활동내용

#### 【 작성지침 】

i. 제1호 위원회별 명칭, 설치목적과 권한은 아래에 제시된 표를 참조하여 기재할 수 있으며, 효과적인 정보제공을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표를 이용할 수 있다.

위원회명	구 성	소속 이사명	설치목적 및 권한사항	비고

- 가. 구성은 "사외이사 ×명, 상근이사 ×명"으로 기재한다.
- 나. 비고에는 변동사항 등에 대한 내용을 기재한다.
- ii. 위원회의 활동내용은 아래에 제시된 표를 참조하여 기재할 수 있으며, 효과적인 정보 제공을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사의 성명	
위원회명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A (출석률 :%)	B (출석률 :%)	C (출석률 :%)
					찬반여부	

가. 위원회명은 위원회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 나. 의안내용은 의안제목 및 주요내용을 기재한다.
- 다. 가결여부는 의안별로 가결, 부결, 보류로 기재하며, 부결 또는 보류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별도로 기재한다.
- 라. 사외이사 및 사외이사가 아닌 이사의 출석률은 위원회별로 해당 사업연도중 개최된 위원회 총 횟수에 대한 개인별 참석비율을 기재한다.
- 마. 회의를 통한 업무 외에 이사에 대한 직무감독 등 주요활동을 수행한 경우에는 별도 로 그 내용을 기재한다.
- 제7-1-4조(이사의 독립성) ① 이사회 구성원(감사위원회 위원은 제외한다)이 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로부터 독립적인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재한다.
  - 1. 이사선출에 대한 독립성 기준을 운영하는지 여부 및 운영하는 경우 그 기준에 대한 설명, 이사별 기준 충족여부 등
  - 2. 각 이사의 임기, 연임여부 및 연임 횟수, 선임배경, 추천인, 이사로서의 활동 분야, 회사와의 거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와의 관계 등 기타 이해관계

사외이사의 경우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며, 사외이사 후보 선정과 관련하여 내부 지침 등이 있는 경우 그 주요 내용을 기재한다.

② 사외이사를 선출하기 위한 별도 위원회 설치현황 및 활동내용을 기재하고,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이 제공하는 인력 풀을 통해 사외이사를 선출한 경우 그 사실과 이유를 기재한다.

#### 【 작성지침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명과 사외이사 여부, 법상 사외이사가 동 위원회 총원의 과반수이어야 하는 경우 그 충족여부를 기재하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활동내역은 제7-1-3조에 제시된 표를 활용하여 기재할 수 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그 사실을 기재한다.

- 제7-1-5조(사외이사의 전문성) ① 회사 내에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보조하기 위한 별도의 지원조직이 있는 경우 그 조직의 주요 현황에 대해 기재한다.
  - ② 회사가 공시대상기간 중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사외이사에게 제공한 교육실

시현황을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하며, 내용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이나 그 밖의 정보는 별도로 기술한다.

## 사외이사 교육실시 현황

교육일자	교육실시주체	참석 사외이사	불참시 사유	주요 교육내용

- i.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보조하는 지원조직은 조직명, 소속 직원의 현황(직원 수, 직위 및 근속연수, 지원업무 담당 기간 등), 지원업무와 관련한 주요 업무수행내역 등을 기재하며, 별도의 지원조직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재한다.
- ii. 사외이사에게 제공한 교육실적은 내부교육과 외부교육을 구분하여 교육일시, 교육 주체, 참석 사외아사(성명 기재), 불참시 그 사유, 구체적인 교육내용 등을 기재하고, 교육 실시 내역이 없는 경우 그 사실 및 사유를 기재한다.

# 제2절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제7-2-1조(감사위원회)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재한다.

1. 감사위원회 위원의 인적사항 및 사외이사 여부

# 감사위원 현황

성명	사외이사	경력	회견	·제무전문가	<b>관</b> 련
78 6	여부	/d <del>'</del>	해당 여부	전문가 유형	관련 경력

- 2. 감사위원회 위원의 독립성
- 3. 감사위원회의 활동
- 4. 교육 실시 계획
- 5. 교육실시 현황

### 감사위원회 교육실시 현황

교육일자	교육실시주체	참석 감사위원	불참시 사유	주요 교육내용

6. 감사위원회 지원조직 현황

### 감사위원회 지원조직 현황

부서(팀)명	직원수(명)	직위(근속연수)	주요 활동내역

- i. 제1호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이름, 사외이사 여부 및 위원으로 선정하게 된 경력(최근 6년간 근무처·재임기간·담당업무 등 근무경력 및 현재 다른 회사 겸직현황 포함)을 중심으로 인적사항을 간략히 기재한다. 감사위원이 「상법」제542조의11 제2항 제1호에 따른 회계·재무전문가인 경우에는 '회계·재무전문가 관련'사항을 추가로 기재한다.
  - 가. 해당 여부 : 회계·재무전문가 감사위원인 경우 "예", 아닌 경우 "-"으로 기재
  - 나. 전문가 유형 : 「상법 시행령」제37조 제2항 각호에 따른 유형으로 아래 사항 중 택일하여 기재한다.
  - ① 회계사(1호 유형)
  - ② 회계·재무분야 학위보유자(2호 유형)
  - ③ 상장회사 회계·재무분야 경력자(3호 유형)
  - ④ 금융기관·정부·증권유관기관 등 경력자(4호 유형)

- 다. 관련 경력: 「상법 시행령」제37조 제2항 각호에 따른 기본 자격과 근무기간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경력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 ① 회계사(1호 유형)
    - 기본자격 : 회계사인지 여부
    - 근무기간 : 자격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하였는지 여부
  - ② 회계·재무분야 학위보유자(2호 유형)
    - 기본자격 : 회계·재무분야 관련 석사학위 이상 학위취득자인지 여부
    - 근무기간 :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회계 또는 재무 관련 분야의 연구원이나 조교수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모두 5년 이상인지 여부
  - ③ 상장회사 회계·재무분야 경력자(3호 유형)
    - 기본자격: 상장회사에서 회계·재무분야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는지 여부(회사명, 관련 부서명 또는 구체적 업무 기재)
    - 근무기간 : 임원으로 5년 또는 임직원으로 10년 이상인지 여부
  - ④ 금융기관·정부·증권유관기관 등 경력자(4호 유형)
    - 기본자격 : 금융기관·정부·증권유관기관 등에서 회계·재무관련 업무 또는 이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기관명, 관련 부서명 또는 구체적 업무 기재)
    - 근무기간 : 합산하여 5년 이상인지 여부
- ii. 제2호는 관련 법령 등을 참고하여 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감사위원 선출기준의 주요 내용과 운영현황을 기재하며, 각 감사위원의 선임배경, 추천인, 임기, 연임여부 및 연임 횟수, 회사와의 관계,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와의 관계 등 기타 이해관계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 iii. 제3호는 공시서류 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공시서류작성기준일 까지 기간동안 감사위원회 안건의 주요내용, 의결현황, 통상적인 회의를 통한 업무 외에 업무집행에 대한 감사, 회계처리기준이나 회계추정의 변경에 관한 타당성 검토, 내부통제시스템의 평가 등 주요활동내용 등을 기재한다. 이 경우 제7-1-3조에 제시된 표를 활용하여 기재할 수 있다.
- iv. 제4호는 내부회계관리규정 등에 따라 감사위원을 대상으로 수립한 교육 실시 계획을 기재한다.
- v. 제5호는 회사가 공시대상기간 중 감사위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에 대해 교육일시, 교육실시주체, 참석 감사위원(성명 기재) 및 불참한 감사위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구체적인 교육내용 등을 기재한다. 교육을 여러 번 실시한 경우 일자별로 기재하고 교육 실시 내역이 없는 경우 그 사실 및 그 사유를 기재한다.
- vi. 제6호는 부서(팀)명은 감사위원회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부서(팀)명을 기재하고, 직원수는 해당 부서(팀) 소속 인력 수, 직위(근속연수)는 소속 인력의 직위와 지원업무 담당 기간(2명 이상인 경우 작성 예: 과장 3명(평균 3년)), 주요 활동내역은 해당 사업연도 기간 중 감사위원회 지원업무와 관련한 주요 업무수행내역 등을 기재한다. 지원조직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재한다.

제7-2-2조(감사) 감사를 둔 경우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다.

- 1. 감사의 인적사항
- 2. 감사의 독립성
- 3. 감사의 주요 활동내용
- 4. 교육 실시 계획
- 5. 교육 실시 현황

### 감사 교육실시 현황

교육일자	교육실시주체	주요 교육내용

### 6. 감사 지원조직 현황

### 감사 지원조직 현황

부서(팀)명	직원수(명)	직위(근속연수)	주요 활동내역

### 【 작성지침 】

구체적인 작성방법은 제7-2-1조를 준용한다.

제7-2-3조(준법지원인 등) 준법지원인 등을 둔 경우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다.

- 1. 준법지원인 등의 인적사항
- 2. 준법지원인 등의 주요경력
- 3. 준법지원인 등의 주요 활동내역 및 그 처리결과
- 4. 준법지원인 등 지원조직 현황

### 준법지원인 등 지원조직 현황

부서(팀)명	직원수(명)	직위(근속연수)	주요 활동내역

#### 【 작성지침 】

i. 상법 제542조의 13에 따라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상장법인이 준법지원인을 선임한 경우 작성하되, 다른 법률에 따라 준법감시인을 선임한 금융기관은 준법감시인의 현황을 기재한다.

- ii. 준법지원인 등의 주요경력은 상법 제542조의13 제5항 각호의 요건(금융회사의 경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의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 iii. '주요 활동내역 및 그 처리결과'는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공시서류작성기준일까지 기간 동안의 상법 제542조의13 제1항의 '준법통제기준'(금융회사의 경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의 '내부통제기준')에 대한 점검 현황(점검 일시, 주요 점검 내용, 점검 결과)과 그 처리 결과를 기재하고, 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다.
- iv. 준법지원인 등 지원조직 현황은 부서(팀)명은 준법지원인 등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부서(팀)명을 기재하고, 직원수는 해당 부서(팀) 소속 인력 수, 직위(근속연수)는 소속 인력의 직위와 지원업무 담당 기간(2명 이상인 경우 작성 예: 과장 3명(평균 3년)), 주요 활동내역은 해당 사업연도 기간 중 준법지원인 등에 대한 지원업무와 관련한 주요 업무수행내역 등을 기재한다. 지원조직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재한다.

# 제3절 주주총회 및 주주의 의결권에 관한 사항

제7-3-1조(투표제도) 집중투표제, 서면투표제 또는 전자투표제의 채택여부 및 실 시여부 등을 표에 기재하고, 채택한 투표제에 대한 행사절차, 행사요건 등을 표 하단에 기재한다.

## 투표제도 현황

# (기준일: )

투표제도 종류	집중투표제	서면투표제	전자투표제
도입여부			
실시여부			

#### 【 작성지침 】

- i. '도입여부'에는 공시서류제출일 현재 투표제도의 도입여부를 기재하되, 집중투표제도의 경우 정관상 배제여부에 따라 '채택'과 '배제'중 하나를 택하여 기재하고, 서면투표제도 의 경우 정관상 도입여부와 전자투표제도의 경우 이사회에서의 도입여부에 따라 '도입' 과 '미도입'중 하나를 택하여 기재한다. 다만, 사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이전에 제출할 예정이고 투표제도 변경과 관련된 정관변경 안건이 해당 정기주주총회에 상정될 예정인 경우에는 해당 사실과 변경예정인 투표제도에 대한 설명을 표 하단에 기재하여야 한다.
- ii. '실시여부'에는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공시서류제출일까지의 투표제도 운영현황을 기재하되, 해당기간중 실시 내역을 제00기(00년도) 정기주 총(또는 제00기(00년도) 제0차 임시주총) 형태로 모두 기재한다.
- iii. 회사가 공시서류제출일 현재 의결권대리행사권유제도를 도입한 경우에는 표하단에 실시여부, 위임방법(직접교부, 전자위임장 등)을 기재한다.
- 제7-3-2조(소수주주권) 공시대상기간중 소수주주권이 행사된 경우 행사된 소수 주주권의 내용, 행사목적, 진행경과 등을 기재한다.

- i. 공시서류작성기준일 이후 공시서류제출일 사이에 소수주주권이 행사된 경우에도 이를 포함하여 기재한다.
- ii. 주주제안권이 행사된 경우 다음의 표에 따라 제안된 안건의 내용을 기재하고 주주총회 목적사항으로 포함 여부, 거부시 그 사유 및 진행경과를 기재한다.

행사자	안건* <sup>1</sup>	목적사항 포함여부	거부사유* <sup>2</sup>	진행경과* <sup>3</sup>

- \*1 안건 및 안건의 내용 기재
- \*2 주주총회 권한사항이 아닌 주주제안 여부 및 회사가 실현할 수 없는 사항 등 상법 시행령(§12)에 따른 거부 사유 등 거부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
- \*3 제안접수일, 의안상정가처분 신청 등 진행경과 기재
- 제7-3-3조(경영권 경쟁) 공시대상기간중 회사의 경영지배권에 관하여 경쟁이 있었던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 1. 경영권 경쟁의 당사자
  - 2. 진행경과 및 종료된 경우 그 결과
  - 3. 경영권 경쟁기간중 경영권 경쟁과 관련하여 회사가 취한 조치가 있는 경 조치 내용

- i. 위임장 경쟁, 공개매수, 소송 등 경영권 경쟁을 위해 당사자가 구체적인 행위를 하고, 이에 관한 사항이 공시 등으로 외부에 알려진 경우에 한해 기재한다.
- ii. 진행경과는 경영권 경쟁이 일어난 시기, 경쟁의 주요 수단(의결권 주식 매입, 위임장권유, 기타 방법), 법정 분쟁이 있었던 경우 그 내용을 포함하여 기재한다.
- iii. 회사가 취한 조치는 정관변경, 증권 발행, 특정 자산의 취득, 공개매수나 합병등의 제안 등을 행한 경우 그 내용을 말한다.
- 제7-3-4조(의결권 현황) 공시서류작성기준일 현재 주식과 관련된 의결권 현황을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하며 내용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이나 그 밖의 정보는 별도로 기술한다.

(기준일: ) (단위: )

구 분	주식의 종류	주식수	비고
 발행주식총수(A)			
2 % 十一 8 十(A)			

의결권없는 주식수(B)		
정관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배제된 주식수(C)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D)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E)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		
(F = A - B - C - D + E)		

- i. 의결권없는 주식은 「상법」제344조의3제1항,「상법」 제36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의결권없는 주식의 수를 기재한다.
- ii. 정관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배제된 주식은 「상법」제344조의3제1항에 따른 의결권 배제 주식의 수를 기재한다.
- iii.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는 법, 공정거래법 등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의 수를 기재한다. 다만, 「상법」 제409조제2항에 따라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시 3% 초과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과 같이 일부 안건에 대해서만 의결권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에 포함하지 않는다.
- vi.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는 정관 등에서 정함에 따라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의 수를 기재하다. 의결권 부활관련 내용은 별도로 기재한다.
- v. 기업인수목적회사의 경우 주권의 최초 모집 전에 발행한 주식을 취득한 자는 계약 등에 의하여 합병승인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이 제한되는 경우 그 내용을 기재한다.
- vi. 「상법」제344조의3제1항에 따라 의결권 행사가 일부 제한되는 주식을 발행한 경우 동주식의 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항, 의결권 행사 또는 부활의 조건 등을 별도로 기재한다.
- vii.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비고에 주식수에 상응하는 의결권의 수를 기재한다.
- 제7-3-5조(주식사무) 정관에 규정된 신주인수권의 내용과 결산일, 정기주주총회의 시기, 주주명부폐쇄기준일(주주명부 폐쇄시기를 포함한다), 주권의 종류, 명

의개서대리인의 명칭과 전화번호 및 주소, 주주에 대한 특전이 있는 경우 그 내용, 공고게재 홈페이지 주소 및 게재신문 등을 기재한다.

#### 【 작성지침 】

i. 전자등록 등으로 작성할 수 없는 사항(예 : 주권의 종류 등)은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제7-3-6조(주주총회 의사록 요약) 공시대상기간동안 개최된 주주총회에 대해서 일자, 총회의사록에 기재된 안건 및 결의내용,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주요 논의 내용을 하단의 표에 따라 기재한다.

주총정보	안건	결의내용*	주요 논의내용
제xx기 정기주총 (2020.3.31.)	제1호 의안 : XXXX		
	제2호 의안 : XXXX 승인건(주주제안)		
제xx기	제1호 의안 : XXXX 승인건		
임시주총 (2021.4.24.) 	제2호 의안 : XXXX 승인건(주주제안)		

:

- i.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구분하여 표시한다.
- ii. 안건에는 주주제안 여부를 괄호안에 포함하여 기재한다.
- iii. 주요 논의내용은 각 안건별로 구분하여 요약 기재하되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요약 기재한다.
- 가. 주주제안 안건인 경우 주주제안자의 안건 설명내용
- 나. 안건 결의과정 중 질의응답, 찬반토론 과정이 있었을 경우 그 주요내용 및 결론
- 다. 주주총회 진행과정에서 안건의 내용이 일부 수정되었을 경우 수정 전·후 안건의 내용, 수정 사유 등

<sup>\*</sup> 안건의 가결여부

# 제4절 계열회사 등의 현황

제7-4-1조(계열회사의 현황) 계열회사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다.

1. 해당 기업집단의 명칭 및 계열회사의 수

# 계열회사 현황(요약)

(기준일: )			(단위: 사)	
기업집단의 명칭	계열회사의 수			
	상장	비상장	계	

- 2. 소속 회사의 명칭(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포함)
- 3. 계열회사간의 지배·종속 및 출자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계통도
- 4. 계열회사간의 업무조정이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기구 또는 조직이 있는 경우 그 현황
- 5. 계열회사중 회사의 경영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회사명과 내용
- 6. 회사와 계열회사간 임원 겸직 현황

- i. "계열회사 현황(요약)"에는 공시서류작성기준일 현재 계열회사의 총수를 상장과 비상장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 ii. "소속회사의 명칭"은 제11장의2(상세표에 관한 사항)에 따라 상세표에 기재하며, 동 사실을 계열회사 현황(요약)표 하단에 표시한다.
- iii. 계열회사간 계통도는 계열관계의 형성이나 유지를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는 해외법인의 경우 그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지배, 종속, 출자현황중 계통도에 표시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난해한 사항은 별도로 기재할 수 있다.
- iv. 계열회사간 임원 겸직현황은 상근 또는 비상근 여부를 구분하여 기재한다.
- v. 회사가 외국기업인 경우 제5호의 사항은 해당 국가에서 이와 유사한 규제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기재한다.
- 제7-4-2조(타법인 출자현황) 타법인에 출자하고 있는 경우 그 현황을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하며, 내용에 대한 설명이나 그 밖의 정보는 별도로 기술한다. 다만, 제출대상법인이 소규모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타법인 출자현황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타법인 출자현황(요약)

(기준일: )

( , 3 3 )	출자회사수			총 출자금액			
출자목적별				기초	증가(감소)		기말 장부가액
	상장	장 비상장 계		장부가액	취득 (처분)	평가 손익	
경영참여							
일반투자							
단순투자							
계							

- i. 타법인에 대한 출자현황은 민법상 조합 등에 출자한 경우를 포함하며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재한다.
  - 가. 기초 또는 기말 현재 해당 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이 5%를 초과하는 경우
  - 나. 기초 또는 기말 현재 장부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ii. 타법인 출자현황(요약) 표중 '출자목적'에는 주식등의 보유목적을 아래의 지침에 따라 경영참가, 단순투자, 일반투자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 경영참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3-14조에 따른 보고특례 적용 전 문투자자의 주식등의 보유목적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8조에 따 른 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경우
  - 단순투자 : 주식등의 보유목적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3 항 제1호의 단순투자 목적인 경우
  - 일반투자 : 주식등의 보유목적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8조에 따른 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면서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 제1 호의 단순투자 목적이 아닌 경우
- iii. 기초잔액은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기초잔액을 기재하고, 증가(감소)는 공시서류작성기준일까지의 취득(처분) 및 평가손익을 기재하되, 취득(처분)금액은 순액으로 기재한다.
- iv. 타법인 출자현황(상세) 표의 경우 제11장의2(상세표에 관한 사항)에 따라 상세표에 기재하고, 동 사실을 '타법인 출자현황(요약)'표 하단에 표시하며, 상세표의 출자금액을 요약표의 출자금액과 일치시켜야 한다.
- v. ~ vii. 삭제<2021.7.13>

# 제8장 주주에 관한 사항

제8-1-1조(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① 공시서류작성기준일 현재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 소유하는 주식의 종류별 수량, 지분율을 주식 소유자별로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하며, 내용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이나 그 밖의 정보는 별도로 기술한다.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u>(기준일 :</u>	)					(단위 :	주, %)
		고 Al ol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성명	관계	주식의 종류	7]	초	7]	말	비고
	중뉴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7-	4)						

- i. 관계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기재되어 있는 관계(예: 최대주주 본인, 최대주주의 배우자 등)를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 ii. 주식의 종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결권의 일부가 제한된 주식을 포함한다)과 의결권 없는 주식으로 나누어 기재한다.
- iii. 비고에는 지분율 변동원인을 기재한다.
- ② 공시서류작성기준일 현재 최대주주와 관련된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다.
- 1. 최대주주의 주요경력(최대주주가 법인 또는 투자조합 등 단체인 경우에는 법인 또는 단체의 개요)
- 2. 최대주주의 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특정 거래가 있는 경우 그 내용
- 3. 최대주주의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개요

- i. 주요경력은 최대주주가 개인인 경우 최근 5년간의 주요직무와 겸직 또는 겸임현황등을 포함한 경력을 기재한다.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개요에는 아래 (1)부터 (3)까지의 정보를 기재하며, 투자조합 등 단체인 경우 단체의 개요에는 아래 (1)부터 (6)까지의 정보를 기재한다.
  - (1)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 \*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이사, 업무집행자, 최대주주의 지분율을 기재하되 공시대상기간 중세부내역에 변동이 있는 경우 날짜별로 성명 및 지분의 변동내역을 모두 기재하여야 한다.
- ※ 주식회사 등의 대표이사와 업무집행자가 동일한 경우 업무집행자 기재는 생략할 수 있다.
- (2)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재무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 (3) 사업현황 등 회사 경영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내용
- (4) 투자조합 등 단체의 주요출자자 현황

설립근거법률	재산총액	주요출자자	비고	
	741201	성명	지분(%)	·

(5) 투자조합 등 단체의 대표조합원 등의 다른회사 임원 경력

성명*	회사명	상장여부	상장 폐지일	임원	선임일	퇴임일	비고

-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출자자 및 주요출자자(10% 이상)가 개인인 경우 최근 5년간 다른 회사의 임원 경력 기재(대표이사, 이사, 감사로 구분기재)
- (6) 투자조합 등 단체의 대표조합원 등의 다른회사 최대주주 이력

성명*	회사명	상장여부	상장 폐지일	최대주주	시작일	종료일	비고

-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출자자 및 주요출자자(10% 이상)가 개인인 경우 최근 5년간 다른 회사의 최대주주 이력 기재
- ii. 최대주주가 최근 5사업연도 이내에 다른 회사의 최대주주였던 당시 다음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주요경력에 포함하여 기재한다.
  - 가. 그 다른 회사가 파산, 법정관리, 화의 또는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경영정상화이행 약정을 체결(당해 사건이 발생하기 전 1년 이내에 최대주주였던 경우를 포함한다)한 적이 있다면 그 내용. 이 경우 5사업연도 기간계산시 보고대상사건의 발생일자는 최종적인 명령, 판결, 선고가 있은 날짜로 하고, 회사정리절차는 그의 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이를 최종 승인할 날짜로 하며 사적화의나 기업경영정상화계획의 경우는 채권자와 회사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날짜로 한다.
  - 나. 그 회사가 법령(외국법령을 포함한다)에 의해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이 취소된 경우 그 내용
- iii. 최대주주의 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특정거래라 함은 매매의 예약, 주식의 담보 제공 등 공시서류작성기준일 현재 최대주주의 변동을 초래하지 않았으나 기한의 도래 또는 일정조건의 성취 등으로 최대주주의 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거래를 기재한다.
- iv. 최대주주의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개요는 회사 최대주주의 최대주주(최대출자자)가 법인 또는 투자조합 등 단체인 경우 이들의 기본정보도 작성지침 i 의 (1), (2)에 따라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 v. i. (4) 주요출자자의 현황에서 "설립근거법률"에는 개별법령상 설립근거가 있는 조합은 근거법을 기재하고 기타 민법상 조합은 '민법'으로 기재한다. 또한, (5) 다 른회사의 등기임원 경력 및 (6) 다른회사 최대주주 이력에는 대표조합원, 업무집행 조합원, 최대출자자 및 주요출자자(10% 이상)가 개인인 경우 최근 5년간 다른 회사의 등기임원 경력 또는 최대주주 이력을 기재한다. 이 경우 복수 회사의 등기임원 또는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자는 회사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제8-1-2조(최대주주 변동현황) ① 공시대상기간동안 최대주주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 최대주주명, 변동일자, 소유주식수, 지분율, 변동원인 등을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하며, 내용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이나 그 밖의 정보는 별도로 기술한다.

# (기준일 : )

최대주주 변동내역

변동일	최대주주명	소유주식수	지분율	변동원인	비고

### 【 작성지침 】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은 최대주주 변동일 당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하여 기재하며, 변동원인은 최대주주와의 주식양수도 계약, 유상증자 참여, 전환권 등 권리행사, 분할·합병, 증여, 장내매매 등 최대주주 변동을 초래한 원인행위를 기재한다.

②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중 최대주주가 변경된 경우(경영권양수도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인수조건, 인수자금 조달방법 등경영권 양수도와 관련된 내용을 추가로 기재한다. 다만, 기존 최대주주의 지분매각 등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지분취득 없이 최대주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 i. 인수조건은 인수가액, 주당(단위당)인수금액, 주식수(지분율), 계약시 해당 주식의 시가 등을 포함한다.
- ii. 인수자금 조달방법은 자기자금과 차입금을 구분하고 차입금의 경우에는 차입처(금융회사가 아닌 경우 최대주주와의 관계와 차입경위를 기재한다), 차입금액, 차입조건(만기, 금리 등) 및 담보제공여부 등을 기재한다. 만약, 계약 또는 협약 등에 따라 인수자금 조달방법을 공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재한다.
- 제8-1-3조(주식의 분포) ① 공시서류 작성기준일 현재 5%이상 주주와 우리사주 조합 등의 주식소유현황을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하며, 내용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이나 그 밖의 정보는 별도로 기술한다.

### 주식 소유현황

### (기준일:)

구분	주주명	소유주식수	지분율	비고
5% 이상 주주				
3% Y'8 TT				
우리사:	주조합			

### 【 작성지침 】

5%이상 주주는 결산일 현재 의결권 있는 주식(「상법」 제344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을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5%이상 소유한 주주를 말하며,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중 결산일 현재 의결권 있는 주식을 5% 이상 소유한 주주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 반기·분기보고서 제출시 주주명부 폐쇄의 곤란 등으로 결산일 현재 주식소 유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주식소유현황에 갈음하여 대량보유상황보고 내역을 토대로 한 주식보유현황을 기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유현황'이라는 사실을 명시하고, 결산일 현재 주식소유현황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을 기재한다.

② 사업보고서의 경우 공시서류작성기준일 현재 소액주주현황을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한다.

(기준일 : ) (단위 : )

( ' /							
		주주			소유주식		
구 분	소액 주주수	전체 주주수	비율	소액 주식수	총발행 주식수	비율	비고
소액주주							

#### 【 작성지침 】

소액주주는 결산일 현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를 말하며, 총발행주식수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로 기재한다.

## 제8-1-4조 삭제<2021.7.13>

제8-1-5조(주가 및 주식거래실적) 회사의 주권 또는 주권에 기초한 증권예탁증 권이 한국거래소 또는 해외의 조직화된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경우 공시서 류작성기준일부터 최근 6개월간의 주가와 거래실적을 기재한다.

- i. 거래되는 시장 및 발행주식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월별 최고·최저 주가와 평균주가, 월 별 최고·최저 일거래량과 월간거래량을 기재한다. 이 경우 주가는 해당 일자의 종가를 기준으로 한다.
- ii. 주식예탁증서가 해외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경우에는 그 시장의 통화로 표시된 주가와 그 당시 환율로 환산한 원화 금액을 함께 기재한다.
- 제8-1-6조(기업인수목적회사의 추가기재사항) 기업인수목적회사의 경우 주권의 최초 모집 전에 발행된 주권을 취득한 자의 매각 제한, 합병을 승인하기 위한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제한,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제한, 예치자금등의 반환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권리행사에 제한이 있는 내용, 기관투자자의 보유주식수 및 의결권 비율을 추가하여 기재한다.
- 제8-1-7조(복수의결권주식 보유자 및 그 특수관계인 현황)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한 회사는 공시서류작성기준일 현재 복수의결권주식 보유자 및 그 특수관계인이 소유하는 주식의 수량, 지분율, 의결권 수 및 비율을 주식 소유자별로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하며, 내용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이나 그 밖의 정보는 추가로 기술한다.

# 복수의결권주식 보유자 및 특수관계인 현황

(기준일:) (단위: 주, %)

		소	·유주식수	및 지분	율		의결권 수	= 및 비율	Ē	
성명	관계	7]	기초		기말		기초		기말	
	٠.,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의결권 수	의결권 비율	의결권 수	의결권 비율	
계 										

- i. 관계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기재되어 있는 관계(예: 복수의결권주식 보유자 본인, 복수의결권주식 보유자의 배우자 등)를 참고 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 ii. 의결권 비율에는 소유 주식에 부여된 의결권 수를 복수의결권주식 발행회사의 의결권의 총수로 나눈 비율을 기재한다.
- iii. 비고에는 지분율 및 의결권 비율의 변동원인을 기재한다.

# 제9장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 제1절 임원 및 직원 등의 현황

제9-1-1조(임원의 현황) ① 임원에 대하여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하며, 내용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이나 그 밖의 정보는 별도로 기술한다. 다만, 기업인수목적 회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로 기재한다.

# 임원 현황

<u>(기</u>	기준일 : )								(단위	: )		
성 명	성별	출생년월	직 위	등기임원 여부	상근여부	ia ib au 마	주요 경력	소유 <sup>-</sup> 의결권 있는 주식	주식수 의결권 없는 주식	최대주주와의 관계	재직 기간	임기 만료일

- 1. 임원의 변경을 예방하기 위한 수단 등이 있는 경우 그 내용
- 2. 임원이 다른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경우 그 내용
- 3. 임원이 다른 회사의 임직원으로 겸임·겸직하는 경우 그 내용
- 4. 임원이 회사가 추진하고자 하는 합병과 관련된 업무를 최근 5년간 수행한 경력이 있는 경우 그 구체적인 업무내용, 업무실적(합병 등 성사여부, 합병 등 성사 후 중대한 변동 등) 등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내용

- i. 소유주식수는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본인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당해회사 주식의 종류와 수를 말한다.
- ii. 임원의 현황은 이사, 감사 외에 상법 제401조의2의 규정에 따른 업무집행지시자를 포함하여 기재하고, '직위'(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및 상무 등 회사 내 위상, 사외이사는 이사로 기재)와 '담당업무'(예 : 대표이사, CFO·CEO, 00사업부분장·00임원 등 회사 내 직책, 사외이사는 감사위원 여부 및 소속 위원회 기재)를 구분하여 기재하며, '등기임원 여부'는 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 감사 및 미등기 중 하나를 택하여 기재하다(상법 제408조의2에 따른 집행임원제도를 도입한 회사는 대표집행임원 또는 집행임원을 포함한다).

- iii. 주요경력은 학력, 최근 5년간의 주요직무 및 직위명과 재직기간, 겸직 또는 겸임현황 등을 포함하여 임원의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경력을 기재한다. 만약 현재 임원이 과거 임원으로 재직하였던(그 사건이 발생하기 전 1년 이내에 재임중이었던 경우를 포함한다) 회사의 파산, 회생 또는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의 경영정상화이행약정의 체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내용(일시, 회사명, 당시 직위, 재직기간 등)을 포함하여 기재한다. 이 경우 5년간의 기간계산시 보고대상사건의 발생일자는 최종적인 명령, 판결, 선고가 있었던 날짜로 하며 파산, 회생절차는 그의 신청이 있어 법원이 이를 최종 승인할 날로 하며 사적화의나 기업경영정상화계획의 경우는 채권자와 회사간의 합의가이루어진 날짜로 한다.
  - iv. 임원은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을 기준으로 기재하되, 공시서류작성기준일 이후 공시서류 제출일 사이에 신규로 선임한 임원이 있는 경우 해당 임원을 추가 기재하고, 퇴임한 임원이 있는 경우에는 표 하단에 그 사실과 사유를 별도로 기재한다.
  - v. '최대주주와의 관계'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기재되어 있는 관계(예 : 최대주주 본인, 최대주주의 배우자 등)를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 vi. 미등기임원으로서 5년이상 회사에 계속 재직해온 경우에는 주요경력, 재직기간 및 임기 만료일 등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 vii. 제2호의 기재내용에는 임원별로 다른 기업인수목적회사의 명칭·설립일, 보유하고 있는 다른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지분증권 수와 지분비율,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다른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임직원으로 겸임·겸직여부 및 직위·직무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viii. 기업인수목적회사의 경우 제3호를 작성하는 경우 작성지침 iii.에 의한 주요경력에 기재하여야 하는 겸임 또는 겸직현황을 생략할 수 있다.
  - ix. 제3호의 기재내용에는 다른 회사(기업인수목적회사를 포함한다)의 명칭, 재임·재직기간, 직위 및 직무, 지분보유 현황(지분증권의 수 및 지분율), 회사의 주된 사업목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x. 제4호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합병과 관련된 업무라 함은 기업의 인수·합병관련업무를 수행한 경력, 추진하고자 하는 합병 등과 관련된 업무에 근무한 경력 등을 말하며, 합병 등 성사후 중대한 변동이라 함은 영업·생산활동, 재무구조 또는 기업경영활동 등에 관한 사항으로써 관리종목지정 또는 상장폐지사유 발생 등 주가 또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 또는 결정 등을 말한다.

② 정기 주주총회 이전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정기 주주총회 선·해임 안건에 포함된 등기임원 선임 후보자 및 해임 대상자 현황을 다음의 표에 기재 하고, 내용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이나 그 밖의 정보는 별도로 기술한다.

(기준일:) 등기임원 선임 후보자 및 해임 대상자 현황 (단위: )

구분	성명	성별	출생 년월	사외이사 후보자 해당여부	주요경력	선·해임 예정일	최대주주와의 관계

- i. 정기주주 총회에서 해당 선·해임 안건이 부결된 경우에는 정정보고서를 통해「임원 현황」표를 수정하고「이사·감사 선임 후보자 및 해임 대상자 현황」표는 삭제한다.
- ii. '구분'에는 선임, 해임 중 하나를 기재한다.
- iii. '사외이사 후보자 여부'에는 사내이사, 사외이사(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감사위원회 위원, 감사 중 해당사항을 기재하며, 후보자가 사외이사 후보자인 경우는 상법 제542 조의8제2항이 정하는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확인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사외이사"로 기재한다.
- iv. '주요경력' 및 '최대주주와의 관계'는 동조 1항의 작성지침을 참조하여 기재한다.
- 제9-1-2조(직원 등의 현황) ① 공시서류작성기준일 현재의 직원 수, 평균 근속연수, 연간 급여총액, 1인 평균급여액과 소속외 근로자 수 등을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하며, 내용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이나 그 밖의 정보는 별도로 기술한다.

	(기준일 :	)		<u> </u>	펀 5	<u>연청</u>				$_{i}$	간위	: )
				직	원					·속: '로		
	사업 부문	성별	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단시긴 근로지			평균 근속 연수	연간 급여 총액	1인평균 급여액	남	여	계	비고
_												
_												
-	ਨੋ}-	게										

기이 ㄷ 처칭

#### 【 작성지침 】

- i. 직원의 수는 "제4장 사업의 내용"에 따른 사업부문별로 구분하여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부문별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노무직, 기능직, 사무직, 전문직, 영업직, 관리직 등 적절한 기준으로 구분하여 기재할 수 있다.
- ii. 성별은 '남'과 '여'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 iii.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정규직 및 종전에 기간제 근로자등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사용자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중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 제9호의 근로자

- iv. 급여총액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기재한다.
- v. '직원 등 현황' 중 직원은 미등기임원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 vi. '소속 외 근로자'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의6 제1항에 따라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는 회사에 한하여 작성한다.
- vii. 소속 외 근로자(「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제4조제1항 제4호)는 다른 사업주에게 고용된 근로자로서 공시를 하는 사업주가 해당 사업체(법인)에서 사용(파견, 하도급, 용역 등)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 viii. '연간 급여 총액'및 '1인 평균 급여액'은 원칙적으로 원화로 표기하여야 하며 외화로 지급한 경우에도 기말환율 등을 적용한 원화금액을 기재하되, 외화지급액 및 적용환율 등을 주석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ix. '1인 평균 급여액'은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공시서류작성기준일까지의 월별 평균 급여액의합(예시: 반기보고서의 경우 6개월분, 사업보고서의 경우 12개월분)으로 기재하되, 월별 평균 급여액은 해당 월의 급여총액을 해당 월의 평균 근무인원 수로 나눈 값으로 한다.
- x. '평균근속연수'및 '1인평균 급여액'의 합계에는 각 사업부문별 수치의 단순합계를 기 재하는 것이 아니며, 회사 전체의 평균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② 공시서류작성기준일 현재의 미등기임원에 대하여 인원수, 연간급여총액, 1인 평균 급여액 등을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하며, 내용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이나 그 밖의 정보는 별도로 기술한다.

### 미등기임원 보수 현황

(기준일: ) (단위: )

구분	인원수	연간급여총액	1인평균 급여액	비고
미등기임원				

#### 【 작성지침 】

- i. 미등기임원 보수 현황의 '인원수'는 공시서류작성일 기준 현재 재임 중인 임원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연간급여총액과 1인평균급여액은 제9-1-2조 제1항의 작성지침을 따른다.
- 제9-1-3조(기업인수목적회사의 이해상충)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임원이 다른 회사 (기업인수목적회사를 포함한다)의 임직원으로 겸임·겸직하거나 다른 기업 인수목적회사의 지분 보유 등에 따라 발생하는 이해상충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기재하고, 이해상충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이해상충을 관리하기 위한 수단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기재하며, 그러한 수단이 없는 경우 없다는 사실을 기재한다.

#### 【 작성지침 】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유별로 그 내용 및 이해상충 발생을 예방하거나 관리하기 위한 수단을 구분하여 기재한다.

# 제2절 임원의 보수 등

제9-2-1조(이사·감사의 보수현황등) ① 이사·감사 전체의 보수 총액과 관련한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내용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이나 그 밖의 정보는별도로 기술한다.

<이사 : 감사 전체의 보수현황>

## 1. 주주총회 승인금액

(단위 : ) 구 분 인원수 주주총회 승인금액 비고

### 2. 보수지급금액

2-1. 이사·감사 전체

(단위:)

인원수	보수총액	1인당 평균 보수액	비고

### 2-2. 유형별

(단위 : )

구 분	인원수	보수총액	1인당 평균보수액	비고
등기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감사위원회 위원				
감사				

- 3. 이사 : 감사의 보수지급기준
- 4. 기업인수목적회사의 경우 추진하고자 하는 합병이 성공하는 경우 임원(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이 받을 보수와 용역대가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기재한다.

- i. 1. 주주총회 승인금액은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공시서 류작성기준일까지의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금액으로하며, 이 중「구분」은 등기이사(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사외이사(감사위원인 사외이사 제외), 감사위원회 위원, 감사 등으로 나누어 기재한다. 다만, 주주총회에서 구분방식을 달리하여 보수 총액을 승인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구분방식에 따라 기재할 수 있다.
- ii. 2. 보수지급금액은 공시서류작성기준일 현재 재임 중인 이사·감사 외에 공시서류작성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공시서류작성기준일까지의 기간 동안 퇴직한 이사·감사를 포함하여 기재한다.
- iii. 2. 보수지급금액 중「구분」은 등기이사(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사외이사(감사위원인 사외이사 제외), 감사위원회 위원, 감사 등으로 나누어 기재한다. "2-1.이사·감사 전체"의 인원수·보수총액은 "2-2.유형별" 인원수·보수총액의 합계와 일치하여야한다. 또한, 1인당 평균보수액 기재시 공시대상 기간중 퇴직, 신규 임원이 있어 평균인원수를 산출하는 경우 부가적인 설명이나 그 밖의 정보는 별도로 기재한다.
- iv. 2. 보수지급금액 중「보수총액」에는 소득세법 제20조의 근로소득(근로소득지급명세서 의 'I. 근무처별 소득명세'상 급여, 상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임원 퇴직소득금액 한도초과액 등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기재하고,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또는 제22조(퇴직소득)에 따라 산정된 기타소득(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얻은 이익 등)이나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합산하여 기재한다. 또한 주식, 현물 등 다른 수단으로 이사·감사의 보수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와 공정가치 산출방법 등을 주석으로 표시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의 적용을 받는 기업은 보수지급금액을 동 기준에 따라산정된 금액으로 기재한다.
- v. 3. 이사·감사의 보수지급기준은 등기이사(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인 사외이사 제외), 감사위원회 위원, 감사 등으로 구분하여 지급근 거, 보수체계, 보수결정시 평가항목 등을 기재한다. 다만, 주주총회에서 구분방식을 달리하여 보수총액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 주주총회의 구분방식에 따라 기재한다.
- vi. 상반기 퇴직자의 퇴직소득은 반기보고서에 하반기 퇴직자의 퇴직소득은 사업보고서에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정기보고서(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분기보고서, 이하 같다)의 공시서류제출일 현재 지급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확정된 시점의 정기보고서에 포함한다.

- vii. 퇴직연금 지급액은 퇴직소득지급명세서상 퇴직연금 금액을 임원의 퇴직시점의 정기보고 서에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확정기여형의 경우 퇴직시점에 한하여 회사가 불입한 누적금액을 기재한다.
- ② 이사· 감사에게 지급한 개인별 보수가 5억원 이상인 경우 개인별 보수지급금액과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을 기재한다.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인 이사 : 감사의 개인별 보수현황>

1.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단위: )

이름	직위	보수총액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

2. 산정기준 및 방법

(단위: )

				(211 )
이름		보수의 종류	총액	산정기준 및 방법
		급여		
	근로	상여		
	소득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기타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		

#### 【작성지침】

i. 1. 개인별 보수지급금액은 공시서류작성기준일 현재 재임 중인 이사·감사 외에 공 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공시서류작성기준일까지의 기 간 동안 퇴직한 이사·감사를 포함하여 기재한다.

- ii. 1.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중「보수총액」에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기타소득 및 퇴직소득을 합산하여 기재한다.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근로소득(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I. 근무처별 소득명세'상 급여, 상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임원퇴직소득금액 한도초과액 등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기타소득은 회사가 지급한 소득세법 제21조의 기타소득(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얻은 이익 등)을 기준으로, 퇴직소득은 소득세법 제22조의퇴직소득을 기준으로 각각 산정한다. 또한 주식, 현물 등 다른 수단으로 이사·감사의보수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와 산출방법 등을 주석으로 표시한다.
- iii. 퇴직소득액 및 퇴직연금액은 제9-2-1조 제1항의 작성지침을 준용한다.
- iv. 이사·감사가 지배인 기타 사용인을 겸직하는 경우 사용인분 급여를 1. 개인별 보수 지급금액 중「보수총액」에 합산하여 기재하고, 사용인분 급여의 내역을 주석으로 표시한다.
- v. 1.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중「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에는 아래의 예시를 참고하여 회사가 이사·감사에게 장래 지급하여야 할 보수(주식매수선택권, 스톡그랜트,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지급금액이 확정되었으나 이연 지급하는 경우 등)에 관한 내용을 기재한다.

### (작성예시)

(단위: )

이름	직위	보수총액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
000	대표 이사	6억 5천만원	주식매수선택권 1000주 부여 (종목:OO, 행사가격:OO, 행사기간:)
000	이사		_

vi. 2. 산정기준 및 방법에는 1. 개인별 보수지급금액에 기재한 보수의 산정기준 및 방법을 아래의 예시를 참고하여 회사가 실제 운영하고 있는 바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 (작성예시)

회사는 아래의 표에 보수의 종류, 지급근거, 산정항목, 보수액 및 산출과정 등을 포함하여 기재한다.

(단위 : 백만원)

이름	보수의 종류 급여	·의 종류	금액	산정기준 및 방법					
		급여	600	1. 기본급 이사보수 지급기준(또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임원급여 Table을 기초로 평가보상위원회에서 직무·직급(○○), 근속기간(○○년), 리더십, 전문성, 회사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기본급을 총 5억원으로 결정하고 1~10월중 4천만원을, 11~12월중 5천만원을 매월 지급 2. 직책 수당 기본급의 20%인 총 1억원을 매월 균등 지급					
	근로 소득			이사성과보수지급기준(또는 이사회결의)에 따라 매출액·영업이익·당기 순이익으로 구성된 계량지표와 리더십, 전문성, 윤리경영, 기타 회사기 여도로 구성된 비계량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기준연봉의 0%~ 200% 내에서 지급할 수 있음					
01 AF 000		상여	360	계량지표와 관련하여 당사 OO사업부문의 매출액이 전년도 1,000억원에서 올해 1,2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0% 증가한 점, 영업이익이 전년도 100억원에서 올해 110억원으로 전년 대비 10% 증가한 점, 당기순이익이 전년도 50억원에서 올해 55억원으로 전년 대비 10% 증가한 점 등을 고려하였고, 비계량지표와 관련하여 내부통제와 관련된 사고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등 당사 내부통제가 원활히 작동하도록 하여 준법경영, 윤리경영문회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였고, 회사의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리더쉽을 발휘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상여금 3억 6천만원을 산출·지급하였음					
		주식매수 선택권 행사이익	20	주주총회 결의(또는 이사회 결의)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20만원)과 행사 당시 주가(30만원)와의 차이에 행사수량 (200주)을 곱하여 2천만원을 산출하였음					
		기타 근로소득	_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임원 퇴직소득금액 한도초과액, 인정상여, 우리사주조합인출금 등의 내용을 기재함					
		퇴직 소득	150	연봉제 전환에 따른 퇴직금 중도정산지급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주주총회 결의)에 따름 평균급여 × 근무기간 × 직급별 지급률(200%-400%)					
				5년에 따른 각 직위별 지급율(회장직 : 300%)을 곱하여 1억 5천만원을 산출					
		기타 소득	20	주주총회 결의(또는 이사회 결의)로 재임 중 부여받은 주식매수 선택권의 행사가격(20만원)과 퇴직 후인 행사 당시 주가(30만원) 와의 차이에 행사수량(200주)을 곱하여 2천만원을 산출하였음					

③ 개인별 보수가 5억원 이상인 임직원 중에서 상위 5명의 개인별 보수 지급금액과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을 기재한다.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 중 상위 5명의 개인별 보수현황>

1.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단위: )

			( )
이름	직위	보수총액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

### 2. 산정기준 및 방법

(단위: )

이름		보수의 종류	총액	산정기준 및 방법
		급여		
	근로	상여		
	소득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기타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		

#### 【작성지침】

- i.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기재대상은 법 제159조 제2항 제3의2호에 따라 5억원 이상의 보수가 지급된 임직원 중 상위 5명으로 하며, 공시서류작성기준일 현재 재임 또는 재직 중인 임직원 외에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공시 서류작성기준일까지의 기간 동안 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제9-2-1조 제2항의 기재대상이 되는 이사·감사와 중복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별도로 작성한다.
- ii.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중 「보수총액」은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공시서류작성기준일까지의 기간 동안 지급된 총액 기준으로 한다.

iii. 기타 개인별 보수의 구체적인 작성방법은 제9-2-1조의 제2항의 작성지침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이사·감사는 임직원으로 한다.

제9-2-2조(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현황 등) ① 이사·감사·『상법』제401조의 2의 규정에 따른 업무집행지시자 등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공정가치 총액을 다음의 <표1>에 따라 기재하고, 공시서류작성기준일 현재 미행사된 주식매수선택권이 있는 경우 또는 결산일이 속한 사업연도 중 취소·행사된 주식매수선택권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표2>에 따라 기재하며, 내용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이나 기타 정보는 별도로 기술한다.

### < 丑1 >

(단위:)

			(27, 7)
구 분	부여받은 인원수	주식매수선택권의 공정가치 총액	비고
등기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감사위원회 위원 또는 감사			
업무집행지시자 등			
계			

#### < 丑2 >

(기준일:)

	부여 반은자 관기		관계 부여일	부여 방법	주식의 종류	무여	당기변동 수량		총변동 수량		기말 미행사	행사 기간		의무 보유 여부	의무 보유
만은사		311			행사		취소	행사	취소	수량	기신	774	여부	기간	

<sup>※</sup> 공시서류작성기준일(20XX년 X월 X일) 현재 종가 : X 원

- i. < 표1 >의 「부여받은 인원수」는 공시서류작성기준일 현재 미행사되거나 공시서류작성기준일 이 속한 사업연도 중 취소·행사된 주식매수선택권이 있는 자의 수를 말하며, 공시서류작성기준일 현재 재임 중인 이사·감사·『상법』제401조의2의 규정에 따른 업무집행지시자 외에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공시서류작성기준일까지의 기간 동안 퇴직한 이사·감사·『상법』제401조의2의 규정에 따른 업무집행지시자를 포함하여 기재한다.
- ii. <표1>의 주식매수선택권의 공정가치는 당해 사업연도(분·반기)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에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하여 비용으로 계상된 부분을 말하며, 공정가치 산출방법(예시 : 공정가치 산출모형 종류, 주요 가정 등)을 간략하게 기재한다. 만약, 공정가치 산출방법이 감사보고서 등 공시서류의 다른 부분에 이미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참고하도록 명시하고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 iii. <표2>의「부여받은 자」에는 부여받은 자가 회사의 등기이사(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포함), 감사 또는「상법」제401조의2의 규정에 따른 업무집행지시자인 경우에는 개인별로 작 성하고, 그 이외의 자에 대해서는 OOO외 OO명으로 통합하여 기재할 수 있다.
- iv. <표2>의 「관계」에는 당해 법인의 등기·미등기임원, 직원 또는 계열회사 임원, 직원, 외부전문가, 퇴직자, 상속자,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하며, 기타로 기재한 경우 부여받은 자와 당해 법인과의 관계를 표 하단에 간략히 기재한다.
- v. < 표2 >의 「부여방법」에는 신주교부, 자기주식 교부, 현금 차액보상 또는 자기주식 차액보상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회사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부여방법 구분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에 따라 기재할 수 있다.
- vi. <표2>의「당기변동수량」에는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공시서류 작성기준일까지 기간동안 행사되거나 취소된 수량을 기재하고,「총변동수량」에는 최초부여 후 공시서류작성기준일까지 행사되거나 취소된 누적수량을 기재하며,「기말미행사수량」에는 「최초부여수량」에서「총변동수량」을 차감한 수량을 기재한다.
- vii. < 표2 >와 관련하여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 행사가격 및 행사수량의 조정이 있은 경우에는 관련내용(예시 : 조정사유 및 근거, 조정시기, 조정 전·후 행사가격 및 행사수량 비교 등)을 표의 하단에 기재한다.
- viii. < 표2 >와 관련하여 공시서류작성기준일 현재 종가를 표 하단에 참고사항으로 표시한다.
- ix. < 표2 >의 '의무보유 여부' 및 '의무보유 기간'은 공시서류작성기준일 현재 미행사된 주식 매수선택권과 관련하여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취득하게 될 주식이 의무보유 대상

인지 여부 및 의무보유 대상인 경우 의무보유 기간을 기재한다. 이와 관련하여 의무보유 적용 근거(예시: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27 등)를 표 하단에 기재한다.

- x. <표2>의「기준일」에는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을 기재한다.
  -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제외한 성과조건부주식, 양도제한조건부 주식, 스톡그랜트 등의 주식기준보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다.
  - 1. 주식기준보상 제도의 명칭
  - 2. 부여근거 및 절차
  - 3. 주요내용
  - 4. 부여한 인원수
  - 5. 부여한 주식 등의 총수
  - 6. 당기중 지급 주식 등의 총수
  - 7. 누적 지급 주식 등의 총수
  - 8. 미지급 주식 등의 총수

- i. 이 항목은 회사가 공시대상기간중 부여한 주식기준보상을 기준으로 기재한다. 다만, 공시대상기간 전에 부여했더라도 공시서류작성기준일 현재 임직원 등에게 미지급한 주식 등이 있는 경우 또는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한 사업연도 중 취소·지급한 주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위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 ii. 제3호 사항은 가득조건, 지급시기, 양도제한 기간 유무 및 방법, 부여주식의 수의 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기재한다.
- iii. 제4호 및 제5호 사항은 공시대상기간중 주식기준보상약정을 체결한 임직원 등의 수 및 약정상 지급하기로 예정한 주식 등의 수를 합산하여 기재하거나 연도별, 회차별로 구분하여 기재할 수 있다.
- iv. 제6호 사항은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공시서류작성기준일 까지 기간동안 주식기준보상약정에 따라 실제 지급한 수량을 기재하고, 제7호 사항은 공시대상기간중 공시서류작성기준일까지 지급한 누적수량을 기재하며, 제8호 사항은 제4호의 인원에게 지급하기로 예정한 수량에서 실제 지급한 누적수량을 차감한 수량을 기재하되, 취소된 경우 취소수량 및 그 사유를 추가로 기재한다.

# 제10장 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용

- 제10-1-1조(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등)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공시서류작성기준일까지 기간동안 대주주(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장에서 같다)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대주주를 위하여 가지급, 대여(증권의 대여를 포함한다), 담보제공, 보증, 배서, 그 밖의 보증의 성격을 가지는 이행약속 등 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직·간접적 거래(이 조에서 "신용공여등"이라 한다)를 한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다.
  - 1. 신용공여등 대상자의 이름 및 회사와의 관계
  - 2. 신용공여등의 종류
  - 3. 신용공여등을 행한 일자
  - 4. 신용공여등의 목적
  - 5. 신용공여등의 금액 및 최근의 잔액
  - 6. 신용공여등에 대하여 대주주가 제공한 담보의 내용
  - 7. 신용공여등의 조건
  - 8. 신용공여등의 내용이 보증적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는 주채무의 주요내용
  - 9. 주주총회의 승인, 이사회 결의 등 신용공여등의 공정성 또는 합리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내부통제절차를 거친 경우 그 내용 및 이러한 절차를 거 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유 및 의사결정방법
  - 10. 신용공여등이 채무로 확정되어 회사에서 그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이에 관한 내용

- i. 대상기간중 신용공여등의 거래가 없는 경우라도 거래상대방별 기초 또는 기말의 신용 공여등 잔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위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 ii. 제1호 사항은 대주주를 상대방으로 하는 신용공여인 경우에는 해당 대주주의 이름 및 회사와의 관계를 기재하고, 대주주를 위하여 제3자를 상대방으로 하는 신용공여등인 경우에는 해당 대주주의 이름 및 해당 대주주와 거래상대방인 제3자와의 관계 등을 기재한다.
- iii. 제6호 사항은 담보의 실제가치 및 담보가치의 하락시 추가담보의 제공여부 및 방법 등을 포함하여 기재한다.

- iv. 제7호 사항은 만기, 이율, 수수료 등을 포함하여 기재하며 해당 조건의 내용 외에도 조건 결정시 고려된 사항, 그 조건이 통상적인 조건과 다른 경우 그 사유, 조건이 변경된 경우 그 내용, 그 밖의 신용공여등과 관련된 조건 등을 기재한다. 이 경우 통상적인 조건은 신용공여등의 종류 등에 따라 지급되는 금리, 가격, 수수료 등이 일반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수준을 말한다. 한편, 신용공여등의 대가로 대주주로부터 이자를 받기로되어 있는 경우 지급의무가 발생하였으나 지급하지 아니한 이자가 있는 경우 그 금액도 기재한다.
- v. 제9호 사항은 「상법」제542조의9(주요주주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 의해 주요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등이 금지됨에도 불구하고 신용공여등의 예외에 해당된다고 판단하 게 된 근거를 포함하여 기재한다.
- vi. 임원에 대한 복리후생(학자금, 주택자금 또는 의료비 등)을 위하여 대여하거나, 공시서 류 작성기준일 현재 거래 상대방별 신용공여등의 잔액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일 경우 에는 해당 대주주에 대한 거래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 제10-1-2조(대주주와의 자산양수도 등)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의 개시일부터 공시서류작성기준일까지 기간동안 대주주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대주주를 위하여 자산(영업)의 매수(양수), 매도(양도), 교환, 증여 등의 거래를 한 경우에는 거래 형태별로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다.
  - 1. 거래상대방의 이름 및 회사와의 관계
  - 2. 거래종류
  - 3. 거래일자
  - 4. 거래대상물
  - 5. 거래목적
  - 6. 거래금액(금액산정기준을 포함한다)
  - 7. 거래조건
  - 8. 거래로 인하여 손익이 발생한 경우 그 내용
  - 9. 주주총회의 승인, 이사회 결의 등 해당 거래의 공정성 또는 합리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내부통제절차를 거친 경우 그 내용 및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유 및 의사결정방법

i. 중요한 자산(영업)양수도에 따른 주요사항보고대상과 일치하지 않음에 유의하며, 영업 활동에 따른 자산(영업)의 매수, 매도 등의 경우에는 제10-1-3조에 따라 기재한다.

- ii. 제1호 사항은 대주주를 상대방으로 하는 거래인 경우에는 해당 대주주의 이름 및 회사 와의 관계를 기재하고, 대주주를 위하여 제3자를 상대방으로 하는 거래인 경우에는 당 해 대주주의 이름 및 당해 대주주와 거래상대방인 제3자와의 관계 등을 기재한다.
  - iii. 제4호 사항은 부동산인 경우에는 부동산관련 세부내용을 기재하며, 증권인 경우에는 증권의 발행인, 액면금액 및 증권의 내용 등을 기재한다. 영업인 경우에는 영업의 주요제품 또는 서비스의 내용 등을 기재한다.
- iv. 제7호 사항은 해당 조건의 내용 외에도 조건 결정시 고려된 사항, 통상적인 조건과 다른 경우 그 사유, 조건이 변경된 경우 그 내용, 그 밖에 해당 거래와 관련된 조건 등을 기재한다.
- v. 제8호에서 거래로 인하여 손익이 발생한 경우라 함은 자산 또는 영업의 처분으로 인하여 장부가액과 처분가액 사이에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vi. 거래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호(거래금액은 제외한다)부터 제9호의 사항은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 가. 공개경쟁방법에 의하여 거래조건이 결정된 거래
- 나. 표준약관에 의하여 통상적인 거래조건에 따라 서비스가 제공되는 거래
- 다. 정부 등이 통제하는 가격에 의하여 서비스가 제공되는 거래
- vii. 거래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 제10-1-3조(대주주와의 영업거래)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공시서류작성기준일까지 기간동안 제10-1-1조, 제10-1-2조에 해당되는 거래외의 영업거래 중 대주주와 행한 물품(자산) 또는 서비스 거래금액이최근사업연도 매출액의 5/100이상에 해당하거나, 동 금액이상의 1년 이상의장기공급(매입)계약(대외무역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무역상사를 통한 수출대행 등을 포함한다)을 체결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다.
  - 1. 대주주의 이름 및 회사와의 관계
  - 2. 거래종류
  - 3. 거래일자
  - 4. 거래내용
  - 5. 거래금액(일반관행상의 거래금액과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차이금액 및 발생이유를 포함한다)

- i. 제4호 사항은 거래의 목적물(물품, 서비스명 등), 거래(계약)기간 등을 기재한다.
- ii. 제5호 사항은 일반관행상의 거래금액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거래금액 산정근거를 구체 적으로 기재한다.
- 제10-1-4조(대주주에 대한 주식기준보상 거래)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공시서류작성기준일까지 기간동안 대주주를 상대방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제외한 성과조건부주식, 양도제한조건부 주식, 스톡그랜트 등의 주식기준보상 거래를 한 경우에는 각 대주주별로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다.
  - 1. 대주주의 이름 및 회사와의 관계
  - 2. 주식기준보상 제도의 명칭
  - 3. 부여근거 및 절차
  - 4. 주요내용
  - 5. 거래일자
  - 6. 부여한 주식 등의 수
  - 7. 당기중 지급 주식 등의 수
  - 8. 누적 지급 주식 등의 수
  - 9. 미지급 주식 등의 수

- i. 대상기간중 주식기준보상 신규 부여 등의 거래가 없는 경우라도 공시서류작성기준일 현재 미지급한 주식 등이 있는 경우 또는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한 사업연도 중 취소· 지급한 주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위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 ii. 제4호 사항은 가득조건, 지급시기, 양도제한 기간 유무 및 방법, 부여주식의 수의 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기재한다.
- iii. 제5호 사항은 부여·지급·취소일자를 기재한다. 부여일자는 주식기준보상약정을 체결한 일자를 기재하고, 지급·취소일자에는 주식 등을 지급하거나 취소한 일자를 기재하며, 제6호 사항은 주식기준보상약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예정한 수량을 기재한다.
- iv. 제7호 사항은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공시서류작성기준일 까지 기간동안 주식기준보상약정 등에 따라 실제 지급한 수량을 기재하고, 제8호 사항은 제6호 사항에서 공시서류작성기준일까지 지급한 누적수량을 기재하며, 제9호 사항은 제6호 사항에서 제8호 사항을 차감한 수량을 기재하되, 취소한 경우 취소수량 및 그사유를 추가로 기재한다.

제10-1-5조(대주주 이외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주주, 직원 등 대주주 이외의 이해관계자를 상대방으로 거래를 한 경우에는 제10-1-1조부터 제10-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 작성지침 】

- i. 주주는 대주주를 제외한 5%이상 주식을 소유한 주주를 말한다.
- ii. 거래당시 대주주에 속하지는 않았지만 '최근 3년간 대주주에 속하였던 자' 또는 '계약 등에 의하여 1년 이내에 대주주가 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자'는 이해관계자로 보아 거래내용을 기재한다.
- iii. 직원에 대해 복리후생(학자금, 주택자금 또는 의료비 등)을 위하여 대여하거나 우리사 주조합 또는 우리사주조합원과「근로자복지기본법」에 따라 거래하는 경우에는 기재하 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1-6조(기업인수목적회사의 추가기재사항) 기업인수목적회사가 그 임원의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거래를 한 경우에는 모든 거래내용을 기재한다.

#### 【 작성지침 】

기업인수목적회사가 그 임원과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제10-1-1조 내지 제10-1-3조에 따라 거래내용을 기재하는 반면, 이 조에 따른 기재내용에는 기업인수목적회사가 그임원의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한 모든 거래내용을 기재한다.

# 제11장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1절 공시내용의 진행・변경상황

제11-1-1조(공시사항의 진행·변경상황) ① 주요사항보고서 및 한국거래소 공시를 통해 공시한 사항이 공시서류제출일까지 이행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주요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신고사항의 진행상항을 기재하고, 신고내용과 다르게 진행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함께 기재한다.

#### 【 작성지침 】

- i. 이행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주요내용이 변경된 경우라 함은 공시한 사항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거나 공시내용과 관련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상의 주요변경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 ii. 공시사항의 진행 변경상황 기재시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하며, 내용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이나 기타 정보는 별도로 기술한다.

신고일자	제 목	신고내용	신고사항의 진행사항

iii. 상장법인이 공시서류작성기준일 이전에 한국거래소의 공시규정에 따라 '장래 사업계획 또는 경영계획'을 공시한 경우로서 그 이행이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공시한 계획에 대한 그간의 추진실적(업무별 추진경과·관련투자금액·성과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며, 향후 계획에는 기공시한 계획의 이행 여부 및 추진계획을 기재한다.

### 제11-1-2조 삭제<2021.7.13>

## 제2절 우발채무 등에 관한 사항

- 제11-2-1조(중요한 소송사건) 회사 또는 자회사 등이 소송 당사자로 되거나 회사 또는 자회사 등의 재산을 대상으로 소송이 제기된 경우로서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다.
  - 1. 소송의 내용(청구취지 · 청구원인 등)
  - 2. 소 제기일
  - 3. 소송 당사자
  - 4. 진행상황
  - 5. 향후 소송일정 및 회사의 대응방안
  - 6.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의 영업, 재무, 경영 등에 미칠 영향

- i.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진행중이거나 사업연도 중에 새로 제기된 소송 등에 대해서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한다.
- ii. 소송결과가 회사의 영업 등에 미칠 영향 등의 내용은 공시서류의 다른 부분(이사의 경 영진단 및 분석의견 등)의 기재와 중복되는 경우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 iii. 소송은 본안소송과 가처분·가압류신청 등 본안전소송을 포함하여 기재한다.
- iv. K-IFRS(외국법인이 적용하는 IFRS 또는 US-GAAP을 포함)를 적용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주권상장법인은 종속회사를 포함하여 중요한 소송사건을 기재하되, '주요종속회사'(최근사업연도말 별도(개별)재무제표상 자산총액이 지배회사 별도(개별)재무제표상 자산총액의 10% 이상이거나 750억원 이상인 종속회사를 말함)의 내용은 반드시 기재한다. 이 경우 연결실체 전체의 입장에서 기재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종속회사의 명칭 및 종속회사가 지배회사에 미치는 영향도 기재한다.
- 제11-2-2조(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수표현황) 공시서류작성기준일 현재 당해 회사 또는 타인을 위하여 제공된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수표의 현황을 어음과 수표로 각각 구분하여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하며, 내용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이나 그 밖의 정보는 별도로 기술한다.

(기준일 : )

제 출 처	매 수	금 액	비고
은 행			
금융기관(은행제외)			
<u>법</u> 인			
기타 (개인)			

### 【 작성지침 】

K-IFRS(외국법인이 적용하는 IFRS 또는 US-GAAP을 포함)를 적용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주권상장법인은 종속회사를 포함하여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수표 현황을 기재하되, '주요종속회사'(최근사업연도말 별도(개별)재무제표상 자산총액이 지배회사 별도(개별)재무제표상 자산총액이 10% 이상이거나 750억원 이상인 종속회사를 말함)의 내용은 반드시 기재한다. 이 경우 연결실체 전체의 입장에서 기재(연결실체 내 회사간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수표현황 포함)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종속회사의 명칭 및 종속회사가 지배회사에 미치는 영향도 기재한다.

- 제11-2-3조(채무보증 현황) ①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초일과 말일을 기준으로 채무보증 건수 및 각 채무보증계약별 잔액의 합계액을 기재하고, 사업연도 중 채무보증의 증감내용을 요약하여 기재한다. 다만, 한국표준 산업분류상 "건설업"에 해당하는 회사의 PF와 관련한 채무보증 현황은 별도 (제3항~제8항)로 기술한다.
  - ② 공시서류작성기준일 현재 계속 중인 채무보증계약 중 금액 및 사안 등에 비추어 회사의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계약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요약하여 기재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에 해당하는 회사의 PF와 관련한 채무보증 현황은 별도(제3항~제8항)로 기술한다.
  - 1. 채무자(회사와의 관계)
  - 2. 채권자
  - 3. 채무금액
  - 4. 채무보증금액
  - 5. 채무보증기간(개시일~종료일)
  - 6. 채무보증조건 등 기타
  - ③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에 해당하는 회사에 한함)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말일을 기준으로 PF와 관련한 신용보강 금액(연결회사(또는 개별회사) 단독 사업에 대한 신용보강 금액, 컨소시엄 참여 사업에 대한 신용보강 금액 및 합계금액)을 보증금액 기준으로 기재하며, 특수관계자에 제공하는 신용보강 금액 및 전기말에는 우발부채로 계상되었으나 충당부채로 전환된 금액은 별도로 기재한다. 또한, 정비사업과 기타사업으로 구분하여 PF단계(브릿지론과 본 PF로 구분)에 따른 보증한도, 보증금액, 대출잔액을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하며, 내용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이나 그 밖의 정보는 추가로 기술한다.

부동산 PF 우발부채 종합요약표

(단위: 백만원)

Χ

Χ

Χ

Χ

		보증 한도 (연결)			대출잔액(연결)									
	종류		보증 금액 (연결)		만기 구분									
구분				당 기	3개월 이내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6개월 초과 12개월 이내	1년 초과 2년 이내	2년 초과 3년 이내	3년 초과	전기			
<b>T</b>	브릿지론	X	X	Х	X	X	X	X	X	X	X			
정비 사업	본PF	X	X	X	X	X	X	X	X	X	X			
/ II 📙														

Χ

#### 브릿지론 Χ Χ Χ Χ Χ Χ Χ Χ Χ Χ 기타 본PF Χ Χ Χ Χ Χ Χ Χ Χ Χ Χ 사업 계 Χ Χ Χ Χ Χ Χ Χ Χ Χ Χ Χ Χ Χ Χ 총계 Χ Χ Χ Χ Χ Χ

Χ

#### 【 작성지침 】

K-IFRS(외국법인이 적용하는 IFRS 또는 US-GAAP을 포함)를 적용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주권상장법인은 종속회사를 포함하여 채무보증 현황을 기재하되, '주요종속회사'(최근사업연도말 별도(개별)재무제표상 자산총액이 지배회사 별도(개별)재무제표상 자산총액의 10% 이상이거나 750억원 이상인 종속회사를 말함)의 내용은 반드시 기재한다. 이 경우 연결실체 전체의 입장에서 기재(연결실체 내 회사간 채무보증 포함)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종속회사의 명칭 및 종속회사가 지배회사에 미치는 영향도 기재한다.

i. "종류"에는 브릿지론과 본 PF를 기재한다.

<연결기업(또는 개별기업) 단독 사업>

Χ

Χ

계

- ii. "보증한도"에는 금융기관 등에 부담하는 PF대출에 관하여 회사가 보증하는 한도액을 기재한다.
- iii. "보증금액"에는 보증한도 내에서 실제 보증을 실행한 금액을 기재한다.
- iv. "대출잔액"에는 대출약정 내에서 실제 대출을 실행한 후 상환하고 남은 금액을 기재하되,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말일을 기준으로 만기 구분에 따라 각각 기재한다.

- v. "만기 구분"은 기초자산에 보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초자산의 만기로 구분하며, 유동화 증권에 보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유동화증권의 만기로 구분한다.
- vi. 보증한도, 보증금액, 대출잔액 각각의 금액은 사업장 기준으로 연대보증, 채무인수, 자금 보충이 중복되는 경우, 중복되는 금액은 제외한 금액을 고려하여 기재한다.
- vii. "종합요약표"에는 책임준공과 중도금대출은 포함하지 않는다.
- viii. 회사가 컨소시엄 형태의 보증도급이 있는 경우 컨소시엄 참여 사업을 다음의 표에 따라 컨소시엄(전체)과 연결회사 부담분으로 각각 공시하되, 효과적인 정보제공을 위하여 아래 형태의 표를 적절히 변형할 수 있다.

### 부동산 PF 우발부채 종합요약표

<컨소시엄 참여 사업(전체)>

(단위: 백만원)

							대출잔액(	전체)					
		보증 한도 (전체)	보증	보증 만기 구분									
구분	종류			당 기	3개월 이내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6개월 초과 12개월 이내	1년 초과 2년 이내	2년 초과 3년 이내	3년 초과	전기		
	브릿지론	X	Х	Χ	X	Х	X	Χ	X	X	X		
정비 사업	본PF	Х	Х	Χ	Х	Х	X	Χ	Х	Х	X		
711 🚨	계	Х	Х	Χ	Х	Х	X	Χ	Х	Х	X		
	브릿지론	Х	Х	Χ	X	Х	X	Χ	Х	Х	X		
기타 사업	본PF	Х	Х	Χ	Х	Х	X	Χ	Х	Х	Х		
7.1 🗅	계	Х	Х	Χ	Х	Х	X	Х	Х	Х	Х		
	· 총계	Х	Х	Χ	X	Х	Х	Χ	Χ	Х	Х		

<컨소시엄 참여 사업(연결회사 부담분)>

(단위: 백만원)

							대출잔액(	연결)						
		보증 한도 (연결)	보증		만기 구분									
구분	종류		금액 (연결)	당 기	3개월 이내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6개월 초과 12개월 이내	1년 초과 2년 이내	2년 초과 3년 이내	3년 초과	전기			
	브릿지론	X	X	X	X	X	X	X	Χ	X	X			
정비 사업	본PF	X	X	X	X	X	X	X	X	Х	X			
	계	X	X	Х	X	X	X	Χ	X	Х	X			
	브릿지론	X	X	X	X	X	X	Χ	Χ	X	X			
기타 사업	본PF	X	X	X	X	X	X	X	X	X	Χ			
	계	Х	X	X	X	X	X	X	X	Х	Х			
3	총계		X	X	X	Х	X	X	X	Х	Х			

④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에 해당하는 회사에 한함)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속하는 사업연도의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의 표에 따라 PF와 관련 없는 사항으로서보증보험회사 등에 보험을 가입하거나 보증서를 발급하는 방식 등으로 현재 발주처등에 대하여 계약이행, 분양보증 및 하자보증 등 지급보증 내역을 기재하며, 내용에대한 부가적인 설명이나 그 밖의 정보는 추가로 기술한다.

### 非 PF 우발부채 종합요약표

<연결기업(또는 개별기업)>

(단위: 백만원)

구분	피보증처명	보증 종류	보증 한도	보증 금액	보증처	특수관계자 여부	기타
제공한 지급보증	X	Х	X	Х	X	X	X
제공받은 지급보증	Х	Х	X	Х	X	X	X
기타	X	Х	X	X	Х	X	X
——— 계			Х	X			

#### 【 작성지침 】

- i. "제공한 지급보증"에는 계약이행보증, 운영자금 지급보증, 주택분양보증 등 회사가 타인의 금융거래 등을 위하여 제공한 지급보증을 기재한다.
- ii. "제공받은 지급보증"에는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수보증 등 회사가 계약 등을 위해 보증 처로부터 제공받은 지급보증을 기재한다.
- iii. "기타"에는 제공한 지급보증 또는 제공받은 지급보증에 분류가 명확하지 않은 사항(소송 등)을 기재한다.
- 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에 해당하는 회사에 한함)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말일을 기준으로 부동산 PF(대출) 보증 세부 내역을정비사업과 기타사업으로 구분하여 다음 표에 따라 각각 기재한다. 또한, 책임준공약정내역은 연대보증·채무인수·자금보충 등과 중복으로 약정되므로 같이기재하되, 중도금대출 및 SOC 관련 사항은 포함하지 않는다. 기타 내용에 대한부가적인 설명이나 그 밖의 정보는 추가로 기술한다.

부동산 PF(대출) 보증 세부 내역(정비사업)

<연결	기업(또는	= 개별	!기업)>	•				(단	위: 백	만원)					
사업 지역	사업장 구분	PF 종류	신용 보강	보증한도	부담률	보증	ᆥᆉ	특수 관계자	채권 기관	대 잔 (연	액	대출 - 기간	만일	l 유형	책임 준공 약정
74 1	'-	0,,	종류	(전체)	(연결)	(연결)		여 부	종류	당기	전기				금액
	×	X	X	Х	X%	Х	X	Х	X	Х	X	'xx.xx~' xx.xx	X	X	X
Α	조기성 조형		조기상	기상환 조항이 있는 경우 해당 사항 기재											
	기재된 (	기재된 신용보강 외 신용보강 유형(연대보증, 채무인수, 자금보충)이 있는 경우 해당 사항 기재													
기타	×	X	X	X	X%	X	X	X	X	X	X	'xx.xx~' xx.xx	Х	X	X
기다	조기성 조형		조기상	환 조항(	이 있는	경우 해	당 사항	기재							-
단독.	사업 계			Х	Х%	Х				Х	Х				X
•••			•••	•••	•••			•••							
컨소.	시엄 계			Χ	X%	X				Х	Х				X

- i. "사업지역"에는 광역시. 특별시. 시 또는 군을 기재한다.
- ii."사업장 구분"에는 공동주택,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업무시설 등 사업장의 특성을 고 려하여 기재한다.
- iii. "PF 종류"에는 브릿지론과 본 PF를 기재한다.
- iv. "신용보강 종류"에는 연대보증, 채무인수, 자금보충 등으로 구분하되, 복수의 신용보강이 제공되는 경우 중복금액 제외하고 가장 큰 금액의 신용보강으로 기재한다.
- v. "보증한도(전체)"에는 컨소시엄 형태의 보증·도급이 있는 경우 컨소시엄의 보증한도를 기재한다.
- vi. "부담률(연결)"에는 컨소시엄 사업인 경우 연결회사 부담률을 기재하되. 단독 사업인 경우 100%를 기재한다.
- vii. "보증금액"에는 보증한도 내에서 연결회사가 실제 보증을 실행한 금액을 기재한다.
- viii. "특수관계자"에는 특수관계자인 경우 해당여부를 표시하되, 상세한 내용은 "특수관계자 와의 거래 주석"에 별도로 기재한다.
- ix. "채권기관 종류"에는 은행. 증권회사. 대주단 등 채권기관 유형을 기재한다.
- x. "대출잔액"에는 전기에 잔액이 있었으나 당기에 'O'인 경우도 기재하며, 유동화증권이 아닌 PF대출의 잔액을 기재하되. 전기에 우발부채로 계상되었다가 충당부채로 전환되어 감소된 경우 관련 사실을 기재한다.
- xi. "대출기간"에는 유동화증권이 아닌 PF대출의 기간을 기재한다.
- xii. "만기일"에는 부동산 PF 유동화증권의 만기일을 기재하되, 유동화증권의 만기가 없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는다.

- xiii. "유형"에는 PF Loan 또는 유동화증권 종류를 기재한다.
- xiv. "기타"에는 부동산 PF 전체 보증금액(컨소시엄 포함) 기준으로 1%(또는 100억원)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 일괄하여 기재한다.
- xv. 책임준공은 연대보증·채무인수·자금보충 등과 중복으로 약정되므로 "책임준공약정금액"에 같이 기재하되, 중도금대출, SOC 보증과 함께 제5항~제7항에 별도의 요약표를 기재한다.
- xvi. "기타사업"은 정비사업 외 사업을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작성방식은 정비사업과 동일)한다.

# 부동산 PF(대출) 보증 세부 내역(기타사업)

<연결	기업(또는 개별기업)> (단위: 백만원)														
사업 지역	사 업 장 구분	PF 종 류	신용 보강 종류	보증 한도 (전체)	부담 률 (연결)	보증 금액 (연 결)	채 무 자	특수 관계자 여부	채 권 기 관 종 류	대 잔 (연 당기	액	대출 기간	만 기 일	ନ୍ତି	책임 준공 약정 금액
	×	X	X	Χ	X%	X	X	X	Χ	X	X	'xx.xx~' xx.xx	Χ	X	Χ
Α	조기 / 조 호		조기상	환 조항(	이 있는	경우 히	배당 시	항 기재							
	기재된	신용5	보강 외	신용보증	강 유형(	연대보증	증, 채-	무인수, 지	h금보 <del>.</del>	충)이	있는	경우 해당	당 사형	항 기	재
	×	X	Х	X	Χ%	Х	Х	Х	Χ	Х	X	'xx.xx~' xx.xx	Χ	Х	Х
기타	조기상환 조항 조기상환 조항이 있는 경우 해당 사항 기재														
단독/	나업 계			Х	X%	Х				X	Х				Х
컨소/	시엄 계			X	X%	Χ				X	X				Χ

⑥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에 해당하는 회사에 한함)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말일을 기준으로 부동산 PF 관련 책임준공 미이행시 조건부 채무인수약정 내역을 정비사업과 기타사업으로 구분하여 다음 표에 따라 각각 기재하되, 기타 내용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이나 그 밖의 정보는 추가로 기술한다.

### 부동산 PF 책임준공 약정 내역

(단위: 개, 백만원)

	1						, , ,	
		당	기		전기			
구분	공사건수	도급금액	약정금액	대출잔액	공사건수	도급금액	약정금액	대출잔액
정비사업	Χ	Χ	Χ	Χ	Χ	Χ	Χ	X
(연결회사분)	( X )	( X )	( X )	( X )	( X )	( X )	( X )	( X )
기타사업	Χ	Х	Χ	Χ	Χ	Χ	Х	X
(연결회사분)	( X )	( X )	( X )	( X )	( X )	( X )	( X )	( X )
	Χ	X	Χ	Χ	Χ	Χ	Χ	X
(연결회사분)	( X )	( X )	( X )	( X )	( X )	( X )	( X )	( X )

컨소시엄에 따라 전체 및 연결회사 금액이 다른 경우 연결회사 금액은 괄호에 추가 기재한다.

⑦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에 해당하는 회사에 한함) 공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말일을 기준으로 연결회사가 SOC법인과 시행사의 차입금과 관련하여 제공하고 있는 자금보충 및 자금제공 내역을 다음 표에 기재하되, 기타 내용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이나 그 밖의 정보는 추가로 기술한다.

## 부동산 PF의 SOC 보증 내역

<연결기업(또는 개별기업)>

(단위: 백만원)

구분		당기		전기			
구正	공사건수	전체	연결회사분	공사건수	전체	연결회사분	
보증한도	Х	Х	X	Х	Х	X	

⑧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에 해당하는 회사에 한함) 공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말일을 기준으로 본 PF 관련 중도금대출 내역을 정비사업과 기타사업으로 구분하여 다음 표에 따라 각각 기재하되, 기타 내용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이나 그 밖의 정보는 추가로 기술한다.

# 본 PF의 중도금대출 내역

<연결기업(또는 개별기업) 단독 사업>

(단위: 백만원)

		당	기		전기				
구분	사업건 수	보증한 도	약정금 액	대출잔 액	사업건 수	보증한 도	약정금 액	대출잔 액	
정비사업 (연결회사분)	( X )	( X )	( X )	( X )	( X )	( X )	( X )	( X )	
기타사업 (연결회사분)	( X )	( X )	( X )	( X )	( X )	( X )	( X )	( X )	
계 (연결회사분)	( X )	( X )	( X )	( X )	( X )	( X )	( X )	( X )	

#### 【 작성지침 】

컨소시엄에 따라 전체 및 연결회사 금액이 다른 경우 연결회사 금액은 괄호에 추가 기재한다.

제11-2-4조(채무인수약정 현황) ①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초일 및 말일을 기준으로 채무인수약정 건수 및 채무인수약정별 잔액의 합계액을 기재하고, 사업연도 중 채무인수약정 증감내용에 대하여 요약하여 기재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에 해당하는 회사의 채무인수약정 현황은

제11-2-3조 제3항과 제5항에 따라 기재한다.

- ② 공시서류작성기준일 현재 계속 중인 채무인수약정 중 금액 및 사안 등에 비추어 회사의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약정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요약하여 기재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에 해당하는 회사의 채무인수약정 현황은 제11-2-3조 제3항과 제5항에 따라 기재한다.
- 1. 채무자(회사와의 관계)
- 2. 채권자
- 3. 채무금액
- 4. 채무인수약정금액
- 5. 채무인수약정기간(개시일~종료일)
- 6. 채무인수조건 등 기타

### 【 작성지침 】

K-IFRS(외국법인이 적용하는 IFRS 또는 US-GAAP을 포함)를 적용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주권상장법인은 종속회사를 포함하여 채무인수약정 현황을 기재하되, '주요종속회사' (최근사업연도말 별도(개별)재무제표상 자산총액이 지배회사 별도(개별)재무제표상 자산총액의 10% 이상이거나 750억원 이상인 종속회사를 말함)의 내용은 반드시 기재한다. 이 경우 연결실체 전체의 입장에서 기재(연결실체 내 회사간 채무인수약정 포함)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종속회사의 명칭 및 종속회사가 지배회사에 미치는 영향도 기재한다.

제11-2-5조(그 밖의 우발채무 등) ① 공시서류작성기준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및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4장에서 정한 우발부채 또는 우발자산 및 자산유동화와 관련하여 부담하고 있는 우발부채 등에 관하여 그 구체적 내용을 기재한다.

- i. 우발부채 등에 관하여 공시서류의 다른 부분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 부분을 참조하라는 방식으로 기재할 수 있다.
- ii. K-IFRS(외국법인이 적용하는 IFRS 또는 US-GAAP을 포함)를 적용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주권상장법인은 종속회사를 포함하여 그 밖의 우발채무 등을 기재하되, '주요 종속회사'(최근사업연도말 별도(개별)재무제표상 자산총액이 지배회사 별도(개별)재무

제표상 자산총액의 10% 이상이거나 750억원 이상인 종속회사를 말함)의 내용은 반드시기재한다. 이 경우 연결실체 전체의 입장에서 기재(연결실체 내 회사간 그 밖의 우발채무 등 포함)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종속회사의 명칭 및 종속회사가 지배회사에 미치는 영향도 기재한다.

② 부동산PF 유동화와 관련하여 신용보강을 제공한 회사(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 및 "건설업"에 해당하는 회사는 제외한다)는 그 현황을 기재한다.

### 신용보강 제공 현황

(단위:)

발행회사 (SPC)	증권종류	PF 사업장 구분	발행일자	발행금액	미상환 잔액	신용보강 유형	조기상환 조항

#### 【 작성지침 】

- i. 증권종류는 ABS, ABCP, AB전단채, AB사채 등으로 구분 기재한다.
- ii. PF사업장 구분에는 주택, 상업시설, 재개발, 재건축 등 사업장의 유형을 기재한다.
- iii. 신용보강유형에는 지급보증, 채무인수, 책임준공, 책임분양, 자금보충약정 등 구체적 신용보강 내역을 기재한다.
- iv. 조기상환조항이 있는 경우 조기상환조건(예:시공사의 신용등급이 A(A2)로 하락)과 조기 상환방식(예:시행사(차주)인 ○○회사에 대한 PF대출채권의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시 공사인 회사가 체결한 채무인수계약의 이행을 통해 유동화증권이 조기상환된다) 등에 대하여 주된 내용을 중심으로 요약하여 주기한다.
- ③ 회사(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에 해당하는 회사는 제외한다)가 자산보유자로서 장래매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한 경우 그 현황 및 유동화채무 비중을 기재한다.

# 장래매출채권 유동화 현황

(단위:)

발행회사 (SPC)	기초자산	증권종류	발행일자	발행금액	미상환잔액

- i. 회사가 자산을 SPC에 매각하거나 신탁회사에 신탁하여 이를 기초로 자산유동화증 권을 발행하는 경우로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및 동법에 따라 발행되지는 않았으 나 이와 유사한 구조로 발행된 증권을 모두 포함하여 기재한다.
- ii. 기초자산은 기업이 매각하거나 신탁한 자산의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 iii. 증권종류는 ABS. ABCP. AB전단채. AB사채 등으로 구분 기재한다.
- iv. 조기상환조항이 있는 경우 조기상환조건(예: 매출채권 회수액의 일정규모 미달)과 조기 상환방식(예: 회사로의 현금유입이 중단되고 매출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모두 자 산유동화증권에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등에 대하여 주된 내용을 중심으로 요약하여 주 기한다.

# 장래매출채권 유동화채무 비중

(단위:)

	당7	기말	전 7	증감	
	금액(A)	(비중,%)	금액(B)	(비중,%)	(A-B)
유동화채무					
총차입금					
매출액					
매출채권					

#### 【 작성지침 】

- i. 유동화채무는 장래매출채권을 유동화자산으로 하여 발행된 자산유동화증권 중 작성기준 일의 미상환잔액을 기재한다.
- ii. 총차입금은 유동화채무, 장단기차입금 등을 포함한 전체 차입금을 기재한다.
- iii. 비중은 총차입금(매출액, 매출채권) 대비 유동화채무 비중을 기재한다.

### 제11-2-6조 삭제<2021.7.13>

# 제3절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 제11-3-1조(제재현황) 회사 또는 회사의 임·직원이 공시대상기간중에 회사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받거나 상법, 법, 외부감사법, 공정거래법, 조세관련법, 환경관련법 등 국내외의 금융, 조세 및 환경 관련 법령과 노동, 소비자보호 및 부정경쟁방지 관련 법령상 의무를 위반하여 형사처벌이나 행정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다.
  - 1. 일자
  - 2. 제재기관
  - 3.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 4. 처벌 또는 조치내용
  - 5. 금전적 처벌(조치)의 경우 해당금액
  - 6. 횡령·배임의 경우 관련금액
  - 7. 사유 및 근거법령
  - 8.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 9.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 작성지침 】

i. 제재현황은 수사·사법기관의 제재현황, 행정기관의 제재현황을 구분하여 기재하되 행정 기관은 조세당국, 공정거래위원회, 관세청, 기타 행정·기관별로 구분하여 기재하며, 제재요약 및 제재별로 세부내용은 작성지침 ii~xi을 참고하여 별도로 기재한다. 제재사항은 제재 기관이 문서로 조치내용을 통보한 사항을 작성한다.

### (작성 예시)

1) 수사·사법기관의 제재현황

#### ◈ 요약

<u>(단위: )</u>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 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횡령·배임 등 금액	 근거 법령

- ※ 회사 및 임·직원의 제재현황(퇴직 임·직원의 회사 재직 당시 위반사항을 포함)을 구분하고, 금전적 제재금액 및 횡령·배임 등의 금액은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기재
- ◈ 세부내용

#### 2) 행정기관의 제재현황

가. 금융감독당국의 제재현황

#### ◈ 요약

(단위: )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 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사유	근거법령

<sup>※</sup> 회사 및 임·직원의 제재현황(퇴직 임·직원의 회사 재직 당시 위반사항을 포함)을 구분하고, 금전적 제재금액은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기재

#### ◈ 세부내용

- 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현황
- 다. 과세당국(국세청, 관세청 등)의 제재현황
- 라. 기타 행정·공공기관의 제재현황 (각각 요약 및 세부내용 기재)
- ii. 기재대상인 회사의 임직원은 이사, 감사, 상법 제401조의2에 따른 업무집행지시자, 같은 법 제408조의2에 따른 집행임원 및 중요한 직원(회사의 재무, 회계, 기획, 연구개발, 공시 업무 등과 관련한 회사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임원에 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직원을 말한다)으로 하며, 각각의 자에 대한 제재현황은 회사에 대한 제재와 구분하여 기재한다.
- iii.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인 임직원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직위, 전·현직여부, 근속연수 등을 기재하여야 하고, 성명 등 인적사항은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 iv. 처벌 또는 조치내용에는 형사상 유죄의 선고가 있었거나 형사사건이 계류중인 형사상의 처벌과 금융관련 법령(「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에 따른 금융 관련법령을 말한다)·조세관련법령 위반에 대한 행정상 제재를 기재한다. 다만, 형이 실 효되거나 감경된 경우 그 사실을 기재할 수 있고, 직원(미등기임원 포함)이 받은 경고· 주의와 같이 경미한 제재, 검찰통보 등 미확정 사실, 행정조치가 취소된 경우에는 기재 를 생략할 수 있다. 특히, 조세범 처벌법 제3조 및 제10조에 해당하는 위법행위의 경우 관련 위반사실 및 위반금액, 추징세액 및 벌금 등 조치사항을 상세하게 기재한다.
- v. 사유 및 근거법령에는 위법행위의 구체적 사실관계, 회사 또는 해당 임직원의 역할 및 근거 법조문을 명확히 기재한다.
- vi. 노동, 소비자보호 및 부정경쟁방지 관련 법령은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개인정보 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 의 금지에 관한 법률기등을 말한다.
- vii.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연도개시일로부터 최근 5사업연도의 회사 또는 임원의 제재 사항을 기재한다.
- viii. 임원의 경우 제9장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에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있는 경우에는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 ix. 지주회사는 주요자회사를 포함하여 기재한다.
- x. K-IFRS(외국법인이 적용하는 IFRS 또는 US-GAAP을 포함)를 적용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주권상장법인은 종속회사를 포함하여 제재현황을 기재하되, '주요종속회사'(최근 사업연도말 별도(개별)재무제표상 자산총액이 지배회사 별도(개별)재무제표상 자산총액의 10% 이상이거나 750억원 이상인 종속회사를 말함)의 내용은 반드시 기재한다. 이 경우 연결실체 전체의 입장에서 기재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종속회사의 명칭 및 종속회 사가 지배회사에 미치는 영향도 기재한다.
- xi. 금융 및 조세 관련 법령상 의무를 위반하여 받은 형사처벌이나 행정상의 조치에는 감독·검사·조사 등에 따른 조치 및 공시위반(5%보고 등 지분보고 위반 포함)에 따른 조치등을 모두 포함한다.
- ②·③ 삭제<2021.7.13>
- 제11-3-2조(한국거래소 등으로부터 받은 제재) 회사가 상장 또는 공시와 관련 하여 한국거래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로부터 제재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제1항에 준하여 그 조치내용을 기재한다.

- i. 회사가 한국거래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받은 사실(벌점 또는 제재금 포함) 내역을 기재한다.
- 제11-3-3조(단기매매차익의 발생 및 반환에 관한 사항) 회사가 법 제172조제3항에 따라 공시대상기간에 증권선물위원회(금융감독원장)로부터 통보받은 단기매매차익의 전체 건수 및 총액과 환수한 건수 및 환수총액 등을 <표1>에기재하고, 환수하지 못한 금액이 있는 건에 대해서는 건별로 그 미환수 현황을 <표2>에 기재한다.

## < 迅1 >

# 단기매매차익 발생 및 환수현황

(대상기간 : XXXX.X.X. ~ XXXX.X.X.)

(단위: 건, 원)

	증권선물위원회(금융감독원장) 으로부터 통보받은 단기매매차익 현황	단기매매차익 환수 현황	단기매매차익 미환수 현황
건수			
총액			

## < 丑2>

# <u>단기매매차익 미환수 현황</u> (대상기간 : XXXX.X.X. ~ XXXX.X.X.)

(단위 : 원)

								(	71 . 47
차익취 회사의 차익 취득시	득자와 ] 관계 작성일 현재	단기 매매차익 발생사실 통보일	단기 매매차익 통보금액	환수 금액	미환수 금액	반환 청구 여부	반환청구 조치계획	제척 기간	공시 여부
ē	합계(	건)							

※ 해당 법인의 주주(주권 외의 지분증권이나 증권예탁증권을 소유한 자를 포함)는 그 법인으로 하여금 단기매매차익을 얻은 자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법인이 요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주주는 그 법인을 대위(代位)하여 청구할 수 있다(자본시장법시행령 제197조)

- i. 차익취득자와 회사의 관계는 회사의 임원, 상법 제401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집행지시자, 주요주주 등 차익취득자의 지위를 <차익취득시점> 및 <보고서 작성일 현재>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 ii. 단기매매차익 통보금액은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단기매매차익을 기재한다.
- iii. 반환청구조치계획은 차익취득자에 대한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 진행상황 및 향후 계획을 기재한다.
- iv. 제척기간은 단기매매차익 취득자가 차익을 취득한 최초의 날(예 : 2010.1.1)로부터 최종의 날(예 : 2010.6.1)까지를 기준으로 2년이 도래한 기간(예 : 2011.12.31 ~ 2012.5.31)을

기재한다.

v. 공시여부는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했는지 여부 및 해당 홈페이지 주소(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한 경우)를 기재한다.

(작성예시)

< 丑1 >

<u>단기매매차익 발생 및 환수현황</u> (대상기간: 2010.1.1. ~ 2013.6.30.)

(단위 : 건, 원)

			(
	증권선물위원회(금융감독원장) 으로부터 통보받은 단기매매차익 현황	단기매매차익 환수 현황	단기매매매차익 미환수 현황
건수			
총액			

< 丑2>

<u>단기매매차익 미환수 현황</u> (대상기간: 2010.1.1. ~ 2013.6.30.)

(단위 : 원)

차익취 회사의 차익	득자와   관계   작성일	단기 매매차익 발생사실	단기 매매차익	환수 금액	미환수 금액	반환 청구 여부	반환청구 조치계획	제척 기간	공시 여부
취득시	현재	통보일	통보금액	ц		여부		. , _	' '
	소액 주주								
업무집행 지시자	임원								
임원	주요 주주								
임원	퇴직								
직원	임원								
직원	직원								
합	계 (	건)							

<sup>※</sup> 해당 법인의 주주(주권 외의 지분증권이나 증권예탁증권을 소유한 자를 포함)는 그 법인으로 하여금 단기매매차익을 얻은 자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법인이 요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주주는 그 법인을 대위(代位)하여 청 구할 수 있다(자본시장법시행령 제197조)

## 제11-3-4조 ~제11-3-15조 삭제<2021.7.13>

# 제4절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등 기타사항

제11-4-1조(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공시서류 작성기준일 이후부터 공시서류의 제출일 사이에 발생한 사건이나 변화된 상황 등으로 인하여 공시 서류 작성기준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공시내용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 사건 등과 이로 인한 기재내용상의 변동 내용 또는 회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별도로 기재한다.

- i. 중대한 변화라 함은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사건이나 변화된 상황으로 인해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에는 작성기준일에 비하여 회사의 자산, 부채, 손익 또는 그 전망이나 관련 증권의 권리 내용, 가치 등에 관하여 현저한 변동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이러한 내용이 공시서류의 다른 부분에 기재된 경우에는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 ii. 지주회사는 자회사의 결산일 이후에 발생한 중요사항을 포함하여 기재하며, 자회사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 iii. K-IFRS(외국법인이 적용하는 IFRS 또는 US-GAAP을 포함)를 적용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주권상장법인은 종속회사를 포함하여 작성기준일 이후에 발생한 주요사항을 기재하되, 최소한 '주요종속회사'(최근사업연도말 별도(개별)재무제표상 자산총액이 지배회사 별도(개별)재무제표상 자산총액의 10% 이상이거나 750억원 이상인 종속회사를 말함)의 내용은 포함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결실체 전체의 입장에서 기재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종속회사의 명칭 및 종속회사가 지배회사에 미치는 영향도기재한다.
- 제11-4-2조(중소기업기준 검토표) 회사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세법시 행규칙 별지 제51호 서식에 의한 중소기업기준 검토표 사본 등 중소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한다.
- 제11-4-3조(외국지주회사의 자회사 현황) 외국지주회사의 경우에는 당해 지주회사 및 자회사 각각의 별도(개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다음의 표에 따라 최근 사업연도 재무현황을 기재한다.

(기준일 : ) (단위 : )

구 분	A지주 회사	B법인	C법인	D법인		연결 조정	연결후 금액
매출액						( )	
내부 매출액	( )	( )	( )	( )	( )		-
순 매출액						-	
영업손익						( )	
계속사업손익						( )	
당기순손익						( )	
자산총액						( )	
현금및현금성자산							
유동자산							
단기금융상품							
부채총액						( )	
자기자본						( )	
자본금						( )	
감사인						-	
감사·검토 의견						-	
비고							

## 【 작성지침 】

재무현황에 기재되는 항목은 당해 지주회사가 채택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하며, 자회사는 당해 지주회사가 채택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연결대상인 모든 종속회사를 포 함한다.

제11-4-4조(법적위험 변동사항) 외국기업의 경우에는 최근의 사업(분기·반기)보고서 또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이후의 법적위험 변동사항을 기재한다.

## 【 작성지침 】

법적위험은 제2-3-4조에서 정한 사항을 말한다.

제11-4-5조(금융회사의 예금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예금자보호, 예탁자산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업종의 감독규정 및 각 협회의 영업보고서 공시기준을 참조하여 기재한다.

제11-4-6조(기업인수목적회사의 요건 충족 여부) 기업인수목적회사가 시행령

제6조제4항제14호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다음의 표를 이용하여 기재한다.

7) ス	충족	여부	게보게여
기 준	충족	미충족	세부내역
① 주권(최초 모집 전 발행주권 제외) 발행금액의			
90% 이상을 주금납입일의 다음 영업일까지 증권			
금융회사 또는 신탁업자에 예치·신탁할 것			
② 예치자금등은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 완료 전			
인출 또는 담보로 제공하지 않을 것			
③ 발기인 중 1인 이상은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일 것			
④ 임원이 금융투자업자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			
⑤ 최초로 모집한 주권에 대한 주금납입일부터 90일			
이내 증권시장에 상장할 것			
⑥ 최초로 모집한 주권에 대한 주금납입일부터 36개월			
이내 합병등기를 완료할 것			
⑦ 주권 최초 모집 전에 합병대상법인이 정하여지지			
않을 것			
⑧ 해산사유 발생시 예치자금등을 주주에게 주권보유			
비율에 비례하여 지급할 것			
⑨ 발기인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는 기업인수목적			
회사 발행주식등 발행총액의 5% 이상을 소유할 것			

## 【 작성지침 】

기업인수목적회사가 시행령 제6조제4항제14호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에서 정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기재하며, 요건의 내용이미래의 상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정관이나 각종 계약서에 반영된 사항 등을 기재한다.

제11-4-7조(기업인수목적회사의 금융투자업자의 역할, 의무 및 과거 합병에 관한 사항) ① 기업인수목적회사의 발기인으로 참여하는 금융투자업자의 역할, 관련법규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지분증권 등의 투자의무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기재한다.

② 기업인수목적회사의 발기인으로 참여하는 금융투자업자가 공시대상기간에 진행한 합병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단, 증권신고서에 매출액, 영업이익 등의 예측치를 추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2호와 제3호는 기재하지 아니한다.

1. 금융투자업자의 과거 합병 완료 및 해산 현황

(단위 : )

						\ <u> </u>
금융투자업자명	설립 건수	합병 탐색 건수	합병 진행 건수	합병 완료 건수	해산 건수	합병 완료율

<합병 완료 현황> (단위 : )

회사명	대상		회사 합병		자산	수익	수익가	합병	병신주 주	<b>ニ</b> フト
외사 경	회사	가액	합병 가액	가치	가치	치 비중	상장일	상장후 6개월	상장후 1년	

<해산 현황> (단위 : )

회사명	모집(매출) 총액	가중평균 발행가격	합병 시도횟수	주당 예치금 분배금액

2. 금융투자업자의 과거 합병 평균 괴리율

(단위 : )

					· — · · ·	
금융투자업자명	건수	매를	<b>臺</b> 액	영업이익		
		1차연도	2차연도	1차연도	2차연도	

3. 과거 합병 건별 현황 및 합병 전후 재무사항 비교표

(단위:)

		합병	או ע			매칕	출액					영업	이익			-1 -
1	대상	등기	외부 평가	1	차연도	Ē	2	차연도	Ē	1	차연도	Ē	2	차연도	Ē	최초 추정
,	회사		기관	예측	실적	괴리	구~8 연도									
		일	. , .	치	치	율	치	치	율	치	치	율	치	치	율	

- i. 제1호에는 해당 금융투자업자가 발기인으로 참여한 과거 기업인수목적회사의 합병 완료·해산 현황을 기재한다.
  - 가. '합병탐색건수'는 합병대상이 정해지지 않은 기업인수목적회사의 건수를 기재한다.
  - 나. '합병진행건수'는 합병계약이 체결되는 등 합병 대상이 정해진 기업인수목적회사의 건수를 기재한다.
  - 다. '합병완료건수'는 합병등기가 경료되는 등 합병이 사실상 종료된 기업인수목적회사의 건수를 기재한다.
  - 라. '합병완료율'은 '설립건수' 대비 '합병완료건수'의 비율을 기재한다.
  - 마. '회사명'은 기업인수목적회사의 명칭을 기재한다.
  - 사. '회사 합병가액'은 기업인수목적회사의 합병가액을 기재한다.
  - 아. '상대회사 합병가액'은 합병상대회사의 합병가액을 기재한다.
  - 자.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는 '상대회사 합병가액' 산정시 산출한 자산가치 및 수익가치를 기재한다. 단, 합병상대회사의 합병가액 산정시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산출하지 않았다면 기재하지 않는다.
  - 차. '수익가치 비중'은 '상대회사 합병가액'에서 '수익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을 기재한다.
  - 카. '합병방법'은 합병 후 기업인수목적회사가 존속하는 방식의 합병인지 소멸하는 방식의 합병인지 기재한다.
  - 타. '합병신주 주가'는 합병신주 상장일, 상장후 6개월후, 상장후 1년후 주가를 각각 기재하며, 만약 주식분할 및 병합 등 발행주식수의 조정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주가간 비교가능성 제고를 위해 분할 등을 반영한 수정주가를 기재한다.
  - 파. '가중평균발행가격'은 총 납입금액을 공모전 발행주식수, 공모주식수, 전환사채 등이 있는 경우 전환을 가정하여 전환후 주식수 등을 합산한 주식수로 나눈 가격을 기재한다.
  - 하. '합병 시도횟수'는 합병계약 체결 건수를 기준으로 기재한다.
  - 갸. '주당 예치금 분배금액'은 기업인수목적회사 해산시 공모주주에게 분배된 주당 예치금 분배금액을 기재한다.
- ii. 제2호에는 제3호의 표에 기재한 합병대상법인별 1차연도, 2차연도 괴리율을 각 예측치로 가중산술평균한 괴리율을 기재한다. 실적치가 없어 괴리율 산출이 불가능한 연도는 제외한다.
- iii. 제3호에는 해당 금융투자업자가 발기인으로 참여한 다른 기업인수목적회사가 공시대상기간 동안 완료한 합병에 대하여 각 합병대상법인의 재무사항 예측치와 실적치를 비교하여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기재한다.
  - 가. '예측치'는 합병을 추진하면서 추정하였던 합병대상법인에 대한 예측치 또는 추정치를, '실적치'는 합병등이 이루어진 이후의 법인의 실제 실적치를 의미한다. 동 예측치 및 실적치의 기준 재무제표 종류(연결재무제표 또는 별도(개별)재무제표)를 별도로 기재한다.
  - 나. '1차연도'와 '2차연도'는 미래 재무사항을 추정한 첫 번째와 두 번째 사업연도를 의미한다.
  - 다. '괴리율'은 '(예측치-실적치)/예측치'로 산정하여 백분율로 기재한다.

제11-4-8조(합병등의 사후정보) ① 공시대상기간 중 법 제161조 및 시행령 제171조에 의한 합병, 중요한 영업양수도, 중요한 자산양수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분할 등 주요 조직변경이 규정 제5-15조 각호에 따라 사실상 종료된 경우 건별로 종료일자, 상대방, 계약내용 등을 기재한다.

## 【 작성지침 】

- i. 종료일자는 규정 제5-15조의 합병등이 사실상 종료된 때를 말한다.
- ii. 상대방은 합병등 상대방의 명칭(상호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상호를 표시한다), 소재지, 대표이사 등을 기재한다. 영업 및 자산 양수도에 있어서 상대방이 개인인 경우에는 '소재지' 및 '대표이사' 대신에 상대방의 '주소' 및 '성명'을 기재한다.
- iii. 계약내용은 합병등의 배경. 법적 형태. 구체적 내용. 주요일정 등을 기재한다.
- ② 합병등의 전후 주요 재무사항의 예측치 및 실적치를 합병등의 건별로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하며, 내용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이나 그 밖의 정보는 별도로 기술한다. 단, 외부평가를 받지 않거나 외부평가시 대상회사의 매출액 등의 예측치를 산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재하지 아니하되, 외부평가여부 및 관련법령상 외부평가면제사유 등 미기재 사유를 기재한다.

# 합병등 전후의 재무사항 비교표

\* 합병등(합병, 중요한 영업·자산양수도, 주식의 포괄적교환·이전, 분할)

(단위:)

대상		ର୍ବା	측					
	계정과목	1차연도	2차연도	1차연도		2차연도		비고
회사		1사건도		실적	괴리율	실적	괴리율	
	매출액							
XX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 【 작성지침 】

i. '예측'은 합병등을 추진하면서 추정하였던 합병등의 대상법인들에 대한 예측치 또는 추정치의 합계를 기재한다. 단, 외부평가를 받지 않거나 외부평가시 대상회사의 매출액등의 예측치를 산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재하지 아니한다.

- ii. '실적'에는 합병등이 이루어진 이후의 법인에 대한 실적치를 기재한다.
- iii. '괴리율'은 '(예측치-실적치)/예측치'로 산정하여 백분율로 기재하고, 괴리율이 10%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발생원인을 상세하게 별도로 기술한다.
- 제11-4-9조(녹색경영) ① 회사가「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42조제6항에 따른 관리업체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정부에 보고하여야 하는 온실 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 ② 회사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32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녹색사업·녹색제품 적합성 인증 또는 녹색전문기업 확인을 받거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6조의2에 따라 녹색기업 지정을 받은 경우 및 그 인증·확인 또는 지정이 취소된 경우 그 내용을 기재한다.

- i.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은「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44조제1항에 따라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제출하는 명세서에 포함되는 내용을 기재한다.
- ii. 회사의 관리업체 지정이 취소되거나, 정부의 비공개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 재하고.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 제11-4-10조(정부의 인증 및 그 취소에 관한 사항) 회사가 정부로부터 관련법령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그 근거법령, 인증부처, 인증날짜, 유효기간 및 그 내용을 기재할 수 있다. 다만, 그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11-4-11조(조건부자본증권의 전환·채무재조정 사유 등의 변동현황) ① 조건부자 본증권의 주식전환 또는 상각 사유를 가격·지표·단위·지수 등으로 정한 경우에는 가격 등의 변동현황을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한 시점부터 지속적으로 기재한다.

# 전환·채무재조정 사유의 변동현황

전환·채무재조정 사유	발행시 (YY.MM.DD)	YY.X분기	YY.X분기	YY.X분기	

② 조건부자본증권의 주식전환·상각 사유의 발생과 관련된 요인[자본적정성·자산건전성 등 관련 지표(제2-3-1조 작성지침 i. 다의 세부 지표 참조)를 기준으로 하되, 주식전환 또는 상각 사유가 경영개선명령과 같이 발동요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건을 설명하고 관련 지표에 추가]도 그 변동현황을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한 시점부터 지속적으로 기재하고 동 지표의 변동이 투자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기재한다. 주식전환·상각사유의 발생과 관련한 규제환경이변하는 경우에도 그 내용과 투자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기술한다.

## 관련 지표의 변동현황

관련 지표	발행시 (YY.MM.DD)	YY.X분기	YY.X분기	YY.X분기	

제11-4-12조(보호예수 현황) 회사가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 증권신고서 면제 등의 사유로 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등에 보호예수 중인 경우 다음의 표에 따라 보호예수 주식수 및 보호예수기간 등을 기재한다.

(기준일: ) (단위: 주)

주식의 종류	예수 주식수	예수일	반환예정일	보호예수기간	보호예수사유	총발행주식수

- i. 공시서류 작성기준일 현재 보호예수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모든 주식에 대하여 예탁 기관의 잔고증명서 등을 확인하여 기재한다.
- ii. 동일한 사유로 동일한 예수일에 보호예수를 이행하였으나, 투자자 등에 따라 보호예수 기간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기간별로 수량을 구분하여 기재한다.
- iii. 주식의 종류는 보통주와 우선주로 구분한다.
- iv. 보호예수사유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보호예수, 한국거래소 상장규정에 따른 보호예수, 법원으로부터 인가된 정리계획안의 내용에 따른 보호예수, 우리사주의 예탁, 기타 중 택일하되, 기타의 경우에는 예수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 v. 총발행주식수는 공시서류 작성기준일을 기준으로 기재한다.

제11-4-13조(상장기업의 사후정보) ① 상장 기업으로서 상장을 위한 증권신고서에 미래 영업실적을 추정한 경우 최근 3개 사업연도에 대한 재무사항 예측치와 실적치를 다음의 표에 따라 비교하여 기재하며, 내용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이나 그밖의 정보는 별도로 기술한다. 단, 증권신고서에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등의 예측치를 추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재하지 아니한다.

# 상장기업의 재무사항 비교표

(상장일: , 인수인: ) (단위:원)

추정대상	계정과목	예측치	실적치	예측치 달성 여부	괴리율
	매출액				
20X1년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매출액				
20X2년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매출액				
20X3년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 【 작성지침 】

i. <삭제, 2021.1.22.>

ii.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증권신고서상 미래 영업실적 추정기간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작성한다.

[작성대상 예시 : 20X1년 상장시 증권신고서상 20X1년~20X5년의 영업실적을 추정한 경우]

·20X1년 정기보고서 : 비교표에 20X1년 내용 기재

·20X3년 정기보고서 : 비교표에 20X1년~20X3년 내용 기재 ·20X5년 정기보고서 : 비교표에 20X3년~20X5년 내용 기재

·20X6년 정기보고서 : 비교표 작성 불필요

iii. <삭제, 2022.1.14.>

iv. '인수인'에는 증권신고서에 '인수인의 의견'을 기재한 인수인을 기재한다.

- v.'예측치'에는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미래 영업실적의 예측치 또는 추정치를 기재하며, '실적치'에는 상장 이후의 실제 실적치를 기재한다.
- vi. 실적치가 예측치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예측치 달성 여부'는 "달성"으로 기재하고, '괴리율'은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하며, 실적치가 예측치보다 작은 경우 '예측치 달성 여부'는 "미달성"으로 기재하고, '괴리율'은 '(예측치-실적치)/예측치'로 산정하여 백분율 형태로 기재한다. 음수(-)로 산정되는 경우에도 절대값 형태인 양수로 기재한다. 괴리율이 10% 이상인 계정과목에 대해서는 제2-4-5조에 따라 증권신고서에 기재한 세부 추정 금액 및 세부 추정근거의 분류에 따라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발생원인에 대한 분석내용을 상세하게 기술한다.

## [분석내용 예시]

- · 매출액: 증권신고서에 구분하여 기재한 매출액(영업수익) 세부항목별 비교분석, 물량· 단가 추세분석, 기술실현 관련 주요경과(개발·상용화·양산 등) 분석 등
- 영업이익 : 매출원가, 인건비, 외주비 등 주요 영업비용 항목별 비교분석, 수익성(원 가율·영업이익율 등) 세부분석 등
- ·당기순이익: 영업외수익·비용 등 비경상적 요인 분석 등 <(매출액·영업이익·당기순이익의) 괴리율 발생 사유>

	구분		20X4(E)	20.7	5/E)	20X6(E)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20/4(L)	20X5(E)		20/(L)	
	00-0	판매 수입		발생 사유	시장 철수 (59%)		
		ТЫ		상세 내용			
시약		로열티					
	$\triangle - \triangle \triangle$	스-스스 판매 수입		발생 사유	계약 만료 (22%)		
				상세 내용			
진단		판매 수입		발생 사유	경쟁 심화 (13%)		
키트		Ťü		상세 내용			
	00	판매 수입					
기타	***	기타 수입					

- 발생사유: 해당연도 괴리율 발생에 주된 영향을 미친 상위 3개 사유에 대해 그 사유를 간략히 기재하고. '기여율(전체 괴리율에 대한 해당 매출(수입)원이 차지하는 비중)'을 병기한다.
- 상세내용 : 해당연도 괴리율 발생 사유에 대한 분석결과를 상세히 기재한다.
- ② 특례상장기업은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 코스닥 관리종목 지정요건 유예(면 제 포함, 이하 이 항에서 동일) 해당 여부 등을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하며, 내용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이나 그 밖의 정보는 별도로 기술한다.

# 매출액 미달에 대한 관리종목 지정유예 현황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 30억원 미만)

(기준일 : ) (단위 : <u>원</u>)

요건별 회사 현황		관리종목	곤	난리종목지정유(	Я
사업연도	매출 금액	지정요건 해당여부	해당여부	사유	종료시점

## 계속사업손실에 대한 관리종목 지정유예 현황

(자기자본 50%이상(10억원 이상에 한함)의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최근 3년간 2회 이상 및 최근 사업연도 법인세차감전계속 사업손실 발생)

(기준일:) (단위: 원,%)

	관리종목		종목  유예			
사업연도	법인세차감전 계속사업손익 (A)	자기자본금액 (B)	비율(A/B)	지정요건 해당여부	해당여부	종료시점
20X1년						
20X2년						
20X3년			_			

#### 【 작성지침 】

i. '요건별 회사현황'에는 최근 사업연도말 매출액, 최근 3사업연도별 각 자기자본 대비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손익 비율(2020년말 기준인 경우 2020년, 2019년, 2018년도의해당비율 각각 기재)을 기재하되,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손익이 10억원 미만인 경우표하단에 해당 사업연도와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손익을 별도로 기재한다.

- ii. 비율의 경우 백분율(%) 형태로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버림하여 표시(예: 12.54% → 12.5%)하고. 음수의 경우 "-00억원. -00%" 형태로 표기한다.
- iii. '관리종목 지정요건 해당여부'는 '관리종목 지정유예 해당여부'와 관계 없이 공시서류작성기준일 현재 각 항목별로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해당하지 않는 경우 '미해당'으로 기재한다.
- iv. '관리종목 지정유예 해당여부'는 '관리종목 지정요건 해당 여부'와 관계 없이 공시 서류작성기준일 현재 각 항목별로 지정유예(면제 포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정유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해당'으로 기재한다.

[관리종목 지정유예 해당여부 예시]

- ·작성기준일이 2020년말이고, 2022년까지 매출액 요건에 대한 관리종목 지정유예를 받고 있으며 2020년도 매출액이 100억원인 경우: '해당'
- · 작성기준일이 2023년말이고, 매출액 요건에 대한 관리종목 지정유예가 2022년말로 종료 : '미해당'
- v.'관리종목 지정유예 사유'는 상장연도 포함 5개 사업연도 동안 유예, 코스닥시장상장 규정(제53조 1항 1호 나목) 요건을 충족하는 제약·바이오기업 등의 형태로 기재한다.
- vi. '관리종목 지정유예 종료시점'은 지정유예 해당여부란에 '해당'으로 기재한 경우 기재하며, 유예기간이 마지막으로 적용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을 연월일(XXXX.XX.XX) 형태로 기재하고, 코스닥시장상장규정(제53조 1항 1호 나목) 요건을 충족하는 제약·바이오 기술성장기업으로서 최근 사업연도에 대해 관리종목 지정을 유예받는 경우 최근 사업연도의 종료일을 연월일(XXXX.XX.XX) 형태로 기재한다.

#### [종료시점 예시]

- 2021년 9월 상장 후 2025년까지 매출액 요건에 대한 관리종목 지정유예 중인 경우(12월말 결산 가정, 이하 이 항에서 동일): 2025.12.31.
- 2021년 10월 상장 후 2026년까지 매출액 요건에 대한 관리종목 지정유예 중인 경우 : 2026.12.31.
- 2022년도말 기준 제약·바이오 기술성장기업 요건을 충족하여 매출액 요건에 대해 관리종목 지정유예 중인 경우 : 2022.12.31.
- 2021년 10월 상장 후 2024년까지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발생연도에서 제외되어, 실질적으로 2025년까지 관리종목 지정유예 중인 경우(2024년말 이후 2개 사업연도가 추가 경과된 2026년부터 동 요건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이 가능): 2025.12.31.(세부 내용 별도 기술)

# 제11장의2 상세표에 관한 사항

# 제1절 일반원칙

- 제11의2-1-1(일반원칙) ① 상세표에 관한 사항은 제3장부터 제11장까지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하되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작성하지 아니한다.
  - ② 상세표에 표를 기재할 경우 제3장부터 제11장의 해당 항목에 표의 내용을 요약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 제2절 기재사항

제11의2-2-1조(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 연결대상 종속회사가 있는 경우 아래표를 기재한다. 다만,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주권상장법인이 사업보고서, 분기·반기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상세)

(단위 : )

						(
상호	설립일	소재지	주요사업	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	지배관계 근거	주요종속 회사 여부

- 가. 연결재무제표상 연결대상이 되는 종속회사 전부를 기재한다.
- 나. '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에는 사업(분·반기) 보고서 제출일 기준 최근사업연도말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적용된 종속회사의 별도(개별)재무제표상 자산총액을 기재한다.
- 다. '지배관계 근거'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문단 5부터 18까지 또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4장 "연결재무제표"의 내용을 참고하여 기재한다.
- 라. '주요종속회사 여부'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기재한다.
- (1) 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지배회사 자산총액의 10% 이상인 종속회사
- (2) 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인 종속회사

- 제11의2-2-2조(사업의 내용과 관련된 사항) 제4장(사업의 내용)중 제4-2-1조 및 제4-3-1조에서 정한 50행을 초과하는 표를 기재하여야 한다.
- 제11의2-2-3조(계열회사 현황) 계열회사에 대하여 소속회사의 명칭, 기업식별정보(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기재한다.

# 계열회사 현황(상세)

(기준일 : )

상장여부	회사수	기업명	법인등록번호
상장			
비상장			

#### 【 작성지침 】

- i. '회사수'는 상장여부에서 구분된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의 수를 각각 기재한다.
- ii, '법인등록번호'에는 해당법인의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하되, 법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고, 법인등록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가 모두 없는 경우에는 '-'으로 표시한다.
- 제11의2-2-4조(타법인 출자현황) 타법인에 출자하고 있는 경우 그 현황을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하며, 내용에 대한 설명이나 그 밖의 정보는 별도로 기술한다. 다만, 제출대상법인이 소규모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타법인 출자현황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타법인 출자현황(상세)

(기준일:) (단위 : ) 최근사업연도 증가 기초잔액 기말잔액 (감소) 재무현황 최초 법 최초 출자 취득 상장 인 취득 취득 지 지 총 여부 (처분) 목적 장부 장부 평가 당기 일자 금액 수량 수량 분 분 자 손익 가액 가액 순손익 사 수량 금액 합계

- i. 타법인에 대한 출자현황은 민법상 조합 등에 출자한 경우를 포함하며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재한다.
  - 가. 기초 또는 기말 현재 해당 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이 5%를 초과하는 경우 나. 기초 또는 기말 현재 장부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ii. 동일 법인이 발행한 수종의 지분증권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로 작성한다.
- iii. 기초잔액은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기초잔액을 기재하고, 증가(감소)는 공시서류작성기준일까지의 취득(처분) 및 평가손익을 기재하되, 취득(처분)금액은 순액으로 기재한다.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회사에 출자한 경우 지분율은 주식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기재하고, 표 하단에 보유한 주식수에 상응하는 의결권 수와 비율을 표 하단에 별도 기재한다.
- iv. 주식을 감액한 경우에는 감액원인, 감액금액 등 세부내용을 도표 하단에 구체적으로 기재하며, 특히 최근 2사업연도동안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고 취득한 비상장주식을 감액한 경우에는 외부평가기관이 비상장주식 취득당시 평가한 내용과 비교하여 감액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 v. 피출자법인의 최근사업연도 총자산 및 당기순손익은 최근사업연도 기말잔액 및 실적을 기재하되, 최근사업연도 자료의 확보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최근의 기말잔액 및 실적을 기재하고 그 원인 및 실적산정기간 등을 도표하단에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 vi. 출자한 지분증권의 의결권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별도로 기재한다.

# 제12장 합병, 영업양수도, 자산양수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분할, 풋백옵션 등에 관한 사항

# 제1절 합병등에 관한 기본사항

제12-1-1조(목적) 합병등의 목적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재한다.

- 1. 합병등의 상대방과 배경
- 2. 회사의 경영, 재무, 영업 등에 미치는 중요 영향 및 효과
- 3.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관한 계획 등

## 【 작성지침 】

- i. 제1호에는 합병등 상대방회사의 명칭, 소재지, 대표이사, 상장 여부와 합병등을 진행하게 된 직·간접적인 배경, 우회상장 해당여부 등 합병등을 통해 달성하려는 전반적 목적을 기재하며, 영업 및 자산 양수도의 경우 상대방이 개인인 경우에는 '소재지' 및 '대표이사' 대신에 각각 '주소' 및 '성명'을 기재하고 그 상대방이 개인이라는 내용을 참고로 기재한다.
- ii. 제2호에는 합병등이 회사의 경영권·경영내용, 매출·손익, 사업구조, 시장점유율·시장지배력 및 세금 등 회사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 및 효과(합병 등과 관련한 영업권 상각, 예상 감액손실 등을 포함한다)를 기재한다.
- iii. 제3호에는 합병등이 완료된 후 1년 내에 또 다른 합병등 회사의 구조개편에 관한 계획 (물적분할후 설립회사 또는 출자대상 회사 등 관련회사 경영권 양도 등 구조개편에 관한 계획, 합의 또는 약정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목적과 계획의 개요를 기술하고, 상대회사나 추진시기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그 회사명과 추진일정을 기재한다. 아울러 1년 내에 추진되지는 않더라도 당해 합병등이 보다 넓은 차원에서의 구조개편의일환으로 추진되는 경우에도 그 계획의 전체적 개요를 기재한다. 다만, 이러한 계획내용의기재가 당해 계획의 추진을 어렵게 하거나 경쟁회사와의 관계에서 회사에 불이익을 줄수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계획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또한 물적분할의 경우에는 물적분할후 설립회사가 물적분할 후 5년 이내에 증권시장(해외증권시장 포함)에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 및 상장 대상 증권시장, 상장 추진주요 일정(상장주관사 선정, 상장예비심사 청구, 상장신주발행 및 상장 등)에 대한 계획 등을 기재한다.

제12-1-2조(상대방회사의 개요) 합병등 상대방이 회사인 경우 그 개요에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재한다.

- 1. 회사의 개황
- 2. 최근 3년간 요약재무정보 및 외부감사 여부

- i. 제1호 회사의 개황에는 상호, 설립연도, 주요사업의 내용, 임직원 현황, 법 제9조제1항 제2호의 주요주주 현황 등을 기재한다.
- ii. 제2호에는 합병등 상대방회사의 최근 3년간 요약재무정보와 재무제표에 관하여 외부감사를 받았는지 여부를 기재한다.
- 제12-1-3조(합병등의 형태) ① 합병의 경우에는 당해 합병의 법적 형태 등을 기재하며, 이해를 쉽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합병 전후의 회사조직형태를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다.

## 【 작성지침 】

합병의 형태 등에는 다음의 정보를 포함한다.

- 가. 흡수합병·신설합병인지 여부 및 흡수·존속·신설되는 회사의 이름
- 나. 흡수합병인 경우에는 소규모합병 또는 간이합병 해당여부 및 근거
- 다.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신설되는 회사의 상장계획(상장 추 진계획 또는 상장폐지 계획 등)에 관한 사항
- 라. 합병의 방법상 특기할 만한 사항(예 : 소규모합병을 추진하는 경우 「상법」 제527 조의3 제4항에 의해 존속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주주총회에 대한 통지 및 공고일로부터 2주간 내에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때에는 소규모합병을 할 수 없다는 사실 등)
- 마. 합병으로 신설되는 회사의 상호, 사업목적, 본점소재지, 공고의 방법, 결산기
- ② 영업양수도의 경우에는 당해 영업양수도의 법적 형태 등을 기재하며, 이해를 쉽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영업양수도 전·후의 회사조직형태를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다.

#### 【 작성지침 】

영업양수도의 방법·내용 등에는 다음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 가. 영업양도의 경우에는 「상법」제374조에 따른 양도회사의 영업 "전부"의 양도인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인지 여부
- 나. 영업 전부의 양도시에는 양도 회사의 향후 처리계획
- 다. 영업양수의 경우에는 「상법」제374조에 따른 양도회사의 영업 "전부"의 양수인지 또는 "양수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부"의 양수인지 여부
- 라. 양수도하려는 영업부문의 자산액, 매출액, 부채액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 매출총액, 부채총액의 10% 이상이거나 영업전부를 양수하는 시행령 제171조 제1항

- 에 따른 중요한 영업양수도에 해당하는지 근거
- 마. 그 밖의 영업양수도의 방법상 특기할 만한 사항
- ③ 자산양수도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양수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한다.

자산양수도의 구체적인 내용에는 다음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 가. 자산양수도 가액
- 나. 자산양수도의 경우에는 「상법」제374조에 따른 "중요한 일부"의 양도인지 또는 "중 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부"의 양수인지 여부
- 다. 양수도하려는 자산액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의 10% 이상인 시행령 제171 조 제2항에 따른 중요한 자산양수도에 해당하는지 근거
- 라. 그 밖의 자산양수도의 방법상 특기할 만한 사항
- ④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포괄적 이전의 경우에는 포괄적 교환 또는 포괄적 이전의 법적 형태 등을 기재하며, 이해를 쉽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포괄적 교환 또는 포괄적 이전 전·후의 회사조직형태를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다.

## 【 작성지침 】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포괄적 이전의 방법·내용 등에는 다음의 정보를 포함한다.

- 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포괄적 이전 여부
- 나. 주식의 포괄적 교환인 경우에는 소규모주식교환·간이주식교환 여부 및 근거
- 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포괄적 이전 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신설되는 회사의 상장 계획(상장 추진계획 또는 상장폐지 계획 등)에 관한 사항
- 라.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포괄적 이전의 방법상 특기할 만한 사항(예 : 소규모주식교 환을 추진하는 경우 「상법」제360조의10 제5항에 의해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지는 주주가 주식교환에 반 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때에는 소규모합병을 할 수 없다는 사실 등)
- 마. 주식의 포괄적 교환인 경우에는 교환 이후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 및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당해 주식교환전 상호, 소재지 및 상장법인등 여부를 기재하고, 완전모 회사가 되는 회사 및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가 다른 완전자회사를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회사의 상호 및 소재지
- 바. 주식의 포괄적 이전인 경우에는 설립하는 완전모회사의 상호, 사업목적, 본점소재지, 공고의 방법, 결산기, 2 이상의 회사가 완전자회사가 되는 경우에는 그 완전자회사의 상호, 소재지, 대표이사 및 상장여부 및 회사가 공동으로 주식이전에 의하여 완

전모회사를 설립하는 때에는 각 완전자회사의 당해 주식의 포괄적 이전 전 상장법인 등 여부

⑤ 분할의 경우에는 당해 분할의 법적 형태 등을 기재하며, 이해를 쉽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할 전후의 회사조직형태를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다.

### 【 작성지침 】

분할의 방법·내용 등에는 다음의 정보를 포함한다.

- 가. 인적분할·물적분할 여부 및 단순분할·분할합병 여부
- 나. 분할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합병과 관련하여 제1항에서 요구하는 사항 및 단순분할과 분할합병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 다. 소멸분할·존속분할 여부
- 라. 소멸분할인 경우 소멸되는 회사의 향후 처리계획
- 마. 분할에 따라 신설되는 회사의 상장 계획에 관한 사항
- 바. 분할로 신설되는 회사의 상호, 사업목적, 본점소재지, 공고의 방법, 결산기
- 제12-1-4조(진행경과 및 일정) ① 회사가 합병등을 추진하기로 준비, 검토하거나 합병등을 제안 받은 단계부터 공식적인 합병등의 이사회결의 또는 계약체결에 이르기까지 당사회사 및 관련 전문가간의 접촉, 협상 등 중요한 진행 경과를 기재한다.
  - ② 합병등의 주요일정에 관하여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재한다.
    - 1. 이사회결의일 및 합병등 계약일
    - 2. 합병등 주주총회를 위한 주주명부폐쇄기간 및 기준일
    - 3. 합병등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 4. 주식매수청구권행사를 위한 사전반대통지기간 및 행사기간
  - 5. 합병등의 기준일
  - 6. 종료보고총회일 또는 창립총회보고일(이사회가 주주총회에 대한 보고를 공고로써 갈음하는 경우에는 공고일 및 공고방법)
  - 7. 합병 또는 분할 등기예정일

- i. 합병의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작성한다.
  - 가. 소규모합병 또는 간이합병 등 주주총회를 이사회결의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에 합병신주배정을 위한 주주확정 기준일 및 합병승인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을

각각 기재

- 나.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제4호에는 합병회사 또는 피합병회 사의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재
- 다. 제5호 기준일에는 '합병을 할 날(합병기일)'을 기재
- ii. 영업양수도의 경우에는 제5호에 영업양수도 당사자가 합의한 영업양수도의 기준일을 기재한다.
- iii. 자산양수도의 경우에는 제5호에 자산양수도 당사자가 합의한 자산양수도의 기준일을 기재하고. 제7호에 양수도된 자산의 등기일정 등을 기재한다.
- iv.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작성한다.
  - 가. 주식이전의 경우에는 제3호에 주식이전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을 기재
  - 나. 소규모 또는 간이주식교환의 경우에는 i의 가와 나에 준하여 기재
  - 다. 제5호의 기준일에는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을 할 날'을 기재
- v. 분할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작성한다.
  - 가. 단순분할의 경우에는 제3호에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을 기재
  - 나. 소규모 또는 간이 분할합병의 경우에는 i의 가 및 나에 준하여 기재
  - 다. 제5호 기준일에는 '분할을 할 날(분할기일)'을 기재
  - 라. 단순분할과 분할합병을 동시에 추진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내용을 기재
- vi. 상대회사의 주요일정을 구분하여 함께 기재한다.
- ③ 증권신고서 제출여부에 대해 다음 표에 따라 작성한다.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제12-1-5조(합병등의 성사 조건) ① 당사자간 합병등의 계약내용 중 특정 조건 의 충족 여부에 따라 당해 합병등의 계약이 무효 또는 해제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 【 작성지침 】

일정 금액이상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일정 범위를 초과하는 주가 상승 또는 하락 등 특정 사건을 당해 계약의 해제 또는 무효의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② 당사회사의 합병등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 요건을 기재한다.

## 【 작성지침 】

당사회사가 정관 등에 합병등에 관한 주총결의 요건을 「상법」의 요건보다 강화하였거나 특별한 절차적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재한다.

- 제12-1-6조(관련법령상의 규제 또는 특칙) ① 당해 합병등을 위해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의 인·허가, 승인 또는 행정기관에의 신고 등이 필요하거나 그 밖의 규제사항이 있는 경우 그 내용, 진행경과 및 합병등에 미치는 영향을 기재한다.
  - ② 관련법령에서 당해 합병등을 장려, 유도, 촉진시키기 위하여 내용, 절차 또는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는 특칙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합병에 미치는 영향을 기재한다.

# 제2절 합병등 가액 및 산출근거

제12-2-1조(합병등 가액) 합병, 영업양수도, 자산양수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분할합병의 경우 당사자가 산정한 합병비율, 양수도가액, 교환·이전비율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표에 기재하고, 그 산출근거를 기재한다.

1. 합병, 분할합병의 합병가액 · 비율

(단위 : 원)

구분	합병법인	피합병법인1	피합병법인2	
一	(XXX)	(XXX)	(XXX)	 
기준주가				
- 할인 또는 할증률				
자산가치·수익가치 평균				
- 자산가치				
- 수익가치				
합병가액(1주당)				
합병비율	1			
상대가치				

1-1. 기업인수목적회사 합병의 합병가액 · 비율

<시행령 제176조의5제3항에 따른 적용 합병가액 및 비율>

(단위 : 원)

구분	합병법인	피합병법인1	피합병법인2	 
十七	(XXX)	(⋙)	(⋙)	
기준주가				
- 할인 또는 할증률				
자산가치·수익가치 평균				
- 자산가치				
- 수익가치				
합병가액(1주당)				
합병비율	1			
상대가치				

\* 자산가치와 수익가치의 가중산술평균비율 :

# <규정 제5-13조제1항에 따른 비교 합병가액 및 비율>

(단위 : 원)

				 <u> </u>	
구분	합병법인	<b>피합병법인1</b>	피합병법인2	 	
十七	(XXX)	(⋙)	(>>>>)		
기준주가					
- 할인 또는 할증률					
자산가치·수익가치 평균					
- 자산가치					
- 수익가치					
합병가액(1주당)					
합병비율	1				
상대가치					

\* 자산가치와 수익가치의 가중산술평균비율 : 자산가치:수익가치 = 1:1.5

2	여호	1012	수도기	7 나이
۷.	ି ପ୍ର	4 0~~	ロエノ	F = 4

(단위 : 원) 영업(자산)양수·도 가액

3. 자산양수도가액

자산양수·도 가액 (단위 : 원)

# 4. 포괄적 교환·이전의 교환가액·비율

(단위 : 원)

				( - 11 · - 1	
구분	합병법인	피합병법인1	피합병법인2	 	
<u>ਜੋ</u> ਦ	(XXX)	(XXX)	(XXX)	 	
기준주가					
- 할인 또는 할증률					
자산가치·수익가치 평균					
- 자산가치					
- 수익가치					
교환가액(1주당)					
교환비율	1				
상대가치					

- i. 산출근거에는 당사자가 비율, 가액 등을 산출하는데 사용한 방법, 주요가정, 산출내용, 기준시점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며, 상장법인의 순자산가치가 주가보다 높음에도 주가를 기준으로 합병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시행령 제176조의5제1항제2호가목의 단서규정 미적용시)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기재한다. 특히, 수익가치의 경우에는 가치 산정시 적용한 모형 및 그 사유, 주요가정에 대한 전제조건, 분석기간, 세부 항목별 산출내역(예: 매출액 추정시 각 제품별 추정매출액 및 근거), 기초자료 및 그 출처 등 제3자가 해당 비율, 가액을 검증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기재한다.
- ii. 제1호에는 합병·분할합병의 경우 합병·분할합병의 가액·비율과 시행령 제176조의5 (합병의 경우) 또는 제176조의6제3항(분할합병의 경우)에 따른 기준주가, 자산가치, 수익 가치 등을 기재한다.
  - 가. 회사의 명칭을 괄호안에 기재하며, 동시에 수개의 회사를 합병·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피합병회사를 추가하여 하나의 표로 작성하고, 순차적으로 합병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표를 추가하여 건별로 기재한다.
  - 나. 합병비율의 경우에는 주식의 종류별로 소멸회사 주식 1주에 대하여 배정하는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 주식의 수를 소수점 이하 7째 자리까지 표기하고, 소멸회사의 주식과 합병신주의 액면금액이 상이한 경우에는 별도로 액면금액을 기재한다.
  - 다. 제1-1호에는 기업인수목적회사 또는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하려는 법인이 시행령 제176조의5제3항제2호나목에 따라 합병의 가액·비율을 산정하는 경우 그 합병의 가액·비율과 규정 제5-13조제1항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 세칙」제4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합병의 가액·비율을 서로 비교할 수 있도록 기재한다.
- iii. 제2호에는 영업양수도가액을 기재한다.
- iv. 제3호에는 자산양수도가액을 기재한다.
- v. 제4호에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의 경우 제176조의6제3항에 따른 교환·이전비율 등을 기재한다.
  - 가. 회사의 명칭을 괄호안에 기재하며, 동시에 수개의 회사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대상회사를 추가하여 하나의 표로 작성하고, 순차적으로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표를 추가하여 건별로 기재한다.

- 나. 교환·이전비율의 경우에는 주식의 종류별로 자회사 주식 1주에 대하여 배정하는 모회사 주식의 수를 소수점 이하 7째 자리까지 표기하고, 자회사의 주식과 모회사 신주의 액면금액이 상이한 경우에는 별도로 액면금액을 기재한다.
- vi. 합병비율, 양수도가액, 교환이전비율이 외부평가기관의 평가가액 범위를 벗어날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한다.
- 제12-2-2조(외부평가) 외부평가기관으로부터 합병등 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분석, 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평가의견서의 내용을 요약하여 기재하되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다.
  - 1. 평가기관의 개황
  - 2. 평가의 개요
  - 3. 평가의 결과
  - 4. 평가의 방법
  - 5. 평가기관의 독립성
  - 6. 그 밖에 분석과 관련된 특이사항

- i. 제1호에는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외부평가 전담인력(공인회계사 수 포함) 등을 기재한다.
- ii. 제2호에는 외부평가기관의 평가계약체결일, 평가기간 등을 포함하여 기재한다.
- iii. 제3호에는 외부평가기관이 분석·평가후 산정한 당사회사의 적정한 합병등 가액을 기재한다.
- iv. 제4호에는 평가기관이 사용한 주요 평가방법, 평가를 위한 주요가정, 산출내용, 기준시점 등을 기재한다.
- v. 제5호에는 평가기관이 합병등 가액의 적정성을 평가함에 있어 규정 제5-14조, 「공인 회계사법」 제21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직무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는 사실 등을 기재한다.
- vi. 제6호에는 외부평가기관의 분석·평가와 관련하여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기재한다. 단, 기업인수목적회사가 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하여 기재한다.

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외부평가기관이 최근 3년간 기업인수목적회사의 합병과 관련하여 합병가액의 적정성을 평가한 이력을 기재한다. 다만, 합병가액의 적정성 평가시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중 하나 이상을 추정하지 않은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한다.

(기준재무제표: )

(단위 : 백만원. %)

_											<u> </u>		<u>, , , , , , , , , , , , , , , , , , ,</u>
	평가		평가 연도	계정과목	예측치		실적치						
	대상	업종			1차	2차	3차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회사				년도	년도	년도	실적	괴리율	실적	괴리율	실적	괴리율
		(		매출액									
	XX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ΔΔ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 \* 예측치는 과거 평가 당시의 추정 매출액 등을 기재하며, 실적치는 실제 매출액 등을 기재한다. 괴리율은 '(실적치 - 예측치)/예측치'로 산정하여 백분율(%)로 기재한다. 필요 시 괴리율 발생 원인 등을 기재할 수 있으며, 평가대상회사의 이름은 비식별화 할 수 있다.
- 나. 평가계약체결일로부터 최근 1년간 기업인수목적회사 및 합병대상회사가 외부평가기관과 용역 제공 계약을 체결하는 등 금전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이번 합병과 관련한 외부 평가업무는 제외)에는 그 내용, 금액 등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한다. 다만, 그 규모가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기재를 생략한다.
- vii. 법규에서 합병등 가액의 적정성에 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더라도 회사가 적정한 합병등 조건 산정을 위해 자발적으로 제3자로부터 평가(합병등 조건에 대한 자문 등을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에는 그 평가내용을 함께 기재할 수 있다.
- viii. 합병등 가액을 외부평가기관이 산정하였고 그 내용이 제12-2-1조의 당사자의 평가의견과 동일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재하고 제12-2-1조의 산출근거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 제3절 합병등의 요령

- 제12-3-1조(신주의 배정) 합병등에 따른 대가로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하기로 한 때에는 신주의 배정에 관하여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재한다.
  - 1. 신주배정내용
  - 2. 신주배정시 발생하는 단주처리방법
  - 3. 신주의 상장 등에 관한 사항

- i.'합병등에 따른 대가로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하기로 한 때'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 다.
  - 가. 합병에 따라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하기로 한 경우
  - 나. 영업 및 자산 양수에 따라 이를 양도하는 자에게 양수하는 회사의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하기로 한 경우
  - 다. 주식교환 또는 이전에 따라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모회사의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하기로 한 경우
  - 라. 분할에 따라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하기로 한 경우
- ii. 제1호에는 합병등에 따라 발행되는 신주의 종류를 포함하여 배정조건, 배정기준일, 교 부예정일 등을 기재한다. 다만, 주식교환의 경우에는 「상법」제360조의2 제2항에 의 하여 신주발행에 갈음하여 자기주식을 이전하는 경우 그 내용을 포함하여 기재한다.
- iii.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가 가진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설되는 회사의 주식을 배정하는지 여부를 기재하고, 기존주주의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상법」제29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 및 보고절차를 이행해야한다는 내용을 함께 기재한다. 또한 주식배정에 따른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도 함께 기재한다.
- iv. 제3호에는 공모방법이 제3자배정에 해당하는 경우 제3자배정의 근거규정, 제3자배정 대상자에 관한 사항을 제2-1-2조의 작성지침 iii에 준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기재한다. 다만, 영업양수도 또는 자산양수도의 경우에 한하여 기재한다.
- v. 제4호에는 신주의 상장 여부를 기재하고 그 발행회사가 상장법인이 아니라면 향후 상 장계획 여부를 기재한다. 단기간내 주권의 상장이 예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에 따 른 환금성 제약을 두드러진 활자체를 사용하여 주의적 문구로 기재한다.

- 제12-3-2조(교부금 등 지급) ① 합병에 따라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 주식 교환·이전에 따라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 분할에 따라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금전을 지급하기로 한 때에는 해당 교부금에 관하여 지급내용 및 산정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한다.
  - ② 「상법」제523조제4호에 따라 존속회사가 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합병의 대가로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 그 내용 및 배정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한다.
  - ③ 「상법」제523조의2에 따라 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합병의 대가 로서 존속회사의 모회사주식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내용 등을 기재한다.
- 제12-3-3조(양수도대금의 지급) ① 영업 및 자산 양수도 대금 지급과 관련한 지급형태, 지급시기, 지급조건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한다.

양수도 대금을 금전이 아닌 현물(주식을 포함한다)로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현물에 대한 가치평가내용을 제12-2-1조제3항 및 제12-2-2조에 준하여 기재한다.

② 영업 및 자산 양수의 경우에는 양수대가 지급을 위한 자금조달 방법을 내부자금과 외부조달자금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 【 작성지침 】

자금을 외부로부터 조달하는 경우에는 조달처, 조달금리, 상환기간, 조달자금의 조달조건 및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 ③ 영업 및 자산 양도의 경우 양도의 대가로 받는 자금의 용도를 기재한다.
- 제12-3-4조(특정주주에 대한 보상) 일방당사회사 및 그 특수관계인이 타방당사회사의 특정주주에게 합병등 대가에 따른 신주배정 및 교부금지급 외에 직·간접적추가보상을 제공하기로 한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다. 그러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을 기재한다.
  - 1. 약정당사자
  - 2. 보상의 내용

- 3. 보상의 사유
- 4. 그 밖의 보상의 방법

보상으로 지급되는 금전·주식, 기타 형태의 재산적 보상의 내용을 모두 기재하며, 금전 이외의 보상인 경우에는 그에 대한 공정가치도 함께 기재한다.

제12-3-5조(합병등 소요 비용) 합병등 거래와 관련하여 이미 발생하였거나 향후 예측되는 비용을 그 항목별로 기재한다.

## 【 작성지침 】

법률·회계 비용, 외부평가 비용, 거래성사에 따라 임직원이 받는 보너스, 거래관계자들에게 지급한 컨설팅 비용, 합병등 권유비용, 신고서제출 비용, 인쇄비 등 합병등 거래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동 비용에는 당해기업이 지급하거나 책임져야 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다만 기업인수목적회사의 경우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임원·발기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부터 자문 등의 용역을 받을지 여부와 그에 따른 비용 등을 지급할 예정인지 여부를 포함하여 기재한다.

- 제12-3-6조(자기주식 등 소유현황 및 처리방침) 합병 또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 이전의 경우에는 당사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기주식 및 상대회사 주식의 종 류별 수량과 비율을 포함한 보유현황과 처리방침을 기재한다.
- 제12-3-7조(근로계약관계의 이전) 합병등에 따른 종업원의 퇴직금 및 근로계약관계 승계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 제12-3-8조(종류주주의 손해 등)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로서 합병등으로 인하여 어느 종류의 주주가 손해를 입게 되거나 부담이 가중되는 때에는 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 제12-3-9조(채권자보호 절차) 「상법」제232조, 제527조의5, 제530조의11에 따른 채권자보호절차 준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분할의 경우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 회사의 채무에 대해서 연대책임을 지거나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중요 내용을 함께 기재한다.

제12-3-10조(그 밖의 합병등 조건) 계약서(계획서) 내용 중 공시서류의 다른 부분에서 기재되지 않은 합병등 조건에 관한 주요 내용을 기재한다.

# 제4절 양수도 또는 분할되는 영업 및 자산의 내용

제12-4-1조(영업의 내용) ① 양수도하는 영업의 개요, 주요제품 또는 서비스의 내용, 영업의 주요 특성 등 영업의 내용을 기재한다.

## 【 작성지침 】

- i. 영업의 개요는 제4-2-2조 또는 제4-3-2조에 준하여 기재한다.
- ii. 주요제품 또는 서비스의 내용은 제4-2-3조 또는 제4-3-4조에 준하여 기재한다.
- ② 양수도하는 영업부문의 최근 3사업연도중의 매출액 및 영업손익을 포함한 요약재무정보 및 전체 영업 대비 그 비중을 기재한다.

## 【 작성지침 】

- i. 요약재무정보는 제5-1-1조에 준하여 기재한다.
- ii. 양수도하는 영업부문의 매출액 및 영업손익에 대한 재무정보를 개략적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해당 자료는 개략적으로 작성된 자료로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한 대차대 조표(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주의적 문구로 기재한다.
- 제12-4-2조(자산의 내용) 양수도 하는 자산의 명칭, 당해 자산을 이용하여 영위되었던 영업의 종류 및 성격 등 양수도 하는 자산의 내용을 기재한다.

- i. 양수하는 자산이 주식인 경우 자산의 내용 기재시 그 주식의 발행회사의 영업의 내용에 관한 사항을 제12-4-1조에 준하도록 기재하고 자본금 변동현황에 관한 사항을 제 3-3-1조에 준하도록 기재한다. 다만 자본금 변동현황 기재시 최근의 주당 발행가액이 주당 양수도가액과 현저한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함께 기재한다.
- ii. 양수하는 자산이 비상장주식인 경우에는 거래대상 비상장회사의 최근 2년간 법인세, 부가가치세 납부현황을 기재한다.
- 제12-4-3조(자산·부채의 이전) 양수도하는 영업의 자산·부채에 관하여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다.
  - 1. 주요 자산 및 부채의 세부내용
  - 2. 주요 재산의 이전시기(등기, 등록, 인도 등)

3. 그 밖에 자산 부채의 이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i. 양수도의 대상이 된 자산 및 부채의 주요 내용(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소재지와 면적, 기계장치인 경우에는 그 용도 등, 부채인 경우에는 채무의 형태, 채권자 및 그 이자율 등 지급조건)을 적시하고, 해당 자산·부채의 양수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재한다.
- ii. 주요 재산의 이전시기는 총소요 기간으로 표시한다. 다만, 이전시기가 영업양수도기준 일로부터 6개월 이상 소요되는 주요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주요 재산명, 이전시기, 장 기간 소요되는 사유 등을 별도로 기재한다.
- iii. 양수도하는 자산에 대한 담보제공 등(근저당권, 질권, 압류 등 포함)이 있는 경우 그 내역을 함께 기재한다.
- 제12-4-4조(분할되는 재산의 내용 등) ① 분할로 특정 영업 내지 사업부문이 이전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제12-4-1조에 준하여 기재한다.
  - ②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로 신설되는 회사로 이전하는 자산·부채에 관한 사항은 제12-4-3조에 준하여 기재한다.

# 제5절 합병등과 관련한 투자위험요소

제12-5-1조(합병등과 관련한 투자위험요소 등) ① 당해 합병등의 성사를 어렵게 하는 위험요소가 있는 경우 그 내용과 이에 대한 회사의 대책을 기재한다.

## 【 작성지침 】

'합병등의 성사를 어렵게 하는 위험요소'라 함은 일정조건의 충족·불충족에 따른 합병등의 계약의 해제·취소 등의 위험, 합병등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상의 인·허가 또는 승인 등을 받지 못하거나 인·허가, 승인 등이 취소될 수 있는 위험 등을 의미하며, 그 내용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해당 위험요소의 존재뿐만 아니라 이것이 현실화될 수 있는 개연성도 함께 기재한다.

② 합병등에 따라 배정되는 신주의 향후 상장 추진 또는 상장폐지 가능성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 【 작성지침 】

- i. 상장추진 및 상장폐지와 관련하여 회사의 향후 일정, 상장요건 충족여부, 상장되지 않 거나 상장 폐지될 경우 회사의 투자자보호를 위한 대책을 기재한다.
- ii. 주권상장법인이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우회상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유가 증권시장상장규정 및 코스닥시장상장규정에서 정하는 각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항목별로 기재한다.
- ③ 합병등이 성사될 경우 관련 증권을 투자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위험요소를 요약하여 기재한다.

## 【 작성지침 】

투자위험요소는 제2-3-1조를 참고하여 기재하며, 이 밖에 합병등과 관련한 새로운 법규적용에 따른 규제위험, 경영진의 변동 또는 경영구조·방식의 변동에 따른 경영위험, 인력구조재조정 관련 위험, 신규사업진출에 따른 경험부족 위험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④ 합병등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와 풋옵션(Put Option), 콜옵션 (Call Option), 풋백옵션(Put Back Option)등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상대방, 계약일, 계약내용(대상, 행사가격, 행사기간 등) 등을 기재한다.

# 제6절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제12-6-1조(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 등)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 등에 관하여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다.

- 1.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요건
- 2. 주식매수예정가격 등
- 3. 행사절차, 방법, 기간 및 장소
- 4. 주식매수청구결과에 따라 합병계약 등의 효력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 내용
- 5. 주식매수대금의 조달방법,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등
- 6.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거나 제한되는 경우 그 사실, 근거, 내용

- i. 제1호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기재한다.
  - 가. 법 제165조의5 규정에 따른 반대의사를 통지한 주주로서 주주명부폐쇄기준일 등 현 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식수의 범위내에서 주식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는 내용
  - 나. 주주명부폐쇄기준일 등으로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식의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는 내용
  - 다. 소유주식중 일부에 대한 매수청구도 가능하다는 내용
  - 라. 사전에 서면으로 합병등의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주주총회에 서 합병등에 찬성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내용
  - 마. 그 밖에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ii. 제2호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 가. 주식매수 예정가격, 산정기준 및 그 근거(주권비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주식매수 예정 가액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 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165조의5 규정에 따라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으로 하며, 해당 법인이나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그 매수가격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
  - 다. 그 밖에 주식매수가격을 정하거나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iii. 제3호에는 이사회의 합병등 결의에 대한 반대의사 표시방법, 기간 및 장소를 포함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또는 철회절차, 방법, 기간 및 장소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 제7절 합병등 당사회사간의 이해관계 등

- 제12-7-1조(당사회사간의 관계) 공시대상기간중에 합병등 당사회사간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관계의 구체적 내용을 기재한다.
  - 1. 계열회사 또는 자회사 등의 관계가 있는 경우
  - 2. 임원간에 상호겸직이 있는 경우
  - 3. 일방당사회사의 대주주(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절에서 같다)가 타방당사회사의 특수관계인인 경우
  - 4. 그 밖에 영업의 경쟁 또는 보완관계 여부 등 상호관련사항
- 제12-7-2조(당사회사간의 거래내용) 공시대상기간중에 합병등 당사회사간에 출자, 채무보증, 담보제공, 매입·매출거래, 영업상 채권·채무, 미지급금·미수금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 주요 내용을 기재한다.

#### 【 작성지침 】

주요 내용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재한다.

- 가. 출자의 경우에는 성명, 일자, 계정과목, 주식수, 지분율, 취득원가 등
- 나. 채무보증의 경우에는 성명, 일자, 채권자, 채무내용, 보증기간, 금액 등
- 다. 담보제공의 경우에는 성명, 일자, 채권자, 담보물, 담보기간, 금액 등
- 라. 매입·매출거래의 경우에는 성명, 일자, 거래대상. 금액 등
- 마. 영업상 채권·채무, 미지급금·미수금의 경우에는 성명, 일자, 금액 등
- 제12-7-3조(당사회사 대주주와의 거래내용) 공시대상기간중에 합병등 일방당사회사가 타방당사회사의 대주주와 제10-1-1조부터 제10-1-3조까지의 내용에서 정하는 거래가 있는 경우 각 조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한다.

# 제8절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제12-8-1조(과거 합병등의 내용) 공시대상기간동안 합병, 중요한 영업양수도, 중요한 자산양수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분할 등이 있었던 경우 각각에 대하여 일자, 상대방 및 그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여 기재한다.
- 제12-8-2조(대주주의 지분현황 등) ① 합병등 전·후의 대주주의 지분현황에 관하여 성명, 주주별 주식종류별 소유 주식수와 지분율을 기재한다.
  - ② 합병등 후에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회사의 대주주의 향후 지분 양수도에 관하여 합병등 전·후 대주주간에 사전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재한다.
  - ③ 합병당사회사 대주주의 주식 등에 대한 매각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 근거, 매각제한의 내용 등을 기재한다.
- 제12-8-3조(합병등 이후 회사의 자본변동) 흡수·신설 합병회사, 분할 후 존속·신설 회사, 주식교환·이전 후 완전모회사의 자본변동에 관하여 다음의 사항을 구분하여 기재한다.
  - 1. 발행주식총수, 종류 및 종류별 주식의 수
  - 2. 자본금
  - 3. 준비금 총액

- i. 흡수합병회사, 분할 후 존속회사, 주식교환 후 완전모회사는 합병등 전·후를 구분하여 자본변동 현황을 기재한다.
- ii. 자본감소가 계획되어 있는 경우 감소할 자본, 준비금, 자본감소의 방법 등 자본감소에 관한 사항을 함께 기재한다.
- 제12-8-4조(경영방침 및 임원구성 등) 합병등이 완료된 후에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회사의 향후 중요 경영방침, 임원의 구성방법 등에 관하여 당사회사와 그 대주주간에 사전합의, 계획, 양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재한다. 그러한 사전합의, 계획, 양해가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을 기재한다.

임원의 구성방법에 대한 사전합의·계획·양해가 있는 경우라 함은 대표이사나 사외이사 구성에 있어서 합병등 당사회사의 대주주간에 후보추천권 행사에 관한 합의가 있거나 특정인을 임원에 선임하기로 하는 등의 합의가 있는 경우를 말하며, 이러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선임하고자 하는 임원과 관련하여 제9-1-1조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한다.

- 제12-8-5조(사업계획 등) 합병등이 완료된 후에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회사가 향후 진출, 변경, 폐지하려는 사업 및 그 사유, 영위하려는 사업의 내용 및 전망 등 사업계획의 주요 내용을 기재한다. 그러한 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을 기재한다.
- 제12-8-6조(합병등 이후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합병등이 완료된 직후의 추정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를 기재한다.

#### 【 작성지침 】

- i. '합병등이 완료된 직후'라 함은 합병, 주식교환·이전, 분할의 경우는 등기일, 양수도의 경우는 당사자가 합의한 양수도의 기준일을 말한다. 합병등이 완료된 직후의 대차대 조표(재무상태표)를 개략적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해당 자료는 개략적으로 작성된 자료 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주의적 문구로 기재한다.
- ii. 독립된 제3자의 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의견을 기재한다.
- 제12-8-7조(물적분할의 경우 물적분할 추진에 대한 검토내용) 물적분할의 경우에는 물적분할의 목적, 기대효과, 물적분할 및 이후 분할신설회사의 상장 등 구조개편 계획이 회사 및 주주에게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 등에 대한 구체적 검토내용을 기재한다.

#### 【 작성지침 】

i.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검토내용을 상세히 기재한다. 표는 적절히 수정하여 작성할 수 있다.

물적분할 추진에 대한 검토내용

7	내용	
물적분할의 목	적 및 기대효과	
물적분할의 영향	회사에 대한 영향	
	주주에 대한 영향	
	구조개편 상세내용	
물적분할 이후 구조개편의 영향	회사에 대한 영향	
	주주에 대한 영향	
· 향후 구조개편계획 및 상장		

제12-8-8조(물적분할의 경우 주주보호방안) 물적분할의 경우에는 물적분할 및 이후 분할신설회사의 상장 등 구조개편계획이 주주에게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주주보호를 위한 회사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이와 같은 방안이 없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 【 작성지침 】

i.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주주보호방안을 상세히 기재한다. 표는 적절히 수정하여 작성할 수 있다.

물적분할 추진에 대한 주주보호방안

주주보호방안 개요	상세내용1)
1) 주주보호방안의 구체적인 일정과 시행방법	등을 기재

제12-8-9조(그 밖에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합병등과 관련한 사항 중 그 밖에 투자자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다.

# 제9절 풋백옵션 등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 제12-9-1조(풋백옵션 등의 개요) 풋백옵션 등의 개요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재한다.
  - 1. 풋백옵션 등 계약(이하 이절에서 "계약"이라 한다)의 종류
  - 2. 계약의 상대방과 계약체결의 배경
  - 3. 계약 체결일 및 만기일
  - 4. 기초자산
  - 5. 결제 방법, 중도상환 가능여부 및 상환조건 등 계약조건

- i. 계약체결의 배경에는 계약의 원인이 되는 지분증권등(다른 법인의 지분증권, 그 밖의 자산을 말한다. 이하 이절에서 같다)의 양수도에 관한 내용을 기재한다.
- ii. 계약 만기일의 경우 옵션 행사가능기간을 포함하여 기재하며, 만기 연장에 관한 계약 내용이 있는 경우 동 내용도 함께 기재한다.
- iii. 기초자산의 종류에는 풋백옵션 등과 연계된 기초자산의 명칭을 세부적으로 기재하며, 기초 자산의 최근 3년간 가격변동추이를 투자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그래프 등을 이용하여 기재한다.

- iv. 결제방법 등 계약조건에는 유상계약일 경우 옵션계약금액을 포함하여 기재하며, 결제 방법은 현금 결제·실물 결제로 구분하여 기재하되, 실물로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 결제 대상물, 결제 절차 등을 기재한다. 또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는 조건이 있는 경우 동 조건도 함께 기재한다.
- 제12-9-2조(예상 손익구조) 계약기간 만료일(계약기간 중 행사가능한 옵션의 경우 그행사일)에 예상되는 손익구조에 대한 정보, 계약에 따른 손익 발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 동 요인의 향후 예상되는 추세·불확실성 등을 기재한다.

- i. 예상 손익구조는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에 따른 만기시 또는 권리행사시 예상손익을 발생 가능한 상황을 가정하여 산출한 결과를 기재하며, 투자자가 계약과 관련된 손익 구조의 형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나 그림 또는 그래프를 이용해서 알기 쉽게 기재한다. 또한,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 상황 또는 조건(예: 일정 폭 이상의 주가 하락), 발생 가능한 최대손실액 및 최대손실액이 발생하게 되는 상황 또는 조건은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 ii. 손익 발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할 경우 정치·경제적 요인 등과 같은 거시적 요인과 산업 또는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미시적 요인을 모두 포함하여 분석한다.
- 제12-9-3조(그 밖에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계약과 관련한 사항 중 그 밖에 투자자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다.

#### 【 작성지침 】

회사에 관한 특수한 사항으로서 풋백옵션 등과 관련하여 투자자가 고려해야 할 중요한 위험요소를 포함하여 기재한다.

# 제13장 발행실적보고

# 제1절 증권발행실적보고

제13-1-1조(청약 및 배정) 청약일정, 인수기관별 인수금액, 청약 및 배정현황 등을 기재한다. 청약 및 납입일정, 인수기관별 인수금액, 청약 및 배정현황, 일반투 자자에 대한 배정방식별 배정현황, 기관투자자에 대한 의무보유확약기간별 배정현황은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하며, 내용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이나 그 밖의 정보는 별도로 기술한다.

## 1. 지분증권의 경우

# <청약 및 납입일정>

구분	청약개시일	청약종료일	납입기일

## <인수기관별 인수금액>

인수기관	인수수량	인수금액	비율	비고
À				

## <청약 및 배정현황>

7 U	최초 배정		청약 현황			최종 배정 현황		
구분	수량	비율	수량	금액	비율	수량	금액	비율
우리사주조합								
기관투자자								
일반투자자								
기타								
 계								

## <일반투자자 배정방식별 배정현황>

구분	배정수량(주)	비중(%)	균등방식 유형
균등방식			
비례방식			
À			

## <기관투자자 의무보유확약기간별 배정현황>

(단위 : 주, %)

		국내 기관투자자							외국 기관투자자					
확약기간	운용 (집i	용사 탈) <sup>1)</sup>	투자 중개	매매· 업자	연기 운용시 은행	금,  (고유) ,보험	7][	타 <sup>2)</sup>	거래 유	실적	거래	실적 P	합	계
	수량	비중	수량	비중	수량	비중	수량	비중	수량	비중	수량	비중	수량	비중
미확약														

- 1) 운용사(집합): 국내 자산운용사 등이 집합투자재산으로 참여한 경우(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벤처기업투 자신탁을 포함한다.)
- 2) 기타: 국내 투자일임회사, 저축은행, 부동산신탁사, 캐피탈사, 리스사 등
- 3) 거래실적 유: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한다)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기관투자자

# 2. 채무증권의 경우

회차	
----	--

# <청약 및 납입일정>

청약개시일	청약종료일	납입기일	비고

# <인수기관별 인수금액>

인수기관	인수수량	인수금액	비율	비고
ı				

# <청약 및 배정현황>

구분	최초 배정		청약 현황			최종 배정 현황		
十亡	수량	비율	수량	금액	비율	수량	금액	비율
계								

# 3. 파생결합증권의 경우

<청약	및	납입	일	.정>

증권의 종류	청약 개시일	청약 종료일	납입일

## <인수기관별 인수금액>

인수기관	회차	인수금액	비율

# <청약 및 배정현황>

 구분	ㅁ지 초애		청약 현황		최	종 배정 현	황
十七	모집 총액	수량	금액	비율	수량	금액	비율

# 4. 투자계약증권의 경우

<청약 및 납입일정>

구분	청약개시일	청약종료일	납입기일

# <인수기관별 인수금액>

인수기관	인수수량	인수금액	비율	비고
계				

# <청약 및 배정현황>

 구분	최초 배정			청약 현황			최종 배정 현황		
十正	수량	비율	수량	금액	비율	수량	금액	비율	
계									

# 【 작성지침 】

i. 청약 및 납입일정은 청약자 유형별로 청약일이 다른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 여 기재한다.

- ii. 인수기관별 인수금액은 초과배정옵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초과배정옵션의 내용을 별도로 기재한다.
- iii. 지분증권의 청약 및 배정현황은 우리사주조합, 기관투자자, 일반투자자 및 기타(인수회사의 실권주 인수 등)로 유형화하여 구분하고, 채무증권·투자계약증권의 경우에는 기관투자자, 일반투자자 및 기타로 유형화하여 구분한다. 청약자 유형간 배정물량을 조정한 경우 그 내역(예: 우리사주조합 미청약물량 배정, 일반투자자 균등방식과 비례방식간 배정물량 조정 등)을 표 하단에 별도로 기재하고, 초과배정옵션계약을 체결한경우에는 배정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기재한다.
- iv. 증권시장에 주식을 신규로 상장하기 위하여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에는 일반투자자 배정방식별 배정현황을 기재하고, 그 세부내역(청약건수·수량, 배정건수, 1건당 배정수량, 배정비율 등)은 인수회사별로 청약단위를 구분하여 별도로 기재한다. 일반투자자 청약 및 배정 세부내역 기재 시 균등방식 유형(예: 일괄청약방식, 분리청약방식, 다중청약방식 등)에 따라 아래 제시된 표를 참조하되, 효과적인 정보제공을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표를 이용할 수 있다.
  - [일괄청약방식의 경우]

							배정	허하						
Ž	청약현홍	황		=	 군등방식	χI	UI 6	23 	Н	  례방4	NI.		총배	
					1995					1415	_		정수	배정
청약 단위	청약 건수	청약 수량 (A)	배정 건수	1건당 배정 수량	추가 배정 건수	1건당 추가 배정 수량	균등 배정 수량 (B)	배정 건수	1건당 배정 수량	추가 배정 건수	1건당 추가 배정 수량	비례 배정 수량 (C)	량 (D=B +C)	비율 (D/A)
ı														

■ [분리청약방식 및 다중청약방식의 경우]

		청약현황				배정현황			
구분	청약 단위	청약 건수	청약 수량 (A)	배정 건수(a)	1건당 배정수량 (b)	추가배정 건수(c)	1건당 추가배정 수량(d)	총배정 수량 (D=a*b+ c*d)	배정 비율 (D/A)
균등방식									
비례방식									
계									

- v. 기관투자자 의무보유확약기간별 배정현황은 증권시장에 주식을 신규로 상장하기 위하여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에 기재한다.
  - 기관투자자의 유형별로 실제 배정된 물량을 기준으로 의무보유확약내용을 기재한다.

- 확약기간은 기관투자자가 확약한 기간별(미확약 포함)로 모두 구분하여 기재한다.
- 비중(%)은 기관투자자 유형별로 배정된 전체 물량에서 확약기간별(미확약 포함) 배 정수량이 차지하는 비중을 기재한다.
- vi. 채무증권은 청약 및 납입일정, 인수기관별 인수금액, 청약 및 배정현황을 회차별로 기재한다.
- 제13-1-2조(유상증자 전후의 최대주주등의 지분변동) 유상증자 전후 최대주주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및 5%이상 소유주주의 지분변동상황을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하며 내용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이나 그 밖의 정보는 별도로 기술한 다.

주주명	증자전		증기	비고	
TT0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01 14

- 제13-1-3조(증권교부일 등) 증권교부(예정)일, 상장(예정)일, 증자등기(예정)일 등을 기재한다.
- 제13-1-4조(공시이행상황) 공고내용,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공시 이행상황 등을 기재한다.

- i. 공고내용은 모집 또는 매출에 대한 공고일자와 공고방법을 다음의 사항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 가. 배정기준일(주주확정일) 또는 새로운 증권 발행 공고
  - 나. 모집 또는 매출가액 확정 공고
  - 다. 청약안내 공고
  - 라. 청약결과 배정 공고
- ii.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제출일(정정을 포함한다), 공시장소를 기재한다. 일괄신고 서의 경우에는 추가서류 제출을 포함한다.
- 제13-1-5조(조달된 자금의 사용) 자금조달내용, 발행비용, 자금사용 예정내용을 기재한다. 자금조달내용 및 자금의 사용목적은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하며 내용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이나 그 밖의 정보는 별도로 기술한다.

# 1. 지분증권의 경우

# <자금조달 내용>

구분	주식	신고서상		실제 조달금액		비고
구군	구분	발행예정총액	발행가액	수 량	발행총액	U 1
모집						
매출						
· 총	ı آ					

# <자금의 사용목적>

시설자금	영업양수자금	운영자금	채무상환자금	타법인 증권취득자금	기타	계

# 2. 채무증권의 경우

# <자금조달 내용>

신고서상		실제 조달금액		비고
발행예정총액	모집금액	01 14		

# <자금의 사용목적>

시설자금	영업양수자금	운영자금	채무상환자금	타법인 증권취득자금	기타	계

# 4. 투자계약증권의 경우

# <자금조달 내용>

 신고서상		실제 조달금액			
한고시성 발행예정총액	단위당 발행가액	수량	발행총액	비고	

# <자금의 사용목적>

시설자금	영업양수자금	운영자금	채무상환자금	타법인 증권취득자금	기타	계

## <상세내역>

		부대비용					
기초자산 취득자금	공동사업자간 수수료	기타수수료	외부평가비용	기타			

- i. 채무증권의 자금조달 내용 및 자금사용 목적은 회차별로 기재하고, 실제 조달금액은 초 과배정옵션에 따른 추가 조달금액을 포함하여 기재하며 초과배정옵션계약에 따른 추가배 정내용과 이에 따른 추가 조달금액을 별도로 기재한다. 투자계약증권 합산발행의 경우 개별 투자계약증권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 ii. 자금의 사용 목적은 시설자금, 영업양수자금, 운영자금, 채무상환자금, 타법인 증권취득자금, 기타로 구분하여 표 안에 금액을 기재한다. 기초자산이 있는 투자계약증권의 경우 <상세 내역> 표에 기초자산 취득금액과 부대비용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부대비용은 공동사업자간 수수료, 기타 수수료, 외부평가비용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 가. 시설자금 : 공장건설, 설비매입, 유형자산취득 등인 경우에 기재한다.
  - 나. 영업양수자금 : 다른 사업의 인수에 사용되는 경우에 기재한다.
  - 다. 운영자금 : 원재료 매입, 매입채무의 상환, 임금 지급, 무형자산취득 및 해외법인운영 등 인 경우에 기재한다.
  - 라. 채무상환자금 : 대출금 또는 기 발행된 회사채 상환 등인 경우에 기재한다.
  - 마. 타법인증권취득자금 : 타법인 출자, 회사채 매입 등인 경우에 기재한다.
  - 바. 기타 : 가. 내지 마. 이외의 용도인 경우에 기재하고, 세부 사용목적별 금액은 표 하단에 별도로 기재한다.
- iii. 자금사용예정내용은 실제 조달금액을 기준으로 기재하며 당초 계획에 비해 실제 조달된 자금규모가 크게 못 미치는 경우에는 부족분에 대한 회사의 계획을 기재한다.
- iv. 기업인수목적회사의 경우 발행실적에 따라 증권금융회사 또는 신탁업자에 예치·신탁하여야 하는 금액에 대한 내용을 기재한다(예치·신탁 예정 시기, 예치자금등 액수, 예치자금등의 발행가액 대비비율 등)

- v. ESG채권의 경우 자금조달 내용의 비고란에 ESG채권 종류(녹색채권, 사회적채권, 지속 가능채권, 지속가능연계채권 등)를 기재하고, 표 하단에 ESG채권의 종류, 조달자금을 사용할 ESG사업 등의 내용, ESG 개선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다만, 이러한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한 경우에는 동 내용을 개략적으로 기재하고 해당 첨부서류를 명시하여 참조하게 할 수 있다.
- 제13-1-6조(신주인수권증서 발행) 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내역, 신주인수권증서 에 의한 청약내역을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하고, 내용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이나 그 밖의 정보는 별도로 기술한다.

# 신주인수권증서 발행내역

(단위 : 주)

청구일	발행시기	청구자	발행회사와의 관계	주식수
		계		

# 신주인수권증서에 의한 청약내역

(단위 : 주)

청약일	청약자	발행회사와의 관계	주식수
		계	

#### 【 작성지침 】

발행회사와의 관계에는 청구자 또는 청약자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인지 여부(예: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일반주주, 기관투자자, 일반투자자 등)를 기재한다.

제13-1-7조(실권주 처리) 실권주 및 단수주 발생내용과 처리내용을 기재한다.

#### 【 작성지침 】

실권주 처리내용은 제3자배정, 실권주 공모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이 경우 아래에 제시된 표를 참조하여 기재할 수 있으며, 효과적인 정보제공을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표를 이용할 수 있다.

# 가. 제3자배정의 경우

ᄪᅑᄗ사ᅚ	회사 또는	배정주식수	배정후 소유	비고	
णाउपाउरा	배정대상자 최대주주와의 관계		주식수	지분율	01 12

# 나. 실권주 공모의 경우

실권주 공모주식수	청약주식수	청약비율	대표주관회사 인수분

제13-1-8조(미계약분 처리) 투자계약증권의 경우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내용과 향후 처리계획을 기재한다.

# 제2절 합병등 증권발행실적보고

제13-2-1조(일정) 합병등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합병등 기준일, 종료보고총회일 또는 창립총회보고일(이사회가 주주총회에 대한 보고를 공고로써 갈음하는 경우에는 공고일 및 공고방법), 등기일 등을 기재한다.

#### 【 작성지침 】

증권신고서(합병등)에 기재한 내용과 비교하여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내용과 그 사유를 함께 기재한다.

제13-2-2조(대주주등 지분변동 상황) 합병등 전·후의 대주주등 지분변동 상황에 관하여 제12-8-2조제1항의 사항을 기재한다.

#### 【 작성지침 】

증권신고서(합병등)에 기재한 내용과 비교하여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내용과 그 사유를 함께 기재한다.

- 제13-2-3조(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결과 그 내용에 관하여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다. 다만,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소규모합병 등의 경우에는 반대의사 통지 주식수(비율) 및 주주수 등을 기재한다.
  - 1. 주식매수가격 및 가격 결정방법
  - 2. 청구내용
  - 3. 매수일자
  - 4. 매수 소요자금의 원천
  - 5. 매수주식의 처리방침
  - 6. 그 밖의 사항

- i. 제1호에는 최종적으로 확정된 주식매수가격 및 가격결정방법을 기재하며 주식매수청구 가격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 사유, 현재까지의 진행상황 및 향후계획 등을 기재한다.
- ii. 제2호에는 주식매수청구자, 주식매수청구일, 청구주식수 등을 기재한다. 다만, 청구자

- 가 개인인 경우에는 총 인원수만 기재하고 기관투자자인 경우에는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기재하며, 청구일은 개인의 경우 개인별 청구일을 합하여 청구기간으로 기재한다.
- iii. 제3호 '매수(예정)일자'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결과 주식매수대금의 지급을 완료한 경우에는 그 일자를 기재하고, 합병종료보고서 제출일 현재 주식매수대금의 지급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실, 사유 및 향후계획 등을 기재한다.
- iv. 증권신고서(합병등)에 기재한 내용과 비교하여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내용과 그 사유를 함께 기재한다.
- 제13-2-4조(채권자 보호) 「상법」의 규정(제232조, 제527조의5, 제530조의 11) 따른 채권자보호절차 준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 i. 채권자 이의제출기간내에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그 채권자에 게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또는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한 경우 그 내용을 기재한다.
- ii. 사채권자가 이의를 함에 있어서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 및 이해관계 인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이의기간을 연장한 사실이 있었는지 등 채권자보호절차와 관 련하여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재한다.
- 제13-2-5조(합병등 관련 소송의 현황) 합병등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제11-2-2조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 제13-2-6조(신주배정 등) 합병등의 경우 발행되는 신주, 교부금 및 기타 대가의 배정 및 지급 내용, 합병 등 비율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 【 작성지침 】

증권신고서(합병등)에 기재한 내용과 비교하여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내용과 그 사유를 함께 기재한다.

- 제13-2-7조(합병등 전·후의 요약재무정보) ① 합병 또는 분할 후에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회사의 합병 또는 분할 전·후의 요약재무정보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기재한다.
  - 1. 자산항목 :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자산총계

2. 부채항목 :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부채총계

3. 자본항목: 자본금, 자본총계

## 【 작성지침 】

i. 요약재무정보의 세부적인 작성방식은 제5-1-1조제1항의 작성지침을 참조한다.

- ii. 증권신고서(합병등)에 기재한 합병등 이후 추정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와 비교하여 변 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내용과 그 사유를 함께 기재한다.
- ② 영업 및 자산 양수의 경우에는 양수 전·후의 자산 및 부채의 증감 내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재한다.
- 1. 항목
- 2. 양수전 금액
- 3. 증가 또는 감소 금액
- 4. 양수후 금액

#### 【 작성지침 】

증권신고서(합병등)에 기재한 내용과 비교하여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내용과 그 사유를 함께 기재한다.

# 제15장 공개매수신고 등

# 제1절 공개매수자 및 그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 **제15-1-1조(회사인 공개매수자)** 공개매수자가 회사인 경우에는 공개매수자에 관하여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다.
  - 1. 회사의 개요
  - 2. 회사의 연혁
  - 3. 자본금 및 발행주식총수
  - 4. 임원의 현황
  - 5.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 관한 사항
  - 6. 공개매수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 7. 최근 3사업연도의 재무제표
  - 8. 공개매수자가 속해있는 기업집단에 관한 사항

- i. 제1호는 회사의 명칭, 주소지 및 사업의 내용 등 회사의 개요에 관한 사항을 간략히 기재한다. 다만 공개매수자가 지주회사일 경우에는 주요자회사의 사업내용도 포함하여 기재한다.
- ii. 제2호는 상호변경, 합병, 자본의 변동, 사업의 변화 등 회사의 중요한 변천에 대하여 기재한다.
- iii. 제3호는 신고일 전일 현재의 자본금과 발행주식에 관하여 주식의 종류별로 기재한다.
- iv. 제4호는 임원의 성명 및 생년월일, 직위, 주요경력, 근무기간, 소유주식수를 기재한다.
- v. 제5호는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성명(명칭), 최대주주와의 관계, 소유주식수 및 소유비율을 기재한다.
- vi. 제6호는 공개매수자의 특별관계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개인별로 성명, 공개매수자와의 관계 및 직업을 기재하고,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별로 명칭, 공개매수자와의 관계, 자본 금, 최대주주, 사업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기재한다. 공개매수자가 공개매수와 관련된 자금을 지원받는 개인이나 법인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도 기재한다.

- vii. 제7호는 다음을 기재한다.
  - 가. 최근 3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 포괄손익계산서(손익계산서)의 내용
  - 나. 신고서 제출일이 중간기간인 경우에는 중간기간말 현재 중간재무상태표(중간대차 대조표), 누적중간기간에 대한 중간포괄손익계산서(중간손익계산서) 및 최근 2사업 연도의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 포괄손익계산서(손익계산서). 다만, 중간재무제표 가 없는 경우에는 최근 3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 포괄손익계산서(손익계산서)
  - 다. 공개매수자가 외국법인등인 경우에는 그 법인등이 채택한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재무제표를 기재할 수 있으며, 채택한 회계처리기준을 명시한다.
- viii. 제8호는 공개매수자가 속해있는 기업집단의 명칭과 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의 명칭 및 상장여부를 기재한다.
- ix. 이 조의 내용을 작성함에 있어 구체적인 작성지침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3-1-1조(회사의 개요), 제3-2-1조(회사의 연혁), 제9-1-1조(임원의 현황), 제8-1-1조(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제5-4-1조(재무제표), 제7-4-1조(계열회사의 현황)를 참고하여 작성할 수 있다.
- 제15-1-2조(개인인 공개매수자) 공개매수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공개매수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약력 및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기재한다.

공개매수자의 특별관계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개인별로 성명, 공개매수자와의 관계 및 직업을 기재하고,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별로 명칭, 공개매수자와의 관계, 자본금, 최대주주 및 사업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기재한다. 공개매수자가 공개매수에 관한 자금을 지원 받는 개인이나 법인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도 기재한다. 다만, 공개매수와 사실상 이해관계가 없는 특별관계자에 대해서는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 제15-1-3조(기타 공개매수자) 공개매수자가 회사 이외의 법인이거나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회사에 준하여 기재한다.
- 제15-1-4조(공개매수 중개인 또는 주선인) 공개매수와 관련하여 공개매수를 중 개하거나 주선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그러한 사실이 없는 경우 없다는 사실을 기재한다.
  - 1. 공개매수를 주선 또는 중개한 자의 명칭과 공개매수자와의 관계

- 2. 공개매수를 주선 또는 중개하면서 제공한 서비스의 내용
- 3. 공개매수의 성공과 관련하여 중개인 또는 주선인이 갖는 중요한 이해관계

- i. '공개매수자와의 관계'는 공개매수 이전에 증권의 공모 등에서 공개매수자를 위하여 서 비스를 제공한 경우를 포함한다.
- ii. '중개인 또는 주선인이 갖는 중요한 이해관계'는 금전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보수는 물론 공개매수의 성공이 당해 중개인 등에게 가져다 줄 간접적 이해관계도 포함한다.

제15-1-5조(공개매수자의 보유지분 및 거래내역) 공개매수자와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한 대상회사의 주식등에 관하여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다.

- 1. 공개매수자(특별관계자를 포함한다)의 대상회사 주식등의 보유상황
- 2. 공개매수자(특별관계자를 포함한다)의 최근 1년간 대상주식등의 거래내역
- 3. 보유중인 주식등에 관하여 공개매수자가 체결한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요 내용
- 4. 발행회사가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회사인 경우 공개매수자(특별관계자를 포함한다)의 대상회사에 대한 의결권(잠재주식의 의결권 수 포함)의 보유상황

#### 【 작성지침 】

i. 제1호는 공개매수자와 특별관계자로 구분하여 공시서류제출일 현재 대상회사 주식등의 종류, 보유수량과 보유비율을 기재한다. 아래에 제시된 표를 참조하여 기재할 수 있으 며, 효과적인 정보제공차원에서 다양한 형태의 표를 이용할 수 있다.

(기준일 : )

			보유 주식등						
성명 (명칭) 관계			저 하			합계			
(영정)		주권 신주인수전	신주인수권	전환 사채권			수량 (주)	비율 (%)	
<u></u> Л									

- 가. 보유 주식등에는 해당사항이 있는 주식등의 종류만을 열거하고 공개매수자 및 특별 관계자가 보유한 각각의 수량을 기재한다.
- 나. 보유수량 및 발행주식등의 총수는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산출하고, 보유비율은 보유수량을 발행주식등의 총수로 나누어서 구한다.

ii. 제2호는 공시서류제출일 전일을 기준으로 과거 1년간 공개매수자 및 특별관계자가 공 개매수 대상회사의 발행주식등을 매매, 유·무상증자에 참여, 전환권행사 등으로 보유하 거나 보유 후 변동이 있는 경우 변동내용을 다음의 표로 작성한다.

성명 (명칭)	관계	주식등의 종류	벼도이		변동현황		취득/처분	취득/처분
(명칭)	- 건계	종류	변동일 -	변동전	증감	변동후	방법	단가

- 가.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교환사채권의 경우에는 전환등에 의하여 발행 또는 취득할 주식의 수를 변동현황란에 기재한다.
- 나. 변동횟수가 많고 이미 그 내용을 "주식등의대량보유변동보고"로 공시하였을 경우에는 대량보고서를 열람하는 방법을 기재하고 변동내용을 요약하여 기재할 수 있다.
- iii. 제3호는 신탁계약, 담보계약, 매매의 예약, 그 밖의 주요계약에 관하여 당사자, 계약일 자, 계약의 주요내용 등을 기재한다.
- iv. 제4호는 공개매수자와 특별관계자로 구분하여 공시서류제출일 현재 대상회사 주식의 종류, 보유 의결권 수와 의결권 보유비율을 기재한다. 아래에 제시된 표를 참조하여 기재할 수 있으며, 효과적인 정보제공차원에서 다양한 형태의 표를 이용할 수 있다.

				보유	주식의 의결권 수			
성명	관계		의결권	있는 주식		잠재주식	합	계
(명칭)	2711	주식의 종류	1주당 의결권 수	이겨귀 스		잠재주식의 의결권 수	의결권수	비율 (%)
		합계						

- 가. 보유주식의 의결권 수에는 보고자 및 특별관계자가 보유하는 의결권 수와 보유비율을 기재한다.
- 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의 경우 주식의 종류와 종류별 의결권 수를 기재하고 복수의결권 주식의 경우 복수의결권의 존속기간도 기재한다. 의결권 있는 주식 이외의 것은 잠재 주식의 수(주식으로 환산한 수)를 기재하되, 신주인수권행사, 전환청구, 교환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한 것은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수에서 제외한다.
- 다. 의결권이 일부 제한된 주식을 보유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항, 의결권 행사 또는 부활의 조건 등에 대해 주석으로 기재한다.

# 제2절 공개매수 대상회사에 관한 사항

- 제15-2-1조(일반원칙) ① 공개매수자가 공개매수 대상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이 미 제출된 공시서류나 그 밖의 자료를 통하여 공개매수자가 알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가장 최근 자료를 기초로 관련사항을 기재하고, 정보 입수에 제약이 있었을 경우 그 사실 및 제약으로 인해 입수하지 못한 정보의 목록을 기재한다.
  - ② 주권등을 기초로 발행한 증권예탁증권, 파생결합증권 등을 공개매수하는 경우 공개매수 대상회사는 해당 기초자산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
- 제15-2-2조(공개매수 대상회사의 개황) 공개매수 대상회사에 관하여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다. 다만, 발행회사에 의한 공개매수의 경우에는 제15-1-1조를 참조하도록 기재하고 생략할 수 있다.
  - 1. 회사의 개요
  - 2. 자본금 및 발행주식총수
  - 3.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에 관한 사항
  - 4. 최근 3사업연도의 요약재무정보
  - 5. 공개매수 대상회사가 속해 있는 기업집단에 관한 사항

## 【 작성지침 】

- i. 제15-1-1조(회사인 공개매수자)의 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기재한다.
- ii. 요약재무정보 기재시 신고서 제출일이 중간기간인 경우에는 중간기간말 현재의 중간재무제표에 근거한 요약재무정보와 최근 2사업연도의 요약재무정보를 기재한다. 구체적인 작성지침이 필요한 경우 제5-1-1조(요약재무정보)를 참고하여 기재할 수 있다.
- 제15-2-3조(대상 주식등의 거래상황) 공개매수 대상 주식등의 최근 6개월간 월 별 최고, 최저, 평균 가격과 거래량을 기재한다.

#### 【 작성지침 】

증권시장에서의 최근 6개월간 월별 거래상황을 기재하며 일별 종가를 기준으로 작성된 그 래프를 추가할 수 있다. 제15-2-4조(공개매수자에 대한 신용공여등) 공시서류제출일 전일 현재 공개매수 대상회사가 공개매수자에게 제공한 신용공여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재한다.

- i. '신용공여등'이라 함은 대여, 담보제공, 보증 등의 거래를 말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제 10-1-1조를 참고한다.
- ii. 신용공여등의 잔고(담보의 경우 피담보채권의 금액)와 목적, 기간 및 그 밖의 중요한 조건을 기재하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 잔고가 있는 거래에 한하여 기재한다.

# 제3절 공개매수의 목적 및 장래계획

제15-3-1조(공개매수의 목적 및 장래계획) ① 공개매수의 목적과 공개매수를 하게 된 배경 및 과정에 대하여 객관적·구체적으로 기재한다.

#### 【 작성지침 】

공개매수의 목적은 다음의 사항을 참고하여 기재한다.

- 가. 경영권안정 또는 경영권확보를 위한 공개매수의 경우에는 주주제안 등 경영권분쟁현황 (임원 선·해임) 및 그 사유, 특별관계자 지분 현황 등
- 나. 지주회사로의 전환 및 지주요건 충족을 위한 공개매수의 경우에는 공개매수의 필요성, 공개매수 후 지배주주의 지분율 변동 등 지배구조 변화내용, 공개매수가격(교환비율)의 적정성에 대한 경영진의 의견 등
- 다. 자진 상장폐지를 위한 공개매수의 경우에는 상장폐지 사유 및 추진 배경 등에 대한 경 영진의 설명, 소액주주 보호방안, 공개매수 실패시 대책 등에 대한 핵심사항 등
- ② 공개매수자가 공개매수 이후 대상회사의 지배구조, 재무구조, 사업내용, 종업원 등 대상회사에 대하여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 【 작성지침 】

공개매수 이후 장래계획에 대해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그 내용을 기재한다.

- 가. 합병. 분할. 청산
- 나. 중요자산이나 영업의 양도
- 다. 배당정책의 중요한 변화
- 라. 이사회 구성의 변화
- 마. 상장폐지
- 바. 정관변경
- 사. 인력 구조조정이나 고용계약의 변경
- 아. 그 밖의 회사의 지배구조나 사업내용을 변동시키는 중요한 사항
- 제15-3-2조(공개매수 주식등에 관한 계획) 공개매수를 통하여 취득한 주식등의 보유 또는 처분·양도계획에 대하여 기재한다.

### 【 작성지침 】

i. 단기간 내에 제3자에게 양도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매수자에 대한 내용(취득목적, 소유주식수(비율), 관계, 사업의 내용, 최대주주 등)을 포함하여 기재한다.

- ii. 공개매수한 주식등에 대하여 관계법령에서 보유와 처분, 의결권 행사 등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재한다.
- 제15-3-3조(공개매수가 대상회사와 주식등에 미치는 영향) 공개매수가 공개매수 대상회사와 공개매수대상 주식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기재한다.
  - 1. 공개매수 대상회사가 공개매수 이전에는 받지 아니하던 공정거래법상 규제를 공개매수 이후에 새로이 적용받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 2. 증권시장에서 공개매수 대상 주식등이 공개매수 이후에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 3. 공개매수자 또는 공개매수 대상회사가 당사자로서 참가하는 소송으로서 지배권 변동 및 당해 공개매수에 영향을 미칠만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에는 그 내용

제3호에는 당사자, 진행상황, 소송의 결과가 당해 공개매수에 미치는 영향, 그 밖의 주요 사항에 관하여 기재한다.

# 제4절 공개매수의 조건에 관한 사항

- **제15-4-1조(공개매수할 주식등의 종류와 수량)** 공개매수를 통해 취득하려는 주식등의 종류와 수량에 관하여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다.
  - 1. 공개매수할 주식등의 종류와 수량
  - 2. 공개매수할 주식등을 모두 매수하였을 경우 공개매수자(특별관계자를 포함 한다)가 보유한 주식등의 변동내용

#### 【 작성지침 】

i. 제2호의 공개매수자와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한 주식등의 변동내용에 관하여는 보유자 별로 구분하여 기재하며 아래에 제시된 표를 참조하여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 효과 적인 정보제공차원에서 다양한 형태의 표를 이용할 수 있다.

성명 (명칭)	신고서 제출일 현재 보유주식등(A)		공개매수예정 주식등(B)		공개매수후 보유주식등(A+B)		비고
(00)	수량(주)	비율(%)	수량(주)	비율(%)	수량(주)	비율(%)	
<u></u> Л							

- 보유수량 및 발행주식등의 총수는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산출하고, 보유비율은 보유수량을 발행주식등의 총수로 나누어서 구한다.
- ii. 발행회사가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회사인 경우 제2호의 공개매수자와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한 주식등의 변동내용에 관하여는 보유자별로 구분하여 기재하며 아래에 제시된 표를 참조하여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 효과적인 정보제공차원에서 다양한 형태의 표를 이용할 수 있다.

성명 (명칭)		제출일 현	보자 보유주	두식등(A)		수예정 등(B)	공개매수후 보유주식등(A+B)			A+B)	비고
	수량(주	) 비율(%)	의결권 수	비율(%)	수량(주)	비율(%)	수량(주)	비율(%)	의결권 수	비율(%)	
계 											

■ 보유수량 및 발행주식등의 총수는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산출하고, 보유비율은 보유수량을 발행주식등의 총수로 나누어서 구한다. 의결권 수는 잠재주식의 의결권 수를 포함하고 보유비율은 의결권 수를 의결권 총수로 나누어서 구한다.

- 제15-4-2조(공개매수의 조건) 공개매수의 조건에 관하여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재한다.
  - 1. 공개매수 주식등의 종류별 수량, 가격 및 지급방법
  - 2. 공개매수가격 또는 교환비율의 산정근거
  - 3. 응모 주식등의 매수방법
  - 4. 공개매수 기간
  - 5. 결제일, 결제방법, 장소
  - 6. 세금에 관한 사항
  - 7. 공개매수자가 공개매수를 통해 주식등의 매수를 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정부 또는 법원의 허가, 인가, 승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

- i. 제1호는 다음의 사항을 참고하여 기재한다.
  - 가.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경우에는 주권으로 환산한 후 주당 가격을 매수가 격으로 기재하며, 효과적인 정보전달을 위해 필요한 경우 액면 단위 당 가격을 추가로 기재할 수 있다.
  - 나. 공개매수의 대가로 증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교부할 증권의 발행인, 발행인과 공개 매수자와의 관계, 종류, 교환비율 등을 기재하고, 증권신고서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기재한다.
- ii. 제2호는 다음의 사항을 참고하여 기재한다.
  - 가. 현물출자 등에 해당하여 법원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재한다.
  - 나. 상장폐지를 위한 공개매수의 경우에는 매수가격이 현재 시장가격, 역사적 시장가격, 순장부가치, 계속기업가치, 청산가치 등과 비교하여 공정한 가치를 형성하고 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기재한다.
  - 다.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평가기관의 명칭과 그 내용을 기재한다.
- iii. 제3호에는 공개매수에 응모한 주식등의 총수가 공개매수 예정주식등의 수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 이에 대한 매수조건을 기재한다(예 : 응모주식등의 총수가 예정주식등의 수에 미달할 경우에는 전부매수, 초과할 경우에는 안분비례 매수).
- iv. 제4호에는 공개매수의 시작일, 종료일, 공개매수기간에 포함된 일수를 기재한다.
- v. 제5호에는 대체결제에 관한 사항, 결제시 매수통지서의 제시가 필요한지 여부 등 결제 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 vi. 제6호에는 증권거래세 등 거래로 인하여 응모자가 부담하여야 할 세금에 관하여 기재한다.

- 제15-4-3조(공개매수자의 철회) 공개매수자는 공개매수신고서를 제출하여 공개 매수를 할 수 있게 된 날 이후에는 철회할 수 없으나, 법 제139조 제1항 단서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철회할 수 있다는 뜻과 공고방법 등을 기재한다.
- 제15-4-4조(공개매수 이외의 매수에 관한 계약) 시행령 제151조 제1호에 따라 공개매수공고 전에 해당 주식등의 매수등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로서 공개매수기간 중 공개매수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식등의 매수등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재한다.

# 제5절 공개매수의 응모방법과 공개매수사무취급에 관한 사항

제15-5-1조(공개매수의 응모방법) 공개매수사무취급자명, 응모방법, 응모가능시 간, 응모장소, 응모절차, 문의방법, 매수에 관한 통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 재한다.

#### 【 작성지침 】

'매수에 관한 통지방법'에는 공개매수자가 공개매수기간이 종료한 때 매수의 상황, 매수예 정주식등 또는 반환예정주식등 및 기타 결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매수통지서를 송 부한다는 뜻을 기재한다.

- 제15-5-2조(응모의 취소방법) 응모 취소방법, 취소가능기간(시간), 환불절차, 주식등을 반환하는 방법과 반환개시일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 제15-5-3조(공개매수사무취급자) 공개매수사무취급자명, 본점 소재지, 인터넷 홈페이지, 전화번호, 공개매수관련 업무 수행범위 등을 기재한다.

#### 【 작성지침 】

공개매수관련 업무수행범위에는 공개매수사무 계약서상의 공개매수 사무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 제6절 공개매수에 필요한 자금과 그 조성에 관한 사항

제15-6-1조(공개매수에 필요한 자금) 공개매수 대금(매수대가를 증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할 증권의 종류 및 총수량), 매매수수료, 그 밖의 공개매수실행에 필요한 각종 비용을 다음의 표에 기재하며, 내용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이나 기타 정보는 별도로 기술한다.

		(단위 : )
매수대금(A)	현금	
чтчпп(A)	증권	
매매수수료(B)		
기 타(C)		
항 게(VTDTC/	현금	
합 계(A+B+C)	증권	

#### 【 작성지침 】

- i. 매수대금은 총 예정 매수 주식등의 수에 주당 매수가격을 곱하여 기재한다. 증권과 교 환하는 공개매수의 경우에는 교부하는 증권의 수량을 기재하며, 교환에 따른 차액을 현 금으로 지급하는 때에는 그 필요자금을 각각 기재한다.
- ii. 매매수수료에는 매수와 관련하여 지급할 수수료(공개매수 사무취급자에게 지급할 수수 료, 중개 또는 주선수수료를 포함한다) 금액을 기재한다.
- iii. 기타에는 공고비용 등을 기재한다.
- 제15-6-2조(자금 조성에 관한 사항) 공개매수에 필요한 자금의 조성내용은 자금 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하며, 내용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이나 기타 정보는 별도로 기술한다.
  - 1. 공개매수에 필요한 현금

(단위 : )

	자기자금(A)			
고레메스키그이 구시네ㅇ	차입금(B)			
공개매수자금의 조성내용	기타(C)			
	합 계(A+B+C)			
		금융기관명	금액	비고
매수자금에 충당할	예금잔고 등			
금융기관의 예금잔고 등		합계		
보유내용	공개매수 자금의			
	인출・운용계획			

# ○ 차입금(B)에 관한 사항

(단위 : )

차입처	차입금액	금리	차입일	만기 (차입기간)	제공한 담보	부대 조건 등 특기사항

## 2. 공개매수에 필요한 증권

(단위 : )

		(2), , ,
	교환대상 증권종류	
교환증권 보유내용	수 량	
	교환대상 증권 보관방법	
	신주발행 증권종류	
신주발행내용	수 량(A)	
থ⊤ছে∀দাত	1주당 발행예정가격(B)	
	금액(A x B=C)	
기타		

- i. 공개매수에 필요한 현금
  - 가. '공개매수자금의 조성내용'중 차입의 경우에는 차입처·차입금액을 기재하고 비고란에는 차입방법(제공시기, 변제기일, 담보상황, 이율 등) 등을 기재한다.
  - 나. '매수자금에 충당할 금융기관의 예금잔고 등 보유내용'에는 공개매수신고서 제출일 3일이내에서 동일한 날짜를 기준으로 작성된 예금잔고(채무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등인출이 제한되어 있는 것은 제외)를 금융기관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다만, 금융기관에 예치된 예금을 신고서 제출후 인출·운용한 후 공개매수 결제일 전까지 재예치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인출예정금액, 인출목적 및 재예치방법 등의 계획을 기재한다.
- ii. 공개매수에 필요한 증권
  - 가. 매수대가로 교부할 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교환증권 보유내용"란에,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신주발행내용"란에 그 내용을 기재한다.

나. 기타란에는 증권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사항(예 : 교환후 최초의 이익배당 또는 이자 지급시기, 사채권의 발행조건 등), 교환증권의 발행인과 공개매수자와의 관계 및 증 권신고서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 등 교부할 증권과 관련한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 한다.

# 제7절 공개매수자와의 사전협의 등에 관한 사항

- 제15-7-1조(공개매수자와 임원 또는 최대주주간의 사전협의) 공개매수자와 대 상회사의 임원 또는 최대주주간에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사전협의 등이 있었 던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재한다. 그러한 사실이 없는 경우 없다는 사실을 기 재한다.
  - 1. 공개매수의 조건, 목적, 방법, 시기 등 공개매수에 관한 사항
  - 2. 공개매수 대상회사의 향후 합병, 분할, 영업양수도, 공개매수, 대상회사의 임원의 선임 등 공개매수 대상회사의 장래계획에 관한 사항
  - 3. 공개매수 대상회사의 임직원에 대한 이익제공, 고용승계 등 회사운영에 대한 사항
  - 4. 그 밖의 공개매수 또는 회사의 장래계획에 관한 사항
- 제15-7-2조(이해관계의 대립) 공개매수자와 최대주주(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임직원 또는 주주간에 공개매수로 인하여 이해관계의 대립이 발생할 수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재한다.

#### 【 작성지침 】

현 경영진이나 최대주주가 공개매수자와 우호적인 관계가 아니어서 방어행위를 하게 될 가능성, 임직원의 퇴임이 예상되는 경우, 그 밖의 이해관계 대립으로 공개매수자와 최대주주, 임직원, 주주간의 이해상반 행위가 있을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기재한다.

# 제8절 공개매수 대상회사의 의견표명

- 제15-8-1조(공개매수 대상회사의 의견표명) 공개매수 대상회사가 법 제138조와 시행령 제149조에 따라 공개매수에 관한 의견을 표명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재한다.
  - 1. 공개매수에 대한 의견과 그 이유
  - 2. 주주에게 권유하는 내용이 있다면 그 사항과 이유
  - 3. 공개매수 대상회사의 임원과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공개매수 대상 주식등의 향후 보유, 매각, 공개매수 응모 여부에 대한 계 획이 있는 경우 그 내용과 이유

- i. 공개매수에 대한 발행인의 의견은 찬성·반대 또는 중립의 입장 및 그 이유를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공개매수자와 이해관계가 상반될 경우에는 이 해관계의 조정을 위한 협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그 내용도 기재한다.
- ii. 제3호의 경우 공개매수 대상회사가 알 수 있는 범위내에서 그 내용을 기재한다.

# 제9절 공개매수결과보고

제15-9-1조(공개매수의 결과) 공개매수 대상회사명, 공개매수 주식등의 종류, 공 개매수 예정수량 및 가격, 응모 및 매수현황, 공개매수기간 등 공개매수의 결 과를 간략히 요약하여 기재한다.

#### 【 작성지침 】

응모 및 매수현황에는 공개매수예정주식수, 응모주식수, 매수주식수를 비교하여 기재한다. 아래에 제시된 표를 참조하여 기재할 수 있으며, 효과적인 정보제공을 위하여 다양한 형 태의 표를 이용할 수 있다.

(단위 : )

주식등의 종류	예정주식수	응모주식수	매수주식수

제15-9-2조(공개매수자의 주식등의 보유현황) 공개매수자(특별관계자를 포함한다)의 공개매수 전후 주식등의 보유현황을 기재한다.

### 【 작성지침 】

공개매수자의 주식등의 보유현황은 종류별 현황 및 보유자별 현황에 대하여 각각 기재한다. 아래의 제시된 표를 참조하여 기재할 수 있으며, 효과적인 정보제공차원에서 다양한 형태의 표를 이용할 수 있다.

## 가. 종류별 보유현황

(단위 : )

771E01 52		공개매수 후		
주권등의 종류	공개매수 전	공개매수	공개매수 후	주식등의 보유비율
 주권				-
 전환사채권				_
				_
				_
합계				

## 나. 보유자별 보유현황

(단위 : )

							( - 11 • 7
성명 (명칭)	신고서 제출일 현재 보유주식등(A)		공개매수예정 주식등(B)		공개매수후 보유주식등(A+B)		비고
(33)	수량(주)	비율(%)	수량(주)	비율(%)	수량(주)	비율(%)	
ı							

발행회사가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회사인 경우 제2호의 공개매수자와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한 주식등의 변동내용에 관하여는 보유자별로 구분하여 기재하며 아래에 제시된 표를 참조하여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 효과적인 정보제공차원에서 다양한 형태의 표를 이용할 수 있다.

성명 (명칭)	신고서	신고서 제출일 현재 보유주식등(A)				공개매수예정 주식등(B)		공개매수후 보유주식등(A+B)			
	수량(주)	비율(%)	의결권수	비율(%)	수량(주)	비율(%)	수량(주)	비율(%)	의결권수	비율(%)	
À											



# 제16장 파생결합증권 등의 모집 · 매출에 관한 사항

## 제1절 일반원칙

- 제16-1-1조(용어의 정의) 증권신고서에 반복하여 기재되는 각종 법률용어, 전문용어 등을 투자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당 용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16-1-2조(공시서류 작성의 일반원칙) ① 공시의무자는 법, 시행령, 시행 규칙,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공시서류를 작성할 경우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작성하되, 동 기준에 따라 알기 쉽고 충실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 ② 공시서류의 작성은 투자자 등 이용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간단하고 명료하게 서술식으로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해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거나 중요한 정보의 전달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래프, 표, 그림 등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다만, 이 기준이나 서식에서 특정 형태의 표나 그림의 기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시된 표 등은 수정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당초 제시된 표 등에서 요구하고 있는 공시내용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 ③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인 자료와 사실 또는 합리적 추론과 분석에 근거하여 기재하되, 투자자 등 이용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이를 유도할 우려가 있는 표현, 예측·추정·전망·계획 등에 대한 단정적 주장, 추상적이거나 애매모호한 표현 등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 ④ 공시서류에는 목차와 내용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도록 목차를 굵은색으로 표시하고 제목과 내용 사이에 여백을 두어 배열하여야 한다. 여러 가지 항목을 배열식으로 나열하는 경우에는 표를 사용하여 보기 편리하도록 공시하여야 한다.
- 제16-1-3조(중권의 권리·의무관계) 공시서류에 발행인과 투자자의 권리·의무 관계를 최대한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하고 발행인의 면책조항은 법률관계상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기재하는 등 기재에 유의해야 한다.

- 제16-1-4조(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일반투자자가 투자판단시 유의하여야 할다음 각호의 내용을 증권신고서(또는 일괄신고추가서류), 투자설명서, 소액공모 공시서류 등에 기재하여야 한다.
  -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또는 일괄신고추가서류)와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라는 사실
  - 2. 금융투자상품의 특성상 투자원금의 손실이 있을 수 있으며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닌 점을 숙지하고 투자해야 한다는 사실
  - 3. 미리 정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약정 수익을 받지 못하거나 상품에 따라서는 원금손실이 발생될 수 있는 복잡한 구조이므로 관련 투자 위험요소를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해야 한다는 사실
  - 4. 기초자산의 가격에 연계한 상환금액 산정방식에 의해 증권의 수익률이 결정되므로 기초자산의 성격, 과거 가격추이, 기초자산 관련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권리변경 가능성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투자하여야 한다는 사실(기초자산이 신용위험인 경우 신용사건 발생여부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므로 신용사건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를 숙지하고 투자하여야 한다는 사실)
  - 5. 발행인의 신용상태에 따라 투자원금이 보호되지 않을 수 있는 신용위험이 있으므로 발행인의 재무현황 및 신용등급(OO증권, 발행사 신용등급 OO, OO년 OO월 OO일, OO평가) 등을 파악하고 투자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
  - 6. 투자금은 법적으로 별도 예치의무가 없기 때문에 발행인의 고유재산과 분리되어 보호되지 않는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해야 한다는 사실
  - 7. 상장되지 않거나 상장되었다 하더라도 거래량이 많지 않은 파생결합증권은 만기 전 투자금 회수에 어려움이 있거나 상환비용이 크게 발생될 수 있으므로 중도상환절차 및 상환가격 결정방법 등을 확인한 후 투자결정해야 한다는 사실
  - 8.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인 경우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한다는 사실과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
  - 9. 파생결합사채의 경우 기초자산의 안전성과 원금상환여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원금상환여부는 발행인의 지급여력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해야 한다는 사실
  - 10. 기타 투자결정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

#### 【 작성지침 】

그 밖에 투자결정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추가하여 기재할 수 있다.

제16-1-5조(파생결합사채에의 준용) 본 장의 작성기준과 관련 공시서식은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금융투자업자가 영업목적으로 발행하는 파생결합사채에 준용한다.

### 제2절 모집 또는 매출의 일반사항

제16-2-1조(공모의 개요) ① 공모의 대상이 되는 증권의 종류, 기초자산의 종류, 예상 손익구조, 모집총액, 발행가액, 행사가격 및 행사기간·옵션종류·전환비율(옵션형 증권의 경우), 청약조건, 납입일, 만기일, 지급일, 만기시 또는 권리행사시 결제 방법, 당해 증권의 상장여부, 신용평가 등급 및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 등을 기재한다. 파생결합증권의 모집·매출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다음의 표로 작성하고, 그 외의 사항은 도해 등을 활용하여 서술식으로 기재한다.

항 목	내 용
증권의 종류	
기초자산의 종류	
모집(매출)총액	
1증권당 발행가액	
발행 수량	
행사가격/행사기간/옵션종류/전환비율	
, 청약일(기간)	
납입일	
만기일	
지급일	
만기시·권리행사시 결제방법	

- i. 증권의 종류는 법상 용어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되, 법상 통용되는 용어가 없거나 해당 증권의 성격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용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또는 사회적으로 일반화 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증권의 성격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고 이 에 대한 설명을 부기한다.
- ii. 기초자산의 종류에는 파생결합증권과 연계된 기초자산의 명칭을 세부적으로 기재한다.
- iii. 예상 손익구조는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에 따른 만기시 또는 권리행사시 예상손익을 모든 발생 가능한 상황을 가정하여 산출한 결과를 간략히 기재한다. 특히 해당 증권 보유자가 받게 될 최대손실액과 그 조건, 최대이익액과 그 조건은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 iv. 청약조건에는 청약기간과 청약단위를 기재한다.
- v. 만기시 결제방법은 현금결제·실물결제로 구분하여 기재하되, 실물로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 그 사유, 결제 대상물, 결제 절차 등을 기재한다.
- vi. 모집·매출후 당해 증권이 국·내외 거래소에 상장되는지 여부를 기재한다. 이 경우 상장 이 확정되었거나 상장될 것이라는 합리적 근거가 없는 한, 상장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단정적 표현을 해서는 아니된다.
- vii. 신용평가등급은 당해 증권의 모집(매출)과 관련하여 신용평가를 받는 경우 기재하며, 평가회사명, 평가일, 평가등급을 기재하되, 신용평가계약을 해지(평가계약의 해제, 철 회, 취소를 포함한다)한 사실이 있는 경우 동 평가회사명, 평가계약일, 해지일과 그 사 유도 기재한다.
- viii.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는 시행령 제2조 제7호에 의한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기재하며, 위험성 등 그 의미를 요약 설명한다.
- ix. 그 밖의 사항으로 발행 취소사유, 발행조건상의 특이사항 등을 기재한다.
- 제16-2-2조(증권 매출인) 특정 증권 소유자가 증권을 매출하는 경우 매출대상 증권 소유자의 명칭(성명), 발행회사와의 관계, 소유 증권 수량 및 종류, 매출 증권수, 매출금액 등을 기재한다.
- 제16-2-3조(공모가격의 결정방법) 공모가격의 결정방법은 일정한 산식에 의한 공모가격 결정, 협의에 의한 공모가격 결정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하며, 채택한 방법의 내용 및 절차를 간략히 기재한다.

#### 【 작성지침 】

- i. 신고서 제출시점 기준으로 외부 평가기관 또는 발행인이 산정한 파생결합증권의 공정 가액(이론가격)을 기재한다. 단, 헤지비용을 포함하지 않은 순수 이론가액을 기재한다.
- ii. 이론가액 산출 시 사용되는 주요 변수에 관한 정보(변동성, 상관계수 등(기초자산이 신용위험인 경우 부도율, 회수율 등)) 및 해당 변수의 산출 기준을 기재한다.
- 제16-2-4조(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 ① 모집 또는 매출관련 공고일자와 공고방법, 청약방법, 청약취급회사, 청약결과 배정방법, 납입 및 청약증거금의 대체·반환, 증권의 교부, 신주인수권증서 및 그 밖에 중요한 사항을 기재한다.

- i. 공고의 일자와 공고방법은 모집 또는 매출에 대한 공고일자와 구체적 공고방법을 다음 각목의 사항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 가. 증권 발행의 공고
  - 나. 모집 또는 매출가액 확정의 공고
  - 다. 청약안내의 공고
  - 라. 청약결과 배정의 공고
  - ii. 청약방법은 청약방식 및 절차, 청약기일, 청약단위, 청약한도, 청약증거금, 청약시 유의 사항 등을 기재하며, 청약자 유형별로 그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이를 구분하여 기재한다.
  - iii. 청약결과 배정방법은 배정의 중요 기준과 방법을 기재하고, 청약자 유형별로 배정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재한다. 동일 청약자 유형에 대하여 복수의 배정기준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우선 적용기준 등을 제시하는 등 배정이 일반적으로 어떤 원칙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아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 iv. 납입 및 청약증거금의 대체·반환 등에 관한 사항은 납입기일, 납입장소, 청약증거금을 매입대금 납입으로 자동대체하는 경우 그 사실, 청약증거금에 대한 이자, 청약증거금 의 반환일자 및 방법 등을 기재한다.
  - v. 증권의 교부방법 및 교부예정일과 교부일 이전의 증권 양도에 관하여 특수한 정함이 있는 경우 이를 기재하고, 증권의 교부 전에도 거래소 등의 시장에서 매매거래가 가능한 경우에는 거래방법과 거래개시 가능일자 등을 명시한다.
- 제16-2-5조(인수) ① 발행회사가 인수인을 통해 증권을 공모하는 경우 인수인, 인수방법 및 인수대가, 인수증권의 수량 등을 기재한다. 인수인별로 인수방법 등이 다른 경우에는 인수인별로 그 내용을 기재하고, 회사와 중요한 이해관계가 있는 인수인에 대해서는 그 관계를 별도로 기재한다.

- i. 인수인이 복수인 경우에는 주된 인수인을 명시하고, 인수단이 구성된 경우에는 대표주 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를 기재한다.
- ii. 인수대가는 인수의 대가로 지급한 모든 보상가액이 포함되며, 각각의 유형별(예 : 인수수료, 인수차익, 그 밖에 인수인에게 제공하는 재산적 이익 등)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 iii. 인수증권 수량 또는 인수조건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이 유와 결정예정시기 등을 기재한다.
- iv. 인수인과 발행회사간 중요한 이해관계는 회사의 대주주(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

하 이 조에서 같다)가 인수인과 중요한 특별관계를 갖는 경우 또는 인수인 및 그 계열 회사가 공모증권에 대한 사전투자 등으로 공모의 조건이나 성사에 중대한 재산적 이해 관계를 갖는 경우를 말하며, 인수인과 회사, 발기인, 대주주와의 중요한 이해관계를 충 분히 나타낼 수 있도록 상세한 내용을 기재한다.

- v. 회사와 인수인간 특약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을 기재한다.
- ② 인수인이 아닌 자로부터 증권의 공모와 관련된 서비스를 받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자명, 서비스내용 및 그에 따른 보수 등을 기재한다.

#### 【 작성지침 】

공모관련 서비스에는 인수회사 탐색·중개, 공모가액 또는 공모조건에 대한 컨설팅, 공모와 관련한 IR, 증권신고서 작성 등이 포함된다.

제16-2-6조(대리인 등) 대리인 등에 관한 사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 당해 사실 및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 i. 만기시 또는 권리행사시 지급금액 및 지급 증권 수 등의 공정한 계산과 지급을 위하여 계산대리인(Calculation agent)을 둔 경우, 계산 대리인의 명칭과 주소 및 계산 대리인의 역할, 구체적인 법적 권한 등
- ii. 발행회사를 대신하여 만기시 또는 권리행사시 사전에 정해진 지급절차에 따라 지급금 액을 지불하는 지급대리인 또는 수탁 회사 등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의 명칭 및 주소, 역할, 구체적인 법적권한 등
- 제16-2-7조(주관회사의 의견) 주관회사의 당해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의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주관회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파생결합증권의 분석 및 가격 결정 등이 발행인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사실 등을 기재한다.
  - 1. 주관회사의 명칭
  - 2. 분석의 개요: 당해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분석과 관련된 규정 및 분석방법 의 개요 등
  - 3. 분석의 결과
  - 4. 종합의견 : 당해 파생결합증권의 분석결과에 따른 주관회사의 종합의견

제16-2-8조(시장조성 등) 인수인이 안정조작이나 시장조성 등의 거래를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동 거래의 성격과 동 거래가 공모증권의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 이러한 거래가 발생할 수 있는 증권시장 및 공시방법 등을 기재한다.

- i. 시장조성 또는 안정조작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실, 시장조성 또는 안정조작을 할 증권시장, 기간, 공시방법 그 밖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며, 특정 가격대에서 시장조 성 또는 안정조작활동이 개시되거나 종료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가격대를 명시하고, 시장조성 또는 안정조작을 통한 매입물량을 일정 범위내로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나 계 획된 시장조성 가격 또는 안정조작가격이 변동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재한다.
- ii. 당해 증권의 가격상승이나 천재지변 등 안정조작이나 시장조성이 실행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주의적 문구로 기재한다.

### 제3절 파생결합증권의 내용

제16-3-1조(예상 손익구조) 금융투자상품, 통화, 일반상품, 신용위험, 이자율,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에 따른 만기시 또는 권리행사시 예상손익을 투자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든 발생 가능한 상황을 가정하여 산출한 결과를 기재한다. 특히, 파생결합증권의 보유자가 받게 될 최대손실액과 그 조건, 최대이익액과 그 조건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한다.

#### 【 작성지침 】

- i. 예상 손익구조는 서술식으로 상세히 기재하되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표나 그림 또는 그래프를 적극 활용하여 기재한다.
- ii. 수익률 모의실험결과는 과거 20년간의 기초자산 가격을 이용하여 기재한다. 다만, 특정기간 동안의 기초자산 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해당기간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고, 모의실험이 불가능한 경우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기재를 생략하는 경우 그 이유를 기재한다.
- 제16-3-2조(투자위험요소) ① 발행증권과 발행인에 관한 특수한 사항으로서 모집·매출되는 증권에 대한 투자를 위험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과 상황, 발행인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가격변동 위험, 발행회사 위험, 중도상환 위험, 기타투자위험 등 4가지로 구분하여 중요사항 순으로 기재한다.
  - ②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인 경우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한다는 사실과 판단 근거를 기재한다.
  - ③ 이해하기 쉽고 투자판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간결하고 축약된 문장을 사용하여 논리적으로 기재하되, 모든 발행인이나 모든 모집·매출에 적용될 수 있는 정도의 위험요소는 기재하지 아니한다.
  - ④ 위험요소별로 각 위험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부제목을 기재한다. 부제목은 투자자가 알기 쉽게 풀어서 쓰고, 원인과 결과가 포함된 하나의 문장으로 서술하되 굵고 두드러진 활자체를 사용하여 눈에 잘 띠는 형태로 표시한다.

#### 【 작성지침 】

투자위험요소는 가격변동 위험, 발행회사 위험, 중도상환 위험, 기타 투자위험 등 4가지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추가하여 기재할 수 있으며, 해당 기초자산과 관련되지 않은 위험은 생략할 수 있다.

- i. 가격변동 위험: 가격결정요소(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성, 상관계수(기초자산이 둘 이상인 경우에 한함))의 변동이나 특정사건의 발생(기초자산이 신용위험인 경우는 신용사건 발생여부 등)에 따라 해당 증권 보유자가 대규모 투자손실에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과 보유자의 투자손실 규모를 가격변동이나 특정사건의 발생상황별로 기재한다.
  - 가. 향후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성, 잔존만기, 시장이자율의 변화, 상관계수의 변화(기초 자산이 둘 이상인 경우에 한함)가 해당 증권의 가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구 체적으로 기재한다.
  - 나. 기초자산의 변경, 상장 폐지 등에 따른 투자자 손실발생 위험 등을 기재한다.
  - 다. 발행사의 헤지거래에 따른 발행사와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구조 및 그로 인한 투자자 손실발생 위험 등을 기재한다.
  - 라. 기초자산이 신용위험인 경우에는 준거대상(reference entity)의 CDS프리미엄(해당하는 경우), 부도율, 회수율, 잔존만기, 시장이자율, 상관관계(기초자산이 둘 이상인 경우에 한함)가 해당 증권의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신용사건 발생시 손실발생위험을 기재하며, 신용사건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준거대상의 재무상황 및 신용도, 준거대상의 채무규모 및 상환일정, 신용평가사의 전망, 준거대상 및 준거 대상의 채무에 영향을 주는 경제, 금융, 정치, 규제 또는 법적 사건등), 준거대상 및 준거채무(reference obligation)의 변경, 최종가격(final price) 결정방식 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기재한다.
- \* 신용사건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는 준거대상의 유형(기업·정부 등)에 따라 달리 기재할 수 있음
- \*\* 신용사건 발생일로부터 상환금액 지급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특정되어있지 않은 상품의 경우, 신용사건 발생시 신용사건 발생일로부터 상환금액 지급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기재 (예: 신용사건 발생 후 180일 이내에 계산대리인이 결정한 날 등과 같이 미리 특정한 날짜로 지정되어있지 않은 경우)
- \*\*\* 계산대리인이 발행인이고, 신용사건 발생시 계산대리인이 상환금액과 상환일을 정하는 경우 이해상충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기재
- \*\*\*\* 투자자가 신용위험이 기초자산인 파생결합증권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신용사건 발생시 준거대상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재
  - 마. 투자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환율 변동에 따라 변동하게 되는 경우 환율 변동에 의한 위험을 기재한다. (예시 : 외화로 증권이 발행되는 경우 등)
  - ii. 발행회사 위험: 발행회사의 재무·손익상태 및 현금흐름상의 위험과 이에 따른 만기시 또는 권리행사시 결제불이행 위험 등 발행회사의 특수한 위험을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상세히 기재한다.
  - iii. 중도상환 위험 : 비상장 등으로 인한 유동성 확보의 어려움 및 중도상환 청구시 손실 발생 위험 등을 기재한다.

- iv. 기타 투자위험 : 가격변동 위험, 발행회사 위험, 중도상환 위험 외의 위험으로서 증권의 발행조건. 세금관련 사항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위험
- 제16-3-3조(기초자산) ① 파생결합증권의 기초자산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되, 연계된 기초자산의 범주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기초자산 각각에 대하여 기재한다.

#### 【 작성지침 】

- i. 기초자산의 개요, 기초자산 가격의 산정·발표기관, 가격산정 기관이 없는 경우 가격산출 방법, 기초자산의 가격에 관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 기초자산 가격이 중대하게 변동될 경우 공시계획을 기재한다.
  - 가. 기초자산이 주가지수인 경우 주가지수의 개요, 산출기관 등을 간략히 명시하고, 주가 지수 산출기관의 웹사이트 등을 명기하여 추가 정보를 참조할 수 있도록 한다.
  - 나. 기초자산이 개별주식인 경우 대상 회사의 기업 개요, 대상 회사가 발행시점 기준 과 거 6개월간 공시한 사항 중 향후 기초자산의 주가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거나, 투자 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사항 등을 기재\*한다. (단, 기초자산이 해외 주식일 경우 해당 기업의 재무제표 및 중요사항을 국문으로 번역하여 기재한다.)
    - \* 공시제목, 공시일자, 동 공시를 조회할 수 있는 웹사이트 등 기재
- ii. 기초자산의 최근 20년간 가격변동추이 : 수치를 제시하거나 도해 등을 활용하여 파생 결합증권의 투자자가 쉽게 가격변동 추이를 알 수 있도록 기재한다.
- iii. 기초자산의 생산자(발행자)와 당해 증권 발행인이 특수 관계인이거나 일정한 거래가 있는 경우 그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한다.
- iv. 기초자산이 여러 개인 경우, 기초자산들의 가격변동 추이를 동시에 나타내는 그래프를 추가로 기재한다.
- ② 파생결합증권의 기초자산이 신용위험인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다.
  - 1. 준거대상(reference entity) 및 준거채무(reference obligation) 에 관한 일반적 사항
  - 2. 준거대상의 최근 3년간 신용등급
- 3. 준거대상, 준거대상의 신용등급 및 준거채무에 관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
- 4. 신용위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신용사건
- 5. 준거대상과 당해 증권 발행인이 특수관계인이거나 일정한 거래가 있는 경우 그 구체적인 내용

#### 【 작성지침 】

i . 준거대상(reference entity)에 관한 일반적 사항에는 준거대상의 연혁, 자본금 변동현

황, 사업의 내용, 요약 재무구조, 관계회사 및 임원의 현황 등을 기재한다. 준거대상이 국가인 경우 해당 국가의 재정·경제상황 등을 기재한다. 준거채무(reference obligation)에 관한 일반적 사항에는 채무의 종류, 종목명(증권인 경우), 금리 등을 기재한다.

- ii. 준거채무는 신용사건 발생에 따른 상환(현금/현물)금액 산정의 지표가 되므로(현물상환의 경우 파생결합증권의 상환이 현물(준거채무)로 이루어지므로)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단, 신용사건 발생시 정해진 금액(예: 액면가액의 40%, 액면가액의 0% 등)을 지급하는 경우 준거채무를 기재 하지 않을 수 있다.
- iii. 3년간 신용등급을 기재함에 있어 특정기간 동안의 신용등급이 없는 경우 해당 기간의 신용등급이 없음을 기재한다.
- iv. 신용등급이 준거대상의 위험을 전부 반영하는 것은 아니며, 신용등급이 준거대상을 보증하지 않음을 기재한다.
- v. 준거대상의 신용위험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상품(CDS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상품의 가 격변동추이를 기재할 수 있다.
- vi. "일정한 거래"는 인수계약 체결, 지급보증의 제공, 대출채권의 보유,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보유, 인수 및 합병과 관련된 금융제공 (대출 또는 증권의 발행 등을 포함) 등을 의미하며, 발행인이 신고서 제출일의 직전 영업일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준거 대상의 "일정한 거래"와 관련된 자산, 계약 등의 금액을 기재하고, 준거대상과의 일정한 거래와 관련되어 발행인이 부담하는 신용위험이 파생결합증권 발행으로 투자자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재한다.
- \* (예) 발행인은 신고서 제출일 직전영업일 기준으로 준거대상(reference entity)이 차주인 대출채권 500억원을 보유중입니다. 금번 파생결합증권 발행에 따라 해당 대출채권의 신용 위험이 발행인으로부터 투자자에게 이전됩니다.
- 제16-3-4조(파생결합증권의 권리내용) 파생결합증권의 법상 중요 권리내용을 기재한다. 다만, 「상법」이나 관행에 의하여 증권의 권리내용에 관하여 그 명칭에서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사항은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 【 작성지침 】

권리내용 기재시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i. 당해 증권에 부여된 권리의 내용, 권리행사 절차, 권리행사 통지방법 등

- \* 기초자산이 신용위험인 경우에는 계산대리인이 신용사건 발생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신용사건의 정의), 신용사건 발생시 정산금액의 결정방법 등을 명확하게 기재
- \*\* 기초자산이 신용위험인 경우에는 신용사건 발생시 투자자에 대한 통지를 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통지시 포함될 내용(신용사건의 발생을 확인해 주는 정보를 인용하고 해당 정보의 사본을 포함하거나 또는 해당 정보의 세부내용 등을 포함)에 대해 기재
  - ii. 당해 증권의 권리행사시 결제방법과 절차, 현금결제의 경우 증권 보유자에 대한 현금 지급 방법과 절차, 실물결제의 경우 실물인수도 방법과 절차, 행사기간 중에 권리를 행 사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 방법 등
  - iii. 증권보유자에게 중도상환 청구권이 부여된 경우 그 내용, 중도상환 청구요건, 상환 절차, 상환가격의 결정 방법, 상환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공시계획 등
    - 가. 중도상환가격의 기준이 되는 공정가액(기준가)을 발행회사 홈페이지에 매일 게시한다는 사실, 공정가액을 산정하는 주체 등
    - 나. 중도상환시 투자자에게 교부되는 명세서에 공정가액대비 중도상환가격의 비율을 기재하고, 투자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중도상환금액 산정 세부내역을 교부한다는 사실 등

#### iv. 파생결합증권의 상장관련

- 가. 대상 증권이 상장되는 경우 상장될 거래소의 명칭, 상장신청예정일
- 나. 상장 예비심사를 받은 경우 그 결과

#### v. 파생결합증권의 매매관련

- 가. 파생결합증권의 매매시 거래가격의 결정요인과 방법, 거래가격을 결정하는 각종 요인들이 당해 파생결합증권의 거래가격에 미치는 영향 등
- 나. 파생결합증권 보유자가 만기 또는 행사기간 전에 당해 파생결합증권을 매매하고자 할 때 발행인이 거래상대방이 되는지의 여부, 거래상대방이 되는 경우 매매의 방법, 매매절차, 거래가격의 결정기준 등
- vi.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숙려기간 등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투자자가 갖는 권리 및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기재한다.
- 제16-3-5조(권리내용의 변경) 권리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 당해 사실 및 그 사유를 기 재하여야 한다.

#### 【 작성지침 】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를 빠짐없이 기재하고 그 밖에 투자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추가하여 기재한다.

- i. 당해 증권의 권리내용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판단의 근거가 되는 법규 또는 계약 및 관할법원에 관한 사항
  - ii. 당해 증권의 발행시에 정한 지급조건 및 지급절차나 행사가격, 행사기간, 기타 권리내용 또는 권리행사 절차 등을 조정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각각의 사유 발생시 조정되는 내용 그리고 동 조정내용의 통지·공고방법
    - 가. 주가연계증권의 기초자산인 주권에 대하여 증자, 주식배당, 액면병합 또는 분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주가의 연속성이 손상되는 경우 각 사유별 기준가격 조정에 적용되는 산식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 나. 기초자산이 신용위험인 경우 준거대상의 합병, 분할, 준거채무의 소멸 등의 사유로 준거대상 또는 준거채무의 연속성이 손상되는 경우에 대해서 고객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준수하여 본 증권의 권리내역을 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시한다.
    - 다. 기타 미리 정한 기준가격 조정산식이 적용되기 어려운 경우에 대해서는 고객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준수하여 기준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시한다.
  - iii. 기초자산의 거래중지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기초자산의 가격이 산출되지 않는 경우 동 증권에 대한 권리내용의 변경 여부 및 변경되는 경우의 변경기준, 변경된 권리내용의 통지방법 등
  - iv. 당해 증권 발행인의 채무양도, 합병, 부도, 파산 등이 발생한 경우 동 증권의 법적지위 와 채권금액을 확정하는 기준. 투자자의 권리구제절차 및 방법. 정산 방법 등

## 제4절 자금의 사용목적

제16-4-1조(자금의 사용목적) 자금조달의 개요, 제비용 및 조달된 자금의 운용계획을 기재한다.

#### 【 작성지침 】

- i. 자금조달의 개요 및 제비용 :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용과 발행 제비용을 기재한다.
- ii. 조달된 자금의 운용계획 : 당해 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자금을 이용하여 향후 만기 또는 권리행사시 사전에 정해진 지급금액등을 투자자에게 안정적으로 지급하기 위한 증권의 편입·위험회피(hedging)거래 등 조달된 자금의 운용계획을 기재한다.

## 제5절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6-5-1조(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당해 증권의 매매 또는 지급금액에 대한 세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다.



# 제17장 공통사항

- 제17-1-1조(용어의 정의) 증권신고서에 반복하여 기재되는 각종 법률용어, 전문용어 등을 투자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당 용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기재하여 붙임서류로 제공하여야 한다.
- 제17-1-2조(공시서류 작성의 일반원칙) ① 공시의무자는 법, 시행령, 시행규칙,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공시서류를 작성할 경우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작성하되, 동 기준에 따라 알기 쉽고 충실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 ② 공시서류의 작성은 투자자 등 이용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간단하고 명료하게 서술식으로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해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거나 중요한 정보의 전달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래프, 표, 그림 등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다만, 이 기준이나 서식에서 특정형태의 표나 그림의 기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시된 표등은 수정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당초 제시된 표 등에서 요구하고 있는 공시내용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 ③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인 자료와 사실 또는 합리적 추론과 분석에 근거하여 기재하되, 투자자 등 이용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이를 유도할 우려가 있는 표현, 예측·추정·전망·계획 등에 대한 단정적 주장, 추상적이거나 애매모호한 표현 등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 ④ 전환형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전환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기재사항은 중요사항을 요약하여 기재한 후 해당 전환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증권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 등의 공시일자와 공시장소 등을 기재한 후 그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등을 참조하도록 기재할 수 있으며, 모자형집합투자기구의 자집합투자기구인 경우 그 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기재사항은 중요사항을 요약하여 기재한다.
  - ⑤ 집합투자기구별 종류 및 형태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공시항목 자체를 삭제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사유에 의하여 기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히고 그에 준하는 사항을 기재하거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기재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투자자가 투자판단에 더욱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는 유의사항을 기재한다.

- 제17-1-3조(집합투자기구의 법적 형태에 따른 용어의 사용) 이 부(제4부)에서 는 투자자, 투자자총회, 집합투자증권, 집합투자기구 등에 관한 용어는 집합투자기구의 법적 형태(투자신탁, 투자익명조합,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조합)에 따른 적절한 용어로 바꿔서 사용할 수 있다.
- 제17-1-4조(외국집합투자기구에 관한 특례) ① 외국집합투자기구로서 집합투자 증권신고서 작성시 외국집합투자기구 특성상 기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고 그에 준하는 사항을 기재하거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기재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투자자가 투자판단에 더욱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는 유의사항을 기재한다.
  - ② 첨부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외국집합투자기구의 특성상 첨부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에는 그에 준하는 서류를 첨부하거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 ③ 외국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해당 국가의 법령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사용할 수 있다.
- 제17-1-5조(재무정보 등의 작성기준일) ① 공시서류는 최근일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재무에 관한 정보, 설정 및 환매현황은 집합투자기구의 회계연도의 반기를 기준으로, 자산구성 현황에 관한 자료는 집합투자기구의 회계연도의 분기별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반기를 기준으로 자료를 작성할때 반기말(결산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전기말(직전 반기말)을 기준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분기를 기준으로 자료를 작성할때 분기말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직전 분기말(1분기 및 3분기의 경우에는 각각 전기말 및 직전 반기말)을 기준으로 작성할 수 있다.
- 제17-1-6조(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일반투자자가 투자판단시 유의하여야 할다음 각 호의 내용을 증권신고서 표지 다음 페이지에 기재하며, 동 사항을 기재함에 있어 원금손실 가능성, 투기등급자산에의 투자, 기타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은 다른 글자보다 국고 2pt 이상 크게 기재한다.

-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 하라는 사실. 단, 간이투자설명서의 경우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추가로 기재한다.
- 2.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 정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
-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성과목표가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사실 4. 원본손실위험, 투기등급자산에의 투자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라는 사실
-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사실
- 6.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사실
-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다는 사실
- 8. MMF펀드(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예금과 달리 원금손실이 발생가 능하다는 사실
- 9. 폐쇄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유동성 제공을 위해 상장이 되더라도 거래량 부진 등의 사유로 투자자가 원하는 시기에 매매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환금 성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
- 10.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다는 사실
- 11. 외국집합투자기구인 경우 해당 국가에서 적용되는 법령 등에 따라 일부 기재항목은 기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하여 기재가 생략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대신 기재될 수 있으니 투자판단에 신중을 기하라는 사실 등 기타 투자판단시 필요한 사항
- 12.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환매금액에서 후취판매수수료가 차감되므

로 환매신청시의 예상 환매금액보다 실제 수령금액이 적을 수 있다는 사실

- 13.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 고유재산 투자금이 일정 액수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2년)이 되는 날에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소규모펀드로서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
- 14.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인 경우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한다는 사실과 상품의 구조가 복잡하고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
- 15. 다른 집합투자증권을 편입하는 경우 해당 피투자펀드에서 발생한 위험이 집합투자기구에 전이될 수 있다는 사실과 그로 인해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 16. 집합투자기구의 특성을 감안하여 유동성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경우 유동성 위험과 연관된 집합투자기구의 특성(예: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레버리지 활용, 편입자산과의 만기불일치, 비시장성·비유동성자산 투자 등) 및 그로 인해 유동성이 부족하여 환매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
- 17. 공모추가형 집합투자기구가 집합투자기구의 최초설정일 이후 6개월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15억원을 초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익자총회 또는 다른 방식의 투자자 동의 없이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대표 펀드의 자펀드로 전환된다는 사실(단, 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 고유재산 투자 금이 일정 액수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제외)
- 18. 성과보수를 정한 펀드인 경우 총보수·비용 기재 외의 성과보수가 별도로 부과되어 투자자에게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자산운용보고서 등을 통해 실제 부과된 비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
- 19. 합성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장외파생상품 계약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장외파생상품 계약 관련 비용은 [제2부 제10항 집합투자기구의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라는 사실
- 20. ESG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투자대상자산의 ESG 평가결과의 개선, 투자전략의 이행 등이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성과로 반드시 귀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 21. 기타 투자결정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

# 제18장 집합투자증권의 모집 · 매출에 관한 사항

### 제1절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

제18-1-1조(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의 정식 명칭을 기재한다.

#### 【 작성지침 】

집합투자규약상의 정식 명칭을 기재하고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를 괄호 안에 기재한다.

제18-1-2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형태별 종류, 법 제229조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자산별 종류, 개방형·폐쇄형 구분, 추가형·단위형 구분 및 법 제231조 내지 제234조의 규정에 의한 종류 등을 기재한다.

- i. "형태별 종류"는 법 제9조 제18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의 형태에 따라 투자신 탁,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유한책임회사, 투자합자조합, 투자익명 조합 여부를 기재한다.
- ii. "운용자산별<u>의</u> 종류"는 법 제229조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의 종류인 증권, 부동 산, 특별자산, 혼합자산,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여부를 기재하며, 증권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및 기타 여부를 괄호 안에 기재한다.
- iii. "개방형·폐쇄형 구분"은 개방형인지 폐쇄형인지 여부와 괄호 안에 중도 환매 가능 여부를 기재하며, 그 의미를 요약 설명한다.
- iv. "추가형·단위형 구분"은 추가형인지 단위형인지 여부를 기재하며, 그 의미를 요약 설명한다.
- v. "특수형태 표시"는 법 제231조 내지 제234조의 규정에 의한 종류형, 전환형, 모자형,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여부를 기재하며, 그 의미를 요약 설명한다.
- vi.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인 경우 시행령 제2조 제7호에 의한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기재하며, 상품의 복잡성과 위험성 등 그 의미를 요약 설명한다.
- vii.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 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19-3-3조와 제19-3-4조의 내용중 "투자대상"과 "투자전략"등을 참고하라는 안내문구를 기재한다.

## 제2절 모집 또는 매출의 일반사항

- 제18-2-1조(모집예정금액) ① 집합투자기구가 모집(이하 본문 및 작성지침 등에서 "판매"라고 표현할 수 있다)하고자 하는 예정금액 또는 좌수(집합투자기구의 법 적 형태에 따라 주수 등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 및 판매단위를 기재하며, 이와 관련하여 일부 모집이 가능하다는 사실과 추가모집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기재하고, 모집규모나 모집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그 사실을 기재한다.
  - ② 모집기간동안 판매된 금액 또는 좌수가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설정 또는 설립이 취소될 수 있다는 사실과 모집예정금액이 줄거나모집예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안내문구를 기재하고 이 경우 공시방법에 대하여도 기재한다.
- 제18-2-2조(모집의 내용 및 절차) 집합투자증권의 모집(판매)기간, 판매장소, 집합투자증권의 취득방법, 취득가액 등 모집에 관한 일반사항을 기재한다.

- i. 모집기간, 모집장소, 모집 또는 배정절차 및 방법 등 모집의 개요에 대하여 기재하며, 모집장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협회 및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참고하라는 안내문구를 반드시 기재한다.
- ii. 모집(매입)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의 내용중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에서 참고하도록 안내문구를 기재한다.
- 제18-2-3조(매출) 집합투자증권의 판매가 매출에 의한 경우에는 모집에 관한 기 재사항을 준하여 기재하되, 매출인에 관한 사항 등 매출의 경우에 기재가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여 기재한다.

## 제3절 집합투자기구의 인수,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 제18-3-1조(인수) 집합투자증권의 모집이 인수인을 통한 모집인 경우 인수인의 명칭과 주소, 인수 집합투자증권의 종류와 수, 인수의 방법, 인수의 대가 및 인수인의 의견 등 인수와 관련된 내용을 기재하며, 인수인별로 인수방법 등이 다른 경우에는 인수인별로 그 내용을 기재한다.
- 제18-3-2조(상장 및 매매) 집합투자증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될 예정이거나 상장이 된 경우 해당 증권시장의 명칭, 상장(예정)일 등 상장에 관한 사항과 상장이후 해당 증권시장에서의 거래방법 등 매매에 관한 일반사항을 기재하고, 상장이 된 경우에도 거래량부진 등의 사유로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환금성이 크게 제약받을 수 있다는 안내문구를 기재한다.

- i. 상장에 관한 사항은 해당 증권시장의 명칭, 상장신청일, 상장일(또는 상장예정일) 등을 기재한다.
- ii. 증권시장에서의 매매에 관한 사항은 거래가격의 결정방법과 거래방법,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요인 등을 투자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한다.

## 제19장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 제1절 일반사항

- 제19-1-1조(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규약상의 정식 명칭 및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를 기재하고, 종류형인 경우 종류별 명칭과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를 기재하다.
- 제19-1-2조(집합투자기구의 연혁) 투자자가 집합투자기구의 변동사항을 알 수 있도록 집합투자기구의 최초설정일 및 그 이후 주요 변동사항에 대하여 일자와 주요 내용을 간략히 기재한다.

#### 【 작성지침 】

주요 변동사항은 최초설정일, 법 제182조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 사항 등을 포함하되, 최초 설정일을 포함하여 최근 5년 동안의 내용으로 기재할 수 있다.

제19-1-3조(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집합투자기구가 존속하는 신탁계약기간을 기재하되, 존속기간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한다.

- i. 계약(존속)기간이 사전적으로 확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기간을 기재한다.
- ii. 조기상환(해산) 가능일자가 사전적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 모든 조기상환 가능일자를 명시하고, 조기상환(해산)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신탁계약기간이 단축될 수 있음을 명시한다.
- iii. 법령 또는 집합투자규약상의 규정에 따라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지(해산)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해산)될 수 있음을 안내한 후 자세한 내용은 제 22-2-1조(집합투자기구의 해지(해산)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도록 안내문구를 기재한다.
- iv.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은 투자자가 투자하고자 하는 기간, 즉, 일반적인 용어로 저축만기와 다를 수 있다는 안내문구를 기재한다.

### 제2절 집합투자기구의 운용회사 및 운용인력에 관한 사항

제19-2-1조(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기구의 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사항을 기재하되, 운용(지시)업무를 다른 회사에게 위탁한 경우 그 수탁회사에 대한 사항을 추가로 기재하고 업무위탁에 따른 책임은 원래의 집합투자업자에게 있다는 안내문구를 기재한다.

#### 【 작성지침 】

- i. 집합투자업자의 법상 정식명칭을 기재한다.
- ii. 집합투자업자가 운용(지시)업무 등을 다른 업자에게 위탁한 경우 해당 업무를 수탁한 업 자와 위탁한 업무의 범위에 대해서도 기술한다.
- iii.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21-1-2조(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라는 안내문구를 기재한다.
- 제19-2-2조(운용전문인력) 집합투자기구의 재산을 운용하는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및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하고, 운용(지시)업무를 위탁 받은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기재한다.

- i. 운용전문인력은 단독운용을 하는 경우 해당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며, 팀 운용을 하는 경우에는 책임운용인력 및 부책임운용인력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이 경 우 "책임운용인력"이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이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한다.
- ii.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에는 공시서류 작성기준일 현재 운용전문인력의 이름, 생년, 직위, 운용경력년수(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기재. 단, ESG 집합투자기구인 경우 과거 ESG집합투자기구의 운용기간을 구분하여 기재) 및 이력(과 거 10년간 근무회사, 주요담당업무 및 재직기간 등을 기재한다)을 약술하고, 팀운용을 하는 경우 책임운용인력 및 부책임운용인력을 구분하여 기재한다.
- iii.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에는 공시서류 작성기준일 현재 운용전문인력이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의 수 및 운용규모(수탁고), 운용전문인력이 운용중인 동종집합투자 기구의 종류와 최근 1년 및 2년간 연평균 수익률. 자산운용사가 운용중인 동종집합투자

기구의 종류와 최근 1년 및 2년간 연평균 수익률 등을 기재한다. 이 경우 동종집합투자 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 성과를 의미하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한다는 사실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 iv. "운용경력년수 및 이력"은 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기재한다.
- v. 운용전문인력이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은 협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음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 vi.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운용 또는 운용(지시)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그 다른 집합투자 업자의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기재하되, 해외자산 운용을 위탁한 경우나 외국집합투자기구로서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에 대한 기재가 곤란한 경우 그 사유를 밝히고 운용팀 또는 그와 유사한 조직에 관한 내용으로 기재할 수 있다.
- vii. 운용전문인력이 운용 중인 집합투자기구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의 규모 및 개수를 기재한다.
- viii. 운용전문인력이 변동된 경우 최근 3년 동안의 변동내용을 기재한다.

### 제3절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제19-3-1조(집합투자기구의 구조)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를 간략히 나열한 후 그 구조를 설명하되, 종류형·전환형·모자형집합투자기구나 부동산집합투자기구,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와 같이 집합투자기구의 구조가 복잡한 경우 투자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도표 등을 이용하여 자세히 설명한다.

### 【 작성지침 】

- i.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종류별 차이점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기재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기구 명칭에 한글로 된 종류(클래스) 명칭을 부기하고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 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된다는 안내문구를 기재한다. 판매수수료 부과방식에 따른 종류별 특징 작성시 예상 투자기간에 따라 종류 별로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예: 1년 6개월, 2년 등) 및 종류별 기간의 비용구조(예: n 년 이전에 환매할 경우 종류 C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를 붉고 굵은 글씨체로 기재한 다. 또한 판매경로에 따른 종류의 특징 작성시 오프라인과 온라인간 투자비용 차이와 투자권유서비스 제공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붉고 굵은 글씨체로 기재한다.
- ii. 전환형 집합투자기구인 경우에는 전환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이 경우 전환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은 주된 투자대상, 투자전략, 투자위험 및 기타 중요 유의사항 등에 대하여 간략히 기재한 후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신고서 내 용을 참조하도록 신고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신고서 제출일 등을 기재한다.
- iii. 모자형집합투자기구인 경우, 모집합투자기구 각각의 주된 투자대상, 투자전략, 투자위험 및 기타 중요 유의사항 등에 대하여 간략히 기재한다.
- iv. 국내·외 집합투자투자기구를 투자대상으로 하는 재간접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집합투자기구 구조도를 기재한다.

#### < 작성사례 : 종류형 집합투자기구 >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 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각 종류별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	·(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수수료 선취(A)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 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n년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n년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판매 수수료	수수료 후취(B)	집합투자증권 환매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 집합투자기구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n년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n년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b>5.5</b> -7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 판매수수료후취형(B) 또는 판매수수료선후취형(AB)
	수수료	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미징구(C)	약 n년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b>n년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b>
		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 및 환매시점에 판매수수료가 각각 일시에 징구되는 반면
	수수료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 집합투자기구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
		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n년이 되는 시점입니다.
	선후취(D)	따라서 n년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
		불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온라인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b>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b>
		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e)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b>온라인으로 판매되</b>
	오프라인	
		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판매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
경로	온라인	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슈퍼(S)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
		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자신이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증권을 직접 판매하며 다른 판
	직판(J)	매회사를 통하여 판매하는 집합투자기구에 비해 일반적으로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
	격판())	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
		서비스는 (제공됩니다. 제공되지 않습니다.)
	보수체감 (CDSC)	판매수수료미징구형(C) 집합투자기구이며 이연판매보수(CDSC) 프로그램에 따라 판
		매보수를 적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전환 청구없이 집합투자증권의 보유기간이 경과
		함에 따라 판매보수가 낮은 종류의 집합투자기구로 자동 전환됩니다.
	무권유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기구를 매수하는 경우 일반적인 창구 판매수수료
	저비용(G)	
기타	개인연금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
714	(P1)	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IRP)를 통해 매입이 가능
	(P2)	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주택마련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H)	
	•••	(나머지 종류의 집합투자기구에 대해 기술)

제19-3-2조(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고자 하는 주된 투자대 상자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투자목적에 대하여 기재하되,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유의사항을 기재 한다.

### 【 작성지침 】

i. 국내·외 집합투자투자기구를 투자대상으로 하는 재간접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피투자펀드의 투자 필요성· 피투자펀드의 선정 기준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한다. <예시: ⑧피투자펀드의 투자 필요성은 피투자펀드의 투자대상에 따른 투자목적 (임대수익·자본차익·이자수익 등) 및 기타 투자 필요성(펀드의 안정성, 신규 투자 경로 발굴, 포트폴리오 다양화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⑩피투자펀드의 선정 기준은 피투자펀드 운용사의 재무건전성·투자실적 또는 피투자펀드의 수익성·안정성 등 피투자펀드 선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기재>

- ii. 외국 집합투자투자기구를 투자대상으로 하는 재간접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외국펀드에 대한 실사(Due diligence) 실시여부 및 실사 방법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한다.
- iii. ESG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추구하거나 달성하고자 하는 ESG 목표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 제19-3-3조(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① 집합투자규약의 투자목적상 주된 투자 대 상자산 및 집합투자재산의 일정비율 이상이 투자되는 자산에 대하여 투자대상의 종류, 투자한도, 투자대상 조건 등의 내용을 기술한다.

- i. 투자대상자산은 지분증권(비상장기업 발행분 별도), 채권, 어음 및 채무증서등, 자산유동 화증권(ABS)·주택저당채권유동화증권(MBS)·후순위채권(CBO)등, 외화표시증권, 파생 상품, 집합투자증권, 부동산, 특별자산과 기타 운용방법인 증권의 대여·증권의 차입·단 기대출·금융기관 예치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 ii. 채권, 어음 및 채무증서등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 가능 신용등급 및 투자한도를 구체적 으로 기재한다.
- iii.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장내·외파생상품별 및 기초자산별(예: 증권, 금리, 통화, 상품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로 투자의 목적(예: 헤지 또는 헤지외 목적)과 투자한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장외파생상품인 경우 발행자 및 발행자의 신용등급을 기재한다.
- iv. 부동산의 경우 토지, 건물, 아파트, 부동산 대출 등으로 구분하고 부동산의 관리, 개량, 개발 및 임대. 대출 등의 운용방법별로 투자 내용 및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 v. 기타 운용방법으로 증권을 대여하거나 차입하는 거래가 가능할 경우 증권대차 거래의 목적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 vi. 모자형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자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모집합투자기구 각각의 주된 투자

대상자산 및 모집합투자재산의 일정비율 이상이 투자되는 자산에 대하여 투자대상의 종 류, 투자한도, 투자대상 조건 등의 내용을 기술한다.

- vii. 국내·외 집합투자투자기구를 투자대상으로 하는 재간접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피투자 펀드의 종류와 특성(주된 투자대상, 펀드 종류, 펀드 규모, 운용회사 등) 및 편입비중 한 도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한다.
- viii. ESG집합투자기구인 경우 ESG와 관련된 투자대상의 종류, 투자한도, 투자대상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 ② 집합투자재산 운용과 관련하여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에서 그 운용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그 투자제한 내용과 투자제한에 예외가 있는 경우 그 예외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다.
- 제19-3-4조(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①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운용전략, 투자방침, 위험관리 전략 등에 대하여 기재한다.

- 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운용전략)은 중요성 순서에 따라 기술한다. 이 경우 투자전략 이란 투자목적의 실행을 위해 사용되는 투자방침·기법 등을 말하며, 투자전략의 중요성은 투자전략에 따라 투자하게 되는 자산의 규모 및 이에 따른 위험 규모 또는 손실 가능성의 크기를 말한다.
- ii.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은 투자(운용)전략과 관련된 위험에 대한 관리방법 및 관리체계 등에 대하여 자세히 기재한다. 특히, 외화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환혜지 여부, 환혜지 방법, 목표 혜지비율 및 환혜지의 장단점, 환혜지의 비용(산출이 불가능하여 기재가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기재) 및 펀드수익률에 미치는 효과 등을 기재한다. 환혜지 비용 및 효과는 직전 회계기간의 실적 또는 혜지전략이 유사한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실적을 추정치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석으로 기재한다.
- iii.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주된 투자대상국가의 경제상황, 투자대상자산의 업종현황등 주요 투자대상자산의 가치판단에 필요한 추가적인 사항을 기재한다(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투자대상으로 하는 재간접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외국펀드의 설정지 국가 및 외국펀드 설정지 국가의 감독기관 등을 포함한다)
- iv. 비교 또는 참조지수나 수익률을 기재하되, 특성상 비교 또는 참조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비교 또는 참고지수나 수익률이 없으므로 투자판단시 한층 더 유의하라는 안

내문구를 기재하고 비교 또는 참조지수나 수익률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으며, 비교 또는 참조지수나 수익률에 관하여 과거 추이 등 객관적인 내용을 기재한다.

- v. 비교 또는 참조지수나 수익률을 정한 사유를 기재하고, 이 지수나 수익률은 다른 지수 나 수익률로 변경될 수 있다는 내용과 변경시 투자자에 대한 공시방법 및 내용에 대하 여 기재한다.
- vi. 모자형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자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모집합투자기구의 주요 투자전략 및 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자집합투자기구의 투자비중에 대해 기술한다.
- vii. 특정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형 집합투자기구일 경우 추종 인덱스의 내용, 허용 추적오 차의 범위, 포트폴리오 재조정 주기 및 기준 등에 대하여 기술한다. 초과수익을 추구하는 인덱스형 집합투자기구(enhanced index fund)의 경우 초과수익을 얻기 위한 투자전략에 대하여 기술한다.
- viii. 적극적인 매매전략의 구사여부를 명시하고 거래비용에 미치는 효과에 대하여 설명한다.
- ix. 투자전략 등을 기재하는 경우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확정적인 표현 등으로 투자자의 오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x. 국내·외 집합투자투자기구를 투자대상으로 하는 재간접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피투자 펀드의 주요 투자전략 및 피투자펀드에 대한 투자비중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한다. 피투자펀드의 위험관리전략으로 주기적인 운용보고서 입수여부, 운용보고서의 주요 내 용, 추가 운용정보에 대한 요청 권한 보유여부 등을 기재한다.
- xi. 유동성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조치계획 등을 기재한다.
- xii. ESG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투자목적의 달성을 위한 투자전략과 ESG 요소와의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 가. 투자대상자산의 선정과 관련하여 고려하는 ESG 요소(전부 또는 일부), ESG 요소에 대한 평가 방법 및 절차, 비교 또는 참고지수 선정 시 그 사유 및 지수에 대한 설명, 국내외 ESG 분류체계를 사용하는 경우 그 내용 등 운용과정 전반에 걸쳐 ESG 요소가 반영되는 프로세스를 체계적으로 설명한다.
- 나. ESG 요소에 대한 평가방법은 자체 평가 방법과 외부 평가기관이 제공한 데이터를 활용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개요, 평가 및 리서치 업무 관련 전담 조직 또는 인력의 운영 여부, 투자대상 선정 시 활용 방법 등 주요 내용을 설명한다.
- 다. 투자의사결정 시 재무적 요소 등 다른 요소를 고려하는 경우 ESG 요소와 해당 요소 간

고려비중에 대하여 기재한다.

- 라. 투자목적의 달성을 위해 주주활동을 주요 투자전략으로 활용하는 경우 추구하는 주주활 동의 목표, 계획 등을 설명한다.
- ② 집합투자기구의 수익구조에 관한 사항은 투자자가 얻을 수 있는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는 과정에 대하여 자세히 기재하되, 파생상품을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나 모자형집합투자기구 등 특별한 형태의 수익구조를 갖는 경우 도표 또는 그래프 등을 이용하여 자세히 기재한다.
- 제19-3-5조(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① 투자자들이 집합투자증권을 투자할 때 직면할 수 있는 투자위험에 대하여 일반위험, 특수위험 및 기타 투자위험으로 구분하여 기재하되, 각 위험에 대한 기재내용은 투자자가 알기 쉽도록 풀어서 쓰고, 위험의 원인과 결과가 포함되어야 하며, 발생가능성이 높고 중대한 위험순으로기재하여야 한다.
  - ② 각 위험에 대한 기술에 앞서,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사실과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의 경우 수익구조가 은행의 예금과 유사하지만, 예금과 달리 원금손실이 발생가능하다는 안내문구를 기재하고, 법 제93조 규정에 의한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위험에 관한 지표의 개요 및 위험에 관한 지표가 공시된다는 사실에 대하여 기재한다.
  - ③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인 경우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한다는 사실과 판단 근거를 기재한다.
  - ④ 일반위험에는 집합투자기구의 시장위험(주식가격 변동위험, 금리변동위험 등), 신용위험(부도위험 등), 환율변동위험 등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가치에 직접 영향을 주는 위험에 대하여 기술하되, 해외자산 등 외화표시 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환율변동위험에 관하여 보다 자세하게 기재한다.
  - ⑤ 특수위험은 일반위험에 포함되지 않은 위험 중 국가위험, 거래상대방위험 등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고유한 형태 또는 투자전략 및 투자방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위험을 기술한다.

- i. 한 국가 또는 몇 개 국가, 한 업종 또는 몇 개 업종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일 경우 해당 국가의 경제여건 및 시장현황 또는 해당 업종의 상황에 따른 위험에 대하여 간략 히 기술하고 이러한 경제여건 등은 항상 급변동이 가능함을 기술한다(외국 집합투자투자 기구를 투자대상으로 하는 재간접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외국펀드 설립지 국가 위험, ⑥주요 투자대상 국가 위험, ⑥외국세법에 의한 과세위험, ⑥외국 운용사 관련 위험 등을 기재한다)
- ii. 부동산·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 등의 경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특수한 투자위험에 대해 설명한다.
  - 가.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인·허가 실패 위험, 토지매입 실패 위험, 미분양 위험, 채무불이행 위험(자금대여의 경우) 등과 해당 부동산 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사업성 평가결과 및 예상 사업일정에 대해 기술하되 사업일정은 시장여건 등에 따라 단축 또는지연될 수 있음을 명시한다.(부동산개발관련 금전채권등에 투자하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도 동일)
  - 나. 대출형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경우 借主 및 시공사의 신용등급(있는 경우에 한함)을 기재하고, 시공사가 지급보증 또는 채무인수를 하는 경우 그 내용, 동 시공사의 총 지급보증 또는 채무인수 규모와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대비 비율을 함께 기재한다.(부동산개발관련 금전채권을 매입하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도 동일함)
- iii. 모자형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자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모집합투자기구 각각의 투자 위험에 대하여 일반위험, 특수위험 및 기타 투자위험으로 구분하여, 발생가능성이 높고 중대한 위험순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iv.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운용전략, 투자환경, 보유자산 등에 따른 유동성 리스크 현황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 v. 합성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장외파생상품 관련 투자위험(예:수익조건·계약조건 변경 위험, 거래상대방 위험, 상장폐지 위험 등), 지수산출방식의 변경 위험 등 합성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기재한다. 또한, 기초지수 수익률을 수취하기 위해 체결하는 장외파생상품 계약에 따라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하는 비용(스왑 스프레드 등)에 대해 관련 구조를 설명하고 그 수준(연환산)을 기재한다. 자금비공여형(unfunded swap) 구조의 경우에는 해당 상품의 구조 및 특성 등을 감안하여 관련 비용을 기재할 수 있다. 합성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설정 이후 최초 회계기간이 도래하기 전에는 장외파생상품 계약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최초 회계기간 도래(최초 결산) 이후에는 실제 발생한 비용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 vi. ESG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투자대상자산의 가치 변동성 외에 ESG 평가결과의 변동 등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특수한 운용 전략 및 투자방침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기재한다.
- ⑥ 기타 투자위험은 일반위험 및 특수위험 외에 일반적으로 발생가능성이 낮

거나 집합투자기구의 가치변동에 영향이 비교적 작은 위험이나 투자자가 투자의사 결정시 참고하여야 할 위험들에 대하여 기술한다.

#### 【 작성지침 】

- i. 유동성 제고를 위하여 집합투자증권을 상장시킨 경우에도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거래 부 진 등의 사유로 환금성이 낮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재한다.
- ii. 환매금지 집합투자기구가 아닌 경우에도 투자대상 자산이 장외파생상품 등 유동성이 낮은 자산일 경우 환매에 대응하기 위한 자산의 중도매각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고, 중도매각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재한다.
- iii. 환매청구일과 환매기준가격 적용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시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기준 가격 적용일까지의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된다는 사실을 기 재한다.
- iv. 추가형 투자신탁의 경우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이거나,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투자자의 동의 없이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재한다.
- v. 투자회사의 경우 최저순자산액이 10억원 미달하고 3개월이 경과될 때까지 순자산액 미달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투자자의 동의 없이 해산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재한다.
- vi. 기타 운용방법으로 증권을 대여하거나 차입하는 거래가 가능할 경우 증권대차 거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미상환, 담보부족 위험 등에 대해 기재한다.
- ⑦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운용성과에 따른 실제수익률 변동성 등을 고려하여 최소 6단계 이상의 투자위험 등급 분류상 해당되는 등급과 부여 사유, 그에 따른 적합한 투자자 유형에 대하여 기술한다.

- i. 투자위험 등급은 최소 6단계[예: 매우 높은 위험(1등급), 높은 위험(2등급), 다소 높은 위험(3등급), 보통 위험(4등급), 낮은 위험(5등급), 매우 낮은 위험(6등급)] 이상으로 구분한다.
- ii. 설정된 후 3년이 경과한 집합투자기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수익률 변동성[예 :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 또는 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 예상액]을 기준으로 위험등급을 구분한다.
- iii. 설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집합투자기구는 추후 실제 수익률 변동성으로 등급분류

기준이 변경되면서 위험등급이 변경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재한다.

- iv. 위험등급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전 위험등급 및 변경사유를 상세히 기재한다.
- v. 부여사유는 등급분류기준 및 집합투자기구가 그 등급에 해당하는 사유를 기재한다.
- 제19-3-6조(타 집합투자증권의 편입) 집합투자기구에 편입한 타 집합투자증권에서 발생한 위험이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전이될 위험이 높은 구조인 경우에는 편입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투자전략, 기준가 산정방법 등에 대하여 기재한다.

#### 【 작성지침 】

- i. 피투자펀드의 편입비중의 한도 및 피투자펀드의 종류와 특성을 기재하고, 투자전략에 비추어 피투자펀드에 대한 투자가 필요한 이유, 피투자펀드 투자에 따른 이익, 피투자 펀드 선정 기준 및 선정과정에서 거치는 실사(due diligence) 등을 설명한다.
- ii. 피투자펀드의 특성에는 최종 기초자산을 포함한 투자전략, 기준가 산정방법, 회계감사 실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투자자가 알아야 할 정보를 포함하여 기재한다. 이 경우 최종 기초자산의 구체적인 종목을 적시하기 곤란한 때에는 그 자산의 유형과 비중으로 표시하되, 투자자로 하여금 피투자펀드의 투자전략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iii. 피투자펀드가 해외에서 설정된 펀드인 경우 그 피투자펀드의 설정지 국가, 해당 국가의 감독기관, 피투자펀드의 기준가 산정 방법 등을 기재한다.
- iv. 다만, 피투자펀드가 공모 방식의 집합투자기구인 경우에는 피투자펀드의 주된 투자대상, 투자전략, 운용사 및 이외의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피투자펀드의 투자설명서 열람방법, 홈페이지 주소 등) 등을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 v. 동조 기재 필요사항 중 이 서식 다른 부분에 이미 기재된 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을 적시하여 이를 참조하라는 뜻을 기재하고 구체적 사항의 중복 기재는 생략할 수 있다.

# 제4절 집합투자기구 운영기준에 관한 사항

- 제19-4-1조(매입, 환매, 전환기준) ① 집합투자증권의 매입과 관련하여 매입방법 및 절차, 매입 기준가격, 매입의 취소 및 정정 등 매입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작성지침】
  - i. 집합투자증권의 매입방법 및 절차, 매입신청 가능시간, 매입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장마감후 거래(Late Trading), 매입청구 취소, 정정의 가능여부 및 가능시간 등에 대하여기술한다.

- ii. 집합투자증권의 매입과 관련하여 투자자가 알아야 할 추가적인 유의사항에 대해 기술한다.
- iii.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종류별로 매입자격에 제한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기재한다.
- iv. 집합투자기구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일 경우 판매시 과거가격이 적용되는 경우 에 대하여 기술한다.
- v. 회사형(투자조합형을 포함한다) 집합투자기구로 Capital call방식으로 출자를 하여야 하는 경우 출자시기 등 출자이행 관련 내용에 대하여 상세히 기술한다.
- ② 환매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환매방법 및 절차, 환매 기준가격, 환매의 취소 및 정정 등 환매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환매시 부과되는 수수료 및 각종 제한사항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한다.

- i. 환매방법 및 절차, 환매신청 가능시간,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환매대금 지급시기, 환매수수료, 장 마감후 거래(Late Trading), 환매청구 취소, 정정의 가능여부 및 가능시간 등에 대해 기술한다.
- ii. 집합투자증권의 일부환매, 환매제한, 환매연기, 부분환매의 사유 및 절차 등 환매와 관련하여 투자자가 알아야 할 추가적인 유의사항에 대해 기술한다.
- iii. 집합투자기구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일 경우 환매시 과거가격이 적용되는 경우 에 대하여 기술한다.
- iv. 집합투자기구가 집합투자기구 지분의 빈번한 환매시 투자자에게 적용하는 불이익이 있는지와 빈번한 환매를 억제하기 위한 방침을 정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기술한다.
- v. 환매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 해당 환매수수료율을 적용한 사유 및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기술한다.
- vi. 환매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에 대하여 기술한다.
- vii. 투자자의 직관적 이해를 돕기 위해 환매 가능 여부 및 환매수수료 부과 여부를 3단계로 구분(중도환매 불가/중도환매시 비용발생/중도환매 허용)하여 그래프, 표, 그림 등을 이용하여 작성한다.
- ③ 다른 집합투자기구나 동일 집합투자기구내에서 다른 종류(클래스)로 전환이 가능한 펀드 등의 경우 전환절차 및 내용 등에 대하여 기재한다.

- i. 전환 절차 및 방법, 전환 기준가격, 전환관련 수수료, 전환의 제한사항, 전환의 취소 및 정정, 기타 유의사항 등 전환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자세히 기재한다.
- ii. 전환시 전환회수 제한, 전환수수료 유무, 전환가능 펀드나 클래스, 전환시 수수료 계산 방법 등 펀드의 전환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추가로 상세히 기재한다.
- iii.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같은 종류(Class)별로 전환이 가능하며 다른 종류(Class)의 클래스로 전환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 및 다른 종류(Class)의 클래스로 전환될 경우 전환 가격 및 수수료 등이 상이할 수 있다는 점을 추가적으로 설명한다.
- iv. 연금펀드의 경우 투자자가 원하는 경우 은행이나 보험회사의 연금상품으로 계약이전할 수 있다는 내용과 그 절차 등을 기재한다.
- 제19-4-2조(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① 집합투자증권의 가 치를 표현하는 기준가격의 산정방법, 산정주기, 공시장소 및 공시주기 등에 대 하여 기재한다.

#### 【 작성지침 】

- i.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종류(Class)별로 기준가격이 다른 내용 및 그 사유를 기재하고, 모자형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자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모집합투자기구의 기준가 격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여 기재한다.
- ii.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는 날(예 : 공휴일)에 대하여 설명하고,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 격변동으로 인하여 펀드재산 가치가 변동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사항을 기재한다.
- iii. 국내·외 집합투자투자기구를 투자대상으로 하는 재간접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피투자 펀드의 기준가격 산정방법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한다.
- ② 집합투자재산의 가치에 대한 평가방법을 기술하고, 일반적인 평가방법 이외 예외적인 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그 내용을 자세히 기재한다.

### 【 작성지침 】

i.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평가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하되 법령 등에서 평가가 곤란한 자산의 평가기준 등을 별도로 정한 경우 이에 대하여 추가로 기술한다.

- ii.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와 관련하여 별도의 평가위원회가 있는 경우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 등에 대하여 간략히 기재한다.
  - iii. 장외파생상품, 특별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시 금융 위에 제출한 평가방법서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기술한다.
- iv. 자집합투자기구의 경우 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평가방법에 대해서도 기술한다.
- 제19-4-3조(보수 및 수수료) ① 판매회사는 법 제76조제4항에서 정한 판매보수 및 수수료와 관련하여 해당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투자자에게 교부하고 설명한다는 안내사항을 기재하고, 이연판매보수(CDSC) 프로그램에 따라 판매보수를 적용하는 경우 그 적용기준 및 내용을 자세히 기재한다.
  - ② 투자자가 직접 부담하는 판매·환매·전환수수료에 대하여 수수료율 및 부과기준을 표를 이용하여 자세하게 기재하고, 수수료를 차등 부과하는 기준이 있는 경우 그 자세한 내용을 설명한다.

수수료 구분	수수료율	부과기준
선취/후취 판매수수료		
환매수수료		
전환수수료		

- i. 판매방법,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판매금액, 투자기간 등을 기준으로 판매수수료를 차등 부과하는 경우 차등부과 기준 및 차등 부과하는 내용에 대하여 기재한다.
- ii.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종류(Class)간 수수료 차이를 비교한다
- ③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에 관한 사항을 표를 이용하여 기재한다.

구분	지급비율(연간, %)	지급시기
집합투자업자 보수		
판매회사 보수		
수탁회사 보수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총 보수	
기타비용	
총 보수・비용	
(동종유형 총 보수)	
<b>총 보수ㆍ비용</b>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 i.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경상적·반복적으로 지출되는 '기타비용(증권거래 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에 대한 비율을 함께 기재한다. 기타비용 비율은 직전 회계기간의 실적 또는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이 유사한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실적을 추정치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석으로 명시한다.
- ii. 기타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증권 거래비용 및 금융비용과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발행분담금에 대하여 그 내용 및 금액을 주석사항으로 기재한다.
- iii. 집합투자기구가 부담하는 총보수·비용 비율(TER : Total Expense Ratio)을 별도로 기재한다. 총보수·비용 비율은 집합투자기구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 iv. 성과보수(「금융투자업규정」제4-6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별도 성과보수 방식을 택한 경우), 부동산특별용역보수 등 특수한 형태의 보수가 약정된 경우 보수 산정방식, 보수한도, 기준 지표, 지급시기,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투자운용인력 등의 경력과 운용 성과 등을 기재하고,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가 그렇지 아니한 집합투자기구보다 높은 투자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유의사항을 기재한다.
- v.「금융투자업규정」제4-6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성과연동형 운용보수 방식을 택한 경우,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성과와 상관 없이 수취하는 운용보수(기본운용보수)를 제19-4-3조 제3항 표중 '집합투자업자 보수'란에 기재하고,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가 그렇지 아니한 집합투자기구보다 높은 투자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성과보수의 기준지표, 산정방식 등의 세부내역은 제4항에 따른 표를 참조하라는 유의사항을 본문에 기재한다.
- vi.다른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합성 총보수·비용비율(Synthetic Total Expense Ratio)을 산출하여야 한다. 합성 총보수·비용비율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 (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하되,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기타비용을 알수 없을 경우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되는 기타비용이 포함되지 않았음을 명시한다.

- vii. 모자형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합성 총보수·총비용비율 산출하여야 한다.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 viii.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종류(class)별로 작성하되, 투자자가 복수의 종류에 대해 선택이 가능한 경우(예: 종류 A 선취판매수수료 부과, 종류 C 판매보수만 부과 등) 투자자가 예상 투자기간에 따라 유리한 종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종류별로 총 보수·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예: 1년 6개월, 2년 등)에 대하여 기재한다.
- ix. 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서 부동산의 관리·개발·개량·임대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위 탁계약의 개요 및 관련비용에 대해 기술한다.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에서 선박의 관리·개 량·대선을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도 동일하다
- x. 종류 A, 종류 Ae, 종류 C, 종류 Ce에 대해서는 종류별 동종유형 총 보수를 기재하고, '동종유형 총 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 균 총 보수비용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 xi. ESG집합투자기구의 운용과 관련하여 제3자의 ESG 관련 평가 결과를 활용하기 위해 집합투자재산으로 평가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ESG 평가와 관련된 계약내용(계약기간, 평가비용, 비용지급주기) 및 실제 지급한 평가비용 등을 주석사항으로 기재하고, 집합투자재산으로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명시한다.
- ④ 「금융투자업규정」제4-65조 제1항 제2호의 방식에 따라 성과연동형 운용보수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보수 및 지급내역에 관한 사항을 표를 이용하여 별도로 기재한다.

기준지표	지표 보수 산정방식		산출 주기	지급 시기	지급내역 (직전 회계연도 기준, %)			
		(%)	, ,	, ,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 i. 보수산정방식에는 운용보수와 성과보수 각각의 비율(기본운용보수와 성과운용보수 각각의 비율),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성과가 기준지표의 성과를 하회하는 경우와 하회하는 경우의 산정방식.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등을 상세히 기재한다.
- ii. 지급내역은 직전 회계연도 기준으로 분기별(회계연도 시작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후 3개월마다)로 성과보수가 실제로 지급된 보수율을 기재한다.
- ⑤ 수수료 및 보수에 관하여 투자자가 실제로 부담하게 되는 판매수수료, 보

수 및 비용에 대한 합계금액을 추정한 자료를 예시표를 작성하여 설명하되,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종류별로 작성한다.

종류	투자기간	1년	2년	3년	5년	10년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 【 작성지침 】

수수료 및 보수의 연간기준 예시표를 작성시 투자자가 1,000만원(표시통화가 외화인 경우 1,000만원 수준의 해당통화 금액)을 투자했을 경우 부담하게 되는 판매수수료 또는 보수·비용을 판매수수료율과 총 보수·비용비율 등을 이용하여 1년, 2년, 3년, 5년, 10년 단위로 예시한다. 이 경우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판매수수료율 또는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한 것으로 가정하되, 다만,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실제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명시한다. 그리고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기타비용을 알 수 없어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되는 기타비용이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실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제19-4-4조(이익 배분 및 과세) ① 집합투자기구의 재산운용으로 발생한 이익의 분배 기준·시기·방법 등에 대하여 기술한다.

### 【 작성지침 】

- i. 집합투자기구 이익의 현금분배 또는 분배금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의 재매입(재투자) 여부, 이익금 을 초과하여 분배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기재하며, 분배의 기준시기·방법 등에 대하여 기술한다.
- ii. 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시 상환금등의 지급, 상환금등의 시효 등 집합투자기구의 분배와 관련하여 투자자가 알아야 할 추가적인 유의사항에 대해 기술한다.
- iii. 분배금의 지급중단이 가능한 경우 그 사유 및 지급중단시 투자자에 대한 고지 관련사항, 이익을 초과하여 분배하는 경우 투자자가 알아야 할 사항(예: 기준가격의 하락, 보유좌수의 감소 등) 등에 대해 기술한다.
- ②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세금은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와 투자자에 대한 과세로 나누어 각각의 내용 및 투자수익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 투자자에 대한 과세에 대하여 기술할 때는 사례를 들어 설명한다.

- i. 집합투자기구의 소득 중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 및 세율을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와 투자자에 대한 과세로 구분하여 소득원천별로 체계적으로 기술한다.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의 경우 소득에 대한 세금 이외에 집합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재산세 등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적용되는 기타 세금에 대해서도 회계처리 방법, 감면혜택의 적용 여부 등을 포함하여 기술한다.
- ii. 투자자에 대한 과세에 대하여 기술할 때는 일반기준가와 과표기준가와의 차이 및 과표 기준가가 공시된다는 사실에 대하여 기술하고 투자자에 대한 과세 사례를 포함한다.
- ii. 투자자에 대한 과세내용에 과세 측면에서 투자자에게 불리한 사항(예 : 투자손실이 발생 했을 경우에도 과세되는 경우)이 있는 경우 이를 상세히 기술한다.
- iii. 세제혜택이 적용되는 집합투자기구(장기주택마련펀드, 고수익고위험 펀드 등)의 경우 가입자격·가입최소기간·자산운용제한 등 세제혜택을 적용받기 위한 요건, 세제혜택 등에 대한 내용과 세제혜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받는 불이익에 대하여 자세히 기술한다.

### 제5절 집합투자기구의 조직에 관한 사항

제19-5-1조(발기인 및 감독이사) 투자회사의 발기인 및 감독이사에 대하여 이름(상호),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요경력, 소유주식수 및 금액 등을 기재하고, 감독이사에 관한 내용에는 지급받기로 한 보수지급 기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 i. 발기인인 경우 법 제8조제1항의 결격요건 해당여부를, 감독이사는 법 제24조의 결격요 건 해당여부를 기재한다.
- ii. 주요경력은 주요근무처, 근무기간 및 직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 제20장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 제1절 재무정보

- 제20-1-1조(재무정보) ① 집합투자기구의 재무에 관한 사항을 요약 재무정보(요약대 차대조표, 요약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로 나누어 작성한다. 다만, 회계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는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된 감사보고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음을 주석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② 요약재무정보에는 재무제표 작성시 적용된 회계기준과 공시대상기간의 재무정보에 대한 회계감사 여부 및 감사의견, 매매회전율 등을 추가로 기재한다.

### 요약대차대조표

 항 목	제 × 기	제 ×-1 기	제 ×-2 기
४ ५	xxxx.xx.xx.	xxxx.xx.xx.	××××.××.
운용자산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실물자산			
현금 및 예치금			
기타 운용자산			
기타자산			
자산총계			
운용부채			
기타부채			
부채총계			
워본			
수익조정금			
이익잉여금			
자본총계			

### 요약손익계산서

항목	제 × 기	제 ×-1 기	제 ×-2 기
	××××.××.	××××.××.××.	××××.××.
운용수익 이자수익 배당수익 매매/평가차익(손)			

기타 수익		
운용비용		
관련회사 보수		
매매수수료		
기타 비용		
당기순이익		
매매회전율		

- i. 최근 3회계연도에 관한 자료를 작성하되, 최근 회계연도는 6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에 그 반기실적을 기재하고, 6개월 미만 경과시에는 직전 회계연도를 최근 회계연도로 기재한다. 다만, 반기말(결산일) 이후 1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직전 반기말)를 최근 회계연도로 기재할 수 있다.
- ii. 요약 재무정보의 기재항목의 삭제, 추가시 그 사유를 주석사항으로 기재한다.
- iii. 요약 재무정보 사항중 매매회전율이란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운용기간동안 매도한 주식가액을 같은 기간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식가액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1회계연도동안의 평균적인 주식투자 규모가 100억원이고, 주식 매도금액 또한 100억원인 경우 매매회전율은 100%(연기준)로 한다.(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MMF)의 경우 기재 불요)
- iv. 매매회전율 산출 관련 주식 매수·매도 금액, 보유주식의 평균가액, 동종유형 평균 매매 회전율 등 주요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동종유형이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및 일 반 공모집합투자기구로 구분하여 자본시장법 제229조에 따른 5가지 종류의 유형(단기금 융집합투자기구 제외)을 의미한다. 아래에 제시된 표를 참조하여 기재할 수 있으며, 효 과적인 정보제공을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표를 이용할 수 있다.

(단위 : 백만원, 주)

Z N O	종유형
수량 금액 수량 금액(A) 주식의 평균가액(B) (A/B) 평균 미	배매회전 <del>율</del>

- v. 전전기 매매회전율 대비 전기 매매회전율이 중요하게 변동하였을 경우에는 그 원인 및 매매회전율의 변동이 집합투자기구에 미치는 영향을 표의 주석으로 기재하고, 각 항목 의 전전기 대비 전기 수치의 증감비율(단위 %P)을 기재한다.
- vi. 기타 운용방법으로 증권을 대여하거나 차입하는 거래가 가능할 경우 요약 손익계산서상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에 증권대차거래로 인해 발생한 수익 또는 비용이 어떻게 포함·구 성되어 있는지 주석으로 기재한다.

vii.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거래비용을 투자자산별(주식, 주식 이외의 증권, 부동산, 장내·외파생상품 등)로 구분하여 주석으로 기재한다. 이 경우 아래에 제시된 표를 참조하여 기재할 수 있으며, 효과적인 정보 제공을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표를 이용할 수 있다.

(단위:백만원)

	당기			전기		
구분	וב על	거리	∦비용 <sup>*</sup>	ווב עד	거래비용*	
	거래 금액(A)	금액(B)	거래비용 비율(B/A)	· 거래 금액(A)	금액(B)	거래비용 비율(B/A)
주식						
주식 이외의 증권(채권 등)						
부동산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합 계						

<sup>\*</sup> 주식 중개수수료 등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기재하되 장외 채권거래와 같이 별도 수수료 미발생 등의 사유로 거래비용의 객관적인 산출이 어렵거나 부동산 등과 같이 취득원가에 포함 되는 항목(수익적지출 등 비용으로 산정되는 항목은 기재)은 작성 생략 가능

viii.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된 감사보고서를 참조하라는 뜻을 기재하고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0-1-2조(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직전 3회계연도 기간 동안의 집합투자기구 설정 및 환매현황을 다음 표에 따라 기재한다.

기간	기간초 잔고		간초 잔고 설정(발행) 환매			기간말 잔고		
기신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 【 작성지침 】

i. 최근 3회계연도에 관한 자료를 작성하되, 최근 회계연도는 6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에 그 반기실적을 기재하고, 6개월 미만 경과시에는 직전 회계연도를 최근 회계연도로 기 재한다. 다만, 반기말(결산일) 이후 1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직전 반기말)를 최근 회계연도로 기재할 수 있다.

- ii.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일 경우 종류별로 작성하고,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은 주석사항 으로 별도 표시한다.
- 제20-1-3조(출자금) ① 회사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출자지분의 총수에 관하여 발행할 출자지분의 총수, 발행한 출자지분의 총수 및 미발행 출자지분의 총수를 기재한다.
  - ② 발행한 출자지분의 내용에 대하여 주당 액면가액(무액면인 경우 1주의 금액)을 표시하고, 출자자별로 출자지분의 종류, 지분의 수, 발행가액 총액 등의 내용을 기재한다.

### 제2절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제20-2-1조(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① 집합투자기구의 재산운용 실적에 대하여 연평균 수익률 및 연도별 수익률을 참고지수(또는 참고수익률) 및 수익률 변동성과 비교하여 표시하는 방법으로 기재한다.

### 【 작성지침 】

- i. 연평균 수익률은 집합투자기구와 참고지수의 연평균 수익률(기하평균) 현황을 도표를 이용하여 비교한다. 만일 해외자산운용회사에 운용을 위탁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해외 위탁자산운용회사가 변경되었다면 해외 위탁자산운용회사 변경 이후 기간을 대상으로 연평균 수익률 현황을 비교한다.
- ii. 연도별 수익률 추이는 ① 집합투자기구와 참고지수의 최근 연도별 수익률을 도표를 이용하여 비교하고, ②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수익률을 기재하지 않으며, ③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미만인 경우(예: 8개월)로서 주식 또는 주식관련상품(주가지수연계증권 등)에 투자하는 경우 '기간 수익률'을 기재하고 해당 기간의 수익률임을 명시하되, 주식 또는 주식관련상품(주가지수연계증권 등)에 투자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환산 수익률'을 기재하고 해당 기간의 수익률을 연간 수익률로 환산하였음을 명시한다. 만일 해외자산운용회사에 운용을 위탁하는 펀드의 경우 해외위탁자산운용회사가 변경되었다면 해외 위탁자산운용회사 변경 후 기간을 대상으로 연도별 수익률 추이를 작성한다.
- iii. 표의 주석으로 연평균 수익률 및 연도별 수익률 추이는 과세전의 수익률임을 명기하고, 참고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기재한다.
- iv. 설정·설립일 이후 집합투자기구와 참고지수의 수익률 추이를 선형 그래프를 이용하여 비교가 가능하나 집합투자기구에 유리한 기간을 임의로 선정하여 수익률을 비교하지 않아야 한다.
- v. 연평균 수익률 및 연도별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작성기준일 로 산정한 수익률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여 야 한다는 안내문구를 기재한다.

#### < 작성사례 >

가. 연평균 수익률(세전 기준)

(단위 : %)

기간	최근 1년 ('07.4.1~'08.3.31)	최근 2년 ('06.4.1~'08.3.31)	최근 3년 ('05.4.1~'08.3.31)	최근 5년 ('04.4.1~'08.3.31)	설정일 이후 ('00.00.00~'08.3.31)
집합투자기구					
참고지수					
수익률 변동성(%)					

- 주 1) '참고지수 = KOSPI 수익률×80% + 3년만기 국고채 수익률×20%'이며, 운용보수 등 집합투자기구 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음
- 주 2) 수익률 변동성(%)은 해당 기간 동안 집합투자기구의 연환산된 주간수익률의 표준편차

####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세전 기준)

(단위 : %)

기간	최근 1년차 ('07.4.1~'08.3.31)	최근 2년차 ('06.4.1~'07.3.31)	최근 3년차 ('05.4.1~'06.3.31)	최근 4년차 ('04.4.1~'05.3.31)	최근 5년차 <sup>1)</sup> ('03.8.1~'04.3.31)
집합투자기구					
참고지수 <sup>2)</sup>					

- 주 1) 8개월간의 수익률을 연간 수익률로 환산하였음(또는 8개월간의 수익률임)
  - 2) 참고지수 = 종합주가지수 수익률×80% + 3년만기 국고채 수익률×20%
- ② 집합투자기구의 주된 자산 구성현황을 분기말을 기준으로 표를 이용하여 작성하되, 투자대상자산의 종류별 현황 및 투자지역별 또는 통화별 현황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다만, 분기말 이후 1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분기말(1분기 및 3분기의 경우에는 각각 전기말 및 직전 반기말)을 기준으로 작성할 수 있다.

### 【 작성지침 】

- i. 여러 가지 통화의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통화별 구분'란에 해당 통화(예 : 원화, 미국달 러화, 일본 엔화, 중국 위안화 등)를 명시하고, 자산별·통화별 현황을 기재한다.
- ii. 금액 및 비중은 집합투자기구 기준가격의 표시통화(예 : 원화)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 iii. 부동산은 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법인에 대한 대출, 시행령 제240조 제4항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하는 제240조 제5항에서 정하는 부동 산과 관련된 증권을 포함한다.
- iv.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합리적인 분류기준(예 : 업종, 국가, 신용도, 만기 등)에 따른 구성현황을 하나 이상의 표, 차트, 그래프 등으로 각각에 대한 총투자금액과 비중(비율)을 기재한다.

#### < 작성사례 >

직전 분기말(200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집합투자기구의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구성현황

은 다음과 같습니다.

Eau		증권					Ī	파생상품			П		특별자산		단기									
통화별 구분	주	식	차	권	어	음	투	합 자 권	장	내	장	외		는 사	실 자	물 산	기	타	대출 및 예금	출 및 금	기타		자산 총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sup>\*()</sup> 내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주된 투자대상의 국가별 투자비중】

③ ESG집합투자기구인 경우 사전에 공시한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의 이행현황, 투자목적의 달성을 위해 주주활동을 실시한 경우 그 내역 등 운용실적과 ESG와의 연관성을 기재하며, 비교 또는 참고지수가 있는 경우 해당 지수와의 운용성과 비교 내역을 기재한다.

# 제21장 집합투자기구의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 제21-1-1조(개요) 집합투자기구의 관련회사와 투자자 및 집합투자기구간의 관계를 도표를 통해 간략히 설명한다.
- 제21-1-2조(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기구의 재산을 운용할 집합투자업자의 개요, 주요 업무, 최근 2년간 요약 재무정보 및 운용자산 규모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 【 작성지침 】

- i. 회사개요에는 회사명, 주소·연락처·인터넷홈페이지 주소, 회사연혁, 자본금, 주요주주 현황을 간략히 기재하고, 신탁업자,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 등이 법상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에 대하여 기술한다.
- ii. 주요업무에 관한 사항은 주로 수행하는 업무 및 집합투자업자의 의무와 책임(법령 및 집합투자규약 상)에 대하여 기술한다.
- iii.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요약	대차대조표(재무성	상태표)	요약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계정과목	계정과목 제X기 제X-1기			제X기	제X-1기		

iv. 운용자산 규모에 관한 사항은 신고서 작성일 현재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고 있는 운용 자산 규모(수탁고 기준)를 집합투자기구 종류별로 다음을 참고하여 기재한다.

집합투자		증권		부동산	특별	혼합	MMF	총 계
기구종류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_ 구중인 	자산	자산	IVIIVII	5 AI
수탁고								

제21-1-3조(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 ① 집합투자업자가 운용(지시)업무 등을 위탁한 경우 업무위탁의 사유를 포함하여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기재사항에 준하여 기재하며, 기타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도 운용(지시)업무 등을 위탁한 경우에 준하는 내용을 기재한다.

#### 【 작성지침 】

i. 위탁업무의 범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기술하며, 운용의 위탁에 따라 지급하는 보수 의 부담주체(집합투자업자 또는 집합투자기구)를 명시한다.

- ii. 업무위탁의 책임이 위탁한 집합투자업자에 있음을 명시한다.
- iii. 업무위탁계약기간의 종료, 업무위탁계약의 해지 등 일정 사유 발생시 위탁운용사를 변경할 수 있다는 사실과 위탁운용사를 변경할 경우의 투자자 공시방법을 기술한다.
- iv.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운용지시 업무와 관련한 조사분석 업무 등을 위탁한 경우 업무위탁의 사유, 해당 업무를 수탁한 자와 위탁업무의 범위에 대해 기술하고, 업무위탁에 따라 지급하는 보수를 부담하는 주체(집합투자업자 또는 집합투자기구)를 명확히 기재하고, 업무위탁의 책임이 위탁한 집합투자업자에 있음을 명시한다.
- 제21-1-4조(기타 집합투자기구의 관련회사) 다음 각호의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하여 회사의 개요, 업무 범위, 의무 및 책임에 대하여 간략하게 기술한다. 이 경우 회사의 개요에는 회사명, 주소, 연락처, 인터넷홈페이지 주소, 회사연혁 등을 포함한다.
  - 1. 집합투자재산을 관리하는 신탁회사
  - 2. 집합투자기구의 일반적인 사무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일반사무관리회사
  - 3. 집합투자기구를 평가하고 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집 합투자기구평가회사
  - 4. 집합투자재산 중 채권 등 투자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는 채권 평가회사
  - 5. ESG집합투자구기구로서 그 운용과 관련하여 제3자의 ESG 관련 평가 결과 를 활용하는 경우 ESG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평가회사

# 제22장 기타 투자자보호에 필요한 사항

# 제1절 투자자 권리에 관한 사항

제22-1-1조(투자자총회 및 의결권) 투자자총회(집합투자기구의 법적 형태에 따라 수 익자총회, 주주총회, 사원총회, 조합원총회를 말하며, 이하 같다)와 관련하여 투자자총회의 구성, 투자자총회의 소집, 의결권 행사방법, 투자자총회 결의사항, 투자자의 반대매수청구권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 i. 집합투자자총회 관련해서는 집합투자자명부 관리방법·집합투자자총회 소집절차·의결 사항·의결방법(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방법 및 간주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포함) 등 에 대하여 기술한다.
- ii.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종류 집합투자자총회에 관한 사항, 모자형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해당 자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자총회 관련사항에 대하여 기술한다.
- 제22-1-2조(잔여재산 분배)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해지(회사형인 경우 해산. 이하 같다) 또는 해산에 따라 발생하는 집합투자기구 재산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분배금에 대하여 그 지급을 청구할 수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기재한다.
- 제22-1-3조(장부·서류의 열람 및 사본청구권) 투자자가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혹은 투자중개업자)에 대하여 열람이나 사본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서류의 종류 및 청구방법에 대하여 기재한다.
- 제22-1-4조(집합투자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 법령 또는 집합투자규약상 집합투자 업자,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회계감사인 및 집합투자기구의 관련회사 등의 귀책사유로 인해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회계감사인 및 집합투자기구의 관련회사 등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사실과 그 내용에 대하여 기재한다.
- 제22-1-5조(재판관할 등) 집합투자업자, 수탁회사 또는 판매회사 등이 소송을 제기하 거나 투자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재판을 관할하는 법원에 관한 사항과 기 타 투자자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다.

제22-1-6조(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청약철회권, 숙려기간 등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투자자가 갖는 권리 및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기재한다.

# 제2절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제22-2-1조(집합투자기구의 해지)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하여 법상 의무해지에 관한 사항 및 집합투자업자가 결정할 수 있는 임의해지에 관한 사항 및 그 절차(소 규모투자신탁에 해당되어 투자신탁을 임의로 해지하는 경우 투자자에 대한 통지절 차 및 해지금 지급 방법 등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기재한다.

### 제3절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 제22-3-1조(정기보고서)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에 관하여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수탁회사 등이 투자자에게 제공하거나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투자협회 등에 제출하여야하는 영업보고서, 결산서류, 자산운용보고서, 자산보관관리보고서, 운용실적 및 기타 장부 및 서류에 관한 사항과 이를 제공 또는 공시하는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기재한다.
- 제22-3-2조(수시공시 등)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사항 변경, 법 제89조에 의한 수시공시,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 등을 기재한다.
- 제22-3-3조(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 ① 법상 금지되거나 제한이 있는 집합투자업자 등과의 이해관계인과의 거래가 있는 경우 그 거래내용 및 집합투자기구간 거래가 행하여졌을 경우 거래일자, 거래상대방의 명칭, 거래내용, 거래금액, 거래사유를 포함하여 집합투자기구간 거래내용의 최근 1년간 내역을 기재한다.
  - ②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투자증권 또는 파생상품을 위탁매매 하는 경우 그 위탁매매를 수행하는 업자를 선정하는 기준에 대하여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대상별로 기재한다.
- 제22-3-4조(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 ① 집합투자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9조 제1호 가목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7-1조의2 제 1항에 따라 고유재산으로 자기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목적, 투자승인일자, 투자집행시기, 투자금액, 투자기간, 투자금 회수계획 등에 대해서

명확히 기재한다.

② 제1항의 필수 고유재산 투자 외에 추가적으로 투자하는 고유재산에 대하여는 투자목적, 투자금액, 투자기간 및 투자금 회수계획 등을 기재한다.

#### 【 작성지침 】

- i. 고유재산 투자계획 수립대상인 펀드에 한하여 작성하며, 금융투자업규정 제7-1조의2 제 2항 각호에 해당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작성 예외에 해당됨을 명시한다.
- ii. 투자승인일자는 고유재산 투자금의 출자·납입 및 회수와 관련된 집합투자업자 내부 절차로 서 위험관리위원회 등의 승인일자를 기재한다.
- iii. 제7-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고유재산 투자금 이외에 추가적으로 투자하는 고유재산 에 대하여는 투자목적, 투자금액, 투자기간 및 투자금 회수계획 등에 대해서 기재한다.

# 제4절 외국 집합투자기구 등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제22-4-1조(외국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외국에서 설립된 집합투자기구 로서 투자자보호를 위해 추가로 기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기재한다.

#### 【 작성지침 】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법상 추가필요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기타 추가로 기재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다.

- 가. 변호사의 법률검토의견
- 나. 외국집합투자기구 관련 법제도에 관한 사항
- 다. 외국집합투자기구에 적용되는 회계처리기준에 관한 사항
- 라. 과세처리와 환 관리에 관한 사항

# 제23장 집합투자증권의 합병신고

# 제1절 합병에 관한 기본사항

- 제23-1-1조(합병의 목적) 합병대상 집합투자기구에 미치는 효과 등의 내용을 포함한 합병의 목적을 간략하게 기재한다.
- 제23-1-2조(합병 관련 집합투자기구 개요) 합병 집합투자기구, 피합병 집합투자기구 와 합병후 존속하는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 종류 및 구조, 설정일, 보수 및 수수료, 순재산액, 신탁업자, 일반사무관리회사 등을 기재한다.
- 제23-1-3조(합병일정) ① 합병 집합투자자총회일, 합병일 등 합병에 관한 일정을 일 자별로 정리하여 기재하되, 합병과 관련된 감독기관에 대한 보고, 신고, 승인 등의 절차와 합병에 관한 공시절차 등에 관한 사항도 포함한다.
  - ② 합병에 따라 기존 펀드의 매입 또는 환매가 정지되는 경우 그 기간에 대한 사항을 기재한다.
- 제23-1-4조(합병의 성사 조건) 법령, 집합투자규약 및 합병계약의 내용 중 합병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사항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합병에 관한 집합투자기구총회의 합병결의 요건 등의 내용을 기재한다.
- 제23-1-5조(합병관련 집합투자업자) 합병 대상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집합투자업자 에 대하여 상호, 대표자, 본젂소재지, 연락처, 홈페이지주소 등을 기재한다.

# 제2절 합병의 내용

- 제23-2-1조(합병후 존속 집합투자기구) 합병 후 존속하는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간략한 개요와 집합투자규약의 주요 변경내용을 기재하되, 주요 변경내용에는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회계기간의 변경에 관한 사항 및 보수·수수료 변경에 관한사항을 포함한다.
- 제23-2-2조(합병관련 투자위험요소) ① 합병이 성사되지 아니할 경우에 발생가능한 투자위험 및 합병이 성사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하여 기재한다.
  - ② 투자자는 존속하는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을 참고할 수 있도록 존속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최근 투자설명서가 공시된 일자 및 장소를 기재하고 존속하는 집합투자기구가 합병으로 인해 변경되는 경우 그에 따른 위험요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 제23-2-3조(집합투자증권의 배정 등 합병대가) ① 피합병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 게 존속 또는 신설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배정하는 경우 이에 대한 사항을 기재하며, 1좌 미만의 집합투자증권이 배정되는 경우 그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기재하고, 집합투자증권 배정결과 자기 집합투자증권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처리방안을 기재한다.
  - ② 합병으로 인해 소멸하는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금전을 지급하기로 한 때에는 지급내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 제23-2-4조(합병관련 이익분배) 합병으로 인해 집합투자기구의 이익금을 분배하는 경우 그 내용 및 한도액에 관하여 기재한다.

# 제3절 합병기준 및 산출근거

제23-3-1조(합병비율 및 산출근거) 합병비율 및 산출근거를 기재한다.

- 제23-3-2조(합병관련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합병과 관련하여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 1. 평가기관
  - 2. 평가방법, 평가결과, 평가기관의 종합의견 등
- 제23-3-3조(요약 재무정보) 합병과 관련된 집합투자기구의 합병 전·후의 요약재무정 보를 기재한다.

# 제4절 기타 투자자 및 이해관계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

- 제23-4-1조(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 합병에 대하여 반대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집합투자증권의 매수청구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 1. 매수청구권의 개요, 매수청구권자의 범위, 행사요건, 매수예정가격, 행사방법 및 절차, 기간 및 장소 등에 관한 사항
  - 2. 매수청구권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제시가격, 그 제시가격의 산출 근거 및 협의 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처리방법
- 제23-4-2조(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의 보호절차) 합병과 관련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 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다.
- 제23-4-3조(기타 합병계약서에 기재된 투자자보호에 필요한 사항) 기타 합병계약서 에 기재된 투자자보호에 필요한 사항 및 외국집합투자기구로서 투자자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기재한다.

# 제24장 집합투자증권 발행실적보고

# 제1절 집합투자증권 발행실적보고

제24-1-1조(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규약상의 정식 명칭을 기재한다.

### 【 작성지침 】

집합투자기구의 명칭과 함께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를 괄호 안에 기재한다.

제24-1-2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를 형태별, 운용자산 별, 개방형·폐쇄형 여부 또는 추가형·단위형 여부 및 특수형태인지 여부를 기재하다.

### 【 작성지침 】

- i. 형태별 종류는 투자신탁,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유한책임회사, 투자합자조합, 투자익명조합 등으로 구분한다.
- ii. 운용자산별 종류는 증권, 부동산, 특별자산, 혼합자산,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등으로 구분한다.
- iii. 특수형태는 종류형, 전환형, 모자형, 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 등으로 구분한다.

제24-1-3조(집합투자증권 발행) ① 집합투자증권 발행내역을 폐쇄형·단위형과 개방 형·추가형으로 구분하여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한다.

### [폐쇄형 집합투자기구와 단위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구분	좌수/금액	비고
설정좌수		
설정금액		

# [개방형・추가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회계연도 기준 발행실적)]

	구분	좌수/금액	비고
	설정좌수		
좌수	해지좌수		
	증감		
	설정금액		
금액	해지금액		

	직전연도까지의	
	순환매금액	
	증 감	
	기초 순자산	
순자산	기말 순자산	
	증 감	

- i. 폐쇄형집합투자기구와 단위형집합투자기구는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모집기간 동안의 발행실적을 기재한다.
- ii. 개방형집합투자기구로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행실적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회계 기간 동안의 실적을 기재한다.
- iii. 개방형집합투자기구의 회계연도 기준 보고시의 설정좌수의 경우 이익배분에 따른 재투 자분은 비고에 참고로 기재하고, 설정 및 환매금액은 기간중 설정 및 환매좌수에 설정 및 환매시 적용 기준가를 곱한 금액을 일별 합산하여 작성한다.
- ② 집합투자증권 발행비용을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한다.

발행비용 구분	금액	申立
발행분담금		
기타비용		
총계		

### 【 작성지침 】

집합투자증권 발행비용중 기타비용은 그 비용의 종류에 대하여 주석으로 기재한다.

제24-1-4조(청약, 배정 및 인수) 청약, 배정절차, 방법 등 청약 및 배정에 관한 사항과 인수인이 있는 경우 인수인의 명칭과 주소, 인수 집합투자증권의 종류와 수, 인수의 방법, 인수수수료 및 인수인의 의견 등 인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 【 작성지침 】

인수인별로 인수방법 등이 다른 경우에는 각각의 내용을 인수인별로 기재한다.

제24-1-5조(상장 및 중자등기)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설립)일, 상장 및 등기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 i. 집합투자증권을 상장하였거나 상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소의 명칭, 상장(신청) 일 등 상장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 ii. 회사형집합투자기구로 법인등기가 필요한 경우 증자등기일을 기재한다.
- 제24-1-6조(공시이행상황) 최근 3년간 다음의 사항에 대한 공시 이행상황에 관하여 일자, 주요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 1. 증권신고서 및 정정신고서 공시
  - 2. 투자설명서 공시
  - 3. 증권발행실적보고서 공시

# 제2절 집합투자증권 합병실적보고

- 제24-2-1조(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규약상의 정식 명칭을 기재하며, 금융투자 협회 펀드코드를 괄호 안에 기재한다.
- 제24-2-2조(합병일정) 합병 집합투자자총회일, 합병일 등 합병에 관한 일정을 일자별로 정리하여 기재하되, 합병과 관련된 감독기관에 대한 보고, 신고, 승인 등의 절차와 합병에 관한 공시절차 등에 관한 사항도 포함한다.
- 제24-2-3조(집합투자자총회) 합병승인 집합투자자총회 결과에 관하여 소집일시, 장소, 출석 집합투자자 및 출석 집합투자증권의 수, 의결권 행사현황, 안건 처리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 제24-2-4조(매수청구권 행사내용) 집합투자증권의 매수청구권 행사결과에 관하여 매수청구권의 개요, 매수청구권자수, 매수청구한 집합투자증권의 수, 매수가격, 매수 가격 결정근거, 매수(예정)일자, 기간 및 장소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 제24-2-5조(집합투자증권 배정등) 피합병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 대한 새로운 집합투자증권을 배정한 내역과 교부금을 지급한 내역, 1좌 미만의 집합투자증권의 처리내역에 관한 내용을 기재한다.
- 제24-2-6조(합병 전·후의 요약재무정보) 합병후 존속 또는 신설되는 집합투자기구 의 합병 전·후 요약재무정보를 제20-1-1조를 참고하여 기재한다.
- 제24-2-7조(투자자 등 보호에 필요한 사항) 합병과 관련하여 투자자나 채권자 등 이 해관계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기재한다.

# 제25장 간이투자설명서

### 제1절 표제

- 제25-1-1조(명칭) 집합투자기구의 정식 명칭을 기재하고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를 괄호 안에 기재한다.
- 제25-1-2조(투자위험 등급 분류) 제19-3-5조제6항에 따른 투자위험등급을 기재하고, 등급이 기재되는 표의 우측 첫 번째 단락에 투자위험등급의 분류기준이실제 수익률 변동성인 경우에는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실제 수익률 변동성이 아닌 경우에는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분류하였다는 사실을 기재한다. 이 때 투자위험등급 분류기준은 크고 굵은 글자로 기재한다.
- 제25-1-3조(핵심위험) 투자위험등급이 기재되는 표의 우측 두 번째 단락에 원본 손실가능성 등 집합투자기구의 핵심위험을 요약하여 기재한다.

### 【 작성지침 】

- i.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 품이라는 안내문구를 붉고 굵은 글씨체로 기재한다.
- ii.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의 경우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붉고 굵은 글씨체로 기재하고, 파생상품 등의 편입으로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안내문구를 기재한다.
- iii. 투자대상 자산별(예: 주식, 채권 등), 지역별(예: 국내, 해외, 선진국, 신흥국 등) 핵심위 험을 붉고 굵은 글씨체로 간략히 기재한다.
- iv. 집합투자기구의 핵심위험에 대해 투자에 신중을 기하라는 안내 문구를 기재한다.

# 제2절 요약정보

제25-2-1조(유의사항) 요약정보는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요약한 핵심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참고하라는 안내문구를 기재한다.

제25-2-2조(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제19-3-2조의 투자목적 및 제19-3-4조제1항의 투자전략 중 중요사항을 기재한다.

제25-2-3조(분류) 제18-1-2조의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를 간략히 기재한다.

### 【 작성지침 】

- i.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의 경우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이라는 사실도 기재한다.
- ii.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의 경우 상품의 복잡성과 위험성 등 그 의미와「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청약철회권, 숙려기간 등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투자자가 갖는 권리 등에 대하여 주석으로 간략히 기재한다.
- 제25-2-4조(투자비용) 투자자가 부담하는 판매수수료, 총보수, 판매보수 및 동종 유형 총보수 및 총보수·비용을 기재하고,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를 표를 이용하여 기재한다.

- i.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체적인 투자비용은 투자설명서(해당 목차 및 페이지 포함)를 참고하라는 내용을 기재한다.
- ii.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종류(Class)간 수수료 및 보수 차이를 비교 기재하되, 일반투 자자들이 주로 투자하는 종류(예: 종류A , 종류 Ae, 종류C, 종류 Ce)를 한글로 된 종류 (클래스) 명칭을 부기하여 기재하며, 온라인 클래스(Ae형, Ce형)가 없는 경우 해당 집합투자기구는 오프라인 클래스에 비해 일반적으로 투자비용이 저렴한 온라인 클래스가 설정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 iii. 총보수는 집합투자업자 보수, 판매회사 보수, 수탁회사 보수,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연간 지급비율의 합으로 작성하고, 총보수·비용은 제19-4-3조(보수 및 수수료) 제3 항 표의 최하단 총보수·비용(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으로 작성한다.
- iv.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부담하게 되는 판매수수료 또는 보수·비용(재간 접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을 판매수수료율과 총보수·비용비율 등을 이용하여 1년, 2년, 3년, 5년, 10년 단위로 예시하고, 종류별로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을 빨간색으로 표시한다. 이 경우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투자수익률은 5%, 판매수수료율 또는 총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한 것으로 가정한다는 사실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 v. 종류별(A형과 C형, Ae형과 Ce형)로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예: 1년 6개월, 2년 등)을 붉고 굵은 글씨체로 주석으로 기재하고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 vi. 종류 A, 종류 Ae, 종류 C, 종류 Ce에 대해서는 종류별 동종유형 총보수를 기재하고,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 < 작성사례 >

클래스 종류			자가 부딤 총보수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충보수·비용 예시 (단위:천원)					
	판매 수수료	총 보수	판매 보수	동종유형 총보수	총 보수 • 비용	1년	2년	3년	5년	10년
수수료선취 - 오프라인형(A)										
수수료미징구 - 오프라인형(C)										
수수료선취 - 온라인형(Ae)										
수수료미징구 - 온라인형(Ce)										

제25-2-5조(투자실적 추이) 제20-2-1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연평균 수익률을 기재한다.

제25-2-6조(운용전문인력) 제19-2-2조에 따른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중요사항을 표를 이용하여 기재한다.

			운용학	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주식형)			
성명	생년	직위	집합투자	운용 규모	운용	공역	운용사		운 <del>용</del> 경력년수
			기구수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70 4 12 1

### 【 작성지침 】

i. 팀운용을 하는 경우 "책임운용인력"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의미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 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의미함을 주석 으로 기재한다.

- ii.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 iii.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 의 평균운용성과를 의미하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한다는 사실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 iv.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 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제25-2-7조(투자자 유의사항) '원본손실 가능성',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 기재 사항의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다는 유의사항' 및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제17-1-6조의 '투자 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중 주요 사항을 기재한다.

### 【 작성지침 】

- i.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제17-1-6조의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는 해당 집합투자 기구의 성격을 감안하여 투자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항을 5개 내외로 기재하고, 추가적인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는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고하라는 안내 문구를 기재한다.
- ii. '투자자 유의사항' 중 '원본손실 가능성' 및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는 안내 문구를 붉고 굵은 글씨체로 기재한다.
- 제25-2-8조(주요 투자위험) 제19-3-5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중 중요 사항을 표를 이용하여 기재한다.

- i. 집합투자기구의 가치에 직접 영향을 주는 중요한 투자위험을 위주로 기술한다.
- ii. 부동산·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 등의 경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특수한 투자위험에 대해 설명한다.
- iii. 해외자산 등 외화표시 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환율변동위험에 관하여 보다 자세하게 기재하고 환위험관리에 관한 내용을 기재한다. 환위험관리는 환혜지

여부, 환혜지 대상 통화, 목표 헤지비율 및 펀드수익률에 미치는 효과 등 환혜지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 제25-2-9조(기준가격 산정 및 매입·환매 절차) ① 제19-4-1조제1항의 집합투자 증권의 매입 및 제19-4-1조제2항의 환매에 관한 중요한 내용을 기재한다.
  - ② 제19-4-2조제1항의 기준가격 산정방법, 공시장소 등의 중요한 내용을 기재한다.

### 【 작성지침 】

- i. 집합투자증권의 매입(환매)방법 및 절차, 매입(환매)신청 가능시간, 매입(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마감시간 이후 거래(Late Trading) 등에 대하여 기술한다.
- ii. 집합투자기구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일 경우 판매시 또는 환매시 과거가격이 적용되는 경우에 대하여 기술한다.
- iii. 회사형(투자조합형 포함) 집합투자기구로 Capital call방식으로 출자를 하여야 하는 경우 출자시기 등 출자이행 관련 내용에 대하여 상세히 기술한다.

제25-2-10조(과세) 제19-4-4조제2항에 따른 과세 중 중요한 내용을 기재한다.

### 【 작성지침 】

- i. 집합투자기구의 소득 중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 및 세율을 간략히 기술한다. 과세 측면에서 투자자에게 불리한 사항(예: 투자손실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과세되는 경우)이 있는 경우 이를 상세히 기술한다.
- ii.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됨을 기재한다.
- 제25-2-11조(전환절차 및 방법) 제19-4-1조제3항의 전환절차 및 방법 중 중요한 내용을 기재한다.

#### 【 작성지침 】

i. 전환형집합투자기구인 경우에는 전환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을 간략하 게 기재한다.

- ii. 이연판매보수(CDSC)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경우, 그 적용기준 및 내용을 간략히 기재한다.
- 제25-2-12조(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기구의 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의 법 상 정식명칭, 대표 전화번호 및 인터넷홈페이지를 기재하고, 집합투자업자가 운용(지시)업무를 다른 회사에게 위탁한 경우 해당업무를 수탁한 수탁업자와 위탁한 업무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기재한다.
- 제25-2-13조(모집·매출 관련 사항 등) 모집기간, 모집·매출총액, 효력발생일, 집 합투자기구의 존속기간 등의 정보를 각각 간략히 기재한다.
- 제25-2-14조(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참고하라는 내용을 기재한다.
- 제25-2-15조(참조) 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해당 목차 및 페이지 포함)를 참고하라는 내용을 기재한다.
- 제25-2-16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제19-3-1조의 종류별 차이점에 대한 내용을 표를 이용하여 기재한다.
- 제25-2-17조(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자산운용보고서, 수시공시 등 집합투자증권 공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장소 또는 인터넷홈페이지 주소 등을 간이투자설명서 마지막장 하단부에 기재한다.

- i. 모든 지점의 주소, 전화번호 등을 기재할 필요는 없다.
- ii. 투자설명서를 열람할 수 있는 QR코드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QR코드를 통해서도 투자설명서를 확인할 수 있다'는 안내문구를 기재한다.

### ◈ 별지: 공시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증권신고서
- <별지 제1-1호 서식> : 주관회사의 주의의무 이행서류
- <별지 제1-2호 서식> : 회계감사인의 재무확인서
- <별지 제2호 서식> : 증권신고서(IDS적용 외국기업)
- <별지 제3호 서식> : 증권신고서(외국기업 외의 외국법인등)
- <별지 제4호 서식> : 증권신고서(파생결합증권)
- <별지 제5호 서식> : 증권(일괄)신고서(집합투자증권-신탁형)
- <별지 제6호 서식> : 증권(일괄)신고서(집합투자증권-회사형)
- <별지 제7호 서식> : 증권신고서(유동화증권)
- <별지 제8호 서식> : 삭제<2021.7.13.>
- <별지 제9호 서식> : 증권신고서(합병등)
- <별지 제10호 서식> : 증권신고서(집합투자증권 합병)
- <별지 제11호 서식> : 일괄신고서
- <별지 제12호 서식> : 일괄신고서(파생결합증권)
- <별지 제12-1호 서식> : 일괄신고서(파생결합증권-금적립계좌, 은적립계좌)
- <별지 제13호 서식> : 일괄신고추가서류
- <별지 제14호 서식> : 일괄신고추가서류(파생결합증권)
- <별지 제15호 서식> : 소액공모공시서류
- <별지 제16호 서식> : 소액공모공시서류(파생결합증권)
- <별지 제17호 서식> : 소액공모공시서류(외국기업 외의 외국법인등)
- <별지 제18호 서식> : 소액공모공시서류(합병등)
- <별지 제19호 서식> : 호가중개시스템을 통한 소액매출공시서류
- <별지 제20호 서식> :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 <별지 제21호 서식> :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
- <별지 제22호 서식> : 간이투자설명서
- <별지 제23호 서식> : 간이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
- <별지 제24호 서식> : 증권발행실적보고서
- <별지 제25호 서식> : 증권발행실적보고서(합병등)
- <별지 제26호 서식> : 증권발행실적보고서(집합투자증권)
- <별지 제27호 서식> : 증권발행실적보고서(집합투자증권-합병)
- <별지 제28호 서식> : 소액공모실적보고서
- <별지 제29호 서식> : 소액공모실적보고서(합병등)

<별지 제30호 서식> : 철회신고서

<별지 제31호 서식> : 시장조성신고서

<별지 제32호 서식> : 시장조성보고서

<별지 제33호 서식> : 안정조작신고서

<별지 제34호 서식> : 안정조작보고서

<별지 제35호 서식> : 사업(반기, 분기)보고서

<별지 제35-1호 서식> : 소액공모법인 결산서류

<별지 제35-2호 서식> : 사업(반기,분기)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 신고서

<별지 제35-3호 서식> : 회사의 사업(반기,분기)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사유서

<별지 제36호 서식> : 사업(반기, 분기)보고서(외국기업 외의 외국법인등)

<별지 제37호 서식> : 사업(반기, 분기)보고서(유동화전문회사)

<별지 제38호 서식> : 주요사항보고서

<별지 제38-1~38-47호 서식> : 주요사항보고서

<별지 제38-1호 서식> : 부도발생

<별지 제38-2호 서식> : 은행거래 정지·금지

<별지 제38-3호 서식> : 영업정지

<별지 제38-4호 서식> : 회생절차 개시신청

<별지 제38-5호 서식> : 해산사유 발생

<별지 제38-6호 서식> : 유상증자 결정

<별지 제38-7호 서식> : 무상증자 결정

<별지 제38-8호 서식> : 유무상증자 결정

<별지 제38-9호 서식> : 감자 결정

<별지 제38-10호 서식> :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개시

<별지 제38-11호 서식> : 삭제<2013.8.29.>

<별지 제38-12호 서식> : 소송 등의 제기

<별지 제38-13호 서식> : 해외 증권시장 주권등 상장 결정

<별지 제38-14호 서식> : 해외 증권시장 주권등 상장폐지 결정

<별지 제38-15호 서식> : 해외 증권시장 주권등 상장

<별지 제38-16호 서식> : 해외 증권시장 주권등 상장폐지

<별지 제38-17호 서식> : 해외 증권시장 주권등 매매거래정지 등 조치

<별지 제38-18호 서식> : 외국법인등의 외국법령 등 변경

<별지 제38-19호 서식> : 외국법인등의 주식 등에 대한 외국에서의 공개매수

<별지 제38-20호 서식> : 외국법인등의 주식 등에 대한 외국에서의 안정조작 등

- <별지 제38-21호 서식> : 외국법인등의 해외법규 위반으로 인한 조치
- <별지 제38-22호 서식> : 외국법인등의 외국거래소로부터 매매거래정지·해제
- <별지 제38-23호 서식> : 외국법인등의 외국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
- <별지 제38-24호 서식>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별지 제38-25호 서식> :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결정
- <별지 제38-26호 서식> : 교환사채권 발행결정
- <별지 제38-27호 서식> :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중단
- <별지 제38-28호 서식> :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결정
- <별지 제38-29호 서식>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결정
- <별지 제38-30호 서식> :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주식전환 사유 발생
- <별지 제38-31호 서식>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채무재조정 사유 발생
- <별지 제38-32호 서식> : 자기주식 취득 결정
- <별지 제38-33호 서식> : 자기주식 처분 결정
- <별지 제38-34호 서식> :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체결 결정
- <별지 제38-35호 서식> :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해지 결정
- <별지 제38-36호 서식> : 영업양수 결정
- <별지 제38-37호 서식> : 영업양도 결정
- <별지 제38-38호 서식> : 유형자산 양수 결정
- <별지 제38-39호 서식> : 유형자산 양도 결정
- <별지 제38-40호 서식> :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양수결정
- <별지 제38-41호 서식> :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양도결정
- <별지 제38-42호 서식> : 주권 관련 사채권 양수 결정
- <별지 제38-43호 서식> : 주권 관련 사채권 양도 결정
- <별지 제38-44호 서식> : 회사합병 결정
- <별지 제38-45호 서식> : 회사분할 결정
- <별지 제38-46호 서식> : 회사분할합병 결정
- <별지 제38-47호 서식> : 주식교환·이전 결정
- <별지 제38-48~38-49호 서식> : 주요사항보고서
- <별지 제38-48호 서식> : 제3자의 전환사채매수선택권 행사
- <별지 제38-49호 서식> : 자기 전환사채 매도 결정
- <별지 제39호 서식> : 공개매수신고서
- <별지 제40호 서식> : 공개매수설명서
- <별지 제41호 서식> : 공개매수결과보고서
- <별지 제42호 서식> : 공개매수철회신고서

<별지 제43호 서식> : 공개매수에 관한 의견표명서

<별지 제44호 서식> :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일반)

<별지 제45호 서식> :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약식)

<별지 제46호 서식> : 임원·주요주주 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서

<별지 제47호 서식> : 의결권대리행사권유 참고서류

<별지 제48호 서식> : 의결권대리행사권유에 관한 의견표명서

<별지 제49호 서식> : 대량주식취득승인신청서

<별지 제50호 서식> : 대량주식취득보고서

<별지 제51호 서식> : 자기주식취득결과보고서

<별지 제52호 서식> : 자기주식처분결과보고서

<별지 제53호 서식> : 신탁계약에 의한 취득상황보고서

<별지 제54호 서식> : 신탁계약해지결과보고서

<별지 제55호 서식> : 합병등 종료보고서

<별지 제56호 서식>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

<별지 제57호 서식> : 사외이사의 선임·해임 또는 중도퇴임에 관한 신고

<별지 제58호 서식> : 주주총회소집공고

### 부 칙

- ① (시행일) 이 작성기준(별지서식 포함)에 따른 공시서식별 시행시기는 다음과 같다.
  - 1. 다음의 공시서식은 2009년 2월 4일 이후 신고의무가 발생한 경우부터 시행한다.
    - 가. 사업보고서, 분·반기보고서, 주요사항보고서
    - 나. 증권신고서(합병등, 집합투자증권, 투자계약증권, 유동화증권, 주택저당 증권, 학자금대출증권)
    - 다. 나목에 해당되는 증권을 발행하기 위한 소액공모공시서류

- 라. 공개매수신고서,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서, 기타 지분 및 의결권 대리 관련 보고서
- 마. 기타 제2호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
- 2. 다음의 공시서식은 이 기준을 최초로 적용하여 제출한 사업보고서, 분·반기 보고서 이후의 공시서류분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기준의 시행전에 제출된 가목, 나목 공시서류의 정정신고는 종전 서식을 사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 가. 증권신고서(채무증권, 지분증권, 증권예탁증권, 파생결합증권)
  - 나. 가목에 해당되는 증권을 발행하기 위한 소액공모공시서류
- ② (종전서식의 폐지) 이 기준의 시행일로부터 종전 금융감독원장이 제정한 「등록법인신청서의 서식에 관한 건」,「유가증권신고서등의 서식에 관한 건」,「상장법인등의 주요경영사항 신고 및 사업보고서 서식에 관한 건」,「합병신고서등의 서식에 관한 건」,「자기주식 취득신고서등의 서식에 관한 건」,「기업지배권변동관련 서식에 관한 건」,「임원·주요주주소유주식보고서 서식에 관한건」은 폐지한다.

부 칙(2009.6.29.)

이 기준은 2009.7.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2.23.)

이 기준은 2009.12.24.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3.22.)

이 기준은 2010.3.29.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9.1.)

이 기준은 2010.9.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2.24.)

이 기준은 2011.1.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3.3.)

이 기준은 2011.4.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5.25.)

이 기준은 2011.6.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12.28.)

- 1. 이 기준은 2012.1.1.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2조 및 제2-4-1조부터 제2-4-5까지의 개정규정은 2012.2.1.부터 시행한다.
- 2. 제11-3-11조는 2011.1.1. 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 제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1.1.)

이 기준은 2012.1.1.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부 파생결합증권 공시기준' 및 별지서식 제4호, 제7호, 제12호, 제14호, 제16호 내용중 개정되는 사항은 2012.3.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4.15.)

이 기준은 2012.4.15.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7.9.)

- 1. 이 기준(별지서식 포함)은 2012.8.1.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서식 제21호 중 '투자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확인서' 개정내용은 2012.7.10.부터 시행한다.
- 2. 이 기준 시행일 현재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는 법 시행령 제130조 제2항 제4호 가목(최근 결산기의 재무제표가 확정 된 때)에 따른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부 칙(2012.8.10.)

이 기준(별지서식 포함)은 2012.8.20.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6조(정정신 고서 작성의 일반원칙), 제2-1-3조(공모가격 결정) 및 별지 제1호 서식(증권 신고서)의 개정규정을 제외한 개정규정은 2012.9.3.이후 제출하는 보고서부터 적용한다.

### 부 칙(2012.10.24.)

이 기준(별지서식 포함)은 2012.11.12.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3.1.28.)

이 기준(별지서식 포함)은 2013.2.1.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3조 및 제5-4-5조의 개정규정은 2013.2.18.이후 제출분부터 적용한다.

### 부 칙(2013. 6. 25.)

이 기준(별지서식 포함)은 2013. 7. 1.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3. 7. 1.)

이 기준(별지서식 포함)은 2013. 7.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8. 28.)

이 기준(별지 서식 포함)은 2013. 8. 29.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9. 11.)

이 기준(별지 서식 포함)은 2013. 9. 11.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3조의 개정규정은 2013. 10. 1. 이후 제출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13. 10. 17.)

이 기준(별지서식 포함)은 2013. 10. 17.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11. 19.)

이 기준(별지서식 포함)은 2013. 11. 29.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12. 23.)

이 기준(별지서식 포함)은 2014. 1. 2.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 38-1호 서식 내지 별지 제38-10호 서식, 별지 제38-12호 서식 내지 별지 제38-26호 서식, 별지 제38-28호 서식 내지 별지 제38-31호 서식은 2014. 1. 13. 이후 제출분부터, 제2-2-2조의 개정규정은 2014. 3. 2. 이후 제출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14. 2. 25.)

이 기준(별지서식 포함)은 2014. 3. 3.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3. 31.)

이 기준(별지서식 포함)은 2014. 6. 1.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8. 12.)

이 기준(별지서식 포함)은 2014. 8. 13.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12호 서식, 별지 제14호 서식, 별지 제16호 서식 중 개정되는 사항은 2014. 10. 1.이후 제출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14. 9. 12.)

이 기준(별지서식 포함)은 2014. 10.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2. 9.)

이 기준(별지서식 포함)은 2015. 3. 3.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4-3 조, 제22-3-4조, 제24-1-3조, 제25-3-1조,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 및 별지 제44호 서식 내지 별지 제47호 서식 중 개정되는 사항은 2015. 2. 10. 이후 제출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 8.20.)

이 기준(별지서식 포함)은 2015. 9.3.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11. 20.)

이 기준(별지서식 포함)은 2015. 12. 3.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 38-1호 서식 내지 별지 제38-17호 서식, 별지 제38-24호 서식 내지 별지 제38-26호 서식, 별지 제38-28호 서식 내지 별지 제38-35호 서식은 2016. 1. 18. 이후 제출분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12. 30.)

이 기준(별지서식 포함)은 2016. 1. 21. 이후 제출분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1. 26.)

이 기준(별지서식 포함)은 2016. 7.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2. 12.)

이 기준의 별지서식 제37호는 2016. 3. 7.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4. 1.)

이 기준(별지서식 포함)은 2016. 4. 15.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12. 9.)

이 기준(별지서식 포함)은 2016. 12. 26.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12. 23.)

이 기준(별지서식 포함)은 2016. 12. 26.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1. 20.)

이 기준(별지서식 포함)은 2017. 2.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4. 13.)

이 기준(별지서식 포함)은 2017. 4. 17.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1조의 개정규정은 2017. 7. 3. 이후 제출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7. 6. 19.)

이 기준(별지서식 포함)은 2017. 7. 3.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1. 10.)

이 기준(별지서식 포함)은 2018. 1. 19.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내지 별지 제8호 서식, 별지 제11호 서식 내지 별지 제12-1호 서식, 별지 제39호 서식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 이 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2. 28.)

이 기준(별지서식 포함)은 2018. 3.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6. 27.)

이 기준(별지서식 포함)은 2018. 6. 29.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7. 10.)

이 기준(별지서식 포함)은 2018. 7. 30.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12. 31.)

이 기준(별지서식 포함)은 2019. 1. 15.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3. 28.)

이 기준(별지서식 포함)은 2019. 8. 1. 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개정기준시행 당시의 종전기준(별지서식 포함)은 2019. 9. 30. 까지 이 개정기준과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 칙(2019. 12. 2.)

이 기준(별지서식 포함)은 2019. 12. 9.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1. 30.)

이 기준(별지서식 포함)은 2020. 2.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5. 27.)

이 기준(별지서식 포함)은 2020. 5. 29.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6. 30.)

이 기준(별지서식 포함)은 2020. 7. 6.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12. 4.)

이 기준(별지서식 포함)은 2020. 12. 7.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4조, 제13-1-1조의 개정규정은 2020. 12. 7.이후 최초로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공개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 12. 14.)

이 기준(별지 서식 포함)은 2021.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1. 14.)

이 기준(별지서식 포함)은 2021. 2. 1. 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개정기준시행 당시의 종전기준(별지서식 포함)은 2021. 1. 31. 까지 이 개정기준과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 칙(2021. 1. 21.)

이 기준(별지서식 포함)은 2021. 1. 22.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1. 25.)

이 기준(별지서식 포함)은 2021. 1. 29.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4. 2.)

이 기준(별지서식 포함)은 2021. 4. 6.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4조,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15호 서식, 별지 제38-6호 서식, 별지 제38-8 호 서식은 2021. 4. 6. 이후 제출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1. 5. 6.)

이 기준(별지서식 포함)은 2021. 5. 7.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5. 7.)

이 기준(별지서식 포함)은 2021. 5. 10.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6. 22.)

이 기준(별지서식 포함)은 2021. 7. 1.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21. 7. 13.)

- 1. 이 기준(별지서식 포함)은 2021. 7. 16.부터 시행한다. 다만, 자본 시장법상 사업(반기, 분기)보고서 제출기한이 2021. 8. 16일 이전에 도래하는 기업의 경우 해당 사업(반기, 분기)보고서는 종전기준(별지 서식 포함)을 사용할 수 있다.
- 2.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9호 서식, 별지 제11호 서식, 별지 제12호 서식, 별지 제12-1호 서식, 별지 제15호 서식, 별지 제16호 서식, 별지 제18호 서식, 별지 제19호 서식, 별지 제38-44호 서식, 별지 제38-46호 서식은 이 개정기준(별지서식 포함)으로 작성한 사업 (반기, 분기)보고서를 제출한 이후부터 적용하되, 동 서식 제출 당시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제출의무가 없는 법인의 경우에는 2021. 8. 18일 이후 최초 제출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1. 8. 30.)

이 기준(별지서식 포함)은 2021. 9.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10. 20.)

이 기준(별지서식 포함)은 2021.10.21.부터 시행한다. 다만, 시행일이후 효력이 발생하는 신규펀드가 아닌 경우 종전기준을 사용할수 있다.

# 부 칙(2021. 11. 19.)

이 기준(별지서식 포함)은 2021.12.1.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 38-48호 서식, 별지 제38-49호 서식은 시행일 이후 최초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발행하는 전환사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1. 12. 9.)

이 기준(별지서식 포함)은 2021.12.10.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12. 31.)

이 기준(별지서식 포함)은 2022.1.17.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1. 14.)

이 기준(별지서식 포함)은 2022. 1. 17. 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 38-6호 서식은 2022. 1. 19. 이후 제출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2. 3. 10.)

이 기준(별지서식 포함)은 2022. 3. 10. 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38-50호 서식은 시행일 이후 최초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발행하는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권'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2. 4. 18.)

이 기준(별지서식 포함)은 2022. 4. 18.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8. 30.)

- 1. 이 기준(별지서식 포함)은 2022. 8. 30. 부터 시행한다.
- 2. 제22-3-4조, <별지 제5호 서식> 및 <별지 제6호 서식>의 개정 규정은 이 기준 시행 이후 법 제182조 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기 구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2. 9. 7.)

이 기준(별지서식 포함)은 2022. 9. 8.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9. 29.)

이 기준(별지서식 포함)은 2022. 9. 29.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10. 18.)

이 기준(별지서식 포함)은 2022. 10. 18.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2. 20.)

이 기준(별지서식 포함)은 2023. 2. 20.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4. 7.)

이 기준(별지서식 포함)은 2023. 4. 7.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6. 30.)

이 기준(별지서식 포함)은 2023. 6. 30. 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3조의 개정규정은 2023. 7. 1. 이후 최초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기업공개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3. 7. 31.)

이 기준(별지서식 포함)은 2023. 7. 31.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10. 20.)

이 기준은 2023. 10. 20. 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2조, 제17-1-6조,

제19-2-2조, 제19-3-2조, 제19-3-3조, 제19-3-4조, 제19-3-5조, 제19-4-3조, 제20-2-1조, 제21-1-4조 중 개정되는 사항은 2023. 12. 20. 이후 제출되는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포함)부터 적용한다.

# 부 칙(2023. 10. 24.)

이 기준(별지서식 포함)은 2023. 10. 24. 부터 시행한다. 단, 제 11-4-13조의 개정규정은 2023. 10. 24. 이후 최초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기업공개(IPO)부터 적용한다.

# 부 칙(2023. 12. 28.)

이 기준(별지서식 포함)은 2023. 12. 28. 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24. 1. 12.)

이 기준(별지서식 포함)은 2024. 1. 12. 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24. 2. 8.)

이 기준(별지서식 포함)은 2024. 2. 8. 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24. 2. 28.)

이 기준(별지서식 포함)은 2024. 3. 1. 부터 시행한다. 다만, 시행일이후 결산기가 도래하는 집합투자기구가 제출하는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포함)부터 적용한다.

# 부 칙(2024. 4.12.)

이 기준(별지서식 포함)은 2024. 4. 12.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 5.20.)

이 기준(별지서식 포함)은 2024. 5. 20.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 6.28.)

이 기준(별지서식 포함)은 2024.8.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 7.16.)

이 기준(별지서식 포함)은 2024. 8.1. 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 46-1호 서식>, <별지 제46-2호 서식>은 2024. 7. 24.부터 시행한다.